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74-6440781-000003-10
충청남도 간행물등록번호
6440848-2020-000



2020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충청남도소방본부
Chungcheongnam-do Fire Headquarters

< 일러두기 >

-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지침이며,
 - ◆ 시도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본 지침에 따라 시·도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 실제 재난현장에서 재난상황 및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본 계획서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

목 차

심의의결서	1
수정일지	4
용어정의	5

제1장 기본계획

제1절 계획 개요	11
1. 목 적	11
2. 재난위험성 분석 및 계획적용 범위	11
2.1 재난위험성 분석	11
2.2 계획적용 범위	12
3. 재난대비·대응절차 개요	12
3.1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	12
3.2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13
3.3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14
3.4 초기대응	15
3.5 지원기관 초기대응	16
4. 긴급구조활동 평가·환류	18
5. 계획서의 운용책임	20
5.1 일반 책임	20
5.2 기능별 계획의 운영책임	20
제2절 긴급구조체제	27
1. 긴급구조통제단	27
1.1 운영책임	27
1.2 통제단 운영조직	27
1.3 현장지휘	28
1.4 설치장소	28
1.5 기 능	28

1.6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시기	29
1.7 상황판단회의	29
1.8 운영규모 및 기간	29
1.9 각 반별 조직 및 임무	31
2.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	33
2.1 운영체제	33
2.2 위치	33
2.3 대체 종합방재센터	33
2.4 정보통신체계	33
3. 통합지휘체계	36
3.1 통합지휘 운영개요	36
3.2 통합지휘팀	37
3.3 유관기관 협조체제	37
4. 통제단-대책본부의 연계성	40
4.1 상호협조관계	40
4.2 통제단-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협력관계	40
4.3 통제단장-대책본부장 현장지휘	40
4.4 긴급구조활동의 종료	41
4.5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41
5.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42
5.1 자원집결지	42
5.2 자원대기소	42
5.3 수송대기지역	42
6. 재난대응구역	43
6.1 운영개념	43
6.2 재난대응구역 가동절차	43
6.3 재난대응구역별 SOP	44
6.4 대응구역 통신	45
6.5 기관(부서)별 대응구역 SOP	45

제2장 기능별 대응계획

제1절 지휘통제계획(#1)	49
1. 목 적	49
2. 조직 및 운영	49
2.1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49
2.2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운영	53
2.3 시간대별 운영체제	54
2.4 긴급구조통제단 긴급대응 우선순위	55
3. 임무수행	55
3.1 총괄지휘부	55
3.2 상황관리부	60
3.3 현장지휘부	63
3.4 자원관리부	71
제2절 비상경고계획(#2)	87
1. 목 적	87
2. 조직 및 운영	87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88
4. 임무수행	88
4.1 재난대비 임무	88
4.2 재난신고의 접수	88
4.3 비상경고 발령	89
4.4 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원기관 관련공무원 비상통지	90
4.5 인접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 통지	90
4.6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통지	90
4.7 일반 도민에 대한 비상경고	91
4.8 특별한 경우의 비상경고	92
제3절 대중정보계획(#3)	93
1. 목 적	93
2. 조직 및 운영	93
3. 대응단계별 대중정보기능의 가동범위	94

4. 임무수행	94
4.1 언론대응반	94
4.2 대중정보센터	98
4.3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	100
 제4절 피해상황분석계획(#4)	101
1. 목 적	101
2. 조직 및 운영	101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02
4. 임무수행	102
4.1 재난발생 우려시 조사	102
4.2 초기 조사	103
4.3 재난피해 상황정보 수집	103
4.4 최초보고	104
4.5 재난사태 선포	104
4.6 지원요청	104
4.7 정보의 표시	104
4.8 대중정보 제공	105
4.9 기록유지 및 최종보고서 준비	105
4.10 재난자료의 제출 및 확인 준비	105
 제5절 구조·진압계획(#5)	106
1. 목 적	106
2. 조직 및 운영	106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08
4. 임무수행	108
4.1 수색 및 구조	108
4.2 안전점검	108
4.3 비상발전 및 조명	109
4.4 가스 차단	109
4.5 오염제독	109
4.6 방사능 탐지	109
4.7 고립주민 원조	110
4.8 자원집결지 운영	110

4.9 응급의료	110
제6절 응급의료계획(#6)	
1. 목 적	111
2. 조직 및 운영	111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13
4. 임무수행	114
4.1 현장응급의료소장	114
4.2 중증도분류반	114
4.3 응급처치반	115
4.4 이송반	116
4.5 운영지원반	117
4.6 임시영안소	118
4.7 대응단계별 매뉴얼	119
4.8 응급의료 통신	120
4.9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	120
제7절 긴급오염통제계획(#7)	
1. 목 적	122
2. 운영조직	122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24
4. 임무수행	124
4.1 긴급 오염통제반장	124
4.2 식품오염통제팀	125
4.3 감염병 통제팀	126
4.4 환경오염통제팀	127
4.5 대응단계별 매뉴얼	128
제8절 현장통제계획(#8)	
1. 목 적	129
2. 조직 및 운영	129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31
4. 임무수행	131

4.1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	131
4.2 교통지원팀	135
 제9절 긴급복구계획(#9)	 137
1. 목 적	137
2. 조직 및 운영	137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38
4. 임무수행	138
4.1 재난현장 긴급복구 - 재난안전실	138
4.2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설치 - 충청남도소방본부(소방서)	139
4.3 접근통제 및 수송로 확보 - 충남지방경찰청(경찰서)	139
4.4 비상전력 공급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사업소)	140
4.5 가스차단 및 안전진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등	141
4.6 긴급재난구호봉사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142
4.8 통신 - KT(지역본부 또는 지사)	143
4.9 기타(필요에 따른 임무 목록)	143
 제10절 긴급구호계획(#10)	 144
1. 목 적	144
2. 조직 및 운영	144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45
4. 임무수행	146
4.1 재난심리상담팀	146
4.2 대피수용팀	147
4.3 구호자원지원팀	149
 제11절 재난통신 계획(#11)	 153
1. 목 적	153
2. 조직 및 운영	153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53
4. 임무수행	154
4.1 종합방재센터 통신시스템	154
4.2 재난통신 보조수단	154

4.3 대체 종합방재센터 통신	154
4.4 현장지휘소 통신	154
4.5 대중정보센터 통신	155
4.6 대피소와의 통신	155
4.7 통신 유지관리	156
4.8 종합방재센터 메시지 흐름	156
4.9 지원 및 후생업무	156

제3장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1. 자연재난 기본계획	159
1.1 홍수(집중호우)	159
1.2 태풍	165
1.3 폭설	171
1.4 지진	178
2. 사회재난 기본계획	184
2.1 불교사고	184
2.2 가스폭발	189
2.3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193
2.4 유해화학물질(방사능포함)	197

부 록

I. 현 황

1. 긴급구조통제단 현황	209
3.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관서별)	211
3. 시·군별 소방서 현황	212
4. 소방관서 통신망 현황	213
5. 소방차량 보유 현황	214
6.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총괄)	215
7.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관서별)	216
8. 응급의료기관 현황	233
9. 방사능 사고 유관기관 연락망	235
10. 중점관리대상 현황	236
11.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황	249
12. 대량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252
13.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현황	258
14. 응원협정 현황	264
15. 자원집결지 현황	269

II. 서 식

1. 지휘권이양합의서	275
2. 긴급구조대응지침서	276
3. 상황예측 매뉴얼	277
4. 상황 요약 절차	278
5. 상황 요약 양식	279
6.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기록양식)	280
7. 피해상황분석편람	281
8. 최초보고서	282
9. 대중정보보고서	283
10. 피해상황 최종보고서	284
11. 현장조사반 표준작전절차	285

12. 사상자 조치상황	286
13.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287
14. 자원동원 매뉴얼	288
15. 자원요청서	289
16. 자원집결지 설치절차	290
17. 자원대기소 설치절차	291

III. 참 고

1. 표준현장지휘체계	295
2. 풍수해 긴급구조대응매뉴얼	296
3.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절차(예시)	297
4. 비상경고메시지(예시)	298
5. 재난유형별 비상경고메시지 샘플	300
6. 현장브리핑 문안 예시(초기)	314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본 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충청남도의 공식적인 긴급구조대응계획이며,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 또는 재난대비훈련에 따른 긴급구조 대응활동 시 본 계획에서 부여된 임무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0. 2. .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심의위원회

충청남도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관·단체	심의위원	일 자	심의결과
위 원 장 (소방본부장)	손정호	2020.02.25.	원안의결
충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민윤기	2020.02.25.	원안의결
금강유역환경청 (청장)	박하준	2020.02.25.	원안의결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본부장)	김선관	2020.02.25.	원안의결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유호	2020.02.21.	원안의결
KT충남·충북고객본부 (본부장)	최찬기	2020.02.21.	원안의결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 (지사회장)	유창기	2020.02.24.	원안의결
권역응급의료센터 단국대학교병원 (병원장)	김재일	2020.02.24.	수정의결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 서명부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p>심의 안건 2020년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p> <p>심의 일시 2020. 2. 25.</p> <p>심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 제29조</p> <p>심의 내용 ○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p> <p>위와 같이 「2020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심의 합니다. 2020. 2. 25.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손정호</p>	<p>심의 안건 2020년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p> <p>심의 일시 2020. 2. 25.</p> <p>심의 내용 ○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 다음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 페이지 수정 전(~용) 수정 후(~으로)</p> <p>위와 같이 「2020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심의 합니다. 2020. 2. 25. 소속 충남지방경찰청 직위 112종합상황실장 성명 민운기</p>	<p>심의 안건 2020년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p> <p>심의 일시 2020. 2. 25.</p> <p>심의 내용 ○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 다음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 페이지 수정 전(~용) 수정 후(~으로)</p> <p>위와 같이 「2020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심의 합니다. 2020. 2. 25. 소속 금강유역환경청 직위 청장 성명 박하준</p>
충청남도(소방본부장)	충남지방경찰청	금강유역환경청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p>심의 안건 2020년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p> <p>심의 일시 2020. 2. 25.</p> <p>심의 내용 ○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 다음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 페이지 수정 전(~용) 수정 후(~으로)</p> <p>위와 같이 「2020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심의 합니다. 2020. 2. 25. 소속 한국전력공사 대전제증충남본부 직위 본부장 성명 김선관</p>	<p>심의 안건 2020년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p> <p>심의 일시 2020. 2. 21.</p> <p>심의 내용 ○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 다음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 페이지 수정 전(~용) 수정 후(~으로)</p> <p>위와 같이 「2020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심의 합니다. 2020. 2. 21. 소속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직위 : 본부장 성명 김수현</p>	<p>심의 안건 2020년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p> <p>심의 일시 2020. 2. 21.</p> <p>심의 내용 ○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 다음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 페이지 수정 전(~용) 수정 후(~으로)</p> <p>위와 같이 「2020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심의 합니다. 2020. 2. 21. 소속 KT 충남/충북고객본부 직위 본부장 성명 최창기</p>
한국전력공사	한구가스안전공사	KT충남충북고객본부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p>심의 안건 2020년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p> <p>심의 일시 2020. 2. 24.</p> <p>심의 내용 ○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 다음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 페이지 수정 전(~용) 수정 후(~으로)</p> <p>위와 같이 「2020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심의 합니다. 2020. 2. 24. 소속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 직위 자사회장 성명 유흥기</p>	<p>심의 안건 2020년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p> <p>심의 일시 2020. 2. 24.</p> <p>심의 내용 ○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 다음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 페이지 수정 전(~용) 수정 후(~으로)</p> <p>위와 같이 「2020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심의 합니다. 2020. 2. 24. 소속 단국대학교병원 직위 병원장 성명 김재</p>	
대한적십자사	권역응급의료센터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용어정의

- 구급차대기소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도착순서 및 기능에 따라 임시 대기하는 장소
- 기관별지휘소(기관별 비상대책상황실) :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당해기관 소속직원을 지휘·조정·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
- 긴급구조(긴급구조 대응활동, 긴급구조활동)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 긴급구조관련기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
- 긴급구조대응계획(긴급대응계획) :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및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계획서
- 긴급구조요원 : 긴급구조에 참가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소속직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지원기관, 유관기관단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긴급구조지휘대(긴급구조현장지휘대, 현장지휘대) :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원, 경찰관서의 연락관, 응급의료기관의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어 일상적인 사고와 재난발생 초기(통제단 운영 전) 상황에서 현장지휘를 담당

-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기관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 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
-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 **긴급방송체계(긴급방송체계, 비상방송체계, 비상방송시스템)** : 라디오, TV 등 방송을 통하여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시설 및 절차
-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연습과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하는 단계
- **대응1단계** :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하고 시 · 군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 **대응2단계** : 2개 이상의 시 · 군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1개의 시 · 군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 · 군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 · 군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 · 도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 **대응3단계** :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1개의 시 · 군 또는 시 · 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 · 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 · 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 **비상경고**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긴급히 전파하는 대피명령 등 주민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

- **비상경고체계**(비상경고시스템, 비상경고체계) :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시설 및 절차. 사이렌, 유인물 배포, 비상방송시스템, 전화 및 팩스 등
- **비상연락통신체계**(비상 지휘소 Hot-Line) :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 주요 지휘관간의 유무선전화망으로 구성된 Hot-Line
- **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
- **수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서 자원수송을 위하여 구급차외의 교통수단이 대기하는 장소
- **시·군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 통제단)** : 소방서에 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소방본부 통제단)** : 시·도의 소방본부에 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됨
- **자원대기소** :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및 시설
- **자원집결지** :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특정장소에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배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원의 임시집결지
- **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

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대응구역**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군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소방지휘작전실 3C 센터, 유관기관협조체제) : 긴급구조관련 기관 소속 자원의 출동지시, 긴급구조관련기관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지휘본부 상호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의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간 통신조정시스템
☞ 3C : 지휘(Command), 조정(Coordination), 통제(control)
- **표준현장지휘체계**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구조, 표준용어 및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 **현장지휘관** :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장,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사전명령이나 위임에 의하여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의 지휘대장 또는 선착대의 장
- **현장지휘대** : 상황관리부의 현장활동계획의 이행 및 자원대기소 운영 및 교대조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제단의 현장지휘부서이며, 구조진압반·응급의료소·현장통제반 및 항공통제반으로 구성
- **현장지휘소**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에서 기관별지휘소를 총괄하여 지휘·조정·통제하는 등의 재난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

제1장 기본계획

1절 계획 개요

2절 긴급구조체제

제1장 기본계획

제1절 계획 개요

1. 목적

이 계획은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 차원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재난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 그리고 국가차원의 긴급구조 대응활동과의 연계방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적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대응계획서이다.

2. 재난위험성 분석 및 계획적용 범위

2.1 재난위험성 분석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유형과 위험도 순위는 아래와 같다.

< 재난유형별 위험도 >

재난유형	평가항목					평가결과	
	재난발생 확률 (A)	피해지역 규모 (B)	대피가능 시간 (C)	비상경고 체계 (D)	재난지속 시간 (E)	재 난 위 험 성 (R)	위험성 순 위
	$W_A=1.5$	$W_B=1.0$	$W_C=1.3$	$W_D=1.5$	$W_E=1.0$		
화재사고	4.2	2.4	3.6	1.6	1.6	27.7	1
교통사고	4.1	2.2	3.5	1.4	1.3	24.2	2
태풍	3.4	2.5	2.7	1.5	1.8	21.6	3
산불	3.8	1.9	2.7	1.6	1.8	19.3	4
호우	3.1	2.1	2.6	1.6	1.9	18.9	5
폭설	2.9	2.2	2.7	1.5	1.8	18.0	6
수난사고	3.1	1.5	2.8	1.6	1.4	15.8	7
기계사고	3.3	1.3	3.0	1.5	1.1	15.5	8
승강기사고	3.4	1.2	2.7	1.6	1.1	14.8	9
붕괴사고	2.4	1.5	2.7	1.7	1.7	14.0	10
지진	1.7	2.1	2.7	1.7	2.0	14.0	11
철도사고	2.0	1.2	2.8	1.4	1.4	11.9	12

$$* R = (A \cdot W_A) \times [(B \cdot W_B) + (C \cdot W_C) + (D \cdot W_D) + (E \cdot W_E)]$$

2.2 계획적용 범위

- 기본계획과 기능별대응계획은 재난위험 분석결과에 나타난 재난유형과 기타 모든 형태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각 기능별 계획에 포함된 재난유형별 계획(유형별 대응상의 방법과 절차)은 각각의 재난 유형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2.2.1 자연재난 대응계획

- 이 계획은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 홍수, 가뭄,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2.2.2 사회재난 대응계획

- 이 계획은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화재(산불 포함), 유해화학물질 누출, 건축물 붕괴, 대형교통사고 등 인적재난에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3. 재난대비 · 대응절차 개요

재난발생에 대비 또는 재난발생이 임박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인 대응방침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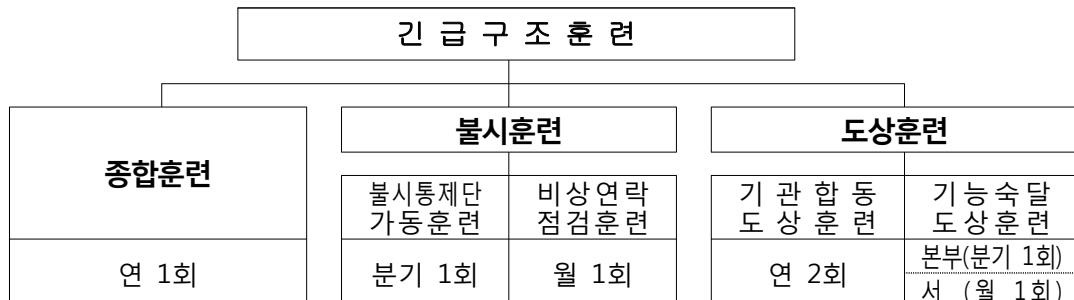
3.1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

○ 훈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 훈련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14(재난대비훈련 등) 및 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훈련 필요성

-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능력 배양
- 신속·정확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한 상시 훈련체제 구축



- (긴급구조종합훈련)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유관기관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통제단 부·반원 및 각 기관 임무·역할을 수행
 - 대상횟수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 년 1회 실시
 - 참여범위 : 긴급구조기관(소방본부, 소방서), 긴급구조지원기관(경찰, 군, 지자체, 공사 등)
 - 훈련내용 : 유관기관 인력·장비 동원 및 통제단 가동능력 점검, 통합지원본부 가동 점검

○ (불시훈련)

- ① 비상연락망 불시점검훈련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점검을 위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상황실에서 일제동보장치를 가동, 긴급구조지원기관 응답률 평가
 - 실시횟수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 월 1회
 - 실시방법 : 동보장치 활용 응소율, 비상연락망 정비상태 점검
- ②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 재난발생 장소·상황을 설정 불특정 시간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실제 가동(분기 1회)

○ (도상훈련)

- ① 기관합동 도상훈련(연2회) : 유관기관이 참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 통제단 각 부·반 및 지원기관간 임무 등을 발표·토론
- ② 기능숙달 도상훈련(본부 분기1회, 소방서 월1회)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자체적으로 통제단 요원의 임무와 운영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하는 발표·토론

3.2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가.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8호,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3항
- 동 시행령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별표1호(긴급구조지원기관)

나. 교육개요

- (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관리자, 담당자
- (교육기간) 신규자 1년 이내, 정기교육 매2년마다 / 관리자(1일, 7h), 실무자(2일, 14h)

- (운영체계) 소방본부, 소방서, 학교 역할분담 및 협업
 - 소방본부 :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연간 교육계획 수립·운영
 - 중앙·지방학교 : 교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관파견 및 교육운영
 - ※ 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소방서 주관으로 탄력적으로 교육실시 가능
 - 예시) 장소 : 소방서 회의실에서 소집교육
- (강사) 학교 재난교수, 교관요원, 소방서장 등 간부
- (교재) 8과목*, 2권
 - └ 1권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평가실무, 자원관리, 긴급구조실무)
 - └ 2권 재난관리(국가재난관리, 재난법, 재난관리 실무, 매뉴얼체계)
- (교육유도)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기관통보, 교육수료시 학교장 명의 수료증 발급

다 지원기관 협조사항

- 관할소방서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수요 제출
-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참석 독려
(신규자 해당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 정기교육 매2년마다)

3.3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내지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 추진목적 : 지원기관의 전문인력·보유자원 파악으로 신속한 자원동원·분배와 현장 통제로 혼란방지 및 효율적 재난대응
 - 실시개요
 - 평가주기 : 년 1회, 시행령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제1항
 - 평가기관 및 대상기관
 - 소방본부 : 시·도 소재 지방청, 공공기관 지역본부 등
 - 소방서 : 시·군 소재 공공기관·단체 및 지사 등
- ※ 2 이상 긴급구조기관과 관련된 지원기관 평가 → 주된 소재지 관할 긴급구조기관이 평가

- 평가절차 : 2019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지침(2019. 12. 09.시행)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행정안전부 안전정보 공개, 재난안전법 제66조의 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 * 시행일 : 2020. 6. 4.
 -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재난현장 대응활동 시 신속한 자원동원 등 지원협업체계 강화

3.4 초기대응

- 일반적으로 재난(테러, 자연적 재난 등 제외)이 발생한 경우 소방관서는 최초의 대응 기관이다. 소방관서는 초기의 재난상황을 분석하고 재난의 규모와 대응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시작한다.

3.4.1 일상적 소규모 사고

- 만약 일상적 대응절차가 필요한 단순한 사고인 경우 소방과 현장대응에 필요한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응하며, 긴급구조지원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3.4.2 재 난

- 재난현장 근거리 기준으로 소방출동대를 편성하며, 초기부처 출동대를 확대 편성 운영한다.
 - * (초기) 대응23단계 출동 → (사태 완화 시) 대응1단계로 하향
- 만약 비일상적 대응절차가 필요한 중규모 이상의 재난이거나 다수의 긴급구조지원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여 다수 유관기관의 지휘통제가 필요한 경우 각 대응구역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의 전반적 지휘통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때, 통제단장은 개략적인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재난대책본부장)에 보고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사항을 요청한다.
- 만약, 재난의 규모가 시·군통제단 차원의 동원자원으로는 대응하기 곤란하고 시·도 통제단이 운영될 경우, 통제단장은 지역재난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건의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통제단장은 법령에 승인된 권한에 따라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제10항
- 통제단장은 지역재난 선포가 있은 후 긴급한 대응활동이 종료되고, 재난현장의 위험상황이 진압된 경우에는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 선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통제단장은 국가차원의 자원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 지원을 요청하고,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5 지원기관 초기대응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 긴급대응협력관 주요임무
 - (평시 임무)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소속기관 보유자원 관리
 - (재난시 임무)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소속 재난관련업무 부서의 실무책임자 중 지정
- 긴급구조대응협력관 수행업무
 -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소속기관 긴급구조 관련 보유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발생시 현장지휘소 파견 연락관 등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활동 지원 등 해당기관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및 긴급구조활동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변경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문서로 그 사실을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초기대응

- 이 계획에 포함된 모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들은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동원해야 한다.

- 재난시 동원된 각 요원의 일상 업무는 이 계획상의 임무로 대체된다.
-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된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포함)의 각 요원(대응계획상의 필수요원)은 종합방재센터에 의해 비상통지 및 소집되고, 이 계획상의 임무와 현장에서 분담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각 지원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해당기관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해 비상통지 및 소집에 임함

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다만, 1개 시·도 및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회의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 >

구 분	내 용
명 칭	○○시·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시·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 성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 * 위원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간 사 : 긴급구조기관의 장
운영횟수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소집 요구)
회의내용	제3조의 긴급대응협력관 업무 및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등

4. 긴급구조활동 평가·환류

가.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나.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대상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재난사태 선포)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재난에 대한 대응활동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규정에 의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동법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규정에 의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실시한 대응활동
 3. 기타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은 가동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고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 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활동을 실시한 사고에 대하여 대응활동에 참여한 3개 이상의 지원기관이 평가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나.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상급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평가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평가단 구성 : 평가단장(통제단장) 및 단원 5 ~ 7인
 - ※ 구성 : 통제단장, 통제단 부·반장,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요원 등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표를 활용 평가(본부, 서별 연1회 이상 원칙)
 - ※ 세부평가표는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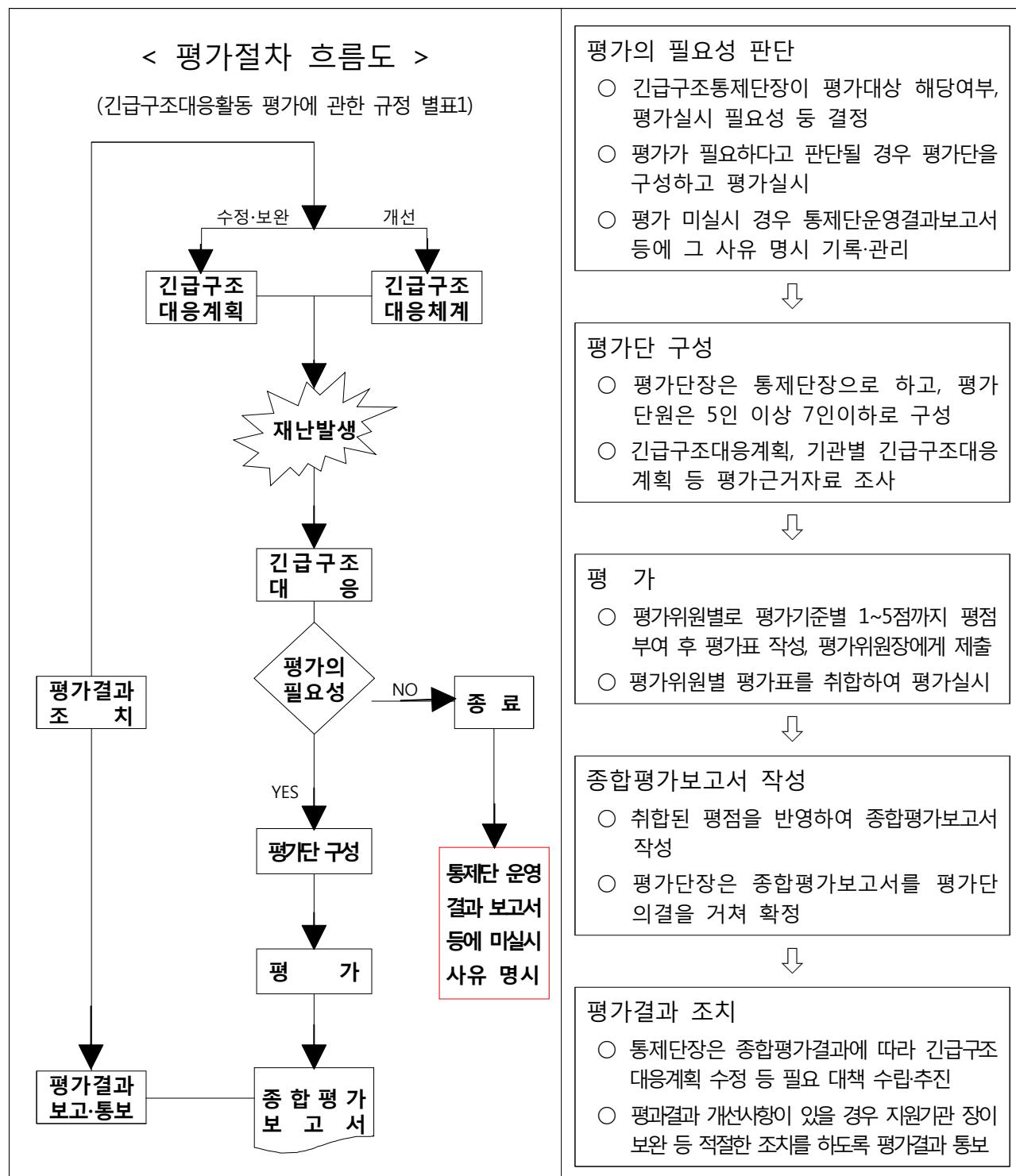
다. 평가내용

-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 긴급구조대응계획 이행 실태
-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 통합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라. 평가 미실시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과의 활동평가를 미실시 할 경우 통제단운영결과보고서 등에 그 사유를 명시 기록 관리

< 긴급구조활동 평가절차 >



5. 계획서의 운용책임

5.1 일반 책임

이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은 다음의 일반책임이 있다.

-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30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 필요에 따라 이 계획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대응능력을 유지한다.
-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장비, 시설들을 현장에 배치한다.
- 임무수행 중 작성하는 각종 기록서식, 대원과 장비의 재배치, 부여된 임무의 수행, 현장 안전관리, 자원배치현황을 작성·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들을 확인·감독 한다.
- 통제단장에 의해 지시된 사항이 재난대책본부 및 기타 지원기관의 지휘소에 시기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이 계획과 지원계획에서 정한 재난시 행동절차들을 훈련(연습) 및 평가하는 계획에 적극 참여한다.
- 각 요원이 이 계획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지원기관 지휘관(연락관) 및 자원봉사자는 통제단의 전반적 피해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필요시 현장의 대응요원에게 인력, 장비, 시설 등 즉각적 지원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자원대기소를 설치 운영한다.
- 현장 자원대기소는 각 통제단(현장지휘소)이 운영하는 통합적 현장 자원대기소와 각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현장 자원대기소가 각각 운영될 수 있다.

5.2 기능별 계획의 운영책임

5.2.1 지휘통제 계획 (기능별 계획 #1)

- 이 기능별 계획 #1은 재난대응의 전반적 지휘통제절차를 규정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장과 각 지원기관의 장은 이 계획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필요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지원 동원
 - b.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가동
 - c. 대응작전 계획(대응방침) 승인 및 재검토
 - d.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자원을 배치하고, 재정지출을 포함한 재난현장대응 및 긴급복구 활동 관리 · 통제
 - e. 재난희생자들에게 긴급구호를 포함한 생명과 재산상 보호조치
 - f. 현장대응요원과 지원기관의 현장대응정보, 상황관리부의 상황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신속한 주민보호조치(긴급대피,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 g. 필요하다면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책본부, 상급 통제단 등에 추가적인 지원요청
 - h. 필요하다면, 일상적 행정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 및 자원 재배치
 - i. 주요 상황기록 자료를 관리
 - j. 이 계획에 포함된 각 지원기관과의 임무를 조정하고, 긴밀한 연락관계 유지

5.2.2 비상경고 계획 (기능별 계획 #2)

- 이 기능별 계획 #2는 각 유관기관에 대한 비상연락과 도민에 대한 비상경고시스템의 전반적 운영절차를 규정한다.
-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충청남도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의 통합지휘조정 통제센터가 이 계획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권자(시장, 통제단장)에게 보고함으로서 이 대응계획의 가동(비상체제 가동) 시점으로서의 기능수행
 - b.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필요시 즉각 긴급대피시스템 가동
 - c.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 d. 이 계획서 상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기타 주요 인사에 대한 비상경고 및 비상 연락 실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7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에서 말하는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거나 없는 곳은 상황실이 이 기능을 하도록 작성할 것

5.2.3 대중정보 계획 (기능별 계획#3)

- 이 기능별 계획 #3은 재난지역주민, 언론매체, 시장, 의회의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계획은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충청남도지사 및 통제단장을 대변 할 수 있는 언론대응반(화재대책과 예방교육팀장 및 종합방재센터)이 이 계획서에 대한 가동과 대비의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신속한 주민보호정보(뉴스) 제공을 위한 지역언론매체와 종합방재센터간에 설치된 주민보호 긴급방송체계(비상방송시스템) 가동
 - b.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별 비상방송매뉴얼(메시지)을 개발 및 유지 · 관리
 - c. 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 VIP에게 주요상황에 대한 브리핑
 - d.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중정보의 요청(질문)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5.2.4 피해상황분석 계획 (기능별 계획 #4)

- 이 기능별 계획 #4는 피해상황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능에 대한 계획이다.
- 이 계획은 재난발생 장소와 관련자료 수집, 현장지도 작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화재관리반(화재대책과 현장조사팀장)이 이 계획의 가동과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 시 피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
 - b. 통제단의 재난대응 및 긴급복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현장지휘대장, 기타 주요 참모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
 - c. 자원의 배치 및 활용상황을 감독하고 필요시 추가자원을 조달
 - d. 인근 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상급 통제단장에 지원요청
 - e. 보고서 준비

5.2.5 구조진압 계획 (기능별 계획#5)

- 이 기능별 계획 #5는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일반적인 소방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계획으로, 충청남도소방본부 현장지휘부장(화재대책과장)이 이 계획서의 가동과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이 임박한 경우 대중에게 비상경고체제(기능별 계획 #2) 가동
 - b. 적절한 재난통신체계(기능별 계획 #11) 확립
 - c. 인명구조를 실시
 - d. 필요시 오염제거 및 확산방지 임무를 수행
 - e. 필요시 긴급대피 결정을 내리고, 자원관리부 현장통제반(경찰 연락관)과 협조
 - f. 주민보호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언론대응반과 상황관리부에 제공
 - g. 화재예방과 기타 안전수단들을 발표 실행
 - h. 구조 진압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시 특정지역의 교통통제 및 일반인 출입통제 조치에 대해 자원관리부 현장통제반(경찰 연락관)에게 협조 요청

5.2.6 응급의료계획 (기능별 계획 #6)

- 이 기능별 계획 #6은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의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통제능력을 갖춘 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이 및 현장지휘부 구급 관리반(구급팀장)이 이 계획의 가동 및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인력, 구급차, 응급의료시설, 그리고 응급의료장비의 사용을 조정 · 통제
 - b. 임시영안소를 마련하고 유지 · 관리

5.2.7 긴급오염통제 계획 (기능별 계획#7)

- 이 기능별 계획 #7은 재난시 긴급오염통제 및 공중보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 이 계획에 대한 가동과 대비책임은 자원관리부(안전관리반 안전관리팀장)와 기후환경국,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긴급오염통제 및 공중보건에 대한 조치사항 발표 및 수행
 - b. 재난발생지역내 긴급오염통제 및 보건위생자원의 전반적 배치 및 관리 조정
 - c. 감염성 질병의 역학조사 및 억제활동을 지시 통제
 - d. 주민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감시하고 적절한 예방책 강구
 - e. 식수를 보급하고 식수로 사용가능한 물의 조건에 대해 규정 발표

5.2.8 현장통제계획 (기능별 계획 #8)

- 이 기능별 계획 #8은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 현장통제 및 치안유지에 책임이 있고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을 조정·통제 할 수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장(시·군 대응계획의 경우 관할 내 경찰서장 등)이 이 계획서의 가동과 대비의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발생이 임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역주민 및 주요 재난관련 직원에게 전파 지원
 - b. 비상경고(기능별 #2) 계획을 지원
 - c. 대책본부, 통제단, 재난발생지역, 종합방재센터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보장 활동 수행
 - d. 긴급대피(소개) 절차 수행
 - e.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
 - f. 재난발생지역 및 위험지역에의 일반인 출입 통제
 - g. 필요시 통행금지 실시
 - h. 탐색구조 및 경상자 이송업무 지원

5.2.9 긴급복구계획 (기능별 계획 #9)

- 이 기능별 계획 #9는 긴급구조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2차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긴급(임시) 복구활동에 책임이 있는 재난유형별 해당실국(과장)이 이 계획서의 가동과 대비의 책임이 있다.
-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되고 자치단체 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이 기능별계획 #9의 지휘권은 대책본부장의 승인 하에 긴급구조통제단에서 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로 이양 된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긴급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기업을 포함)자원의 사용을 전반적으로 조정 · 통제
 - b. 붕괴사고 등 중장비를 사용한 구조작업 지원
 - c. 통제단장(통합지휘팀)의 승인을 받아 재난으로 인한 잔해물을 긴급 제거, 처리
※ 재난현장보존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한다.
 - d. 구급차 통행로, 긴급구조 비상출동자원 수송로를 확보 유지
 - e.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보급품의 수송, 분배, 저장(보관)임무를 지원
 - f. 교통로 확보에 필요한 자원(자재, 인력, 장비 등) 제공
 - g. 비상전력을 공급
 - h. 전기, 가스 등 공공사업 협력업체의 동원 및 배치임무 조정
 - i. 2차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기술적 · 공학적 정밀검사 실시

5.2.10 긴급구호계획 (기능별 계획 #10)

- 이 기능별 계획 #10은 재난희생자 및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재난심리 상담, 의식주, 수송을 포함한 긴급구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 이 긴급구호기능은 다수의 공 · 사적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다.
- 이 계획의 가동 및 대비에 대한 책임은 긴급구호반장(소속기관 및 직책명)에 있다.

- 자치단체 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이 기능별계획 #10의 지휘권은 대책본부장의 승인 하에 긴급구조통제단에서 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로 이양된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긴급구호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조정 통제
 - b. 긴급대피한 이재민 및 긴급구조 활동에 참가하는 인력에게 식사와 의류보급 등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 c. 재난심리상담프로그램(외상 후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과 기타 정신건강을 위한 활동 조정 통제
 - d.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임시숙소 및 긴급대피소 임시 운영
 - e. 주민과 긴급구조 활동에 참가한 인력에게 비상수송서비스 제공
 - f. 실종자 수색, 노약자 도우미 등 재난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조정 통제

5.2.11 재난통신계획 (기능별 계획 #11)

- 이 기능별 계획 #11은 재난통신체계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운영요원, 통신장비, 긴급 통신메시지 흐름에 대한 감독능력을 갖춘 충청남도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장이 본 계획 가동 및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통제단과 대책본부, 통제단과 지원기관, 주요 지휘관간의 통신체계 및 통신절차 확립 조정
 - b. 상급 통제단, 인근 지방자치단체 통제단, 자원동원 매뉴얼상의 주요 공·사기업체, 자원봉사단체, 기타 대응활동에 참가하는 단체간의 통신체계 확립·유지
 - c. 현장대응활동에 참가한 주요 지원기관의 현장지휘소가 설치된 경우 이들 현장 지휘소와 통제단간의 통신체계 확립
 - d. 비상방송메시지 등 메시지관리 책임자의 종합방재센터 배치 및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메시지 수정보완 및 전달절차 조정통제
 - e. 종합방재센터의 근무인원을 보강하고 지원기관단체의 추가 통신 연락관의 파견 근무 요청

제2절 긴급구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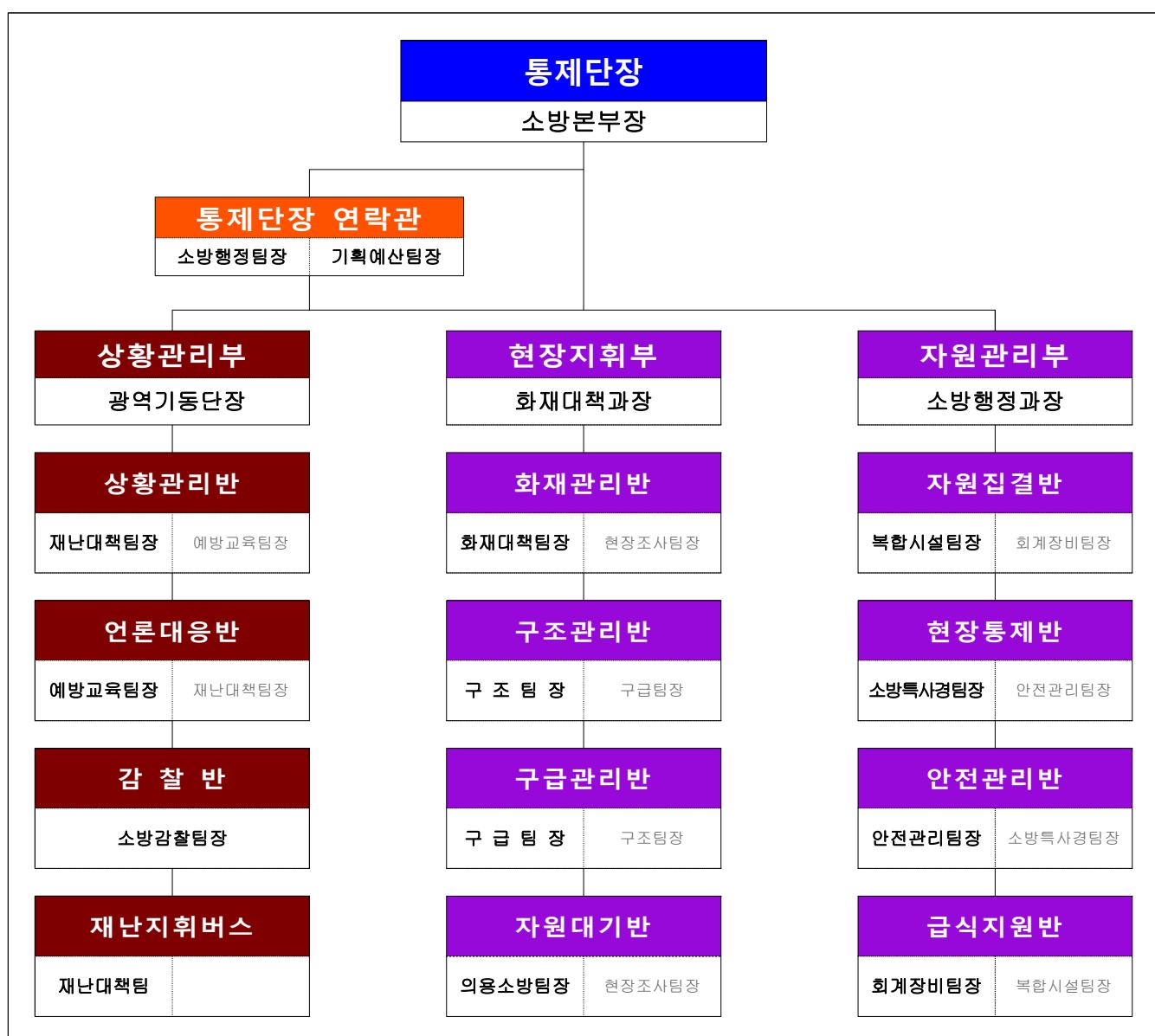
1. 긴급구조통제단

1.1 운영책임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의 통합조정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진다.

1.2 통제단 운영조직

<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



1.3 현장지휘

-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 내용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통제단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내용에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1.4 설치장소

- 긴급구조통제단은 사회재난(국소지역 재난)시에는 현장에 설치하고, 자연재해(광범위한 지역재난) 시에는 지휘작전실 또는 종합방재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단장이 규모, 각종 여건 등을 고려, 적의 판단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 다만,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대는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은 주요 지원기관 및 충청남도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시 통제단장의 판단에 따라 통제단 운영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1.5 기 능

- 긴급구조통제단은 각 대응구역별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하여 충청남도 차원의 긴급 구조활동을 통합 조정한다.
- 각 지원기관의 현장지휘소는 긴급구조통제단에 해당 지휘소의 가동여부와 운영위치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지원기관의 장은 시 전역에 걸친 대응활동의 통합조정을 위한 지원책임을 진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초기 재난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기능과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활동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가동되는 중앙현장지휘소의 역할을 한다.

1.6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시기

-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은 대응2단계나 대응3단계에서 가동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통제단의 운영규칙)
- 재난시 충청남도소방본부 및 통제단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요 지원기관(부서)의 일상적인 운영체제는 일시 중지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제로 전환된다.

1.7 상황판단회의

- 개최시기 :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
- 회의주재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 회의참석 :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장(필요시 반장), 재난주관 부서의 과장, 긴급구조지원 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등
- 주요결정 사항
 -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시간, 확대 가능성, 피해현황 등의 재난상황에 대한 종합분석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여부와 운영단계 및 운영시기
 - 진행되고 있는 재난상황의 단계별 대응방안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8 운영규모 및 기간

-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규모는 재난상황 및 규모에 의해 통제단장이 각 부장의 상황 판단 자료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 이 경우, 통제단장은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 및 규모에 따라 통제단 운영규모 및 구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1.8.1 대응단계별 통제단 운영개념

대응 단계	활동 개요
대비 단계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차원의 긴급구조대응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한다.
대응 1 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발생 상황. ◦ 긴급구조지휘대(소방·경찰·응급의료)의 일상적 현장지휘체계가 운용되고 소방서 현장지휘 대장이 상황실에 보고한다. ◦ 상황실에서 사고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 소방서 통제단 부분적 운영
대응 2 단계 (중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된다. ◦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가동된다. ◦ 부분 가동되는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한다. ◦ 각 대응구역별 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현장지휘소)의 상황 관리반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의 현황에 대해 소방서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한다.
대응 3 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의 일상적 업무수행이 곤란, 충청남도 차원의 전면적 지원 필요, 중앙통제단의 지원 활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이 완전 가동되며, 중앙통제단이 부분 또는 전면 운영된다. ◦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한다. ◦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기관(부서)은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충청남도 긴급구조 통제단의 상황관리반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의 현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한다. ◦ 지역통제단장(소방서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이 된다. ◦ 긴급대응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지원기관은 통제단 운영요원을 배치시킨다.

1.9 각 반별 조직 및 임무

- 긴급구조통제단은 다음의 하위단위조직(부)을 가지고 있다.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상황관리부 : 재난상황분석, 대응정책 개발, 우선순위 결정, 전반적인 대응활동의 조정 등 통제단 대응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통제, 통합지휘회의를 통한 주요지침과 정책 결정,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체계 구축
 - 현장지휘부 :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별 대응계획에서 정한 바라 따라 현장대응활동을 총괄 조정 · 통제
 - 자원관리부 : 통제단 각 부의 업무지원 및 현장대응자원을 제공
- 통제단 부서별 책임자 지정 : 기능별 계획 #1(지휘통제계획) 참조

<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부서별 임무 >

부 서 별	주 요 임 무	대 응 계 획
충청남도 긴급구조 통제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 지휘부 상황보고, 상황판단회의 주재 - VIP 현장방문 시 현장안내, 긴급대응 사항 보고 	- 지휘통제계획
통제단장 연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장 현장지휘 임무수행 보좌 - 통제단장 및 VIP 개인장구 준비 제공 - 통제단장 현장지휘에 필요한 통계, 현황, 주요일정 파악 - 장관, 도지사 등 연락망 확보 및 현장 보고 준비 	
상황관리부	상황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피해상황, 사상자현황 등 정보 수집 - 건물시설 현황, 위험물 현황, 소방시설 등 정보수집 - 각종 현황 · 통계관리, 수집정보 보고 및 제공(전파) - 진행사항 파악 및 상황보고서 작성 - 전반적 대응목표 및 전략 결정,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 재난상황예측 및 대응활동계획 수립 - 각종 회의, 유관기관 통합지휘 운영 - 기타 통제단장 지원활동
	언론대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취재단 구성, 취재국역 설정, 언론대기소 운영 - 언론보도 자료 작성 및 주기적인 브리핑 실시 - 대중정보제공(홍보)에 관한 사항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 - 오보예방, 정정보도 등 언론대응 및 자료관리
	감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안전점검, 소방자원 이탈 및 위반행위 지도 - 민원발생 요인 씬 점검, 예방 등 적극 대응

부 서 별		주 요 임 무	대 응 계 획
재난지휘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L 시스템 가동 및 상황보고서 모니터 송출 - 언론브리핑자료 외부모니터 송출 - VIP 피복 상시 준비 및 방문대비 상황보고 준비 	
현장지휘부	화재 진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화재진압 위험진단, 방면별 조편성, 대원배치 현황 관리 - 화재진압 위험진단, 연소지지 등 작전·전략 제공 및 진압관리 - 소방용수 확보, 급수지원, 장비 충전·교체 등 현장대원 지원 	
	화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의 피해액 산정, 원인규명 현장조사 - 피해정보수집, 인명구조 사항, 재산피해 등 현황조사 및 전파 	
	구조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인명구조 위험요인 진단, 대원배치 등 인명구조상황관리 - 특수 인명구조장비 투입 등 전략제공 및 인명구조 지원 - 현장활동 대원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방지 점검 	
	구급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차원의 응급의료 및 의료 물품 등 의료자원 지원활동 - 사상자 현황 이송병원 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 보건소장과 협의 응급의료소 운영 - 구급차 배치, 병원현황 파악, 임시영안소 설치 -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및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자원대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투입 자원 등록, 배분 및 필요물품 등 제공 - 인적·물적 자원의 배치, 대기, 교대조 관리 - 자원대기소 설치, 운영 -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 의용소방대 자원 등록·배치 및 임무지정 	
	자원집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집결지 운영, 응소자원 점검 - 응소자원 현황, 자원등록 - 동원 소방력 및 의용소방대원 자원대기반으로 인계 	
자원관리부	현장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통제선 설치 및 통제선 출입자 관리 - 경찰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동원 통제선 운영 - 현장차량 및 외부차량 출입통제 	
	안전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위험요인 정보수집 및 전파 등 현장 안전관리 - 대원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활동 - 현장 진입 대원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조치 - PTSD 예방, 공사상자 예방 및 대응 	
	급식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활동 대원 등에 대한 급식·휴식 제공 - 현장 장비응급수리 및 대체장비 투입 	

2. 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2.1 운영체제

- 상황실의 운영체제는 재난의 유형 및 크기에 따라 다르다.
- 재난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심각한 경우(대응3단계)에 종합방재센터가 완전 가동되고, 현장대응활동의 통합지휘를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 운영된다.
- 종합방재센터의 비번조(교대조) 및 통제단 운영요원은 비상경보시스템에 의해 비상 동원 된다.
- 각 지원기관은 비상출동요청을 받은 즉시 긴급구조통제단 상황관리부(상황보고반)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 상시 파견대상 기관은 필요에 따라 보강근무 요청

2.2 위치

- 충청남도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는 충남도청 본관동 6층에 위치하고 있다.

2.3 대체 종합방재센터

- 종합방재센터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정상적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종합 방재센터가 가동된다.
- 대체 종합방재센터는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 사무실을 활용하고, 119 신고접수 및 출동관제는 16개 소방서 현장대응단 사무실에서 수행한다.
- 유사 시 상황수보요원은 분산되어 대체 종합방재센터에 투입되고, 지정된 위치에서 수보 업무를 지속한다.
- 대체 종합방재센터로 지정된 곳에는 기본적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2.4 정보통신체계

다음은 종합방재센터 정보통신체계의 구성요소를 기술한 것이다.

2.4.1 충청남도 비상연락통신체계 (비상지휘소 Hot-line)

- 이 체제는 충청남도의 주요 지휘관간 유무선전화망으로 구성된 Hot-line 이다.

- 재난 및 비상사태시 충청남도지사, 시장·군수, 경찰청장, 소방본부장, 각 소방서장, 각 경찰서장,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등 시 핵심 간부와 지휘소와의 재난발생 초기 비상통신 연계를 위해 설계된 것이다.

2.4.2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

-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는 충청남도 아마추어 무선(HAM), 응원협정을 체결한 각 택시 사업장(TRS), 기타 긴급구조 통신망훈련에 참가하는 통신자원봉사자간의 통신네트워크이다.
-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의 구성원은 긴급구조활동시 통신지원 임무를 맡는다.
- 이 임무에는 긴급구조통제단 통신지원팀 보조, 종합방재센터 운영지원 외 다음과 같은 주요임무를 수행한다.
 - a. 대규모의 자원봉사자 통합관리를 위한 각 대별 통신원 역할 수행, 정기적 통신훈련 실시
 - b. 시·군 재난대응구역과 도 긴급구조통제단간 통신 연계 제공
 - c. 통신자원봉사자 지원임무
 - d. 긴급대피정보 확산
 - e. 도 전역에 대응요원의 효율적 수송을 위한 “수송대기지역 통신망” 제공
 - f. 메시지 센터 운영지원
 - g. 도보, 자전거, 차량 메시지 전달
 - h. 재난발생시 통신 시스템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술상의 지원
 - i. 통신자원봉사자 근무기록
 - j. 기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긴급의사전달 임무 등

2.4.3 긴급구조보조통신체계 조직

-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는 종합방재센터 소방정보통신팀이 조직하고 운영한다.
- 긴급구조 보조통신 서비스는 통신지원팀장의 통제하에 운영된다.
- 긴급구조 보조통신 서비스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 및 요원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긴급구조 보조통신시스템 >

조 직 망	운 영
자 원 관 리 통 신 망	각 대응구역별 배치되는 재난대응지원을 시군구 및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과 연계
수 송 통 신 망 (수 송 대 기 지 역)	긴급구조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육해공 수송수단간 통신망 제공. 충청남도 전역에 위치한 무선중계국 교환원을 종합방재센터 보조통신 담당자에 연결
특 별 망	긴급구조통제단을 특정 재난지역과 연계
비 상 통 신 망	재난상황에 따른 임시통신망 구성

2.4.4 비상경고시스템

- 비상경고시스템은 각 방송사(신문매체 포함) 및 주요 민간 무선중계국에 경보 및 주민 보호정보를 제공하고 중대한 재난 공공정보를 배포한다.
- 비상경고시스템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다.
- 종합방재센터에는 비상경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일제동보장치를 활용하거나 각 방송사(신문매체 포함) 및 주요 민간 무선중계국에 경보 및 주민보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필요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경보시스템을 활용한다.

2.4.5 3C 센터 : Command Coordination Control center

- 종합방재센터 3C 센터는 재난발생시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관에 의해 통합운영되는 주요 지원기관 간 통신조정시스템이다.
- 이 통신시스템은 현장대응활동을 수행하면서 각 지원기관 간 통신 및 기타 긴급구조 관련 비상통신시스템을 중계 또는 연계하기 위한 중앙 통신시스템의 기능을 한다.
- 이 시스템은 대응2단계와 대응3단계에서 가동된다.

2.4.6 긴급방송체계 (비상방송시스템: 긴급구조 케이블 TV 방송국)

- 재난발생시 일반인에게 비상경고, 긴급대피, 기타 공공의 재난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방재센터에서 재난방송국과 방송이 가능한 지역 케이블 방송사 등에게 긴급 방송을 요청한다.

-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는 자치단체장, 통제단장이 직접 방송을 할 수도 있다.

2.4.7 이동 지휘통제시스템

- 이동 지휘통제시스템은 소방본부 통합지휘차에 탑재되어 있다.
- 소방본부는 현장지휘소에 재난지휘버스를 배치,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소(지휘소)는 재난지휘버스의 인근에 위치하여 유기적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한다.
- 재난지휘버스 차량은 지휘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회전경광등을 장착하고 현장대응기간(특히 야간) 동안 작동시킨다.

3. 통합지휘체계

3.1 통합지휘 운영개요

3.1.1 통합지휘 개념

-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각 지원기관의 자원을 하나의 지휘소, 하나의 대응활동 계획에 따라 조정·통제하는 전반적 대응체계를 말한다.
- 통합지휘는 현장지휘대, 표준현장지휘체계, 종합방재센터,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를 통해 확립된다.

3.1.2 통합지휘 적용기준

- 단일화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통합지휘체계를 가동한다.
 - 2개 이상의 관할구역(자치단체)에 걸친 재난
 - 하나의 관할구역 내 다수의 지원기관(국가기관을 포함)이 공동 대응하는 재난

3.1.3 통합지휘 책임

- 충청남도소방본부 및 각 재난대응 구역별 소방서는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 기능별계획 가동책임이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상황관리부에 연락관을 파견하고 통제단장의 통합지휘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3.1.4 단계별 통합지휘절차

대응 단계	통합지휘(팀) 운영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현장지휘대)는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확대 편성 운영 - 지원기관의 각 연락관은 통제단 상황관리부(상황관리반) 소속 통합지휘 임무를 수행한다. - 현장지휘소가 운영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현장지휘대는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확대 편성 운영되고, - 대응구역별 지원기관의 각 연락관은 각 대응구역 통제단 소속 통합지휘 임무를 수행한다. - 소방본부 현장지휘대가 가동된다.(통제단 부분 운영)
대응3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현장지휘대는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확대 운영된다. - 대응구역별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의 조정통제를 받는다. - 충청남도 지원기관의 각 연락관은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통합지휘 임무를 수행한다.

3.2 통합지휘팀

3.2.1 기능

- 각 유관기관의 자원을 통합시키고, 임무를 분담하며 전반적 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며, 통제단장의 지휘의사결정을 지원한다.

3.2.2 조직

-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 및 소방본부의 각 통합지휘팀은 경찰, 군부대, 응급의료소 등 주요 연락관으로 구성된다.

3.2.3 조직운영

- 통합지휘팀은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의 주요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사전 조직된 주요 유관기관의 연락관 지휘그룹이다.
- 통합지휘팀은 시 통제단이 활동을 개시하고 자원을 동원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주요 의사결정이 신속히 전달 가능하도록 즉시 협조해야 한다.
- 통합지휘팀은 즉각적으로 해야 할 활동(임무분담)을 결정하기 위해 1차적으로 통제 단장과 비상연락전화를 통해 협의하고, 즉시 상호 약속된 장소(종합방재센터 또는 재난 현장)에 합류하여야 한다.

3.3 유관기관 협조체제

3.3.1 근거

- 유관기관의 협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긴급구조)에 따른다. 단,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응원협정을 체결한다.
- 협정서는 각 대응구역별 대응자원의 상호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청남도외의 자치단체에 대한 협조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충청남도는 재난 시 각 대응구역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의무가 있다.

3.3.2 대응구역별 유관기관 협조체제

- 상호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충청남도소방본부는 16개 대응구역별 상호협조지역으로 나눈다.
- 16개 대응구역별 유관기관협조체제는 각 소방서 통제단에서 조정한다.
- 통제단장은 각 구역 내 주요 유관기관의 장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3.3.3 기능별 협조체제

- 유관기관 상호협조체제는 아래 기관(부서)에 의해 기능별로 책임 관리된다.

상 호 협 조 분 야	책 임 기 관(부서)
1. 지휘통제계획 상호협조	소방본부, 소방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2. 비상경고계획 상호협조	소방본부, 소방서
3. 대중정보계획 상호협조	소방본부, 소방서, 방송매체
4. 상황분석계획 상호협조	소방본부, 소방서
5. 구조진압계획 상호협조	소방본부, 소방서
6. 응급의료계획 상호협조	저출산보건복지실, 각 시·군 보건소, 소방본부, 소방서 권역응급의료센터(단국대학교병원)
7. 오염통제계획 상호협조	기후환경국, 저출산보건복지실, 재난관리책임기관, 군부대 금강유역환경청
8. 현장통제계획 상호협조	충남지방경찰청(경찰서)
9. 긴급복구계획 상호협조	재난유형별 해당 실국과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10. 긴급구호계획 상호협조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11. 재난통신계획 상호협조	소방본부, 소방서, KT충남·충북고객본부

3.3.4 기능별 협조체계의 운영책임

- 각 기능별 계획가동의 주요 책임 지원기관(부서)은 각 기능별 계획에 참여하는 지원 조직의 자원을 조정·통제할 책임이 있다.
- 각 기능별 계획가동 주요 책임 지원기관(부서)은 각 임무별 대체 책임자 및 운영요원을 지명하고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춘다. 이들은 각 임무별 책임자 부재시 책임자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각 기능별 계획가동 책임자들은 주기적으로 각 책임임무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브리핑을 자치단체장 및 통제단장에 실시하고, 각 기능별 상황판에 관련 상황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 제공한다.

3.3.5 책임 지원기관 지휘소 (비상대책상황실)

- 각 주요 책임 지원기관은 각각의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를 가동하며 긴급구조통제단과의 상호통신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충청남도 전역에 걸친 긴급구조 대응활동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현장대응기관으로 배치된 각 지원기관은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현장지휘부로부터 임무할당을 받는다.
- 기타 모든 지원기관은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에 피해상황과 필요사항을 정확히 통보할 능력을 갖춘 현장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를 조직 운영한다.

3.3.6 책임 지원기관 지휘소 세부운영계획

- 각 주요 책임 지원기관은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긴급구조세부대응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휘소 운영기준(설치와 종료)
 - 교대조 운영계획
 - 연락관 지정 및 상호통신체계
 - 상황통보(보고) 및 브리핑 실시계획

- 통신
 - 내부통신
 - 긴급구조통제단과의 통신
 - 상호 연락 메시지 종합방재센터 운영
- 정보 수집, 평가 및 확산
- 교통수단(수송계획)
- 자원배치 절차

4. 통제단-대책본부 연계성

4.1 상호협조관계

- 재난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등 상호협업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4.2 통제단-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협력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본부) 3항에 의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 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제7항에 근거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지원에 필요한 연락관을 상호 파견하여 협업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3 통제단장-대책본부장 현장지휘

-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각급 통제단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본부장의 협의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제2항

4.4 긴급구조활동의 종료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 본부장, 통합지원본부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제10항

4.5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3항
- 위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5.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5.1 자원집결지

-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자원관리부장은 재난 인근지역에 자원집결지를 지정 운영할 책임이 있다.
- 자원집결지는 대응2단계 또는 대응3단계에서 운영된다.
- 자원집결지는 긴급구조, 복구, 구호자원을 재난지역 전체에 배치 및 배포하고, 부상자 외부수송 지원을 위한 임시집결지점의 기능을 수행한다.
- 충청남도 자원집결지는 부록 현황에 따라 사전 지정 운영된다.
- 사전 지정된 자원집결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기타 시 소유 건물, 공터, 학교 등 육해공 수송수단의 활용이 편리한 곳이 집결지로 사용된다.
- 인근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각 중앙부처(청)의 지원자원은 지정 공표된 집결지에 집결한다.
- 자원집결지에는 각 재난현장으로 배치되는 자원을 수송할 수송대기지역이 지정 운영된다.
- 이 수송대기지역의 운영은 자원관리부 자원집결반에서 담당한다.

5.2 자원대기소

- 자원대기소는 현장지휘소 인근에 위치한 자원집결지의 전진기지 기능을 수행하며 현장배치 전 대기, 교대조 운영 및 대응요원들의 휴식을 위한 자원대기 장소이다.

5.3 수송대기지역

- 현장대응요원 및 대응자원 수송을 위해 자원집결지에 수송대기지역을 지정 운영한다.
- 수송대기지역은 대응2단계(필요시) 또는 대응3단계의 재난인 경우 운영되며, 통제단 수송지원팀은 즉시 수송대기지역 운영요원들을 배치한다.
- 각 수송대기지역 운영요원은 비상경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받는다.
- 지정된 대응구역별 수송대기지역은 자원집결지 운영장소이다.

6. 재난대응구역

6.1 운영개념

- 재난대응구역은 재난초기 지휘통제가 마비된 중형재난 및 대형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관할구역 전역에 걸쳐 이용된다.
- 각 대응구역별로 소방서 통제단 운영이 활성화되면, 곧 소방본부 통제단이 가동되어, 전 충청남도에 걸친 긴급구조대응활동의 조직적인 지휘통제가 이루어진다.
- 충청남도에 지정된 16개 각 대응구역은 효율적인 현장대응과 피해평가, 자원배분, 긴급 복구를 위한 자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대응구역은 16개 소방서 관할구역과 일치한다.
- 소방본부 현장지휘대는 각 소방서별 통제단장(또는 현장지휘대장)을 통해 각 대응구역내의 긴급구조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 각 소방서 통제단장은 자체 통제단을 조직하고 각 유관(지원)기관 지휘소와 소방본부 통제단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며, 즉각적이고 자치적인 대응활동을 관리한다.
- 소방서 통제단장은 각 대응구역별 긴급구조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6.2 재난대응구역 가동절차

- 각 재난대응구역은 대응2단계, 대응3단계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장에 의해 관리된다.
- 대응구역별 자치적 운영기준은 지진과 같이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거나 그 가능성성이 있을 때 자동으로 운영된다.
- 주요 대응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피해상황조사, 대응자원 조직, 통제, 연락
 - 인적, 물적 자원의 분배
 - 지원자원의 보고
- 다음의 지원기관은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에 파견할 연락관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 경찰서
 - 보건소

- 군부대
 - 응급의료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대한적십자사
 -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통신사업소(KT)
- 각 연락관은 재난현장(통제단)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단장과 사전 비상연락을 취하고 각 소방서(현장대응단)에 접결한다.
 - 응급의료소 운영요원은 종합방재센터의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각 소방서 통제단(현장지휘대)으로 출동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의료소 운영장소를 지정 설치한다.
 -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는 자원봉사자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연결 및 접결기관이 된다.

6.3 재난대응구역별 SOP

- 충청남도소방본부는 각 소방서에 대응구역 SOP를 개발 유지하도록 한다.
- 이 SOP는 대응구역활동을 확립하고 운영하는 절차이다.
-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는 대응구역별 긴급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소방서 인근장소에 연락 및 협조 데스크 설치 운영
 - 재난대응 인력과 장비의 접결장소
 - 응급의료 및 보건 활동
 - 자원봉사자 접결지
- 모든 지원기관은 대응활동에 참가하는 요원에게 재난발생 시 대응구역별 현장으로 응소하도록 하는 지침을 세워야 한다.
- 대응구역별 SOP에는 대응구역별 피해상황조사, 자원현황조사, 필요자원 조사에 대한 보고절차를 포함한다.

6.4 대응구역 통신

- 대응구역 통신은 종합방재센터 정보통신시스템 및 각 지원기관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 택시/자전거/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메시지센터를 통해 확립된다.
- 모든 유관(지원)기관의 연락관은 통제단 언론대응반에게 출발 및 도착여부를 통보한다.

6.5 기관(부서)별 대응구역 SOP

6.5.1 소방

- 각 소방서장은 현장에 통제단을 설치, 자원을 관리하고 각 유관기관 연락관들과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피해상황과 자원요청, 그리고 자원분배 상황을 기록한 상황판을 설치한다.
- 소방서와 소방본부 간 통신체계를 확립한다.
- 자원봉사자들을 구조진압활동 및 기타 대응활동에 활용하도록 협조한다.

6.5.2 현장통제 (경찰)

- 각 대응구역별 경찰서장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상황관리부에 연락관을(보강) 배치한다.
- 소방서장과 통신체계를 확립한다.
- 재난지역 현장통제를 담당한다.
- 재난지역 교통체계를 원활히 유지한다.

6.5.3 현장응급의료소 (보건소)

- 지역보건소장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통신연락 담당요원을 지정 (배치)한다.
- 현장 응급의료자원을 관리하고 부상자를 분류치료하고 사상자를 이송한다.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소방서장)에 의료시설상황을 보고한다.
- 응급의료에 필요한 추가 물품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6.5.4 긴급시설복구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시·군 안전관련 부서장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상황관리부(상황관리반)에 무선연락이 되는 연락관을 배치한다.
- 구역마다 피해상황을 점검한다.

6.5.5 수송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시·군 교통관련 부서장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상황관리부(상황관리반)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 각 소방서에 통신이 가능한 차량을 배치하고 긴급수송자원 통제센터로 활용한다.
- 소방서 통제단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대응요원 및 부상자를 이송하거나 긴급대피를 위한 여유차량을 조직한다.

6.5.6 교통지도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시·군 교통관련 부서장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상황관리부(상황관리반) 연락관을 배치한다.
- 경찰의 통제하에 지정된 비상도로상의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현장대응요원을 지정된 장소로 이송한다.

6.5.7 수도

- 상수도사업본부 무선통신 차량을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주변에 배치한다.
- 소속 인력과 보유자원을 지원한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인력과 자원은 관할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배치한다.

6.5.8 한국가스안전공사

- 현장 활동요원의 안전과 가스시설 조사, 그리고 파손된 가스라인 복구를 위해 자원(기술지원)을 배치한다.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6.5.9 비상전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단전된 전선의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배치한다.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상황관리부(상황관리반)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6.5.10 통신사업소 (KT)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상황관리부(상황관리반)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통신자원을 지원한다.

제2장 기능별 대응계획

-
- 제1절 지휘통제계획(#1)
 - 제2절 비상경고계획(#2)
 - 제3절 대중정보계획(#3)
 - 제4절 피해상황분석계획(#4)
 - 제5절 구조·진압계획(#5)
 - 제6절 응급의료계획(#6)
 - 제7절 긴급오염통제계획(#7)
 - 제8절 현장통제계획(#8)
 - 제9절 긴급복구계획(#9)
 - 제10절 긴급구호계획(#10)
 - 제11절 재난통신계획(#11)
-

제2장 기능별 대응계획

제1절 지휘통제계획(#1)

1. 목적

지휘통제계획은 재난시 다수 관할구역의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절차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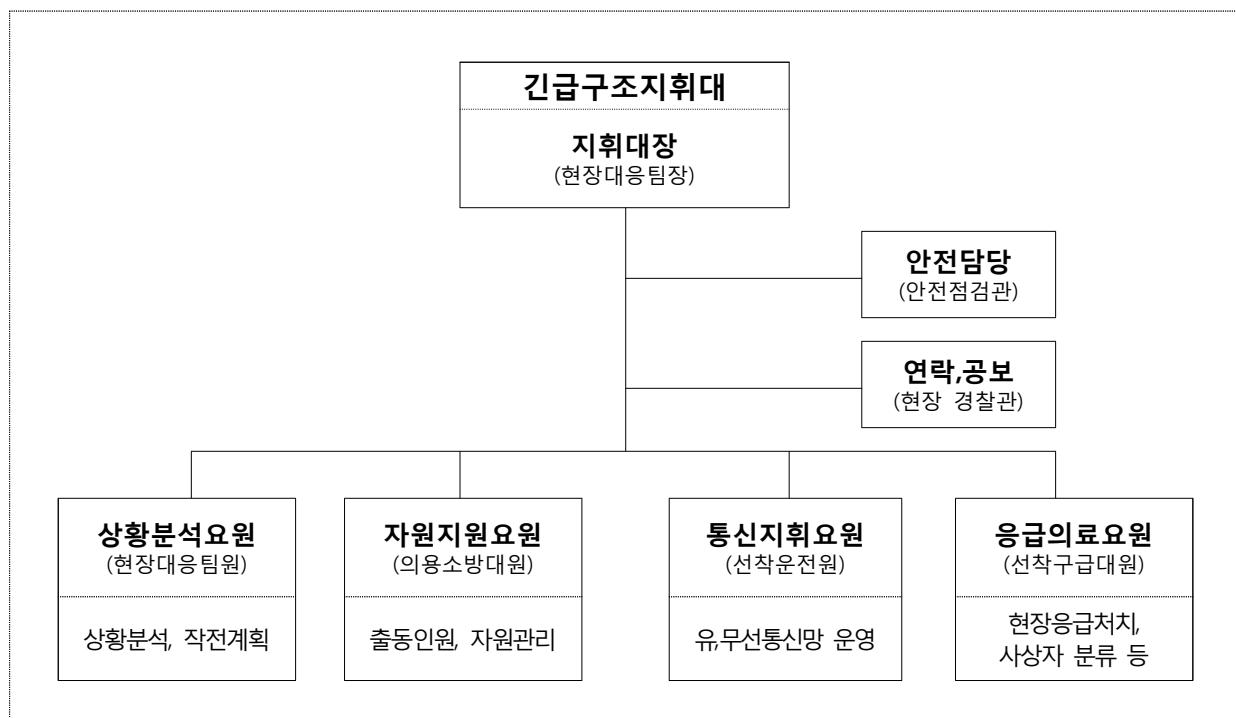
2. 조직 및 운영

2.1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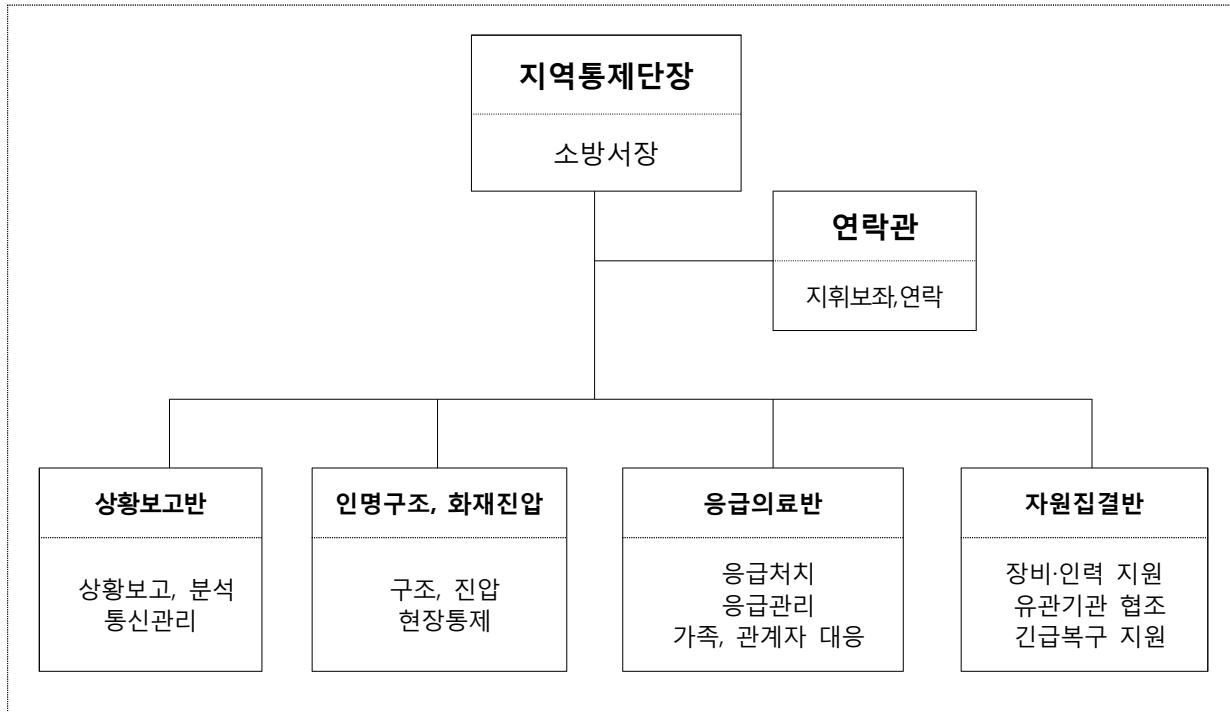
- 긴급구조통제단은 상황관리부, 현장지휘부, 자원관리부로 구성된다.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관서장이 되고, 통제단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충청남도(시·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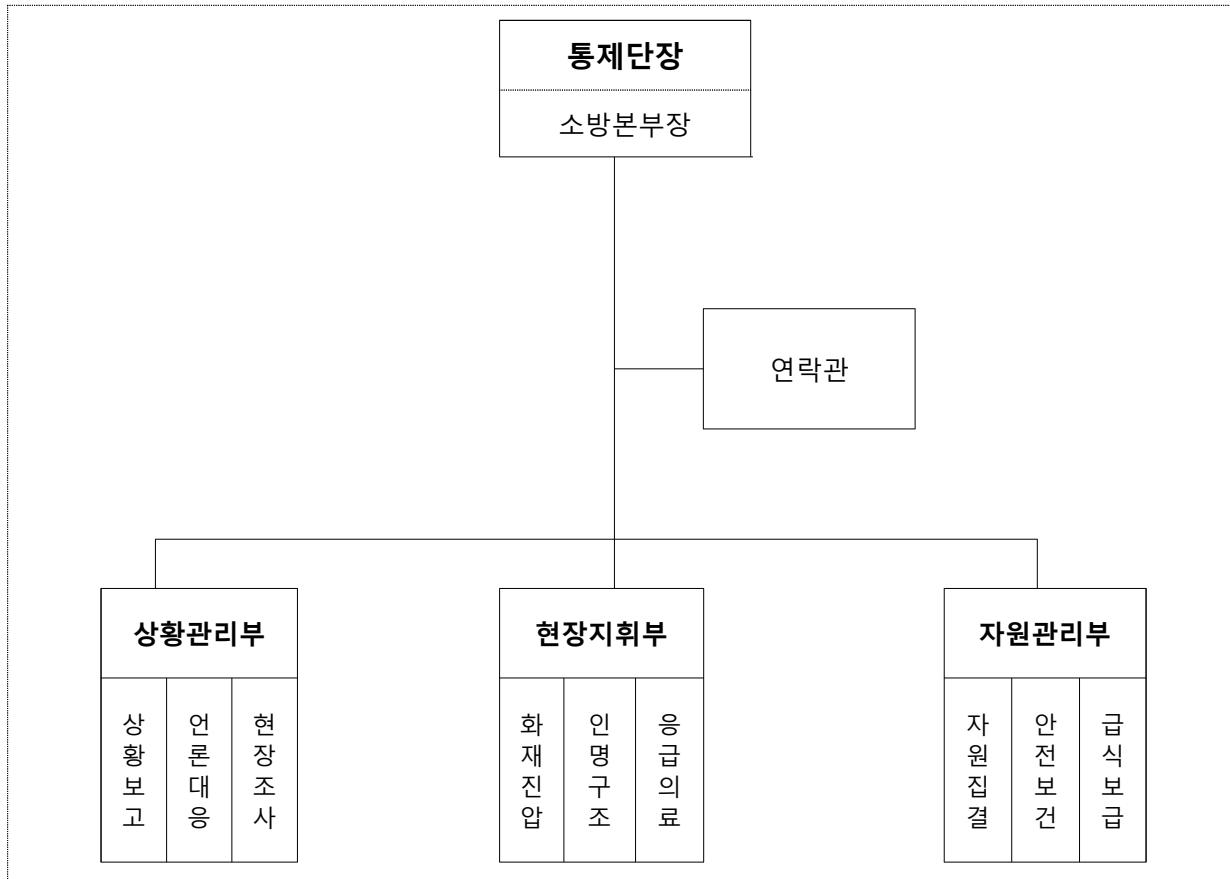
- 대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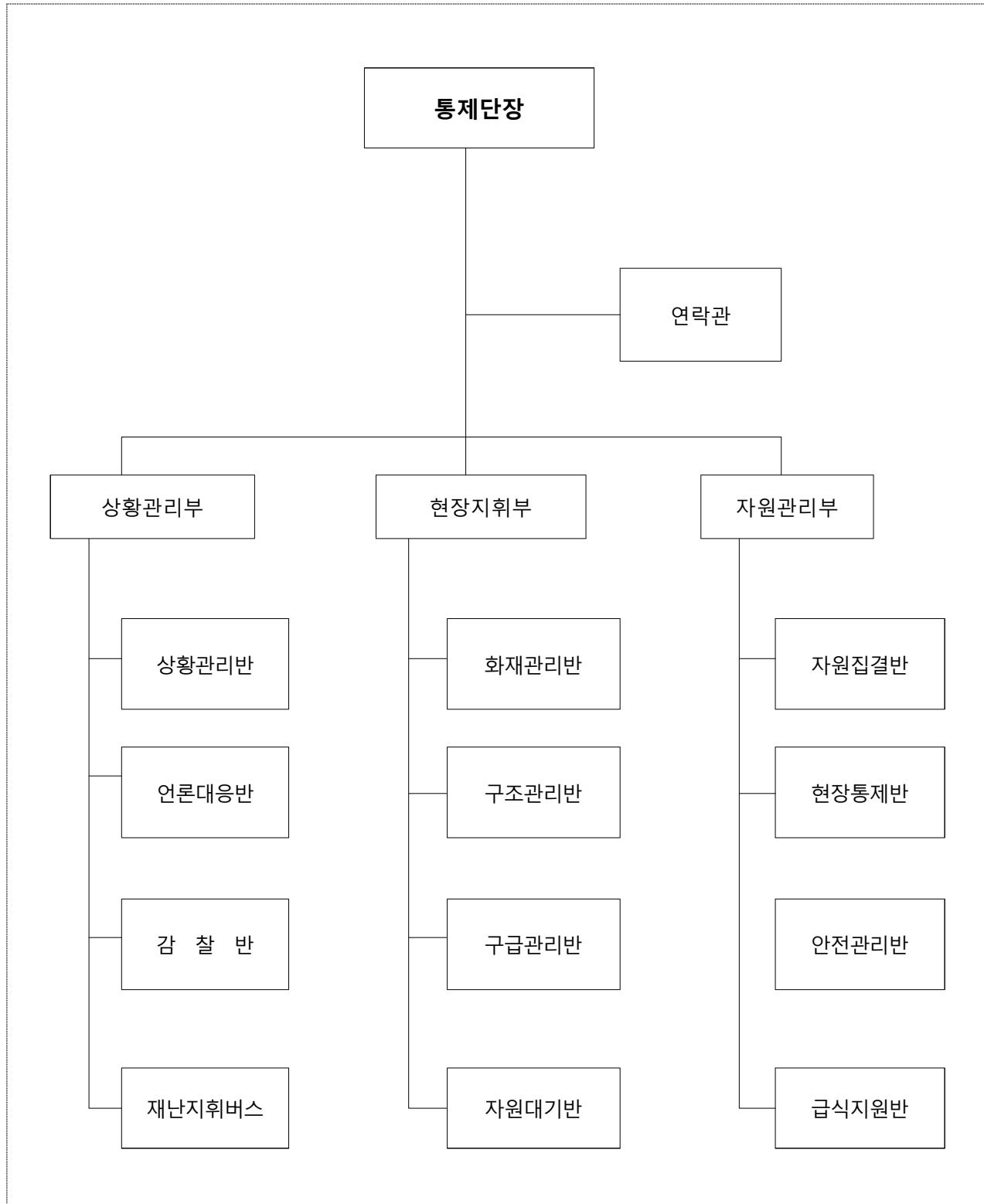
- 대응1단계



- 대응2단계



○ 대응3단계



※ 대응2단계 3단계 통제단 운영(조직구성 등)은 동원인력 · 장비 등을 감안하여 통제단장의 지휘아래 탄력적 운영

< 각 반별 대응매뉴얼 및 책임조직 >

부 서 별		참 고 매 뉴 얼 (담당 기능별계획)	책 임 조 직
긴급구조 통제단장	통 제 단 장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소 방 본 부 장
연 락 관	연 락 관	- 통제단장 수행 및 보좌	소 방 행 정 팀 장 기 획 예 산 팀 장
	종합방재센터	- 비상연락망 관리 및 통제단 가동 - 현장상황 파악·관리, 상황 지원	종 합 방 재 센 터 장 (상 황 팀 장) 소 방 정 보 통 신 팀 장
상황관리부 (119광역기동단장)	상 황 관 리 반	- 상황보고서 작성, 각종 정보 취합 - 통신(무선) 기록 및 관리 - 상황판단회의 등 준비	재 난 대 책 팀 장
	언 론 대 응 반	- 언론 브리핑 작성·보고 - 기자단 관리 및 통제	예 방 교 육 팀 장
	김 칠 빙	- 동원 소방력 감찰 활동 - 현장 민원 대응	소 방 감 찰 팀 장
	재난지휘버스	- 상황보고 및 언론브리핑 준비 - VIP 상황보고자료 준비	재 난 대 책 팀
현장지휘부 (화재대책과장)	화 재 관 리 반	- 화재진압 및 작전관리 - 현장피해조사 및 원인규명	화 재 대 책 팀 장
	구 조 관 리 반	- 인명구조 위험요인 진단 - 인명구조 상황관리	구 조 팀 장
	구 급 관 리 반	- 구급대원 관리 - 응급의료소 운영지원	관 할 보 건 소 장 구 급 팀 장
	자 원 대 기 반	- 동원 소방력 관리 - 동원된 인력 및 장비지원	의 용 소 방 팀 장
자원관리부 (소방행정과장)	자 원 집 결 반	- 동원 소방력 및 의용소방대원 관리 - 동원 지원기관 관리	복 합 시 설 팀 장
	현 장 통 제 반	- 제1통제선 운영 - 언론 및 주민통제	소 방 특 사 경 팀 장 관 할 경 찰 서 장
	안 전 관 리 반	- 동원자원 안전관리 - 현장안전관리 확인	안 전 관 리 팀 장
	급 식 지 원 반	- 급식차량 운영 - 부식 및 식자제공	회 계 장 비 팀 장

2.2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운영

- 통제단 지휘통제체계 표준운영절차(SOP)는 다음 3 단계의 조직 기반 위에 운영된다.

2.2.1 현장 대응단계

- 재난 현장대응인력과 자원이 전략적 결정과 전술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지휘한다.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장이 대응구역별 통제단이 확립될 때까지 긴급구조지휘대(현장지휘대)를 기반으로 한 지휘통제체계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2.2.2 시·군(소방서) 통제단 대응단계

- 재난대응구역별 대응자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한다.
- 도 긴급구조통제단과의 연락 및 조직책 역할을 한다.
- 각 대응구역별 통제단이 구역 내 긴급구조대응체계를 총괄 조정통제 할 책임이 있다.
- 소방서 통제단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수 유관(지원)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할 경우
 - 도 통제단이 가동되는 경우
- 시·군(소방서) 통제단이 편성되면, 인근 시·군(소방서) 통제단, 도 통제단과의 통신과 협조체제가 가동된다.
- 소방과 경찰 자원의 출동은 유관기관협조체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 소방서 통제단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난상황을 평가한다.
 - 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통제단)에 재난상황과 자원요청사항을 보고한다.
 - 대응구역별 자원을 운용한다.
 - 인근 대응구역의 지원요청 여부를 검토한다.
 - 중앙통제단에 대한 지원요청 여부를 검토한다.
 - 현장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2.2.3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대응단계

- 재난상황에 상응한 시·도 대응자원을 관리한다.
- 각 소방서간 자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

- 소방청의 중앙통제단과의 연락 및 조직책 역할을 한다.
- 도 통제단이 도 긴급구조대응체계를 총괄 조정·통제할 책임이 있다.
- 도 통제단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수 소방서 통제단이 운영될 때
 - 시·도지사가 지역재난을 선포했을 때
 -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을 때
- 도(소방본부) 통제단이 편성되면, 각 대응구역별 통제단, 인근 시·도 통제단, 중앙통제단과의 통신과 협조체계가 가동된다.
- 소방과 경찰 자원의 출동은 유관기관협조체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2.3 시간대별 운영체제

시 간 대 별	운 영 체 계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을 평가한다. - 종합방재센터 운영요원을 보강하고 24시간 교대 근무조를 편성한다. - 시·군 종합상황실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을 가동한다. - 긴급구조지휘대와 연락하고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 받는다.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협조한다. - 각 대응구역별 유관기관 연락관이 대응구역별 통제단의 현장지휘소에 도착한다. - 시·군 통제단을 거쳐 도 통제단이 가동된다. - 긴급복구반 2차 재난방지팀을 비상소집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재난발생 지역의 항공비행을 지시한다. - 위험지도 분석, 여진가능성, 해일가능성, 사상자 예측, 바람 예측(화재 위험물사고), 구름 및 습도 예측(유독가스사고), 이재민 발생정보 등을 이용해 재난상황을 평가한다.
중 기 단 계 이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구역별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활동을 평가한다. - 자원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세운다. - 자원을 조정 통제한다. - 아래 사항에 대비한 임무 수행계획을 세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른 식수사용 통제 · 긴급대피소와 위생적 음식 공급 · 지역 자원 배분 · 긴급수송과 도로복구 · 사상자 분류, 응급치료, 이송을 포함한 응급의료 대책 · 공항과 항구의 긴급구조대책

2.4 통제단 긴급대응 우선순위

통제단의 표준 긴급대응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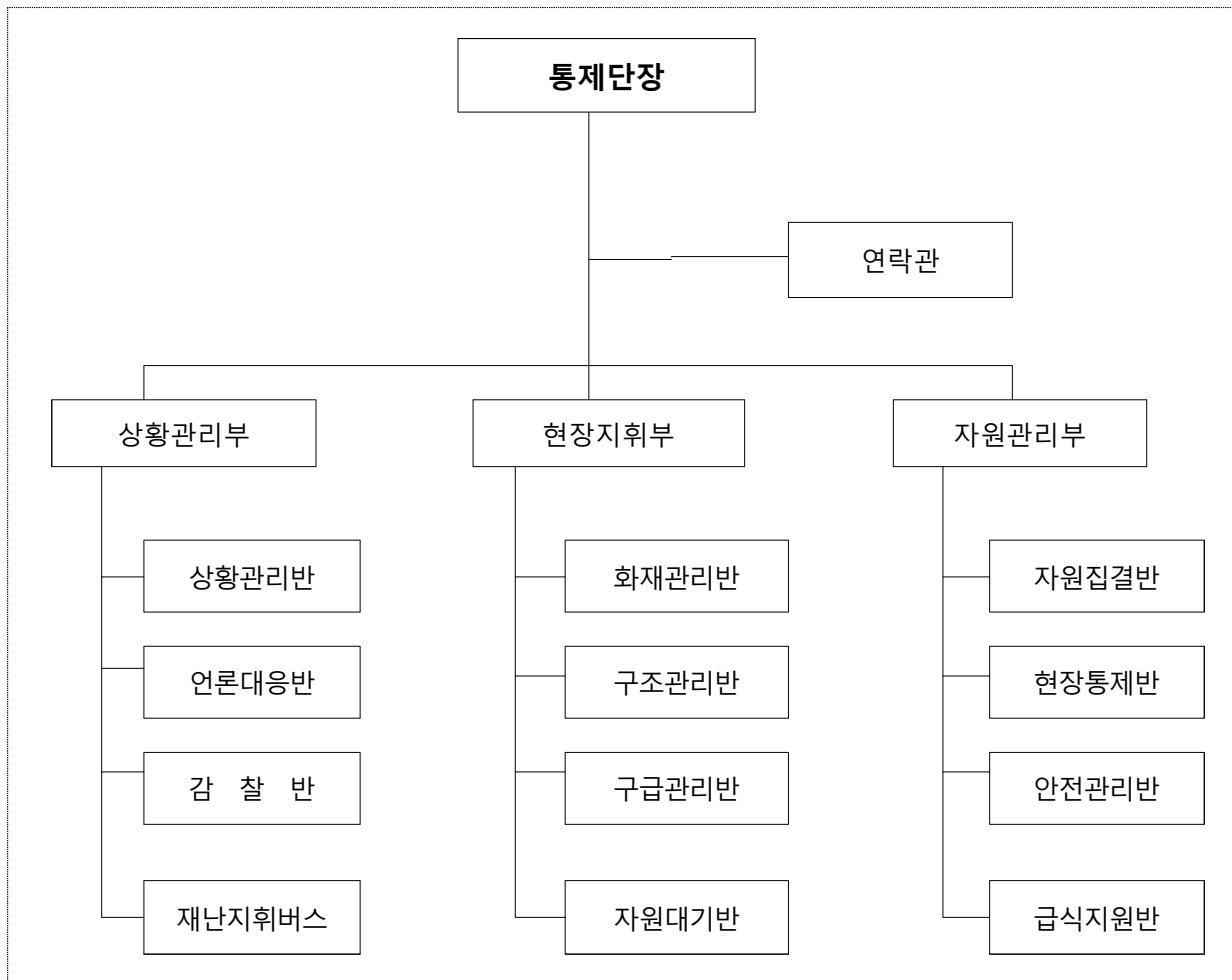
- 중앙통제단, 인접 자치단체 통제단(상황실), 주요 민간기업 및 단체와 비상연락망을 확립한다.
- 현 보유자원을 배치하고 추가 요청자원을 해결한다.
- 현장대응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자원을 조정한다.
-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한다.
- 비상방송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을 점검한다.
- 대중정보를 준비, 확산시킨다.
- 비상경고정보를 준비, 확산시킨다.
- 긴급대피명령이 필요한 경우 민간인의 이동, 수용 및 보호를 관리한다.

3. 임무수행

3.1 총괄지휘부

3.1.1 조직

- 통제단장 및 지휘부는 충청남도 긴급구조 대응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통제하며, 지휘부는 자치단체장, 통제단장 연락관 각 부장, 관할 소방서장을 포함한다.
- 통합지휘는 경찰연락관, 군부대연락관, 한국전력연락관, 응급의료소장 등 주요 지원 기관 연락관 및 재난유형별 전문위원이 필요에 따라 보강된다.
- 통합지휘는 통합지휘회의를 통해 주요 지휘지침을 결정하고 임무를 분담한 후 소속 기관과 지휘연락을 한다.
- 소속기관별 임무가 완료되면 통제단장에 통보한다.
- 대응3단계의 운영요원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편성표에 의한다)



3.1.2 단계별 운영개념

대 응 단 계	통 합 지 휘(팀) 운 영
대 비 단 계 (대비업무수행)	- 긴급대응계획의 전반적 체제와 임무수행절차를 이해하고 주요 지휘관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대 응 1 단 계 (일상적 사고)	-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은 가동되지 않는다. - 사고발생장소 관할구역의 소방서 통제단이 지휘권을 가진다.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 통제단의 각반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가동된 각반의 요원은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종합방재센터에 응소한다.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 통제단의 각반이 모두 가동된다. - 각 반원은 상황보고와 상황예측서를 검토하고 대응지침과 기본전략을 밝힌다. - 모든 긴급구조관련기관의 대응자원이 각 재난대응구역에 분산 배치된다.

3.1.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직 책	임 무 수 행 매 뉴 얼
통제단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사태 선포의 필요에 대하여 대책본부장에 판단자료 제공 2. 긴급구조를 위한 비상대응요원의 비상소집 확인 3.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의 전면적인 혹은 부분적인 가동 4. 주기적으로 통제단 각부 및 반의 브리핑을 받고, 모든 부 및 반이 대응계획에 따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단 활동 조정 5. 피해상황, 사상자 수 등에 대한 개략적 1차 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보고 6. 인접 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지원기관단체, 또는 상급 부서에 특별한 지원요청을 공식화 7. 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사태 선포에 필요한 정보제공 8. 인접 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지원기관단체, 상급 부서와 상호 긴밀한 연락관계 유지 9. 부족 대응자원을 선점하고 할당하는 것을 지원 10. 현장지휘대장 지휘통제
상황관리부장	<p>통합지휘 임무는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단체 연락관이 아래 사항을 이행함을 의미한다. → 통합지휘 임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반적인 대응 목표를 정한다. 2. 전략을 정한다. 3. 전술적 활동을 위한 통합계획이 실행되도록 한다. 4. 총체적 현장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전반적 자원의 활용을 도모한다. 6. 종합방재센터와 공조 도민보호프로그램 및 비상방송시스템 운영 → 각 연락관 임무 1. 통합지휘회의에 참여 소속기관 임무분담 2. 분담된 임무 소속기관 연락, 이행보고 책임 3. 임무지침서와 통합작전계획 소속기관 소관임무 승인
자원관리부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통제단 지원체계 유지 2. 대책본부 지원체계 유지 3. 자원집결지 운영, 안전수칙 관리 4. 대원 재난심리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재난현장 안전 및 2차 재난 위험성 검토
현장지휘부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명구조, 구급, 위험상황의 진압, 접근통제, 통신 등을 포함한 사고현장에 초동 대처하는 현장대원의 활동 조정 2.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안전담당관 등 필요 직책을 충당하는 등 현장지휘체계 가동 3. 통제단장과 재난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책 강구 4. 통제단 지휘통제체계의 모든 필요기능 수행. 5.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응급의료소 운영 장소 지정 6. 재난 초기 각 지원기관 연락관과 통합지휘 수행 7. 통제단 미설치 시 상황관리부, 자원관리부 그리고 연락관 및 안전담당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 8. 재난현장 안전 및 2차 재난 위험성 검토

○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시 간 대 별	대 응 매 뉴 얼
최 초 단 계	<p>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 통합지휘팀, 각부장은 상황을 판단하고 즉각적인 가동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종합방재센터(또는 통제단)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거나 비상연락망을 통해 전화회의를 실시한다.</p> <p>통제단장은 다음 지시사항 중 하나를 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제단을 가동시키지 않는다. 2. 현장의 상황변화를 관찰하며 후속대책을 준비한다. 3. 현장지휘대를 기반으로 통제단을 부분적으로 가동한다. 4. 통제단을 운영할 현장지휘소를 설치한다. 5. 통제단을 완전 가동하고 대책본부장(자치단체장)에 보고한다. <p>※ 현장지휘소는 인적재난인 경우 현장에, 자연재해인 경우 종합방재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단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p>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태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재난사태 선포) - 피해 상황 분석 평가 - 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에 상황보고 - 임무 지침서 작성 및 배포준비 - 구조진압 활동 모니터 - 기자회견 및 주민보호 비상방송메시지 작성 - 대응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 및 2차 재해방지를 위한 도로, 전기, 가스등의 긴급복구 검토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진압 활동 지속 - 긴급대피, 통행금지 등 주민행동지침 검토 후 발표 - 정기적인 기자회견(기자단에 브리핑시간계획 발표), 도민보호프로그램 운영 - 중앙통제단과 지원협조체제 유지 - 대응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배분 결정 - 긴급대피소 방문 - 주민보호 비상방송메시지 검토
중 기 단 계 이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긴급복구 상황 모니터(대책본부 설치시 긴급복구 지휘권이양 검토) - 긴급대피소 상황 관찰 - 대책본부, 중앙통제단의 긴급복구활동 지원체제 유지 - 자원봉사자 집결지 위치 결정 및 홍보 - 시설물 안전문제 모니터 및 접근통제 검토 - 도민 보호프로그램 및 언론매체 관리 - 공식 방문 VIP 관리 - 재난유형별 긴급복구팀 비상소집(대책본부 설치시 이동 검토)

- 통제단 언론브리핑

통제단장과 언론대응반은 공동취재단에 대한 정기적 브리핑 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에서 알고자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발표한다.

- 대응 및 긴급복구시 검토사항

통제단장 및 지휘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구조진압 및 응급의료(인명구조 및 재산 보호)
- 효율적인 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로, 가스, 수도)의 긴급 복구
- 이재민의 식사, 숙소, 화장실, 식수, 비상 발전기 등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복구
- 긴급구조요원(자원봉사자를 포함)의 의식주 시설
- 긴급대피 및 도민보호프로그램과 같은 행동지침을 도민에게 전파
- 상황조사 및 평가
- 인력 및 시설을 동원, 배분, 배치한다.
- 대피 및 구조 작업
- 사상자의 치료 및 보호
- 사망자 발굴, 인적사항관련자료 및 현장보존, 사체처리
- 이재민 구호품(음식, 대피소 등)
- 재난지역 치안능력 강화협조
- 보건 및 안전조치 실행
- 필수 자원의 보호, 통제, 배분
- 공장, 학교, 상점 등에 폐쇄 가능성 예고 및 폐쇄조치
- 필수 시설 및 시스템을 긴급복구 또는 정상화

- 통합지휘 회의 시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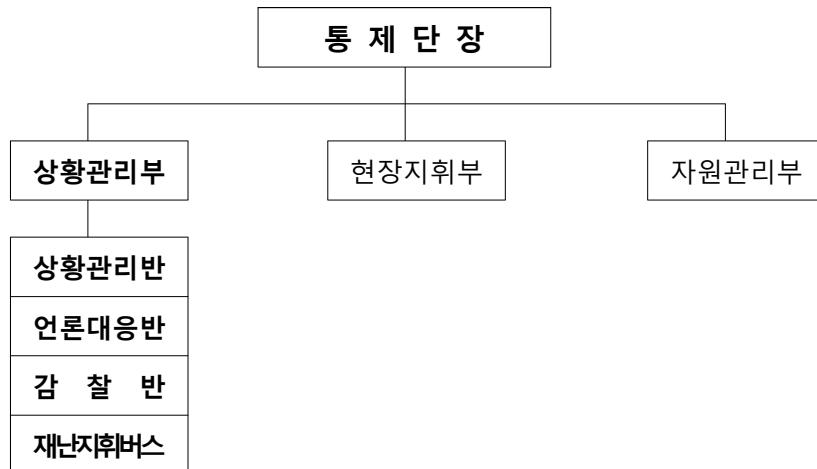
다음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상황 하에서 임무분담 및 전반적 지휘통제를 위한 검토사항이다.

- 초기 상황평가시 검토사항
 - 토지 및 시설물 일시 사용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응급부담),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 통행제한 조치
 - 기관 간,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호응원협정서

- 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조례사항
- 시도 일상업무의 중단 여부
- 위험지역 대피명령(병원, 양로원, 어린이집, 공장 등 산업시설, 상업시설의 폐쇄 등)
- 비상 대책
 - 과거 재난 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통제단 각 반별 요원에게 검토해서 보고하게 한다.
 - 조치사항이 관련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운영요원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교대 및 인수인계시간을 검토한다.
 - 인력지원을 수정한다.
 - 필요에 따라 부재중인 운영요원의 대체인력을 검토한다.
 - 임시 대피소 운영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3.2. 상황관리부

3.2.1 조직



- 상황관리부는 재난피해 상황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대응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예측한다.
- 현장지휘부, 자원관리부는 상황관리부가 임무지침 및 작전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당정보를 제공한다.

3.2.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 단계	통합지휘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상황관리부의 운영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교육 및 연습을 실시한다
대응 1 단계 (일상적 사고)	- 통제단의 상황관리부는 가동되지 않는다 - 필요시 현장대응활동을 지원하는 통제단 지휘통제체계와 종합방재센터를 가동할 수도 있다
대응 2 단계 (중형재난)	- 통제단의 상황관리부는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상황관리부는 피해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재난상황을 분석하며 대응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 상황관리부의 운영요원은 현장지휘대장에게 주기적 상황보고를 실시한다
대응 3 단계 (대형재난)	- 통제단의 상황관리부와 종합방재센터가 완전히 가동된다 - 상황관리부 운영요원은 피해상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재난상황을 분석하며 대응작전계획을 수립한다 - 상황관리부의 운영요원은 현장지휘대장과 통합지휘팀 및 자치단체장에게 상황보고를 실시한다

3.2.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임무 및 책임
상황관리부	119광역기동단장	- 재난상황을 분석하고 자원배분을 조정한다 - 상황보고서를 작성 감독하고 예측자료 및 추가 필요자원을 조사하여 통제단장 및 통합지휘팀에 제공한다 - 작전계획을 개발하고 통제단 전 운영요원에게 알린다
상황관리반	재난대책팀장	- 재난현장 피해상황, 사상자 현황 등 정보를 수집하여 통제단장에 보고한다 - 현장대응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등 긴급대응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각종회의, 유관기관 연락, 요청사항 등을 기록하고 각 부·반으로 전파한다
언론대응반	예방교육팀장	- 현장 언론창구를 일원화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관심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오보를 예방한다 - 공동취재단 구성, 취재구역 설정, 언론대기소 운영 등 언론을 적극 활용한다
감찰반	소방감찰팀장	- 현장 점검을 통해 소방자원의 이탈 및 위반행위를 지도한다 - 민원발생 요인을 수시로 점검, 예방 등 적극 대응한다
재난지휘버스	재난대책팀장	- AVL 단말기 시스템을 가동하여 상황보고서를 내부 모니터에 송출한다 -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외부 모니터에 언론브리핑 자료를 송출한다 - VIP 현장 방문 시 착용할 수 있는 피복을 상시 준비한다

○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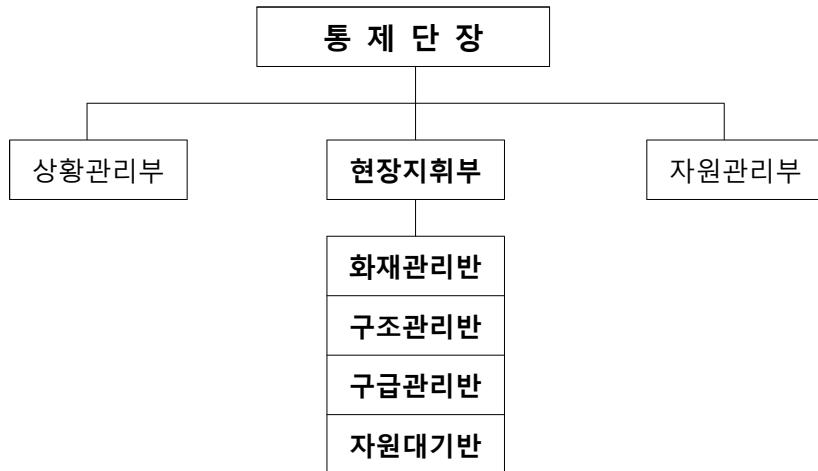
시 간 대 별	대 응 매 뉴 얼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정보의 수집과 보고 - 대응지침서 및 작전계획서 개발 - 단기 예측 및 분석 실시 - 대응활동의 우선순위 결정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활동 평가 - 자문을 위한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전문가 비상소집 - 주요 시설 상태, 인명구조상황, 기타 대응활동 상황 모니터링 - 기타 대책본부 가동에 따른 지원기능 수행
중 기 단 계 이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 복구지원계획 지원

○ 대응 및 긴급복구 정책

- 정보 확인
 - 상황관리부가 가동되기 전 단계의 재난상황정보는 선착대장 및 종합방재센터에 의해 확인한다.
 - 언론매체나 개인으로부터의 수집한 정보는 선착대장 및 상황실이 확인하기 전 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 예 측
 - 처음 72시간 내의 피해의 평가 및 예측은 정확한 조사가 있기까지 개략적인 조사로 대신한다.
- 긴급복구 계획
 - 이 계획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목적에 한하고 기타 복구활동은 대책본부의 정책과 지침을 따른다.

3.3. 현장지휘부

3.3.1 조직



- 현장지휘부는 재난대응에 참가하는 인명구조, 위험진압, 현장통제, 응급의료, 항공 구조 자원들을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할 책임이 있다.
- 현장지휘부의 각 반, 팀은 상황관리반에서 자원배치 우선순위를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현장지휘부는 지휘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응전략 및 방침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3.3.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 단계	운영 내용
대비 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현장대응관련 지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대응훈련 및 연습을 실시한다.
대응 1 단계 (일상적 사고)	- 통제단의 현장지휘부는 재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된다. - 필요시 현장지휘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대응 2 단계 (중형 재난)	-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부는 재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된다. - 각 반, 팀이 지원기관의 대응활동을 조정통제하기 위하여 가동된다.
대응 3 단계 (대형 재난)	- 현장지휘부는 완전히 가동된다. - 현장지휘부는 지방자치단체 전역에 걸친 구조진압, 현장통제, 응급의료 자원을 전반적으로 통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긴급구조관련기관들은 자동적으로 비상대응구역별로 각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에 분산 배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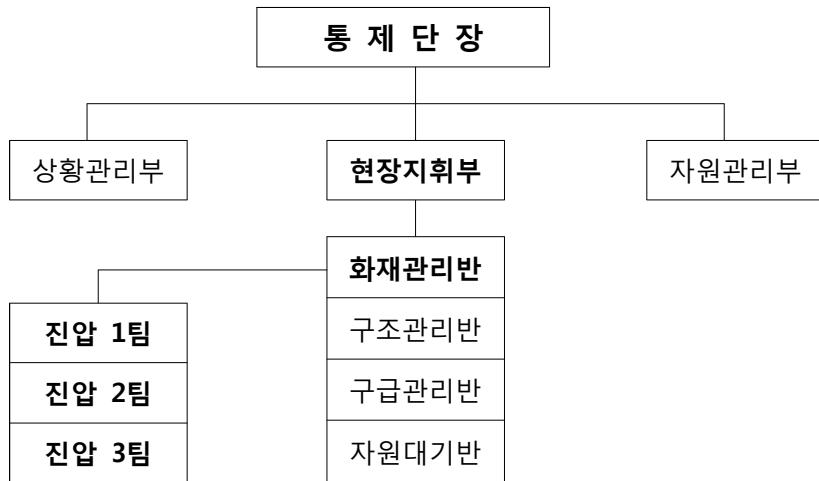
3.3.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직 책	책 임 기 관(부서)	임 무 및 책 임
현장지휘부장	화재대책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대원배치현황,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의료소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 재난 대응에 참가하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자원들을 조정·통제하고, 상황판단회의 시 현장 조치사항을 보고한다.
화재관리반	화재대책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화재진압 위험진단, 방면별 조편성 대원배치 현황 등 진압상황을 관리한다. - 화재 진압에 대한 연소저지 등 작전과 전략을 제공하여 신속한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 소방용수확보, 급수지원, 장비충전·교체 등 현장대원을 지원한다. - 재난현장의 피해액 산정,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재난현장의 피해정보 수집, 인명구조사향, 재산 및 재산피해 등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방재센터와 공유하며 각 부·반으로 전파한다.
구조관리반	구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인명구조 위험요인 진단, 대원 배치현황 등 인명구조 상황을 관리한다. - 인명구조에 대한 특수 장비투입 등 전략을 제공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를 지원한다. - 현장화룡 대원에 대한 안전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방지를 점검 한다.
구급관리반	구급팀장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시·군 보건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현황, 사상자 이송병원현황을 파악하여 각 부·반으로 현황을 제공한다. -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응급의료소 운영, 의료자원 동원, 의료물품을 지원한다. - 구급차 배치, 구급차 대기 장소, 병원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자원대기반	의용소방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투입된 종원자원을 등록·기록하고 적절히 배분하여 현장에 투입한다. - 현장에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의 배치·대기·교대·조 관리를 위한 자원 대기소를 운영한다. - 자원대기소의 통신설비, 확성기 등 필요물품을 제공한다.

가. 화재관리반

○ 조직



○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 단계	운영 내용
대비 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수행한다. - 모든 가용자원의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 대응계획상의 방침과 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훈련 및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대응 1 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소방서 상설 현장지휘대가 화재진압 및 구조작업을 조정 통제한다. - 사고장소 인근 지역주민을 긴급 대피시킨다.
대응 2 단계 (중형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조진압자원의 통일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완전가동 된다. - 소방본부 현장지휘부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필요에 따라 현장지휘부 보충 운영요원이 비상소집 배치된다.
대응 3 단계 (대형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조진압자원의 통일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본부 현장지휘대가 완전 가동된다. - 각 소방서 현장지휘부가 대응구역별 작전을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한다. - 재난지역 전역에 걸친 주민 대피여부를 고려하고 현장통제반과 통합지휘 체계를 가동한다. - 자치단체의 지원부서와 지원기관들은 자동적으로 대응구역별로 분산배치된다.

○ 화재관리반 임무

- 화재진압반은 모든 재난대응에 있어 화재진압을 최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화재진압반은 자연적, 인위적 재난에서의 화재진압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이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재난 시 화재진압의 지휘통제에 대한 책임
 - 하위단위조직 확대운영에 대한 책임
 - 지원기관단체 지원의 조정 통제지휘 및 통제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 간 대 별	대 응 매 뉴 얼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대 통제 * 화재진압 * 탐색구조 *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탐색 및 제거 * 피해정도의 평가 * 지역주민 대피 * 예측(24시간)
증 기 단 계 이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대 통제 * 화재진압 및 잔화정리 * 탐색구조 *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탐색 및 제거 * 피해정도의 평가 * 예측(24 - 72시간)

○ 상황실과의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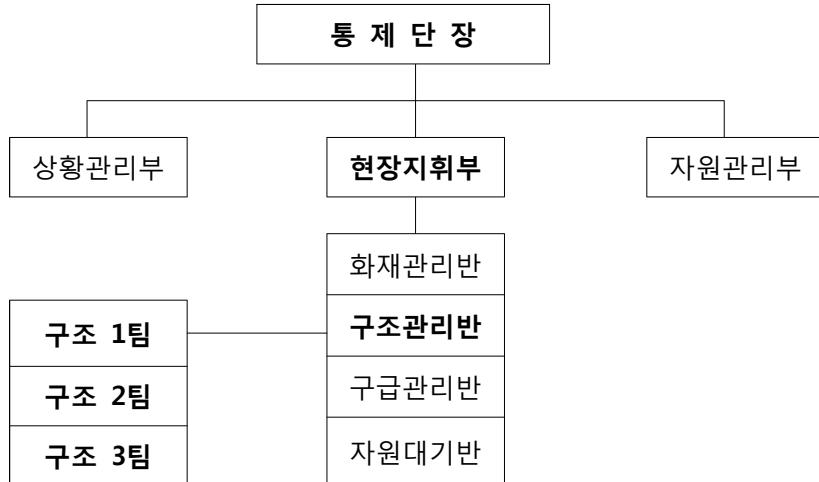
- 종합방재센터 화재관리통신 담당자는 매시간 통제단 현장지휘부 화재진압반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한다.
 - 화재발생장소, (동시다발 화재 시)발생 수, 발생유형(건물, 공장, 지하 등)
 - 자원배치상황
 -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 세부대응계획

☞ 기능별 계획 #5(구조진압 계획) 참조

나. 구조관리반

◦ 조직



◦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 단계	운영 내용
대비 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한다. - 모든 가용자원의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 대응계획상의 방침과 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훈련 및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대응 1 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소방서 상설 현장지휘대가 인명구조작업을 조정 통제한다. - 사고장소 인근 지역주민을 긴급 대피시킨다.
대응 2 단계 (중형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조진압자원의 통일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완전가동 된다. - 소방본부 현장지휘부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필요에 따라 현장지휘부 보충 운영요원이 비상소집 배치된다.
대응 3 단계 (대형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명구조자원의 통일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본부 현장지휘대가 완전 가동된다. - 각 소방서 현장지휘부가 대응구역별 작전을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한다. - 재난지역 전역에 걸친 주민 대피여부를 고려하고 현장통제반과 통합지휘 체계를 가동한다. - 자치단체의 지원부서와 지원기관들은 자동적으로 대응구역별로 분산배치된다.

○ 인명구조반 임무

- 인명구조반은 모든 재난대응에 있어 인명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인명구조반은 자연적, 인위적 재난에서의 인명구조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이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재난 시 인명구조의 지휘통제에 대한 책임
 - 하위단위조직 확대운영에 대한 책임
 - 지원기관단체 자원의 조정 통제지휘 및 통제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 간 대 별	대 응 매 뉴 얼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대 통제 - 인명구조 - 지역주민 대피 - 예측(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탐색 및 제거 - 피해정도의 평가 - 응급조치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대 통제 - 인명구조 - 탐색구조 -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탐색 및 제거 - 피해정도의 평가 - 예측(24 - 72시간)

○ 상황실과의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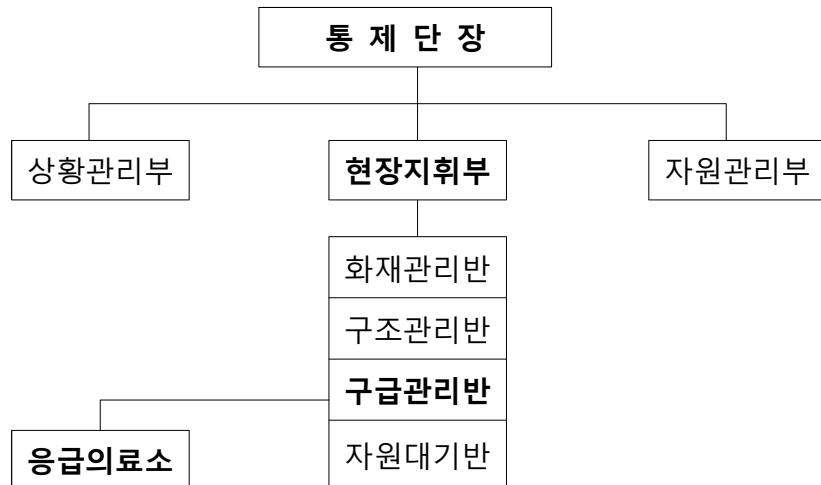
- 종합방재센터 인명구조통신 담당자는 매시간 통제단 현장지휘부 인명구조반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한다.
 - 요구조자발생장소, (동시다발 화재 시)발생 수, 발생유형(건물, 공장, 지하 등)
 - 자원배치상황
 -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 세부대응계획

▣ 기능별 계획 #5(구조진압 계획) 참조

다. 구급관리반

- 조직



- 세부대응계획

☞ 기능별 계획 #6(응급의료 계획) 참조

라. 자원대기반

-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운영내용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현장지휘부의 운영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한다.
대응 1 단계 (일상적 사고)	- 자원대기반은 대응단계 1에서는 설치되지 않는다. - 필요 시 관할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상황실을 통해 자원 지원을 요청한다.
대응 2 단계 (중형재난)	- 도 통제단의 자원대기반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각 시·군 통제단 자원대기반이 완전 가동된다. - 필요 시 자원대기소가 설치 운영된다.
대응 3 단계 (대형재난)	- 도 통제단의 자원대기반이 완전 가동된다. - 운영요원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각 부서의 요청이 있는 자원을 조정 통제한다. - 자원대기반은 자원 현황정보를 현장지휘부장에게 보고한다. - 모든 운영요원은 비상소집되어 배치된다.

- 자원대기반 임무
 - 현장에 투입된 동원자원을 등록, 기록하고 적절히 배분하여 현장에 투입한다.
 - 현장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의 배치, 대기, 교대조 관리를 위한 자원대기소를 운영한다.
 - 각 운영요원의 비상소집현황을 파악하고 각 직책별 미 응소인원 등을 파악하고, 통신설비 등 필요물품을 제공한다.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지휘부장에게 보고한다.
 - 의용소방자원팀은 현장 및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의용소방대 인력을 비상소집 및 배치한다.

- 주관부서 : 의용소방팀

세 부 임 무	임 무 할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용소방대 인력 비상소집 명령 - 자치단체 전역의 의용소방대 인력자원관리 - 지원활동에 할당 가능한 인력 현황 - 임무별로 의용소방대원 재배치 	의 용 소 방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소방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자원집결반, 상황보고반 및 급식지원반과 협력 - 지원활동 동안 대원들이 당면할 작업문제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내림 	자 원 관 리 부(소 방 행 정 과 장)

- 시간대별 대응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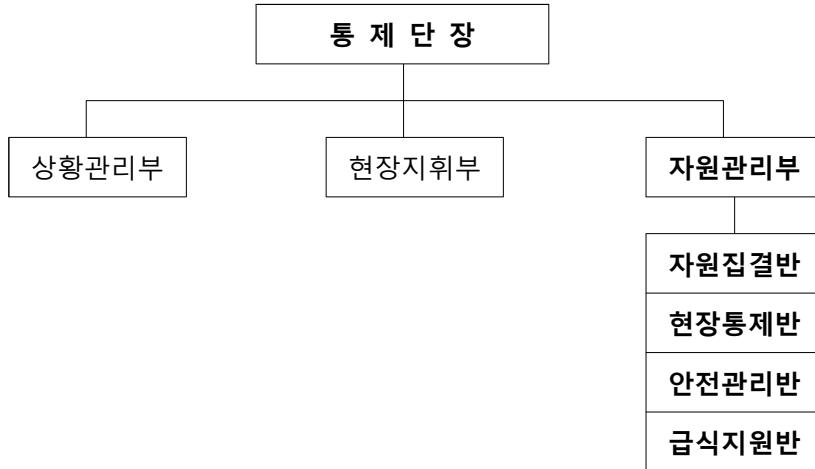
시 간 대 별	대 응 매 뉴 열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연락(문자)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발동 - 급식지원반과 인력배치 활동을 시작한다. - 자원집결지를 확립한다. - 비상대응에 따른 대원들의 당면문제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개발한다.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관리부의 인력 할당계획에 협조한다. - 자치단체 전체의 자원할당을 재조정한다. -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중 기 단 계 이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의 지원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 필요 시 대책본부로 인력관리업무와 권한을 이관한다.

- 통제단 브리핑 양식

- 이용 가능한 대원 인력 현황
- 현 배치인력 현황
- 사망 또는 부상당한 대원의 수
- 단기, 장기 인력 할당계획

3.4. 자원관리부

3.4.1 조직



- 자원관리부는 비상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 및 장비를 확보하고 제공한다.
- 지역재난 선포시 자원, 재산, 서비스, 공급 및 장비를 소유 및 제공하는 모든 시의 기관들은 자원들을 자원관리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4.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 단계	운영 내용
대비 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자원관리부의 운영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한다.
대응 1 단계 (일상적 사고)	- 자원관리부는 가동되지 않는다. 필요시 관할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상황실을 통해 부족자원을 지원받는다.
대응 2 단계 (중형 재난)	- 소방본부 통제단의 자원관리부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관할소방서 통제단의 자원관리부가 현장대응활동 조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완전 가동된다.
대응 3 단계 (대형 재난)	- 소방본부 통제단의 자원관리부는 완전 가동된다. 운영요원은 비상물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각 부서의 요청이 있는 자원을 조정 통제한다. -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운영요원은 비상소집 배치된다.

3.3.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 상황관리부 및 현장지휘부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필요자원을 평가한다.
 - 목표를 정하고 자원을 배분(작전계획)한다.

통제단직책	책임기관(부서)	임무 및 책임
자원관리부장	소방행정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의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자원의 수요를 파악하여 대응 조치한다. - 긴급구조호리동 수행을 위한 자원을 기능별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긴급구조호리동 수행을 위한 비상소집 응소자원 및 유관기관의 자원을 관리하고 현장의 요청에 따라 적절히 배분, 통제단 기능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원집결반	복합시설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 등 적절한 규모의 공간을 자원집결지로 선정하여 운영 한다. - 자원을 등록(기록)하고 자원은 현장지휘부(자원대기반) 요청 시 자원대기소로 인계한다. - 인저자원과 물적 자원(장비)은 분리하여 질서 있게 관리한다. - 통제단의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자원은 수요를 파악하여 대응 조치한다. - 동원된 의용소방대 자원을 자원집결지에 등록·대기하고 현장 지휘부(자원대기반) 요청 시 자원대기소로 안내한다. - 현장 차량 및 외부차량 출입통제, 물품지원 등 통제단 운영을 지원한다. - 동원된 자원에 대한 휴식을 위한 식음료, 휴지 등 필수품을 제공한다.
현장통제반	소방특사경팀장 관할 경찰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통제선 설치 및 통제선 출입자 관리한다. - 경출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동원 통제선 운영 한다.
안전관리반	안전관리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위험요인 정보수집 및 전파 등 현장 안전관리 - 현장에 배치된 인적·물적 자원의 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조치 - 현장 진입 대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조치
급식지원반	회계장비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활동에 참여하는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의 급식·휴식을 제공한다. - 배식, 부식제공, 급식차 운영을 위하여 여성의용소방대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 재난현장의 장비에 대한 응급수리와 대체장비를 투입한다.

-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시 간 대 별	대 응 매 뉴 얼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관리부 조직화 및 운영 - 자원동원체계 가동 - 현장대응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원지원 - 필요사항 파악 및 요구사항 지원 - 부족 및 잉여인력 파악 - 공급물품 및 장비의 부족 및 잉여여부 파악 - 도시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자원을 필요부서에 지원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조달을 위한 주문 검토 - 긴급복구활동을 하는 부서에게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 및 장비의 확보 - 회계자료의 취합 및 대책본부 이관준비

- 통제단 언론브리핑 양식

대책본부장 및 통제단장(자원관리부)의 상황보고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 치 : 자원집결지, 수송대기지역, 자원대기소 등 위치확인
 - 자원배치 현황(인적자원, 장비, 수송차량, 통신, 주요 물품)
 - 자원요청 현황
 - 총 자원요청건수
 - 우선순위 A에 해당하는 건수(생존자 및 사망자 관련)
 - 우선순위 B에 해당하는 건수(작전상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
 - 우선순위 C에 해당하는 건수(72시간 이후 지속되는 작전에서 필요한 것)
 - 문제점 : 각 부서 운영 및 자원동원상의 문제점
 - 대 책 : 각 부서 및 자원동원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책을 보고
- 대응 및 복구정책
 - 자원관리부의 임무는 비상대응활동을 하는 부서의 자원공급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자원관리부는 현장대응활동 부서들이 요구하는 물품, 장비, 유지관리지원, 인원, 긴급대피소 및 기타 서비스를 확보한다.

- 자원관리부 지원활동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임무를 수행한다.
 - 확보 • 저장 • 배분 • 통신
 - 수송 • 공급 • 집결 • 회계
- 비상사태시 대응부서들은 자신의 자원을 통제, 분배한다.
- 각 부서는 계약공급자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받으며, 자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부서들과 직접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대응부서가 자원이 부족하거나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자원부족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통제단에 공급을 요청한다.
- 요구사항은 계획부문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져서 자원관리부로 전달된다.
- 자원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공급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배분한다.
 - 자치단체의 각 부서 내 이용가능 한 자원.
 - 자원동원시스템의 물류 네트워크
 - 자치단체에서 구매 가능한 자원
 - 유관기관들의 협조시스템 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 행정안전부 및 중앙부처 자원동원시스템

○ 통신수단

부 · 반 별	통 신 수 단	보 조 통 신 수 단
자 원 관 리 부 장	무 전 기	개 인 휴 대 전 화
자 원 집 결 반	무 전 기	개 인 휴 대 전 화
현 장 통 제 반	무 전 기	개 인 휴 대 전 화
안 전 관 리 반	무 전 기	개 인 휴 대 전 화
급 식 지 원 반	무 전 기	개 인 휴 대 전 화

가. 자원집결반

-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 단계	운영 내용
대비 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자원관리부의 운영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한다.
대응 1단계 (일상적 사고)	- 자원집결반은 대응1단계에서는 설치되지 않는다. - 필요 시 관할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상황실을 통해 자원지원을 요청한다.
대응 2단계 (중형재난)	- 도 통제단의 자원집결반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각 시·군 통제단 자원집결반이 완전 가동된다. - 필요시 자원대기소가 설치 운영된다.
대응 3단계 (대형재난)	- 도 통제단의 자원집결반이 완전 가동된다. - 운영요원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각 부서의 요청이 있는 자원을 조정 통제한다. - 자원집결반은 자원 현황정보를 자원관리부장에게 보고한다. - 모든 운영요원은 자동적으로 비상소집되어 배치된다.

- 각 운영요원의 비상소집현황을 파악하고 각 직책별 미 응소인원, 교대근무조 편성 등 통제단의 24시간 상시 운영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문제점이 있으면 자원관리부장에게 보고한다.
- 통제단 운영요원의 근무일지를 작성유지하고 이것을 자원관리부에 제출한다.

1) 인력지원임무

- 임무요약
 - 현장 및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추가 소요인력을 비상소집 및 배치한다.
- 주관부서 : 자원관리부(소방행정과), 종합방재센터

세부임무	임무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인력 비상소집 명령 - 자치단체 전역의 인력자원관리 - 대응활동에 할당 가능한 인력 현황 - 임무별로 직원 재배치 	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부(소방행정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적십자사와 협력 - 대응활동 동안 직원들이 당면할 작업문제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내림 	자원관리부(소방행정과장)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 간 대 별	대 응 매 뉴 얼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경고시스템 및 전화연락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발동 - 자원대기반과 인력배치활동을 시작한다. - 자원대기소를 확립한다. - 비상대응에 따른 직원들의 당면문제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개발한다.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관리부의 인력 할당계획에 협조한다. - 자치단체 전체의 자원활당을 재조정한다.
중 기 단 계 이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의 복구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 필요 시 대책본부로 인력관리업무와 권한을 이관한다.

- 통제단 브리핑 양식

- 이용 가능한 인력 현황
- 현 배치인력 현황
-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직원의 수
- 단기, 장기 인력 할당계획

2) 장비지원 임무

- 임무요약

- 현장지휘부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확보 지원한다.
- 장비지원에 대한 모든 요청은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자원이 고갈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
- ① 자원을 요청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② 지역 판매상에게 필요자원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즉시 조달하거나, ③ 소방청 중앙통제단에 필요자원을 요청함으로서 자원요청에 대응한다.

- 주관부서 : 소방감찰팀, 회계장비팀

세 부 임 무	임 무 할 당	지원기관(부서)
조달담당 : 장비 및 물품 구매, 임차계약 수행	회계장비팀 직원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공급담당 : 장비 및 물품 수령, 보관, 배치	회계장비팀 직원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차량담당 : 비상대응차량 및 장비를 수리하고, 연료를 공급	회계장비팀 직원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 응 매 뉴 얼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집결반을 가동한다. 각 담당자들은 각 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및 현장 지휘부와의 교신체계를 확립한다. - 재난으로 파손된 장비의 피해정도를 조사하여 보고한다. - 현장지휘부가 요청한 장비, 물품 등의 구매 및 임차 계약을 체결한다. - 즉시 사용가능한 시군 소유의 공급품 및 장비를 파악한다. - 비상대응 차량 및 장비에 대한 보수 및 서비스를 원활히 한다. - 모든 소방관서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도록 계약자에게 주문을 하고 연료공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할 수 없는 필요물품 및 장비리스트를 중앙통제단에 요청한다. - 필요 시 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장비지원상황을 검토한다. - 필요한 장비 및 물품에 대해 구매계약하고 긴급복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한다. - 대책본부로의 업무인계인수를 준비한다.

○ 통제단 브리핑 양식

자원집결반장은 다음 현황에 대하여 자원관리부장에게 보고한다.

- 조달담당: 회계장비팀 직원
 - 조달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연락체계 이상 유무 및 조달담당 인력 현황
 - 통신체계의 상태 및 유효성
 - 현 작업량 : 구매요구의 유형 및 요구량, 지역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구매요구의 유형 및 요구량(중앙통제단 지원요청의 유형 및 요구량)
- 공급담당: 회계장비팀 직원
 - 공급 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연락체계 이상 유무 및 공급담당 인력 현황
 - 통신체계의 상태 및 유효성
 - 현 작업량 : 발송된 공급품의 유형 및 발송량, 요청되었으나 발송이 불가능한 공급의 유형 및 횟수
 - 즉시 이용가능한 시군 소유의 공급물품 및 장비
- 차량연료담당: 회계장비팀 직원
 - 차량연료 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연락체계 이상 유무, 차량연료담당 인력 및 차량 현황
 - 통신체계의 유효성
 - 현 작업량 : 연료공급 횟수 및 량, 요청된 연료공급 횟수 및 량

○ 자원 요청 및 확보 절차(지침)

구 분	절 차
자원 지원 요청 전 확인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자원요청 및 지원 절차는 모든 긴급구조관련기관에 적용된다. - 긴급복구부의 지휘권이 대책본부로 이관된 경우 또는 긴급복구 외의 일반적 복구 작업과 관련된 자원지원은 대책본부에서 다룬다. - 각 기관(부서)의 독자적인 지원지원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1 : 긴급구조를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와 통제단과 각 지원기관(부서)의 지휘부 와의 통신이 두절될 경우에는 각 소방서 통제단장, 소속기관 지휘자의 허가를 받아 즉시 필요자원을 구입할 수 있다. * 조건2 : 요청된 자원이 소속기관단체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통제단 현장지휘대에 해당자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현장지휘대 내에도 이용가능 자원이 없는 경우, 자원요청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별로 지원집결반으로 이관된다.
자원요청 우선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1 → 인명구조와 관련된 사항 - 우선순위 2 →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 우선순위 3 → 작전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 - 우선순위 4 → 작전 수행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
자원지원 요청 서 작성양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우선순위 - 요청하는 부/반/팀 또는 대의 이름 및 고유번호 - 목록표(부가적 요청물품 포함) - 요청일시 - 연락받을 사람, 연락수단 - 공급업자 및 전화번호(알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및 공급의 경우 : 요청항목의 설명 및 내역, 요구량 및 추정비용 · 전문적이고 개인적 서비스의 경우 : 서비스의 내역 및 작업범위 · 임대장비의 경우 : 장비의 유형, 크기, 성능, 제조사 및 모델, 요청하는 부서의 수, 요구 임차기간
자원조달 절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집결반은 지원지원요청서를 접수한다. - 지원요청의 우선순위대로 분류한다. - 지원요청내용이 현 보유자원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 조달담당은 즉시 지역공급 업자로부터 필요물품을 구입 또는 임차한다. - 요청항목을 지역 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소방청 중앙통제단에 지원지원을 요청 한다. - 청구서,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 예산지급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정리 및 작성한다. - 작성된 문서를 건별로 정리하여 지원관리부장에게 보고한다.

3) 통신지원임무

- 임무요약

통제단 내의 통신활동을 조정 및 지원하며 대응기간동안 지원기관 간 유무선통신이 유지되도록 보조한다.

- 주관(지원)부서 : 소방정보통신팀, KT충남·충북고객본부

세 부 임 무	임 무 할 당	
	주 관 부 서	지 원 부 서
긴급구조 통신체계 복구		
대체 통신체계 마련		
통신수요 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소방정보통신팀	KT충남·충북고객본부
통신자원 및 장비의 할당		
이동통신장비 및 차량의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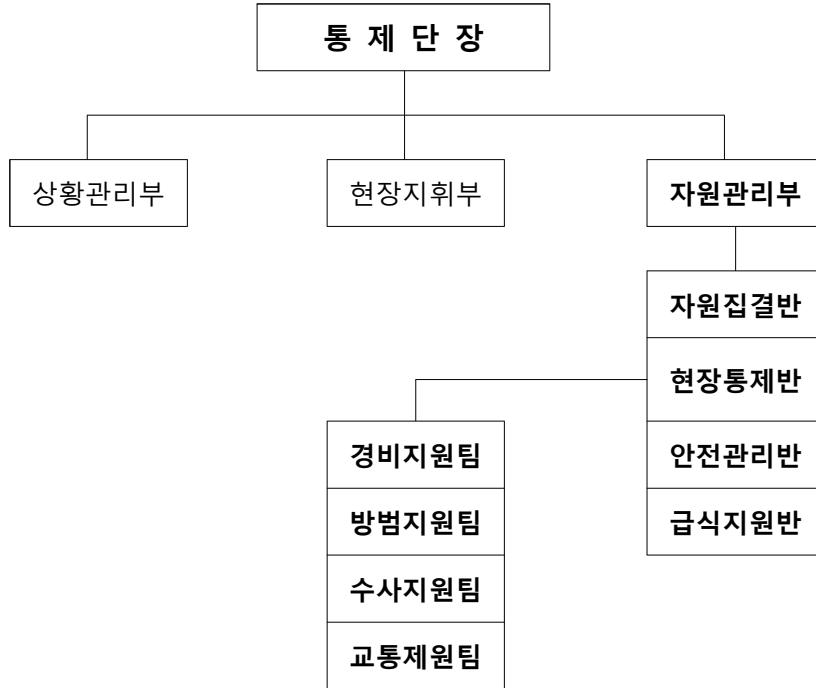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 간 대 별	대 응 매 뉴 얼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정도 평가 * 비상통신체계 긴급복구 우선순위 결정 * 통제단 및 시 대책본부 통신체계 긴급복구를 지원 * KT 등 통신사와 통신체계 긴급복구 공조활동을 수행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체계 긴급복구 계속 * 비상통신체계를 확립 * 각 유관기관(부서)들의 통신체계 복구를 지원 * 재편성된 임시 통신체계를 확립
중 기 단 계 이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통신체계의 복구 지속

- 통제단 브리핑 양식

- 통신체계의 상태(라디오, 전화, 무전기, 휴대폰, 기타)
- 복구의 우선순위 및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
- 이용 가능한 대체 통신수단

나. 현장통제반



1)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 :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경찰서장이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임무
 - 위험하다고 인정된 지역 또는 잠재적으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 각종 시설 및 자원의 경비와 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치안질서 유지에 주력한다.
- 주관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충남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세부임무	임무담당
- 지휘소 설치	소방
- 상황 평가 및 사고현장 봉쇄	소방, 재난안전대책본부, 경찰
- 위협요인 제거	경찰, 소방, 재난안전대책본부
- 주민을 대피시켜야 하는 지역 확인	소방, 재난안전대책본부, 경찰
- 대피시킬 지역 확보	소방, 재난안전대책본부, 경찰, 군
- 주민 대피경로의 구축	경찰, 소방, 재난안전대책본부
- 주민 대피명령을 공포	경찰, 소방, 재난안전대책본부
- 주민소개지역에 대한 접근성 확보	경찰, 군, 소방, 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원부서

세 부 임무	임무 할당
- 주민 대피경로의 확보, 유지	경찰, 소방
- 공공 수송	경찰, 소방, 재난안전대책본부
- 노약자에 대한 보조	재난안전대책본부
- 주요장소들의 대피활동 (병원 학교, 교도소)	재난안전대책본부
- 주민소개지역에 대한 접근을 확보 및 통제	경찰, 군, 소방
- 대피장소 설치 및 유지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지역내부(안쪽) 경계설정 (Police line)	소방, 경찰
- 재난지역 외부 경계설정	경찰, 군
- 수색 및 구조작업 지원	소방, 경찰, 군
- 의료 검시 활동 지원	관할보건소,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 안전유지를 위한 순찰 수행 (피해영향지역 주요 시설들이 이전된 장소)	경찰, 군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 응 매 뉴 얼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배치, 상황평가, 현장봉쇄 - 인근 중요자원 시설(통제단 포함)에 경비력 배치 - 위협요인 완화 - 외곽 경계 설정 - 군중통제활동 - 주민 소개 활동 수행 - 대피시킬 지역 확인 - 주민 대피명령을 공표 - 주민 대피경로의 확보, 유지 - 노약자에 대한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곽 경계 설정 - 수색 및 구조활동 수행 - 의료 검사자 활동 지원 - 주민 대피가 필요한 지역 확인 - 주민 대피경로의 구축 - 주민소개지역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통제 - 공공 수송 - 주요장소들의 대피활동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협요인 완화 - 수색 및 구조활동 수행 - 주민소개 지역 재 점유 - 피난상황 해제 및 귀환허가 공표 - 공공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깥쪽 경계 설정 - 군중통제 절차 확립 - 주민 대피장소 설정 - 대피경로의 확보, 유지 - 주요장소 점유
중 기 단 계 이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로의 확보, 유지 - 공공 수송 - 바깥쪽 경계 설정 - 주민소개 지역 재 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범 및 순찰활동 수행 - 의료 검사자 활동 지원

○ 통제단 보고양식

<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 상황보고 예시 >

- 경비범위(중요 자원·시설과 함께 투입된 경비자원)
- 방범 순찰조 편성 현황
- 주민소개지역의 현재범위(해제지역 및 대피진행지역)
- 주민소개지역의 현재범위(해제지역 및 대피진행지역)
- 대피장소(위치, 수행능력, 시설)
- 대피경로(위치 및 상태)
- 파견조직(인력 및 장비)
- 주민소개지역에 대한 접근통제 상황 요약보고(인원수 및 배치장소)
- 인구추산(주민소개지역의 총인구)
 - 대피 주민 수 추산
 - 대피하지 않고 해당지역에 남아있는 주민 수 추산
- 주민대피활동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추정 시간

○ 대응 및 긴급복구대책

- 긴급대피계획 수립
 -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비상사태 대피계획을 수립 및 유지할 것을 명한다.
 - 교육청은 시내의 모든 학교들에 대하여 대피계획서를 요구한다.
- 모든 대피계획서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대피계획을 포함시킨다.
- 대피명령을 통지 받았으나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들은 대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
- 교도소, 유치장의 경우 수용시설이 주 대피장소가 된다.
-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비상사태의 위험이 완화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후에 재난지역 및 건물에 대한 복귀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자치단체장(통제단장 또는 대책본부 통제관)이 복귀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공표한다.

2) 교통지원팀

- 단계별 운영개념

대 응 단 계	통 합 지 휘(팀) 운 영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의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 이 계획에 따른 훈련 및 연습을 수행한다 -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 절차 및 지침을 개발한다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소방서와 통일된 지휘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현장통제요원을 각 사고현장에 배치한다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경찰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관할소방서와 통일된 지휘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지휘소 운영요원 및 경찰서 통합지휘 연락관을 소방서 통제단, 통합지휘팀에 배치한다 - 필요 시 치안유지, 주민대피, 탐색 및 구조임무를 수행한다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소방본부와 통일된 지휘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지휘소 운영요원을 각 재난현장에 배치한다 - 주변지역 통제를 위한 자원을 각 대응지역에 배치한다 - 경찰청 통합지휘 연락관을 소방본부 통제단 통합지휘팀에 배치한다 - 필요시 통행금지, 치안유지, 주민대피, 탐색 및 구조임무를 수행한다

- 교통지원팀 임무

- 교통지원팀은 재난상황에서 주변 도로상의 군중통제 및 교통통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주관부서 : 충남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세 부 임 무	임 무 할 당
군중통제 활동	충 남 지 방 경 찰 청(경 비 교 통 과)
주민대피 수행	관 할 경 찰 서 장(관 련 부 서)
비상통로(도로) 설정	별 도 지 정
주변 교통 통제	

○ 시간대별 대응 순서

시 간 대 별	대 응 매 뉴 얼	
재난발생 후 (1 ~ 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배치, 상황평가, 현장봉쇄 - 위협요인 완화 - 외곽 경계 설정 - 군중통제활동 - 주민 소개 활동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곽 경계 설정 - 교통 통제지역 바리케이드 설치 - 의료 검사자 활동 지원 - 비상도로 설정
재난발생 후 (12 ~ 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협요인 완화 - 군중통제 절차 확립 - 주민소개 지역 재 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깥쪽 경계 설정 - 교통 통제지역 바리케이드 유지 - 비상도로 설정
재난발생 후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통제지역 바리케이드 유지 - 재난 및 대피지역 주변 교통질서 유지 	

○ 통제단 보고 양식

< 교통지원팀 상황 보고 예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황 요약 2. 최근 수행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무의 우선순위 3. 활동의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무별 부서 배치 * 임무별 지원 부서 4. 요원/장비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중인 요원 수 * 비번인 요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환자 요원 수 * 총 차량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가능 차량 - 임무수행중인 차량 5. 지휘, 통제,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중인 부서 지휘자 * 하위 지휘소의 위치 * 사용 중인 무전기 주파수 및 채널 * 지휘부 참모 및 지휘소의 전화번호
--

- 대응과 복구정책

- 접근통제 지역

- 범죄 및 재난지역에 위험요인에 의한 사상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한다.
- 기자들이 비상대응활동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들의 현장접근을 허가한다.

- 약탈

- 약탈을 자행하는 이는 체포, 구금 및 기소된다.

- 통행금지

-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경찰청장(2이상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발생시)은 재난상황 및 통제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를 하여, 통행금지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 세부대응계획

▣ 기능별 계획 #8(현장통제 계획) 참조

다. 안전관리반

- 안전관리 임무

- 긴급구조활동 수행을 위한 자원을 기능별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동원된 인적·물적 자원의 안전관리 임무수행 담당자를 지정한다.
- 동원된 자원에 대한 PTSD, 심리상태, 보안업무 등 수시 진단한다.

- 주관부서 : 안전보건팀

세부임무	임무담당
현장 안전담당자 지정 및 지정 여부 확인 교대시간 준수여부 점검 위험요인 점검 및 전파 공사상자 발생시 대응방안 준비 방면 연락관 지정현황 기록관	안전보건팀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 간 대 별	대 응 순 서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대기소로부터 자원현황 파악 - 현장 안전담당자 지정여부 확인 및 미지정 시 즉시 지정 - 자원 안전점검 결과 통제단장에게 보고 및 각 부, 반에 전파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원 공사상자 발생시 즉각 대응조치 - 투입자원 심리상태 수시 진단 및 통제단장 보고 - 사상자 피해지원, 장례지원, 임시거주 사항 파악
중 기 단 계 이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업무 계속 - 사상자 피해지원 등 안전관리관리 서비스 지속성 유지 - 지역별 긴급복구 작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 필요 시 대체 인력 투입

라. 급식지원반

○ 급식지원 임무

- 종합방재센터 또는 현장지휘소에 통제단 업무시설을 설치 점검하고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공급, 급식, 숙식, 인원관리 등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 주관부서 : 소방행정과

세 부 임 무	임 무 할 당
운영지원반 가동	의 용 소 방 팀
통제단 운영요원관리	회 계 장 비 팀
비상소집 및 응소기록	소 방 행 정 팀
운영요원 급식 및 숙박 등 서비스	회 계 장 비 팀
통제단 보안관리	소 방 감 칠 팀
언론(방송) 모니터	예 방 교 육 팀 장
현장지휘소 안전	안 전 보 건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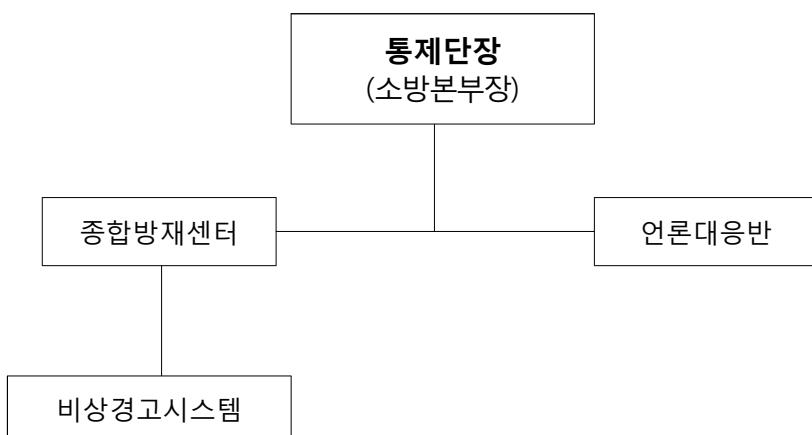
제2절 비상경고 계획(#2)

1. 목적

도민보호를 위한 비상경고, 재난상황 통보, 대중전파,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을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비상경고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 언론대응반, 비상경고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 종합방재센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비상경고를 발령하고, 비상경고메시지를 전파하는데 대하여 책임을 지는 비상경고기관이다. 비상경고기관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된다.
- 언론대응반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비상경고메시지 전파를 위하여 비상경고 발령을 결정하면,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하여 통제단장으로부터 메시지 전파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 비상경고시스템은 도민들에게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렌, 현장방문(방송차량 순회방송 포함) 및 유인물 배포, 비상방송시스템, 전화 및 팩스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 응 단 계	활 동 개 요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 비상경고시스템은 가동되지 않는다.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 비상경고시스템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 비상경고시스템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재난대비 임무

- 종합방재센터는 재난을 대비한 일상적 업무로써,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경고임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훈련시키고, 임무달성을 위한 필요자원을 확보한다.
- 재난이 발생한 경우 비상경고시스템 작동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스템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4.2 재난신고의 접수

- 종합방재센터에서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 도민의 신고전화
도민들은 목격한 사고를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
 - 타 기관으로부터의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 종합방재센터로 즉시 통보한다.
 - 기상청의 기상예보
기상예보에는 단기, 중기, 장기예보 등 일기예보와 주의보, 경보 등 기상특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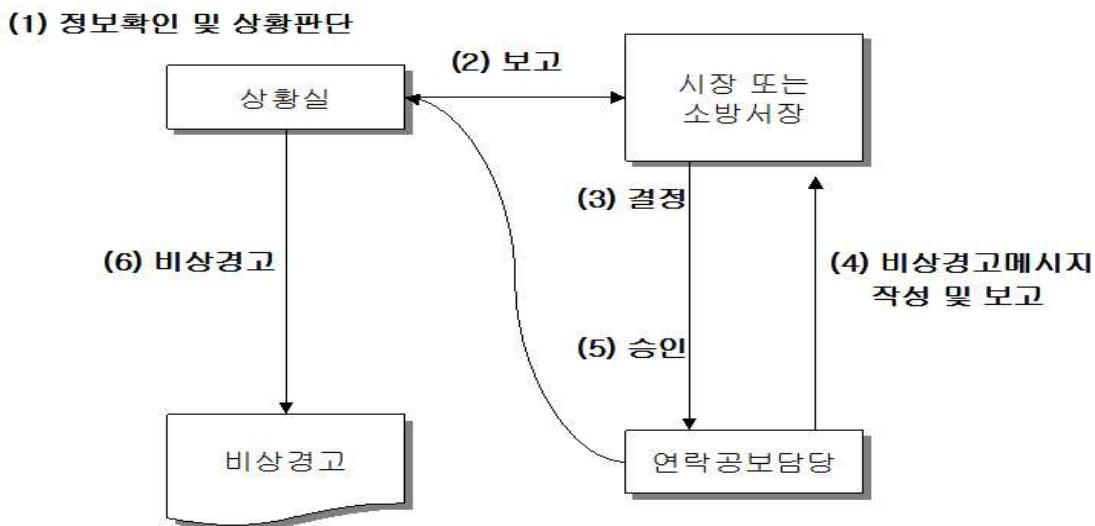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는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종합방재센터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이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는 위험 상황은 악천후에 대한 주의보, 경보 등 기상특보 상황이다.

종합방재센터는 태풍, 홍수 등 주의보 발령시부터 기상청과 HOT LINE을 유지하고 실시간 기상정보를 입수하여 비상경고준비를 한다.

4.3 비상경고 발령

- 종합방재센터는 재난신고를 접수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상경고를 발령한다.

< 비상경고 발령 절차 >



4.3.1 정보확인 및 상황판단

- 종합방재센터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한다.

4.3.2 보고

- 종합방재센터는 재난상황을 시장(긴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종합방재센터장은 긴급한 주민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될 때에는 선 비상경고발령 후 보고할 수 있다.
- 종합방재센터는 지속적으로 선착대의 장과 통신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대응반에게 보고한다.(긴급시 또는 대중정보센터가 설치될 때까지 상황책임관이 언론 대응반의 임무를 대행)

4.3.3 결정

- 재난안전대책본부장(긴급시 통제단장)은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비상경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종합방재센터 및 통제단장에게 통보한다.

4.3.4 비상경고메시지 작성 및 보고

- 종합방재센터는 비상경고시스템 가동을 준비하고, 언론대응반은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비상경고메시지는 예측이 가능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언론대응반으로 지정된 자가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하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종합방재센터장이 신속하게 작성한다.

4.3.5 승인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비상경고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다.(긴급 시 통제단장)
- 언론대응반은 비상경고메시지를 119종합상황실로 보낸다.

4.3.6 비상경고

- 종합방재센터는 비상경고를 발령하고 비상경고메시지를 도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비상경고시스템을 가동한다.

4.4 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원기관 관련공무원 비상통지

- 비상경고발령이 결정되면, 종합방재센터는 자동비상경보시스템, 전화, 팩스, E-mail,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비상소집통지를 시작한다.

4.5 인접 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통지

- 두 개 이상의 소방서 관할구역에 걸친 대응3단계의 재난발생 시, 신고를 접수한 종합방재센터는 직접 신고를 접수하지 못한 인접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로 신고 내용을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여 통지한다.
- 통지를 받은 인접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는 관할구역 내 도민과 공무원들에게 비상경고를 발령하는 절차를 취한다.

4.6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통지

- 종합방재센터는 학교, 쇼핑몰, 병원 등 옥외의 비상경고를 듣지 못하는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통지를 시작한다. 비상경고메시지는 팩스 및 전화,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형화재취약대상의 관계자에게 전송된다.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통지는 인접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에 대한 통지와 동시에

실시한다. 상황에 따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면, 인접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에 대한 통지를 완료한 후 실시한다.

- 신속한 통지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사전 작성한다.

4.7 일반 도민에 대한 비상경고

- 일반 도민들에게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

4.7.1 사이렌 및 스피커

- 주민들에게 경고를 전파할 수 있는 옥외사이렌이 있다. 비상경고 발령 시 사이렌을 작동하는 절차는 충청남도의 지침에 따른다.

4.7.2 소방차와 경찰순찰차 등의 확성기 및 사이렌

- 소방차와 경찰순찰차 등의 확성기 및 사이렌은 옥외사이렌의 음향 도달범위 밖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비상경고메시지를 전파한다.
- 한 대의 차량이 비상경고의 신호로 사이렌을 켜고 지역을 순찰하며, 그 뒤에 두 번째 차량이 따른다. 차량은 매 500미터(예시)마다 정지해서 확성기를 통하여 비상경고를 전달하고 진행한다. 비상경고 전파를 위한 각 차량의 순찰경로 및 시간은 소방서와 경찰서가 사전 협약한다.

4.7.3 현장방문 및 유인물 배포

- 상황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 등이 재난예상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비상시 행동요령이 포함된 비상경고통지문을 모든 집집마다 전달한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 비상경고통지문은 예측이 가능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언론대응반장으로 지정된자가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하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종합방재센터장이 신속하게 작성한다.

4.7.4 비상방송시스템

- 비상방송시스템은 다음의 두 경우에 간단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사용된다.
 - 재난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피해를 당한 도민들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 비상방송시스템의 실제 가동이나 시험 가동은 시장 또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비상방송시스템 가동이 승인되면 언론대응반은 1차 재난방송국에 제공할 비상경고 메시지를 작성한다. 메시지는 시장(긴급 시 통제단장)이 확인한 후 승인한다. 종합방재 센터는 비상방송시스템을 통해 1차 재난방송국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1차 재난방송국은 지역 내의 타 방송국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 대응3단계에 해당하는 재난상황에서는 비상발전장치가 없는 지방 라디오방송국이나 TV 방송국은 비상방송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없다.

4.7.5 비상경고 문자 발송

-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면 종합방재센터는 재난상황실에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한다.

4.8 특별한 경우의 비상경고

- 종합방재센터는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 비상경고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상경고를 알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제3절 대중정보 계획(#3)

1. 목적

언론매체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재난상황 및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공공정보제공,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통제를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대중정보 제공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언론대응반, 대중정보센터,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 등으로 구성된다. 언론대응반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대중정보센터에 방문자관리팀, 실종자정보팀, 유언비어통제팀, 자원봉사자등록소 등을 설치한다.
- 대중정보 제공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상시 운영되며, 운영요원들은 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대중정보 조직의 운영요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중정보센터 설치 후
언론대응반	지역 통제단장 지정	예방 교육팀장
방문자관리팀	지역 통제단장 지정	예방 교육팀장 종합방재센터·서 상황실
실종자정보팀	지역 통제단장 지정	예방 교육팀장 종합방재센터·서 상황실
유언비어통제팀	지역 통제단장 지정	예방 교육팀장 종합방재센터·서 상황실
자원봉사자등록소	지역 통제단장 지정	예방 교육팀장 종합방재센터·서 상황실

- 언론대응반장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으며, 대중정보센터를 통하여 하위 4개 팀의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 재난상황에서 정보수집, 비상경고 발령 및 비상경고메시지 작성, 대중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도자료의 작성 및 기자회견 실시 등 대중정보 제공에 관한 모든 업무는 언론대응반장이 조정한다.
- 언론대응반장은 대중정보센터의 설치여부 및 규모(하위 4개 팀 각각의 설치 여부)를 판단

하고,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대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책임이 있다.

- 종합방재센터는 재난발생 초기의 상황을 신속하게 시장 및 언론대응반장으로 지정된 자에게 보고하여 주민보호조치 등에 관한 비상경고가 신속히 발령되도록 한다.
- 119종합상황실의 상황책임관은 긴급시 언론대응반으로 지정된 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3. 대응단계별 대중정보기능의 가동범위

대 응 단 계	활 동 개 요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대중교육 및 재난대비 임무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 대중정보센터는 설치·운영되지 않는다.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 대중정보센터는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 대중정보센터는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언론대응반

- 언론대응반은 재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시기에 언론매체와 유관 기관에게 확인된 정보를 제공한다.
- 언론대응반은 언론매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응2단계의 재난이 발생하면 대중정보 센터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대응3단계의 재난이 발생하면 대중 정보센터 기능을 완전 가동한다.

4.1.1 대중교육 및 재난대비 임무

- 언론대응반은 관할지역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와 재난상황별 행동요령을 기술한 대중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중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 언론대응반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중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와 임무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언론매체·공공기관·민간기관·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시 대중정보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1.2 비상경고메시지 작성

- 도지사(긴급 시 통제단장)이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비상경고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을 결정하면, 언론대응반은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하고 도지사(긴급 시 통제단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 비상방송시스템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전파하는 비상경고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안전수칙 : 해야 할 것/하지 말아야 할 것
 - (학부모를 위한)학교의 상황에 관한 정보(학기 중인 경우)
 - 위험하고 오염된 접근금지 지역
 - 야간 통행금지 실시 여부
 - 도로, 다리, 고속도로의 고가 교차로, 댐의 상황 그리고 다른 대체 경로
 -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피경로 및 행동요령
 -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일정 및 행동요령
 - 식량과 안전한 식수가 있는 위치
 - 보호시설, 진료시설, 병원의 위치 및 상황
 -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
 - 화재에 대비한 지시사항
 - 긴급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사용자제 요청)
 - 시설이용, 공중위생, 시설물 폐쇄에 관한 지시사항과 예방조치
 - (필요시) 기상특보사항
- 녹음된 비상경고메시지를 매 시간 또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변경한다.

4.1.3 대중정보센터의 설치

- 언론대응반은 대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한다. 대중정보 센터는 미리 지정된 운영요원으로 구성된다. 언론대응반으로 지정된 자는 대중정보 센터의 설치를 위해 대중정보 관련 교육수료자를 중심으로 최소 인원수로 결정하여 배치한다.
- 언론대응반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중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신속하게 비상소집하고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 언론대응반은 유선전화 및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할 때 대중정보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통신수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대중정보센터는 재난의 규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과 협업하여 다음의 하위 4개의 팀으로 구성할수 있다.
 - 방문자관리팀
 - 실종자정보팀
 - 유언비어통제팀
 - 자원봉사자등록소

4.1.4 정보의 수집

- 재난발생시 언론대응반은 긴급구조통제단의 상황관리부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와 업무연락 등을 검토하여 재난현장상황 및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지휘부로부터 각 기관의 대응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재난상황동안 언론대응반은 다음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확인·통제하고 배포한다.

분 야	정 보 출 처	대중에게 알릴 사항
전 기 수 도 가 스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시·군 상수도사업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누출 여부 - 전기/수도의 공급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물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 -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공급중단 시기
통 신 수 단	KT충남·충북고객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급하지 않는 전화 및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 - 119 대체 전화번호 제시
수 송 수 단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시·군 청 연안여객터미널 철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도로 - 공무원의 응소장소 - 여객선 운항 여부 - 지하철 운행 여부 및 시간표 - 기차 운행 여부 및 시간표
의 료 및 보 건 시 설	병원, 보건소 응급의료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 - 적십자가 설치한 피난장소 및 재난 복지안내소의 위치 - 정신보건, 복리서비스 연락처
피 난 시 설	대규모피난장소 임시피난장소 식량배급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사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곳 - 임시 피난장소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및 지침 사항 -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장소

4.1.5 보도자료 작성 및 정보제공

- 인명구조 상황과 재난현장에서의 행동요령 및 지시사항에 관한 정보는 다른 정보에 우선하여 도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언론대응반은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내용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언론대응반은 재난상황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시 언론매체에 배포한다.
- 기자회견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기자회견과 필요시 실시되는 특별기자회견이 있다. 모든 기자회견은 대중정보센터에서 열린다. 언론대응반은 기자회견시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 언론대응반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시장 또는 통제단장으로부터 자료 배포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또는 통제단장은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배포를 승인 한다.
- 보도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포 함 사 항	내 용	
사 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시각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부상자의 수 - 사망자에 대한 처리 사항(각 사망자별 임시영안소 및 장례식장) - 부상자의 부상정도 및 수용 병원 -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지명도 	
재 산 피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만 발표, 구체적 액수는 조사 후 발표 - 건물유형 등에 관련해서 기술자들의 견해(지진의 경우) - 자치단체에서 손실된 재산의 중요성 - 추가적으로 위험상태에 있는 재산 - 동일지역에서 발생한 동일 유형의 재난현황 	
발 생 원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조사위원회나 공신력 있는 관계기관에서 판결하기 전까지는 조사중인 것으로 발표 - 최초 신고자, 목격자의 설명과 선착대원의 초기상황 설명, 재난상황이 발견된 경로/방법 - 재난발생 이전에 있었던 위험징후 	
재 산 보 존 및 인 명 구 조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에 참여한 대원의 수 - 사용된 장비 - 재난확대 방지 조치 - 애완동물과 다른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 현장에 있는 지휘관 또는 유명인사 -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 재산보존 조치 - 영웅적 활동 사례 	
기타 복구상황에 관 한 정 보		
전 화 번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자정보팀·유언비어통제팀·자원봉사자등록소 등 - 기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화번호 	

4.1.6 재난지역 내에서의 현장취재 허가

- 언론대응반은 재난지역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고 출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대피경계 반장과 협의하여 통제단장의 승인을 받아 재난지역 내에서의 현장취재를 허가한다.
- 공동취재단이 재난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언론대응반에서 담당한다.

4.2 대중정보센터

- 대중정보센터는 기자회견이 열리며 각 언론사 기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장소이다.
- 대중정보센터는 자연재해난시 종합방재센터 또는 지휘작전실에, 사회재난시에는 현장 지휘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재난으로 인하여 충청남도소방본부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곳에 대중정보센터가 설치된다. 대중정보센터의 설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은 종합방재센터 대체장소와 동일하다.
 - 대체장소 : 16개 소방서
- 도 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지 않는 경우 시·군청 총무부서는 대중정보센터의 행정 지원을 하고 현장통제반(경비지원팀)은 대중정보센터 출입자들에게 출입증 발급·출입 일지 작성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중정보센터의 보안을 유지한다.
- 대중정보센터에는 재난상황에 따라 방문자관리팀, 실종자정보팀, 유언비어통제팀, 자원봉사자등록소 등이 설치·운영된다.

4.2.1 방문자관리팀

- 방문자관리팀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재난전문가 및 다른 관할지역에서 온 공무원 등 공식적인 방문자와 언론매체 관계자들의 방문일정을 관리한다.
- 공식적인 방문자와 언론매체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브리핑을 실시하고 통제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현장통제반 경비지원팀(경찰청·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통제단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허가증을 발급한다.

- 공동취재단이 현장취재를 위해 재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취재일정을 조정하고 안내자를 지정한다. 재난현장의 자리에 익숙한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담당할 수 있다. 재난지역으로 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출입허가증을 발급한다.
- 상황에 따라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통제팀의 업무를 지원한다.

4.2.2 실종자정보팀

- 실종자정보팀은 실종자 신고를 접수하고 사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각 응급의료소, 병원, 경찰서는 실종자정보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협조한다.
- 언론매체에 실종자정보팀의 전화번호를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2.3 유언비어통제팀

- 유언비어통제팀은 도민들과 언론매체가 전화로 문의하는 의문사항을 접수하고 답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특별한 의문사항이 있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민들과 언론매체가 의문사항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용전화를 확보한다.
- 유언비어통제팀은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잘못된 정보를 모니터하고 수정한다. 재난상황에 관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를 모니터하는데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기록양식)를 사용한다.
- 시·군 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경우 유언비어통제팀의 설치를 위해 지자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3항

제16조 제3항 : 시·군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긴급구조현장지휘)에 따른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유언비어통제팀의 전화번호를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언론매체를 통하여 도민에게 홍보한다.

4.2.4 자원봉사자등록소

- 자원봉사자등록소는 재난 시 자원봉사자들의 등록을 받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시·군 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경우 자원봉사자등록소의 설치를 위해 지자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 자원봉사자등록소의 전화번호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4.3 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 종합방재센터는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초기 비상경고를 발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상황팀장은 긴급시 또는 대중정보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언론대응반의 임무를 대행한다.
- 종합방재센터로 재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팀장은 신고내용을 평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상황팀장은 긴급한 주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재난상황의 경우에는 비상경고 발령 후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종합방재센터는 기능별 계획 #2(비상경고 계획)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비상경고를 발령하고 언론대응반이 작성한 비상경고메시지를 도민에게 전파한다.

제4절 피해상황분석 계획(#4)

1. 목적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상황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응조치와 추가 지원소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본부의 피해보상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현장조사반은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지휘부(화재관리반)의 일부로 운영된다.
- 소방관서 현장대응팀장은 재난발생시 현장조사반장이 된다.
-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대응3단계)하는 경우 본부 현장조사반장은 대응구역별 상황분석 자료를 취합·분석하고 대응구역별 현장조사반을 조정·통제한다.
- 국지적(대응2단계)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구역별 현장조사반장이 피해상황을 분석한다.(본부 현장조사반은 필요시 지원)
- 현장조사반은 재난상황 발생이 발생하면 현장지휘부장의 판단에 따라 그 운영규모를 결정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 현장조사반은 재난상황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 현장조사반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분석정보를 상황보고반과 언론대응반에 제공한다.
- 상황관리반은 현장조사반의 분석정보에 따라 필요자원을 평가하고 작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제단 각 부에 배포한다.
- 상황분석 결과는 외부지원(인접 자치단체나 소방청 및 행정안전부 등)요청에 필요한 의사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 현장조사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현장조사반은 정보수집 활동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요원들로 구성된다.
 - 국지적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구역별 상황분석반이 구성되고,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본부 및 각 대응구역별 피해상황분석반이 구성된다.

- 발생 재난유형에 적합한 전문가를 추가로 편입한다.
- 현장조사반은 재난유형별 원인 및 피해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상시 확보·관리하여야 하며 상황에 적합하도록 그 운영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 재난유형에 따른 전문가팀 동원 : 부록 자원동원매뉴얼 참조
- 응원협정 체결기관은 다음과 같다.

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현장조사반(본부)	현장조사팀장 (부재 시 : 조정관)	충남지방경찰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현장조사반(소방서) : 원인 및 피해조사	소방서 현장대응팀장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 단계	활동 개요
대비 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재난대비 임무
대응 1 단계 (일상적 사고)	- 현장조사반은 필요에 따라 가동된다.
대응 2 단계 (중형 재난)	- 현장조사반은 대응구역별로 가동된다.
대응 3 단계 (대형 재난)	- 현장조사반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재난발생 우려시 조사

- 현장조사반은 홍수나 태풍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재난상황인 경우 재난위험반경 내 위험지역의 범위확인, 지도상의 표시, 상황기록, 대응자원의 출동태세확인 등과 같은 사전 위험성 분석활동을 실시한다.

- 사전 위험성 분석활동은 현장조사반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 예상피해 분석활동은 현장조사반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 현장조사반장은 조사된 사항을 보고양식(부록, 최초보고서)에 의거 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상황보고반에 정보를 전달한다.
- 상황보고반은 현장지휘부, 자원관리부에 재난상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4.2 초기 조사

- 국지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구역별 상황분석반은 상황관리부장으로부터 초기 브리핑자료와 대응방침 자료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선착대나 경찰로부터 재난상황에 관한 초기정보를 수집한다.
-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본부 현장조사반은 대응구역별 현장조사반이 보고한 정보를 취합·분석한다.
- 현장조사반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록한다.
- 현장조사반장은 피해를 분석·평가하고, 상황보고반장은 상황보고서를 작성한다.
- 현장조사반장은 재난상황보고서를 상황관리부장을 통하여 통합지휘 회의에 제출하고, 상황보고반, 현장지휘부에 현장상황정보를 전달한다.
- 결재된 재난상황보고서는 종합방재센터 및 상황보고반에 보내지고 전달된 정보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에 전파된다.
- 각 팀들은 초기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피해조사편람(부록 참조)에 포함되어 있는 절차와 형식을 활용한다.

4.3 재난피해 상황정보 수집

- 현장조사반장은 사유재산피해(집, 공장, 기타 사업체 등) 조사와 위한 팀과 공공재산피해(다리, 도로, 학교 등)조사를 위한 팀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현장조사반장은 재난상황을 파악하여 재난유형별 상황분석 전문가팀의 보충을 결정한다.
- 각 팀들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피해조사편람(첨부 0)에 포함되어 있는 절차와 형식을 활용한다.

4.4 최초보고

- 최초보고는 보고서식(부록 참조)으로 작성한다.
- 상황관리부장(긴급시 종합방재센터)은 잠재적 재난 및 발생된 재난의 초기상황에 관한 초기 정보를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상황관리반장은 결재된 상황보고서를 종합방재센터를 거쳐 시도지사와 소방청 등에 보고한다.

4.5 재난사태 선포

- 재난상황이 전 지역에 걸쳐 발생하여 전체적인 자원운용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제단장은 현장조사반의 보고서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한다.
- 현장조사반장은 도지사에게 지역재난 선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제공한다.
- 도지사는 상황보고서와 추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역재난을 선포한다.

4.6 지원요청

- 재난상황이 지역의 자원으로 대응과 복구가 어려워 인접 자치단체나 중앙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 상황관리부장(상황분석반장)은 지원요청의 필요성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지원요청은 상황에 따라 최초보고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추가자원이 필요할 때 별도의 지원요청서(부록 참조)를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다.
- 현장조사반은 재난상황의 작성,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세한 설명서를 작성한다.

4.7 정보의 표시

- 현장조사반은 재난발생 예측지역, 실재 재난발생 지점, 시설물, 피난로, 긴급대피 지역(소), 피해를 입은 사람 수, 피해정도,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등의 정보들을 지도상에 표시한다.

- 상황판에는 상황평가, 피해를 입은 집, 건물의 수, 피해를 입거나 폐쇄된 도로, 다리, 긴급대피소 대피인원 등을 포함한 현재의 재난상황을 표시한다.
- 정보제공을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최근정보로 갱신하여 표시한다.
- 정보표시 작업은 현장조사반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4.8 대중정보 제공

- 현장조사반은 통제단 언론대응반이 대중정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보고서(부록 참조, 대중정보보고서)를 작성한다.
- 이 보고서는 공식적인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재난관련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대중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은 상황관리부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4.9 기록유지 및 최종보고서 준비

- 현장조사반은 긴급구조대응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정리하고, 최종보고서(부록 참조, 피해상황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 여기에는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현장조사반장이 담당한다.

4.10 재난자료의 제출 및 확인 준비

- 상황보고반은 피해상황 최종조사보고서(부록 참조)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장 및 중앙 통제단 등에 제출한다.
- 상황분석반은 추후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작업일지, 비디오, 사진 등을 보관한다.
- 상황분석반은 소방청 및 대책본부 합동조사단이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여 각종 피해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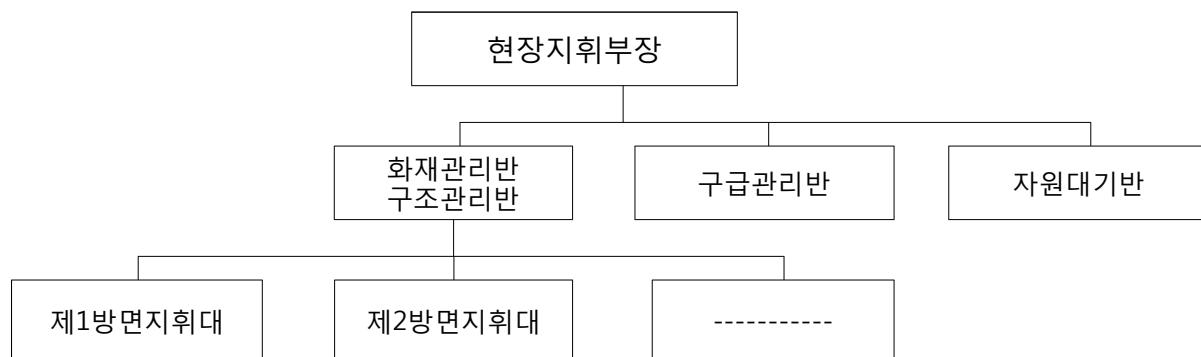
제5절 구조·진압 계획(#5)

- 기능별 계획 #5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서 규정된 인명구조, 화재진압분야의 정책과 임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별 계획 중 하나이다.
- 이 계획은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임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지정하고 임무를 할당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계획은 긴급구조통제단장(화재관리반장 및 구조관리반장)이 작성하고, 구조 진압분야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작성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목적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위험상황진압을 위한 대비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재난 발생 초기 대응구역별 소방자원은 소방서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이 조정 통제한다.
- 소방서의 현장지휘대 화재진압반 및 인명구조반은 모든 소방자원의 조정통제를 위해 24시간 교대근무체제를 유지한다.
- 대응2단계, 또는 대응3단계의 재난 발생시 2 이상의 소방서 현장지휘대 화재진압반 및 인명구조반을 통합지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본부 현장지휘부 화재관리반 및 구조관리반이 각 대응구역별 현장지휘대 화재진압반 및 인명구조반을 조정 통제한다.

- 각 현장지휘대장 화재진압반 및 인명구조반은 현장에서 가장 최신의 그리고 정확한 상황정보를 확보한다.
- 현장지휘대 화재진압반 및 인명구조반은 종합방재센터(119종합상황실)과 상시 통신 체계를 유지한다.
- 현장지휘대 화재진압반 및 인명구조반은 진행 중 혹은 계획 중인 대응활동, 배치되었거나 배치계획중인 소방자원(인력·장비)에 대하여 종합방재센터에 보고한다.
- 현장지휘대 화재진압반 및 인명구조반은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시 추가 자원동원을 요청하여 재난지역의 전반적 소방자원을 배치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기타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현장지휘SOP에 따른다.
- 이 기능별계획을 운영하는 소방본부 화재관리반 및 인명구조반의 책임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응원협정 체결기관단체

구분(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현장지휘부장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
화재진압반	소방본부 화재대책팀장	
인명구조반	소방본부 구조팀장	

- 구조진압반 조직의 운영요원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응단계 2, 3	
		A조	B조
화재진압반장	소방서 현장대응팀장	소방본부 화재대책팀장	소방서 화재대책과장 (현장대응단장)
인명구조반장	소방서 구조구급센터장	구조팀장	구조대장

- 소방관서는 관할구역내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비상상황이 관할구역 경계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였다면 소방관서장은 소방당국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 응 단 계	활 동 개 요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긴급구조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가 일상적인 소방력으로 대응한다.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 소방서 구조진압반이 완전 가동되고, 인근 소방서 구조진압반과 소방본부 구조관리반이 부분 가동된다.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 소방본부 구조관리반이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수색 및 구조

- 소방관서는 인명수색 및 구조활동을 조정 통제할 책임이 있다.
- 인명수색 및 구조를 위한 초기대응과 전문적 대응은 119구조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19안전센터가 수행한다.
- 이 계획에 참가하는 각 대별 기관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수색대 : 소방서 자원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으로 위험에 처한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 구조대 : 구조장비를 사용하고 수동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등 특수한 상황의 전문적 구조를 담당한다.
 - 구급대 : 소방서 소속 구급대와 기타 구급 지원기관 자원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소 자원으로 사고현장에서 사상자 분류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장비구조대 : 소방관서 소속 굴삭기 및 지원기관의 중장비로 구성된 특수자원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장해물 제거, 건축물 안전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기타 수색 및 구조임무수행은 현장지휘SOP에 따라 수행된다.

4.2 안전점검

-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는 임시수용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 소방특별조사반 1인과 건물안전진단 전문가 1인, 전기전문가 1인, 가스전문가 1인

으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과 주요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종합적 안전진단업무는 대책본부의 조정통제에 따라 소방자원을 지원한다.
- 기타 팀 구성, 배치, 임무수행절차 등은 현장지휘SOP에 따라 수행된다.

4.3 비상발전 및 조명

- 한국전력공사는 비상발전 및 조명설비의 사용을 조정하고 선점하는데 주도적인 책임 기관이다.
-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서의 비상발전 및 조명설비 자원도 사용된다.
-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는 비상발전기, 휴대용 조명등 등을 갖추고 있다.
- 기타 비상발전 및 조명설비의 배치 및 사용절차 등은 현장지휘 SOP에 따라 수행된다.
- 기타 팀 구성, 배치, 임무수행절차 등은 현장지휘 SOP에 따라 수행된다.

4.4 가스 차단

- 가스안전공사(도시가스 공급자 등)는 재난시 가스를 차단하는데 주도적인 책임기관이다.
- 소방관서는 재난현장의 초동대응기관으로 재난초기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가스안전공사의 긴급복구팀이 현장에 도착하면 차단한 가스밸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5 오염제독

- 소방관서는 오염지역의 제독을 실시하는 책임기관을 지원한다.
- 구체적 임무수행방법과 절차는 재난유형별 계획(유해화학물질 재난)에 따라 수행한다.

4.6 방사능 탐지

- 각 대응구역별 소방관서는 훈련된 대원과 방사능재난 대응장비를 갖추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재난에 대한 초동 현장대응은 소방관서의 책임이다.
- 구체적 임무수행방법과 절차는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방사능재난)에 따라 수행한다.

4.7 고립주민 원조

- 각 대응구역별 소방관서는 도로유실, 폭설, 홍수 등으로 고립된 개인 또는 주민이 음식이나 약품의 보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책임이 있다.
- 긴급구조 단계에서 이러한 고립주민 원조임무는 구급관리반장과 조정한다.

4.8 자원집결지 운영

- 설치 목적 및 책임
 - 집결지는 각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자원집결, 임무할당, 장비수거지점, 기타 안전 지대로의 대피시 인원점검을 위한 거점 등의 기능을 한다.
 - 각 소방서 자원관리부장은 집결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다수의 소방서가 통합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원집결지 운영책임은 소방본부 자원관리부장에 있다.
 - 집결지 운영시 집결지 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성여부에 대한 임무를 부여한다.
- 설치조건
 - 재난발생시 다수의 소방서가 대응하는 경우
 - 하나의 소방서가 관할구역 외에서 다수의 119안전센터 및 구조구급센터 자원의 합류가 필요한 경우
- 설치위치
 - 집결지는 접근성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활동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 기타 팀 구성, 배치, 임무수행절차 등은 현장지휘 SOP에 따라 수행된다.

4.9 응급의료

- 각 대응구역별 소방관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 다수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의료소장이 조정 통제한다.
- 세부대응계획
 - ▣ 기능별 계획 #6(응급의료 계획) 참조

제6절 응급의료 계획(#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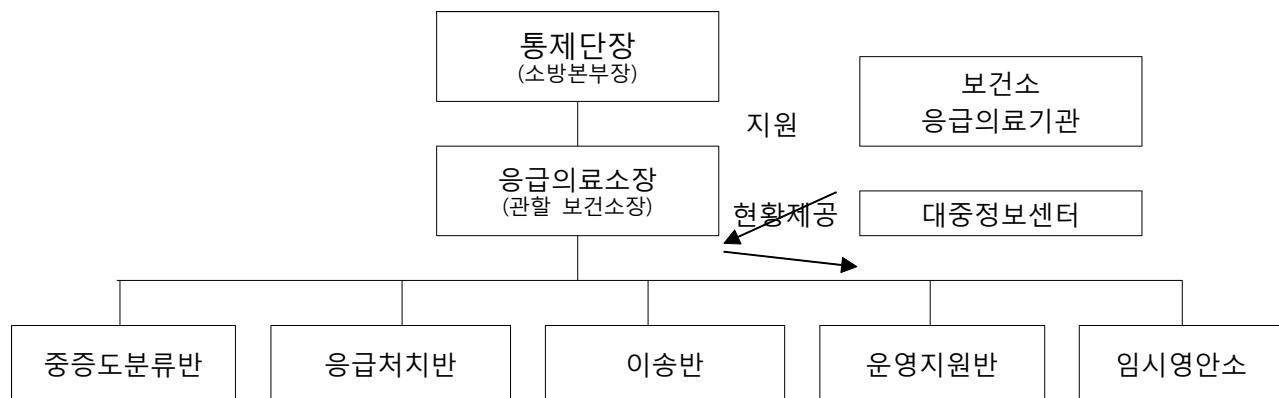
- 기능별 계획 #6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서 규정된 응급의료 대응 방침과 임무수행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별 계획 중 하나이다.
- 이 계획의 대응절차는 대량 사상자 발생의 처리절차를 다루고 이 절차는 다른 기능별 계획 및 기본계획상의 지휘통제절차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이 계획은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응급의료소장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1. 목적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의 조직적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해 재난 희생자들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현장 응급의료소 >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는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건소장은 응급의료소의 소장이 되며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 · 감독한다.
- 응급의료소장으로 지정된 자는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활동을 위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제정된 절차에 따라 병원 및 단체들과의 연락을 위한 연락관을 지정하며, 재난 희생자들에 대한 응급의료 활동 및 다른 지원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지원기관들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시 자원을 지원 하며 응급의료소장의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책임 및 지원기관단체

응급의료대응 책임기관	응급의료대응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초기 : 관할 소방서 - 응급의료소 운영 시 : 관할 보건소장 - 부재 시 임무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응급의료센터장 → 응급의료지원센터장 → 지역응급의료센터장 →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선임 의사 → 소방본부 공중보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 충남지방경찰청 - 육군 제32사단, 공군 제20전투비행단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운영기관 - 각 대응구역별 응급의료소 참여 기관단체

- 운영요원

반 별	운 영 요 원	
	소 방 팀	의 료 팀
중 증 도 분 류 반		
응 급 처 치 반		
이 송 반	관할 소방서 지정인원	각 대응구역별 응급의료소장이 조직·운영
운 영 지 원 반		
임 시 영 안 소		

- 대응3단계에 있어서 운영요원

반 별	운 영 요 원	
	소 방 팀	의 료 팀
증 증 도 분 류 반		
응 급 처 치 반		
이 송 반	구 조 관리 반 장(원) 공 중 보 건 의 구 급 대 원	- 보건소 신속대응반 : 의료인 2~3인 행정요원 2인 이상 - DMAT : 1개 팀당 의사 1인 간호사/응급구조사 2인 행정요원 1인으로 4명 ※ 의료소장은 각 반별 요원 적정 배치
운 영 지 원 반		
임 시 영 안 소		

- 임무요약

- 응급의료소는 재난발생시 충청남도 관할구역내의 응급의료 업무를 통합 조정 통제 할 책임이 있다.
- 응급의료소는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자원공급 및 임시영안소 등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다.
- 재난발생시 모든 응급의료 지원기관들은 필요한 지원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긴급구조통제단 및 종합방재센터와 통신체계를 유지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 응 단 계	활 동 개 요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단체별 일상적인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한다. - 응급의료분야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 재난 시 대응절차를 개발한다.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방재센터의 통신연락에 따라 응급의료팀(구급차)이 사고현장에 급파된다. - 각 구급대는 현장도착시 소방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조정통제를 받아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중증도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임시영안소는 필요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소방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구성)한다. - 각 구급대 및 구급관리반은 현장응급의료소에 급파된다. - 각 반은 현장도착 시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정통제를 받아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이송반은 자동으로 가동되고, 중증도분류반, 응급처치반, 운영지원반, 임시영안소는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통합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구성)한다. - 소방본부 통합 응급의료소는 응급의료소 중에서 통제단장(소방본부 응급의료팀장)이 지정운영한다. - 통합 응급의료소 각 반은 관할구역별 응급의료소에 급파된다. - 각 반은 현장도착시 각 소방서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정·통제를 받아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모든 응급의료소(중증도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임시영안소)는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응급의료소 각 운영요원은 아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1 현장응급의료소장

- 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현장 인근 안전한 장소에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사상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의료자원공급 및 임시영안소를 운영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는 구급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유독가스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넓은 장소를 장소를 지정한다.
- 응급의료 임무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사상자 및 사망자 명단을 대중정보센터에 제공하여 재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 구급관리반장이 재난심리상담 등 응급의료업무와 관련된 자원 요청 시 적임자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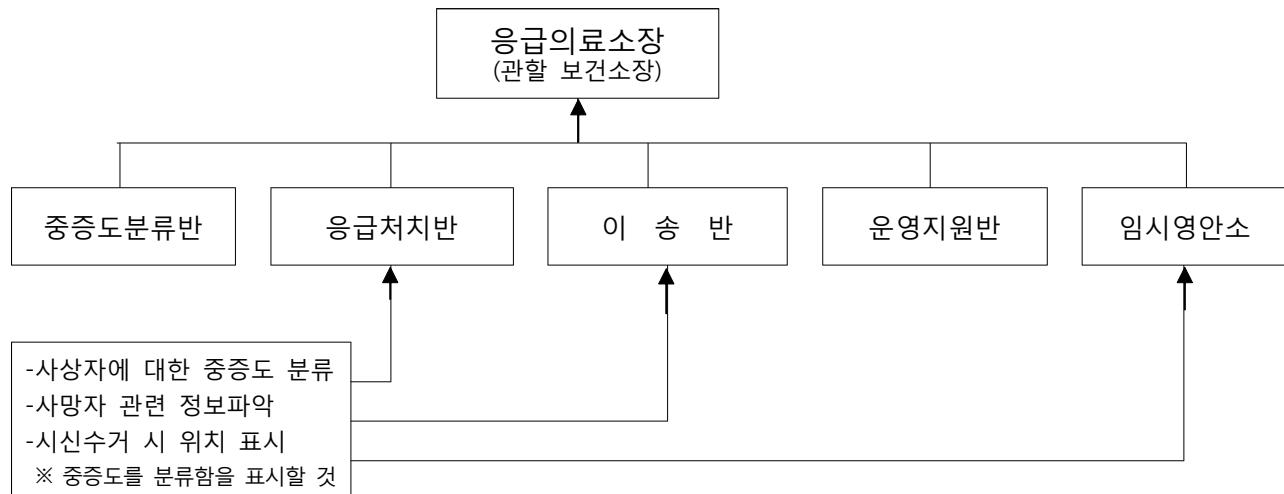
4.2 중증도분류반

- 분류반장은 부상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대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중증도분류반 운영요원을 지정한다.
- 분류반 운영요원은 사상자를 신속하게 아래의 4개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적 색(긴 급) : 수분 혹은 단 시간 내에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 황 색(응 급) : 수 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환자
 - 녹 색(비응급) :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손상으로 보행이 가능한 환자
 - 흑 색(사 망) : 이미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성이 없는 환자

※ 중증도분류 방법으로는 SLAT법을 기본으로 하고 START법을 병용하여 분류한다.
- 분류반 운영요원은 해당복장 등을 착용하여 자신이 중증도 분류를 하고 있음을 표시하도록 한다.
- 시신 수습 시 사망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수거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한다.

※ 한 장소에서 2구 이상의 시체가 발견된 경우 번호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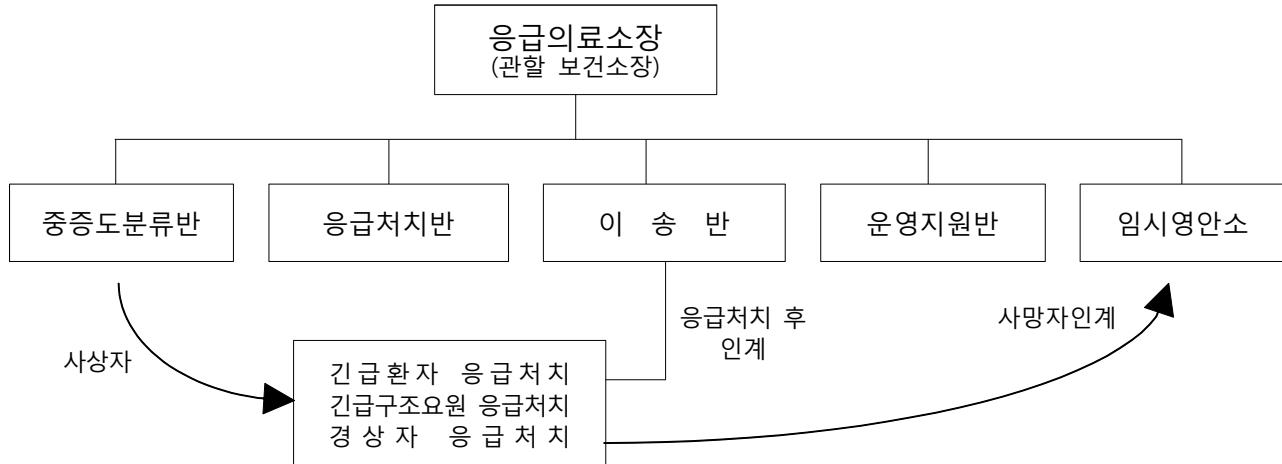
-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는 신원파악을 위하여 이송반 및 임시영안소에 제공한다.
- 부상자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응급처치반에 인계하여야 한다.
- 중증도분류반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4.3 응급처치반

- 응급처치반장은 부상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긴급, 응급환자는 응급처치한 내용을 중증도분류표에 기록하여 이송반에 인계한다.
- 비응급환자의 경우 의료자원이 충분하거나 현장상황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긴급, 응급환자가 이송이 완료된 후 이송반에 인계 또는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한 후 귀가 조치한다.
- 응급처치 중 의사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았거나, 구조된 사망자가 응급처치반으로 이송되었을 경우 이송반 및 임시영안소에 인계한다.
- 언론대응반이 응급처치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응급의료소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제공한다.
-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운영지원반을 통하여 자원관리부에 즉시 지원을 요청하여 원활한 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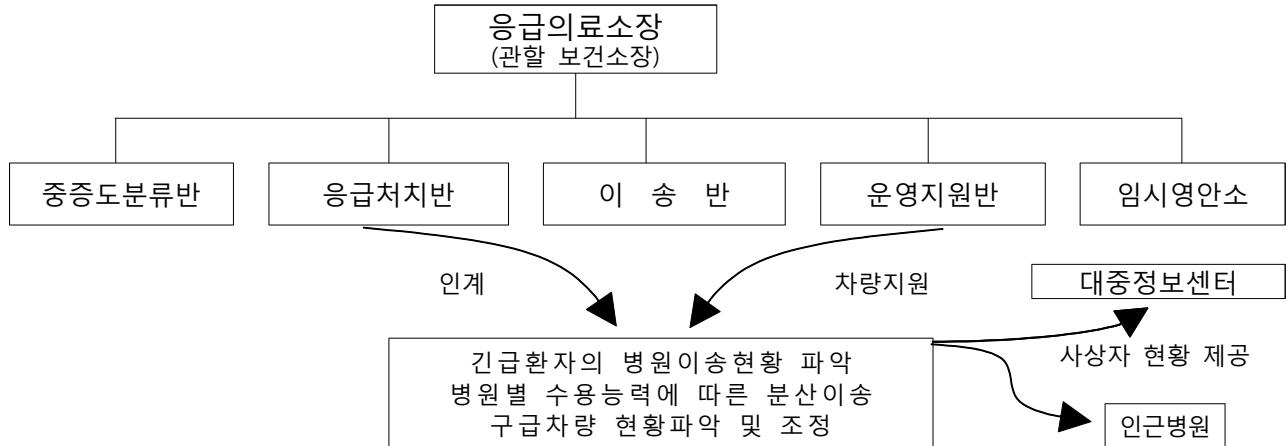
- 응급처치반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4.4 이송반

- 이송반장은 부상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이송업무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송반장은 운영지원반과 함께 구급차, 특수구급차, 영구차와 같은 차량 운영을 조정한다.
 - 차량 동원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이 구급차량 때문에 정체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동원한다.
 - 이송반장은 차량의 운영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① 운행 가능한 구급차
 - ② 이용되고 있는 구급차
 - ③ 이송 병원 현황
 - 이송반원은 사상자 이송현황을 이송반에 제출하고 부착된 증증도분류 및 구급일지를 기록·보관 후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대중정보센터 등에 통보한다.
- 환자분산업무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 분산수용능력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상자의 이송은 손상유형과 각 병원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분산이송 한다.
 - 이송반장은 실시간 확인 가능한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및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모바일 재난 예비망을 활용하여 환자 수용능력에 따라 분산 이송한다.
 - 이송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이송원칙의 순서대로 이송한다.
(긴급환자 → 응급환자 → 비응급환자 → 지연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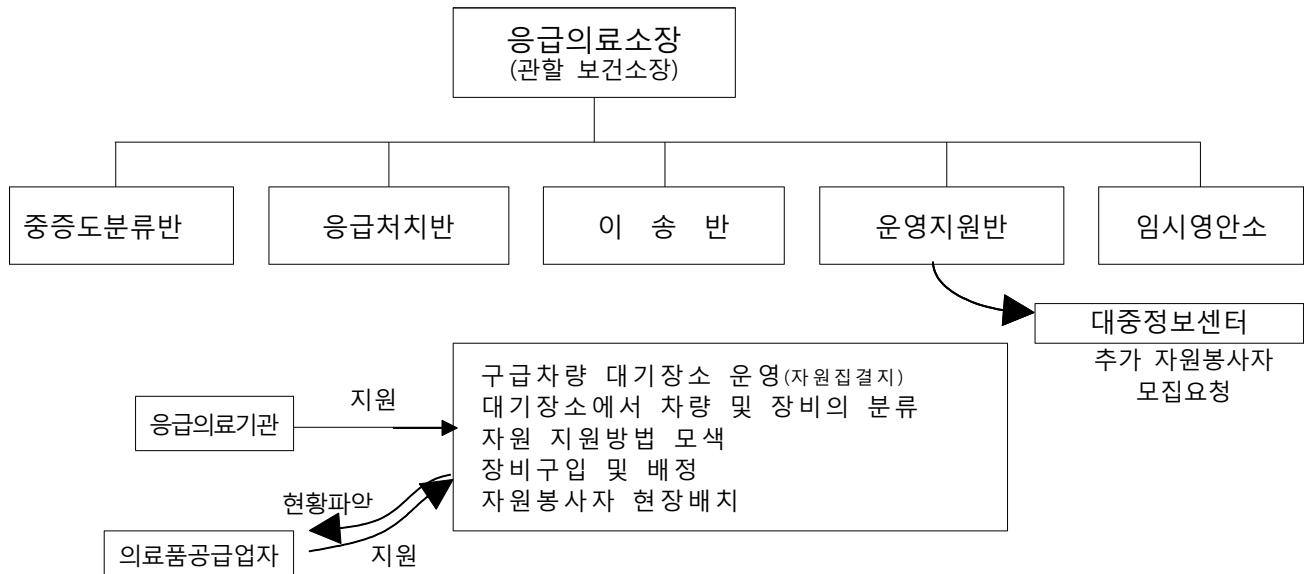
- 이송반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4.5 운영지원반

- 구급차대기소 운영
 - 구급차대기소를 자원대기소에 설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차량과 직원들이 현장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 현장에 모인 응급의료서비스 차량 및 직원들은 도착 즉시 구급차량 대기소에 집결하여 현장임무를 지시 받을 때까지 대기한다.
 - 운영지원반은 구급차대기소에 집결된 자원현황에 대하여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각 반별 자원(구급차)동원 요청 시 즉시 지원한다.
 - 운영지원반장은 필요시 구급차 대기소 자원을 관리할 대기분대장을 임명한다.
 - 자원의 동원 및 배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공급물품 및 장비
 - 모든 구급차량에 재난발생 시 필요한 의료물품을 비축하여야 한다.
 - 각 반장이 추가 물품을 요구 시 대기소에 있는 자원을 즉시 배정한다.
 - 운영지원반장은 추가로 필요하거나 드물게 사용되는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 및 배정한다.
- 자원봉사자
 - 운영지원반장은 자원집결지 및 인력지원센터(적십자사)에서 통보된 간호사, 의사, 응급 구조사, 기타 유사 자격자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자원 지원 요청 시 각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운영지원반장은 추가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하여 대중정보센터(자원봉사자 등록소)에 도움을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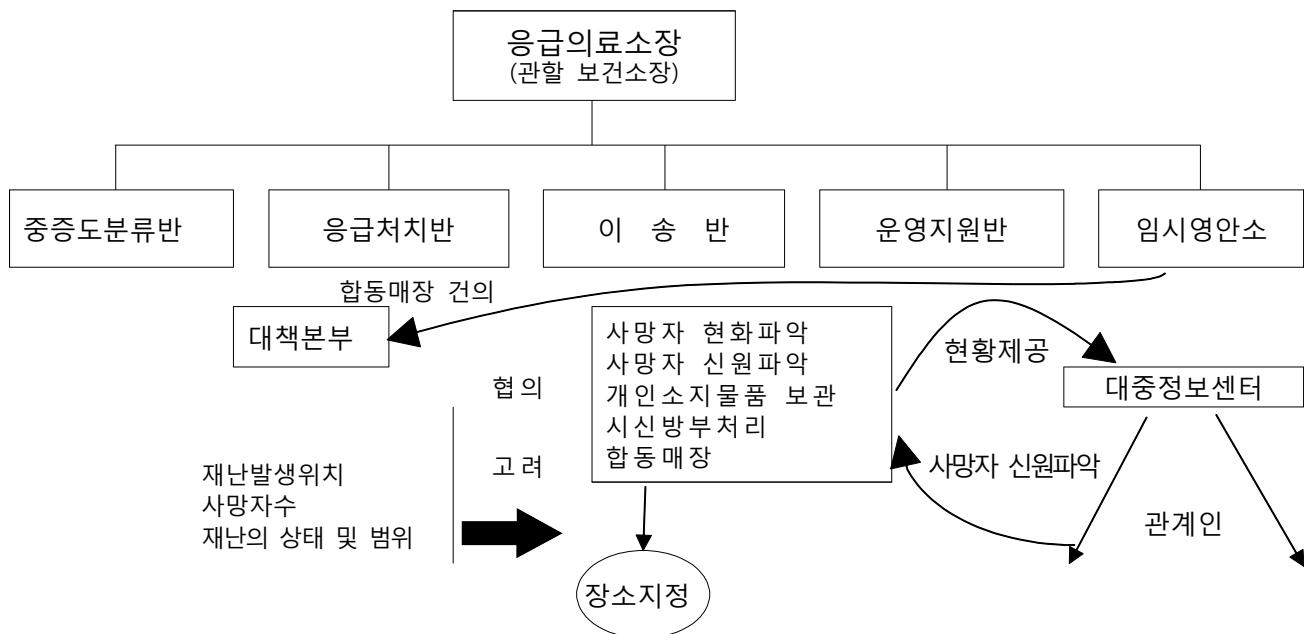
- 필요시 응급의료소장의 지시에 의해 임시영안소의 사망자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 각 반으로부터 보고된 각종 현황을 유지하며, 대중정보센터에 제공한다.
- 운영지원반의 운영은 아래와 같다.



4.6 임시영안소

- 임시영안소 관리반장은 사망자들의 신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임시영안소에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임시영안소 관리반장은 사망자 수 및 관련된 정보를 즉시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대중정보센터(실종자정보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인척 등 관계인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히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 신원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 경우 X-Ray 또는 치열사진 등을 확보 한다.
- 개인 소지품에 꼬리표를 붙여 시신(사체포 또는 사체낭에 안치)과 보관하며, 시신과 분리된 미확인 물품 및 의복은 시신과 별도 보관한다.
- 부패를 막기 위한 적절한 냉동보관이나 방부처리가 불가능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대책본부에 합동 매장추진을 건의한다.

- 임시영안소 관리반의 운영은 아래와 같다.



4.7 대응단계별 매뉴얼

대 응 단 계	대 응 매 뉴 얼
초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자원 및 사상자들의 응급처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응급의료 활동계획을 세우고 각 작전 단계별로 시간한도를 정한다. - 응급의료자원을 아래와 같은 사항에 배정한다. -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활동 - 특수재해 부상자에 대한 의료대응활동 - 각 병원별 응급의료기능의 보강
중 기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응급의료 활동계획을 재검토한다. - 임무의 우선순위에 따른 운영요원 파견을 재조정한다. - 교대조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통제단장에 응급의료소 운영 현황을 보고한다.
중 이 기 단 계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의 활동들을 평가한다. - 장기 응급의료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특수재해 시 응급의료반 자원들에 대한 오염영향정도를 분석한다. - 상황 종료 시 일상적인 업무수행체계로 복귀시킨다.

4.8 응급의료 통신

- 구급차와 병원간의 통신은 무전기(구급전용 지정채널)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다.
- 종합방재센터와 구급대원들 간의 통신은 무전기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다.
- 긴급구조통제단과 현장응급의료소와의 통신은 무전기를 사용한다.
- 종합방재센터, 현장응급의료소,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의 통신은 휴대폰(재난예비망)을 이용한다.
- 응급의료소 각 팀별 통신은 재난응급의료무선통신단말기(LTE), 무전기 또는 휴대폰을 사용한다.
- 각 단위 지휘관(각 반장 및 지원기관단체 지휘관)은 각 소속 지원기관별 비상용 휴대전화를 확보 소지하여야 한다.
- 무전기 또는 휴대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재난보조통신시스템의 배정을 요청한다.
- 기타 통신수단
☞ 기능별 계획 #11(재난통신 계획) 참조

4.9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5조(의료소에 대한 지원)
-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추진계획(매년 소방청 119구급과 별도 수립 · 시행)

□ 훈련개요

- (훈련기간) 년중
- (훈련횟수) 소방서별 연1회 이상
- (훈련방법) 구급대 주도 별도훈련 또는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 매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사고유형 :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수사상자 발생사고 또는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 훈련과 동일한 사고
- 사상자 규모 : 40명 이상 발생한 사고로 설정하여 대응훈련 실시

훈련평가

- (평가대상) 각 시·도 소방본부별 1개 소방서(그 외 자체평가 실시)
-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합동평가(소방청 1~2명, 중앙응급의료센터 1~2명)
- (평가내용) 대응기관별 임무수행 적정성 및 상호 유기적 대응 중점 평가

세부 평가내용

- 훈련계획의 적절성 및 동원자원관리 현황
 - 사고유형설정 및 시나리오 적절성,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 반영여부
 - 재난대응에 필요한 기관 참여, 자원대기소 및 집결지 설치여부
- 선착 구급대장(원)의 명확한 역할 인지
 - 구급대장(원)에 의한 실시간 환자 중증도분류 및 분류표작성 등 명확한 역할(인계, 통제, 보고, 임무부여 등)
 - 보건소장에게 서면 인수인계서 작성·보고, 지휘(권) 이양 여부
- 현장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 역할 인지
 - 재난초기 소방관서 중심에서 보건소장 중심으로 신속전환
 - 사상자 명단(현황) 파악·작성 및 관련 언론브리핑
 - 정확한 사상자 파악 위한 이송 의료기관 연락관 파견
 - 통제단장에게 응급의료소 운영현황 인수인계, 현장지휘부와 실시간 보고체계 유지 등
- 유관기관 협업 등 현장응급의료소 운영능력
 -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작성
 - 평상시 응급의료자원(현황) 관리 여부
 -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재난 초기부터 활동 가능토록 신속한 상황전파 여부
 - 현장응급의료소 인력 및 장비, 임시영안소 설치·운영·관리의 적절성
 - 의사에 의한 정확한 중증도 분류, 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관한 사항
 - 실시간 이송현황 및 병상정보, 수용능력 등 파악(정보통신 매체 등 활용) 여부

제7절 긴급오염통제 계획(#7)

- 기능별 계획 #7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서 규정된 긴급오염통제 분야의 정책과 임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별 계획 중 하나이다
- 이 계획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소방본부장)과 긴급복구부장(기후환경국장)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주요 지원기관(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환경안전관리과, 물관리 정책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작성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이 계획의 대응절차는 기본계획 및 다른 기능별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목적

비상사태 또는 재난상황에서 지자체, 보건소,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주관부서와 협업지원을 위해 긴급오염통제 임무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설명한다.

2. 운영조직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재난발생시 오염통제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초기에 긴급오염통제 필요시 통제단 운영 편람 편재를 아래와 같이 변경 편성하여 초기대응하고, 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경우 대책본부 통제관이 오염통제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재난발생시 긴급오염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유관기관들에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지원여부를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오염통제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오염통제 자원을 조정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이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유관기관에 시료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면, 해당기관은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시료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기능별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는 다음과 같다.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초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환경국(환경보전과, 물관리정책과) 저출산보건복지실(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자원관리부 현장통제반) - 대책본부 설치운영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책본부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실, 저출산보건복지실 - 관할 보건소 - 권역응급의료센터(단국대학교병원) - 간호사협회 - 국립환경과학원 - 보건환경연구원 - 수질연구소 - 충청남도 수의사협회

- 긴급 오염통제반의 운영요원은 다음과 같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통제단 운영시 지원
식품오염통제팀	지역 통제단장 지정	저출산보건복지실
감염병통제팀	지역 통제단장 지정	저출산보건복지실
환경오염통제팀	지역 통제단장 지정	기후환경국, 금강유역환경청

- 임무요약
 - 식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급수중단 또는 제한급수를 실시한다.
 - 재난지역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음식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재난지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목욕탕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 한다.
 - 역학조사(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예상 오염지역 및 인원을 추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예방접종 실시한다.
 - 오염된 해충 및 동물 통제방법을 강구하고 방역작업 등 필요조치를 수행한다.

- 오염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를 감독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인체유해 여부를 판단, 쓰레기 또는 잔해물 등에 의한 오염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적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 응 단 계	활 동 개 요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단체별 일상적인 긴급오염통제임무를 수행한다. - 긴급오염통제 임무 관련분야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 재난 시 대응절차를 수립한다.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오염통제반은 가동되지 않는다. - 현장지휘관에 의해 재난현장의 오염통제임무가 수행된다.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방재센터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사고 현장에 급파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이 현장 도착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현장지휘관의 긴급오염통제 반장의 역할을 이양 받아 긴급오염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재난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식품오염통제팀, 감염병통제팀, 환경 오염통제팀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동한다.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오염통제반(식품오염통제팀, 감염병통제팀, 환경오염통제팀)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긴급오염통제반은 아래의 임무들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4.1 긴급 오염통제반장

- 각 팀별 임무를 수행할 운영요원의 비상소집 현황을 점검하고 긴급오염통제반의 각 팀별 임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한다.
- 긴급오염통제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및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상수도 오염통제, 급수통제, 재난지역 인근 수영장 및 목욕탕 등에 대한 오염여부를 결정한다.
-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책본부에 방역활동을 요청하고 격리지역에 대한 긴급 구조요원 및 차량들의 진 출입 통제범위를 결정한다.

4.2 식품오염통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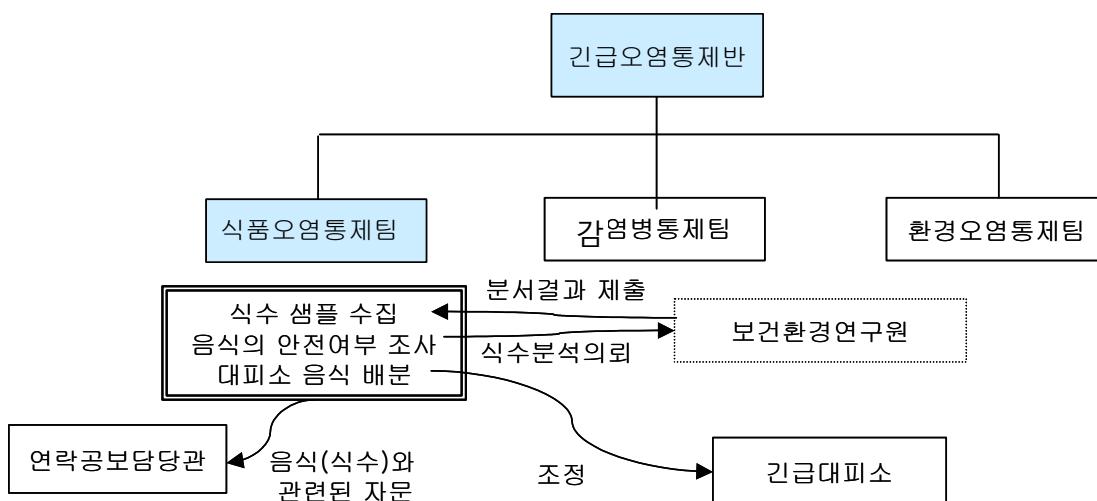
- 식수오염대책

- 필요시 수돗물, 지하수, 우물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기관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한다.
-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기관은 재난상황이 악화될 것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통보한다.
- 개인소유의 우물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식수에 관한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언론대응반에게 통보한다.
- 긴급구조요원 및 이재민에 대한 식수의 배분 및 대책에 대하여 아래의 절차를 조정
 - ① 생수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생수를 어디서 공급받을지 여부
 - ③ 배분 방법 등

-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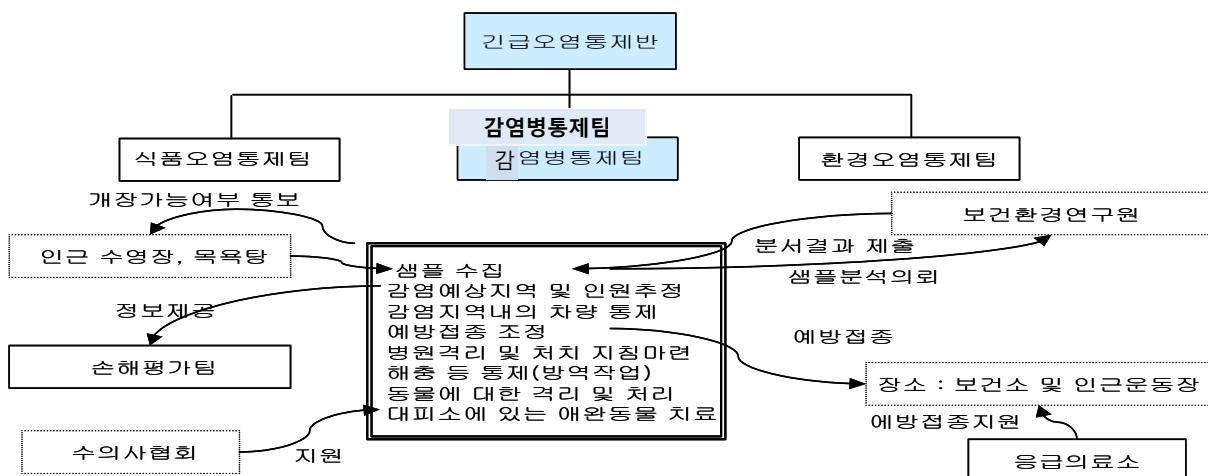
- 오염위험이 높은 재난인 경우, 긴급구조요원과 이재민 등에게 공급되는 음식에 대하여 공급전에 안전성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다.
-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언론대응반에게 제공하여 도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한다.
 - ①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의 음식부패방지요령
 - ② 오염음식물의 처리요령
 - ③ 안전한 식품조리법

- 식품오염통제팀의 운영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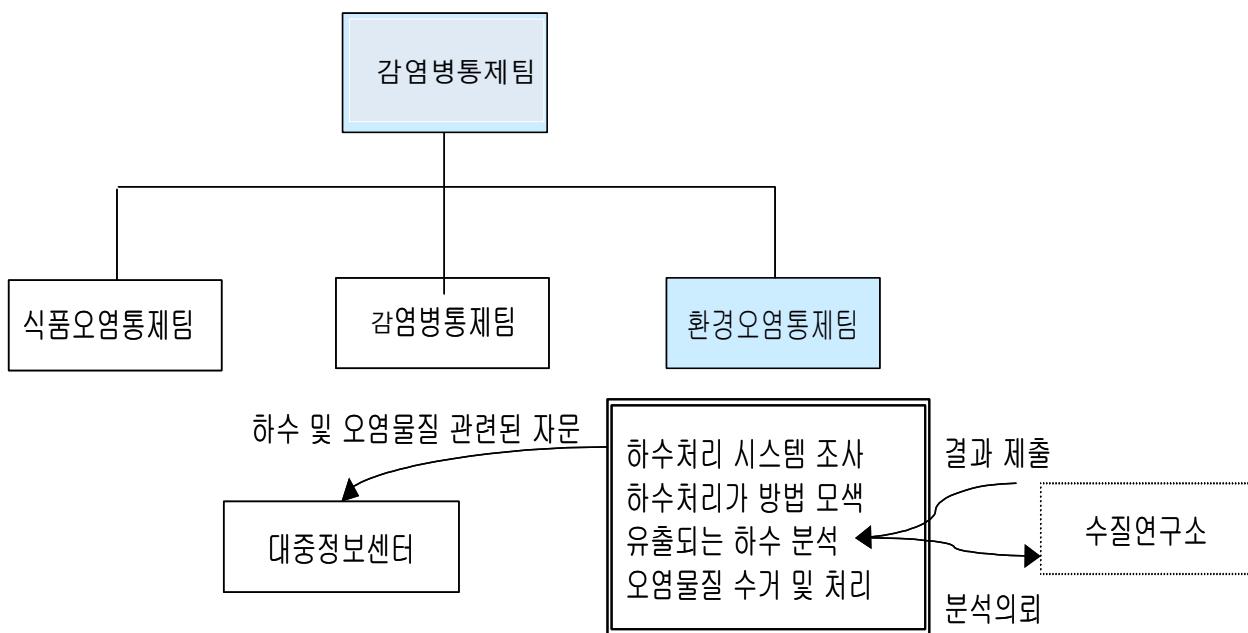
4.3 감염병 통제팀

- 재난지역 수질조사
 - 필요시 재난현장 인근의 수영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기관에 안전성 여부를 의뢰한다.
- 감염병 통제
 - 재난발생 지역에 감염병이 발병한 경우 예상 전염지역 및 인원을 추정하기 위하여 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대책본부(또는 지원기관)에 요청한다.
 - 관할보건소, 긴급대피소 등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안전을 위하여 오염지역내 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진입통제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한다.
 - 감염병환자의 격리 및 치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환자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상황관리부 상황분석반에 정보를 제공한다.
- 동물통제
 - 감염병 및 오염의 매개체인 곤충, 쥐 등에 대한 방역작업을 대책본부(또는 지원 기관)에 요청한다.
 - 전염된 동물, 가축의 격리 및 치료업무가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산과, 수의사협회 등에 지원을 요청한다.
 -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애완동물을 치료할 수 있도록 수의사협회에 지원을 요청한다.
- 감염병통제팀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4.4 환경오염통제팀

- 재난지역 하수처리
 - 재난현장에서의 공용 및 개인 하수처리시스템의 작동을 확인한다.
 - 피해지역내 하수처리시설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하수처리 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유출 하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 수질연구소 등 지원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 수질연구소 등 지원기관의 분석자료가 통보되면 환경오염통제팀은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다.
- 오염물질 처리
 - 도민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고현장의 오염물질 및 잔해물을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한다.
- 환경오염통제팀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4.5 대응단계별 매뉴얼

대 응 단 계	활 동 개 요
초 기 단 계 (재난발생 1 ~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오염통제임무의 운영 자원 및 이행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유지 - 긴급오염통제임무 활동계획을 세우고 각 작전단계별로 시간 한도를 정함 - 긴급오염통제임무 자원을 아래와 같이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식수) 안전여부 조사활동 · 감염병 예방접종 등 · 오염물질 처리 및 하수처리시스템 긴급복구
중 기 단 계 (재 난 발 생 6 ~ 1 2 시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긴급오염통제임무 활동계획을 재검토한다. - 임무의 우선순위에 따른 운영요원 파견을 재조정한다. · 교대조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통제단에 긴급 오염통제임무 운영 현황을 보고한다.
후 기 단 계 (재 난 발 생 1 2 시 간 이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의 활동들을 평가한다. - 장기 긴급오염통제임무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특수재해시 긴급 오염통제임무 자원들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다. - 상황종료시 일상적인 임무수행체계로 복귀시킨다.

제8절 현장통제 계획(#8)

- 기능별 계획 #8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서 규정된 현장통제 분야의 정책과 임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별 계획 중 하나이다.
- 이 계획은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현장통제반장(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 재난발생시 현장통제 임무수행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 이 계획은 일정한 규모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통제단이 운용되거나, 그 이하의 단계라 하더라도 현장통제에 관해 경찰의 참여필요성이 있을 때 현장통제의 지침서로 활용되며, 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경우 대책본부와 기능이 연계되어야 하며 대책본부 통제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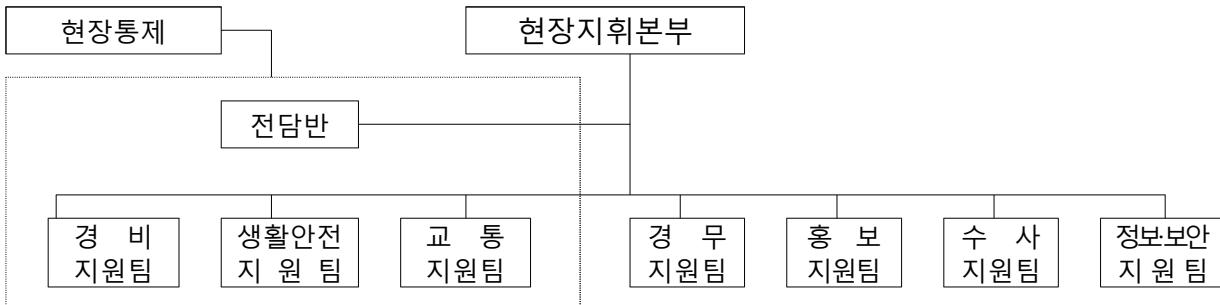
1. 목 적

재난시 긴급구조활동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돋고 재난발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현장통제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조직 및 운영

- 현장통제반장은 재난발생시 모든 현장통제 활동을 조정 통제한다.
- 현장통제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 교통지원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팀은 재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가동여부 및 범위가 결정된다.
 ※ 재난규모 및 상황에 따라 경찰서장이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현장통제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24시간 운영하며, 운영요원들은 1시간의 근무교대 시간을 포함하여 25시간 2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현장통제반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 이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구분(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현장통제반장	충남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소방, 군, 지원기관
경비지원팀	충남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소방, 군, 지원기관
생활안전지원팀	충남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소방, 군, 지원기관
교통지원팀	충남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소방, 군, 지원기관

- 대피 및 경계반의 운영요원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응2단계, 대응3단계
현장통제반장	경찰서 경비교통과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비지원팀	경찰서 경비교통과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생활안전지원팀	경찰서 경비교통과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수사과
교통지원팀	경찰서 경비교통과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 현장통제반장은 각 지원기관의 연락관과 상호 긴밀한 통신체계를 유지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각 지원기관단체는 필요에 따라 현장통제반장과 협의하여 긴급 구조요원 및 재난지역 희생자들을 위하여 현장통제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각 지원기관의 현장지휘관은 현장통제반장에게 각 기관별 자원동원현황, 기 수행된 안전 지원 및 교통통제 활동현황 등과 앞으로 24시간동안 수행할 현장안전 활동 및 교통통제 등의 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현장통제반장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통제를 위한 필요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 응 단 계	활 동 개 요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교육훈련 및 기타 재난대비 임무 수행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 현장통제기능은 일상적 수준에서 가동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 현장통제기능은 부분적으로 가동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 현장통제기능은 전면 가동

4. 임무수행

- 현장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은 고지(통지)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 및 필요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 계획에 포함된 현장통제 서비스 기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1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

- 위의 각 지원팀은 도민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으로 문란해진 치안질서 회복과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 현장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1.1 자원·시설 안전

- 재난이 발생하면 치안질서가 무너지고 불법적인 활동이 만연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긴급구조통제단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의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언론대응반(방문자관리팀)은 통제단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명단을 안전지원팀에게 제공한다.
- 안전요원은 통제단을 출입하는 사람의 출입허가증을 확인하고 방문자기록지에 기록한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통제단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나. 현장지휘소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현장지휘소의 출입구에 배치한다.
- 현장지휘소는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명단을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에 제공한다.
- 안전요원은 현장지휘소를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기록지에 기록한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현장지휘소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다. 대중정보센터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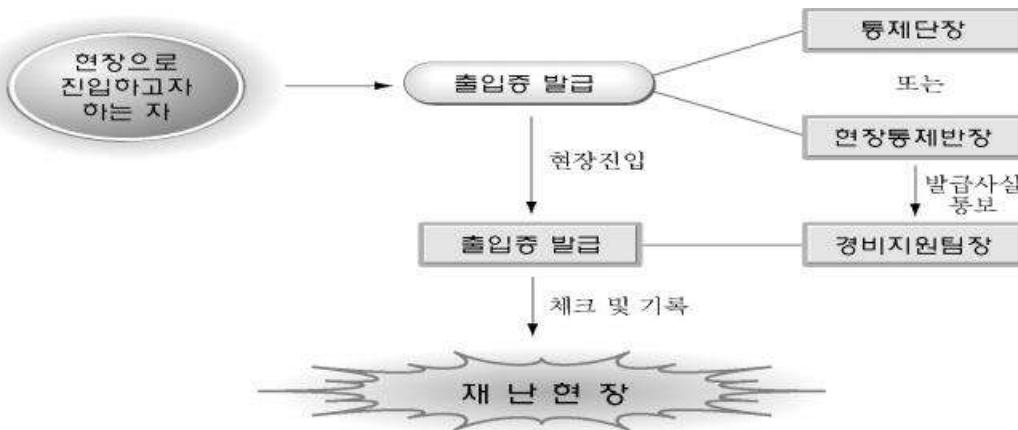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대중정보센터의 출입구에 배치한다.
- 언론사에 소속된 사람은 자신이 기자(언론사 직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중정보센터 출입구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일지를 작성한 후 대중정보센터의 출입을 허가하는 청색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 없이는 대중정보센터로의 출입이 금지된다.

라. 중요 자원 · 시설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중요자원과 시설에 배치한다.
- 경비지원팀장은 관할구역 내 중요한 자원과 시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배치될 안전요원을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한다.(방범지원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안전요원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마. 재난발생지역 안전

- 재난발생으로 도로 파괴, 교량 붕괴 등으로 인하여 도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어떤 유형의 재난은 건물의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손실을 유발한다. 전기가 차단 되면 경보시스템과 비상조명기기 등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지역으로의 진입은 통제되어야 한다.
- 방범지원팀장은 재난발생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도보순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재난지역 내 건물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비상조명등을 사용해야 한다.
- 안전요원은 일반 도민의 재난현장으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 통제단장은 현장통제반 경비지원팀장과 협의하여 재난현장에 대한 출입허가증을 발급한다. 경비지원팀은 재난발생지역으로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 긴급구조요원 및 지원기관의 직원은 그들이 소속된 기관을 통하여 출입허가증이 발급된다.



바. 대피소 안전

- 경비지원팀과 방범지원팀은 대피소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근무자를 배치하고 주차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

사. 자원집결지의 안전

-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들은 인원과 장비의 효율적인 동원을 위하여 기관별 집결지를 각각 설치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집결지를 설치할 수도 있다. 집결지를 설치하는

기관은 집결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결지 설치기관의 인원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경비지원팀이 지원을 한다.

4.1.2 도민의 안전

- 경비지원팀과 방범지원팀은 신속한 응급처치 혹은 다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요구조의 고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장으로 순찰차를 지원한다. 이때 방범지원팀장은 현장지휘부(화재관리반, 구조관리반)와 수시로 통신하여 필요시 장비와 인원이 즉각 추가 투입되도록 한다.
- 경비지원팀장과 방범지원팀장은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긴급구호지원반과 협조 조정한다.
- 안전요원은 옥내에 구조가 필요한 거주자가 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는 경우, 인명탐색을 위해 옥내로 진입할 수 있다. 가옥 또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면 관계인의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상황이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계인의 동의 없이 즉시 탐색과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4.1.3 수형자의 안전

- 경비지원팀장과 지역 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책임자는 협조하여 수형자 등을 통제단장이 권고하는 안전한 지역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 지역 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책임자는 재난발생시 수형자 등에 대한 긴급이송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송수단은 자체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원 관리부에 요청한다.
- 수형자 등의 수송 중 보안 및 안전조치는 자체교도대 등을 이용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경비지원팀 또는 방범지원팀에서 전투경찰 내지 의무경찰력을 지원한다.

4.1.4 임시영안소의 안전 지원

- 경비지원팀 또는 방범지원팀은 사체를 초기 수집지점으로 수집 운반하여 검시자를 지원 할 수 있다.
- 또한 사망자의 신분과 소지품 식별 및 처리,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사망통지 등을 지원하고 현장 안전과 임시영안소의 안전을 지원한다.

4.1.5 동물통제

-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은 축사를 이탈한 가축, 애완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애완동물 보관소, 동물애호협회 또는 자원봉사자와 상호 협조하고 동물 수용장소를 찾고 각종 데이터를 기록한다.

4.1.6 분실물보관소

- 경비지원팀장은 분실물보관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 경비지원팀장은 대중정보센터를 통하여 분실물보관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주민에게 홍보한다.
- 재난으로 유실된 재산(분실물)은 습득 후 분실물보관소로 수집되어 분실물의 주인이 나타나기까지 또는 7일 동안 분실물보관소에서 보관된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분실물 재산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재산상의 분실이 있는 사람은 분실물보관소에 신고한다.

4.1.7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 작성

- 긴급구호반은 매년 청각장애인, 거동불편자 등과 같이 재난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서를 출판한다.
- 이러한 대상자의 명단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긴급구호반장은 이 명단을 갱신·유지하고 현장통제반장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 현장통제반은 긴급한 상황 또는 재난이 임박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이 명단을 활용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4.2 교통지원팀

- 교통지원팀은 진입통제, 교통통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재난발생시 대응 자원의 원활한 흐름과 2차적 혼란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교통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4.2.1 진입통제

- 진입통제가 필요한 지역은 현장통제반장의 건의에 따라 통제단장 및 통합지휘팀에서 결정하고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다.
- 해당 대책본부장은 그의 명으로 지방도로에 대하여 통행제한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해당자치단체의 규칙 또는 조례 검토사항)

- 진입통제지역 결정 후 보안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현장통제반 교통지원팀의 임무가 된다.

가. 바리케이드

- 현장으로 연결되는 모든 경로가 차단되어야 한다. 주요 경로에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교통지원팀의 요원이 배치된다. 2차 도로에는 적절한 주의문구와 함께 바리케이드만 설치한다.

나. 교통의 재배치

- 교통지원팀장은 재난현장 주변의 교통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현장의 주변에는 적절한 우회로 표지판을 배치하도록 한다.

다. 통제지역으로의 진입

- 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요원 및 대응자원들이 출입할 통로를 지정해두며, 이 통로는 대응하는 각 지원기관에 배당된다. 해당기관은 소속 요원들의 통로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라. 철도 진입통제

- 교통지원팀장은 현장을 통과하는 열차(전철·지하철) 등의 중지를 지시하도록 철도공사에 요청한다.(필요시)

마. 항공통제

- 교통지원팀장은 항공기가 재난현장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한다.(필요시)

4.2.2 교통통제

- 대피·소개가 되면 교통지원팀의 요원은 재난지역의 교통흐름이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주요 교차로에 배치된다.

4.2.3 통행금지

- 재난의 정도가 극심할 경우 대책본부장은 특정지역에 통행금지조치를 명하여 발효시키고 안전지원팀 및 교통지원팀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한다.

4.2.4 차량제거 조치

- 차량들이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 또는 차단하고 있다면, 교통지원팀은 도로로부터 차량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 교통지원팀장은 차량견인회사에 연락하여 도로로부터 차량을 견인하고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사후에 통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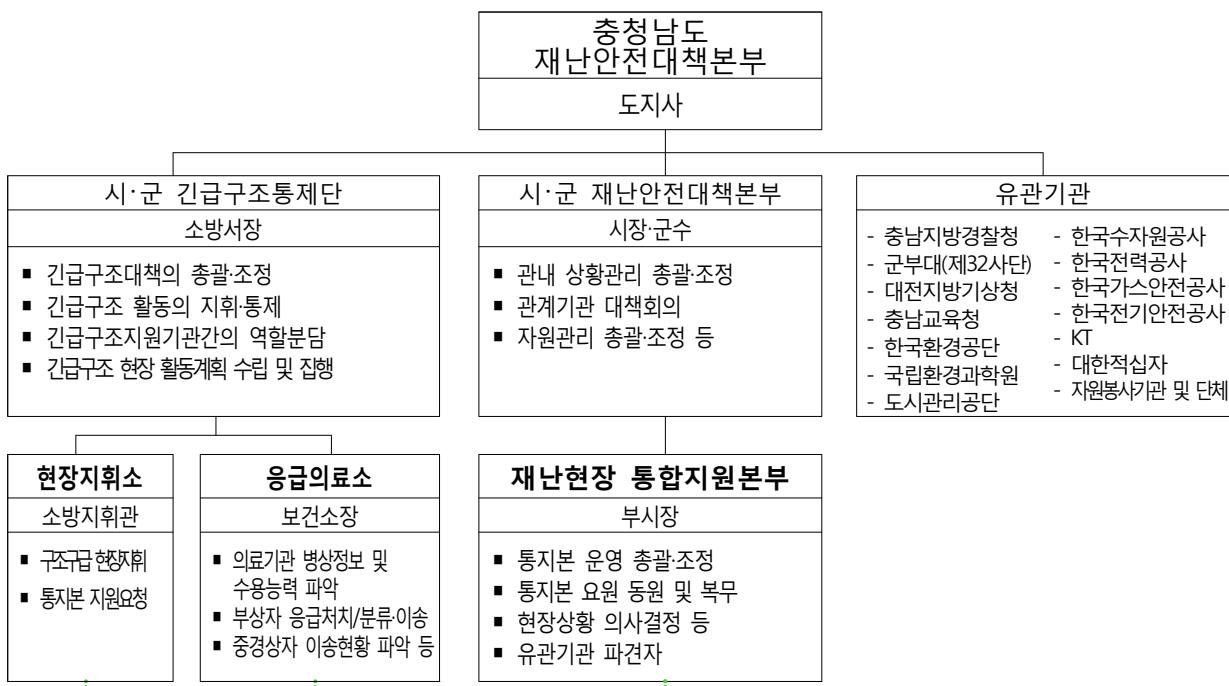
제9절 긴급복구 계획(#9)

1. 목적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지자체 통합지원본부 등 관련 주관부서나 협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이 기능별 계획에 포함된 모든 자원들(자원동원매뉴얼 참조)은 이 계획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사용된다.
- 재난발생시 대응구역별 긴급복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재난발생시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조정·통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대응구역별 긴급시설복구반장은 긴급복구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상황정보에 근거하여 자원동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투입을 결정한다.
- 재난현장 긴급복구를 위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및 유관기관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 응 단 계	활 동 개 요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재난대비 임무.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4. 임무수행

4.1 재난현장 긴급복구 - 재난안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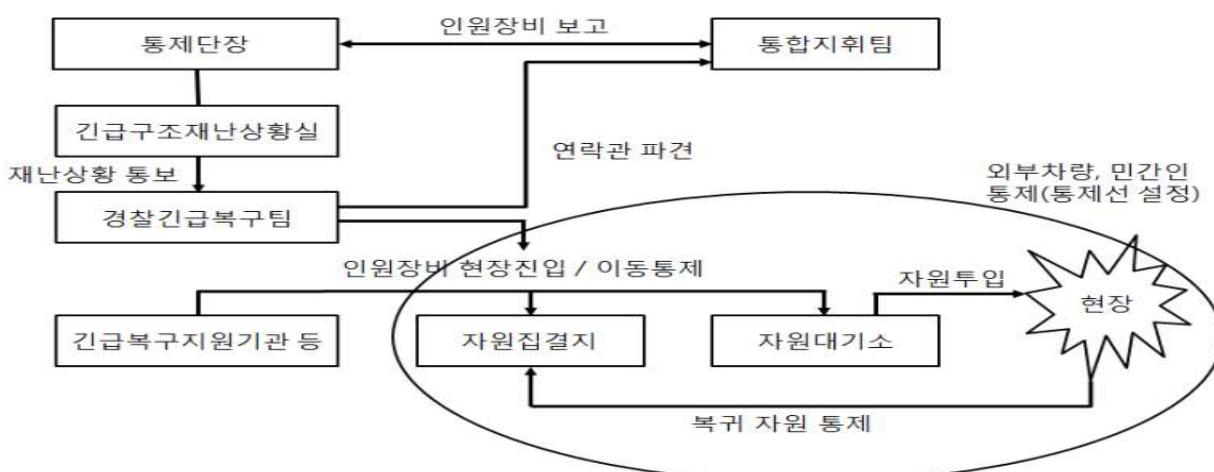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인원과 장비, 물자를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각 지원기관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긴급구조현장의 진·출입, 현장활동에 방해가 되는 잔해물 제거
 -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긴급복구 실시
 - 현장진입로에 대한 긴급복구 실시
 - 임시 잔해물 적치장소 지정 및 처리
 - 장기 잔해물 처리계획 수립
 - 파손된 소방용수용 상수도 긴급복구
 - 파손된 식수용 상수도 긴급복구 및 대체급수 강구
 - 필요시 민방위대원 등 인원 동원요청
 -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원보유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 기타 필요임무 수행

4.2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설치 - 충청남도소방본부(소방서)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인원과 장비, 물자 등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자원집결지는 대응구역별 소방서에서 선정한다. 도 차원의 자원집결지는 사전 지정된 장소 중 필요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 자원관리부장은 사전 지정된 장소이외에 긴급복구자원의 진·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자원집결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최초 상황 통보시 복구자원이 자원집결지에 집결될 수 있도록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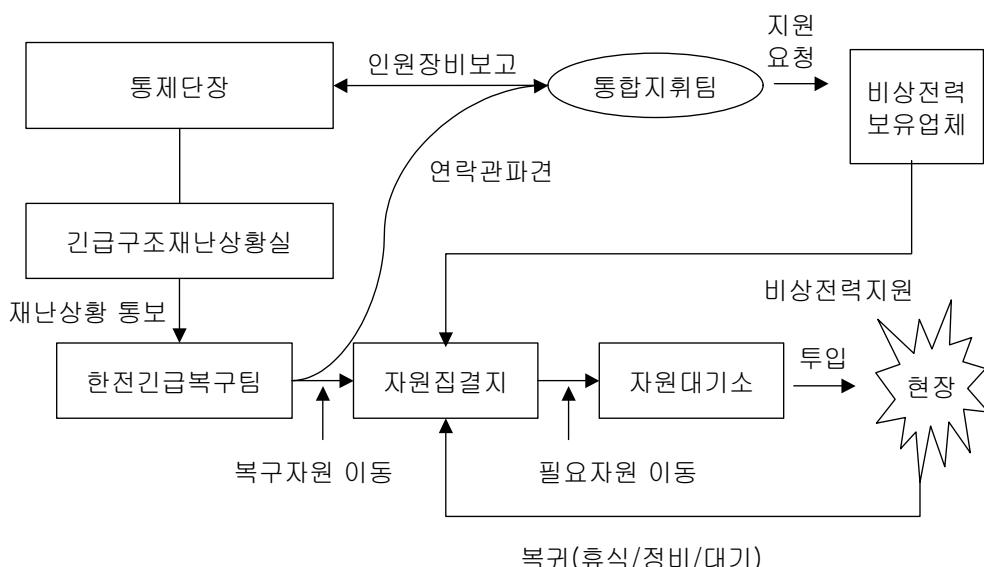
4.3 접근통제 및 수송로 확보 - 충남지방지방경찰청(경찰서)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교대조를 편성하여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상황관리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재난발생지역에 일반차량 및 도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임무 수행
 - 적정한 위치에 통제선 설정, 장애물 설치, 우회로 설정 및 안내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차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 긴급복구 자원의 수송이 용이하도록 수송로 확보
 -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불법 주정차, 고장난 차량) 처리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 결과를 긴급시설복구반장에게 보고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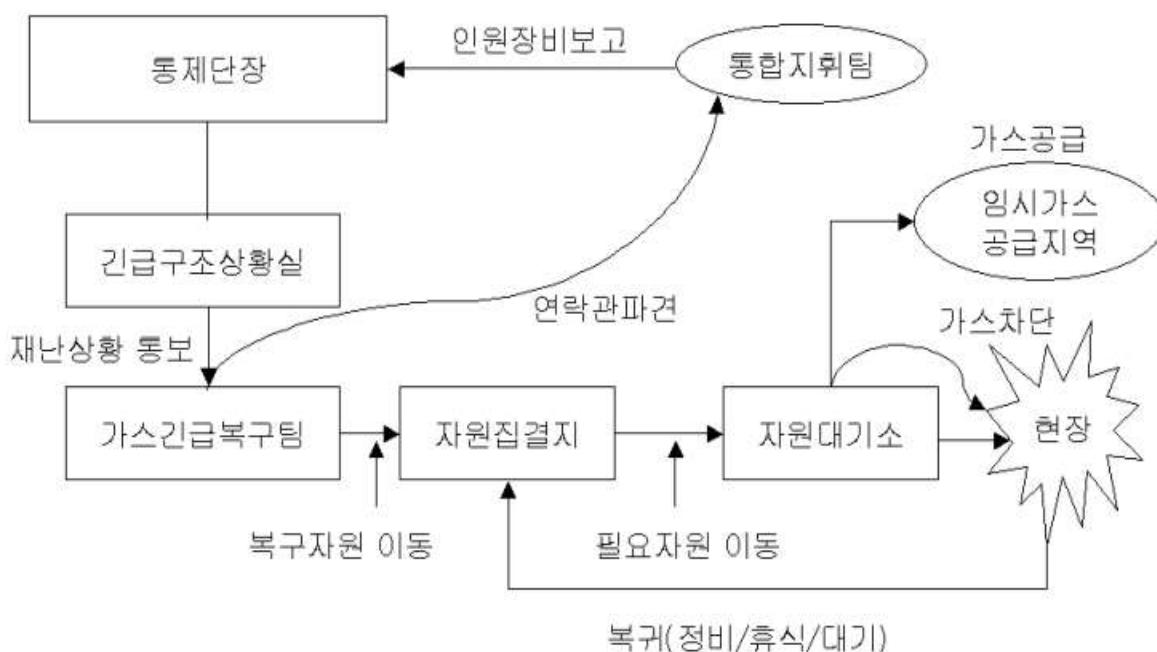
4.4 비상전력 공급 - 한국전력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사업소)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긴급복구자원을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재난발생 지역과 건물 등에 2차 재난발생 우려시 전원차단 실시
 - 우선순위에 따라 비상전력 사용을 결정하고 가용한 전력 조정통제
 - 가용한 비상전력(발전기) 보유업체에 긴급연락 및 자원동원
(보유업체의 목록을 자원매뉴얼에 기록관리)
 - 임시피난소 등에 전력공급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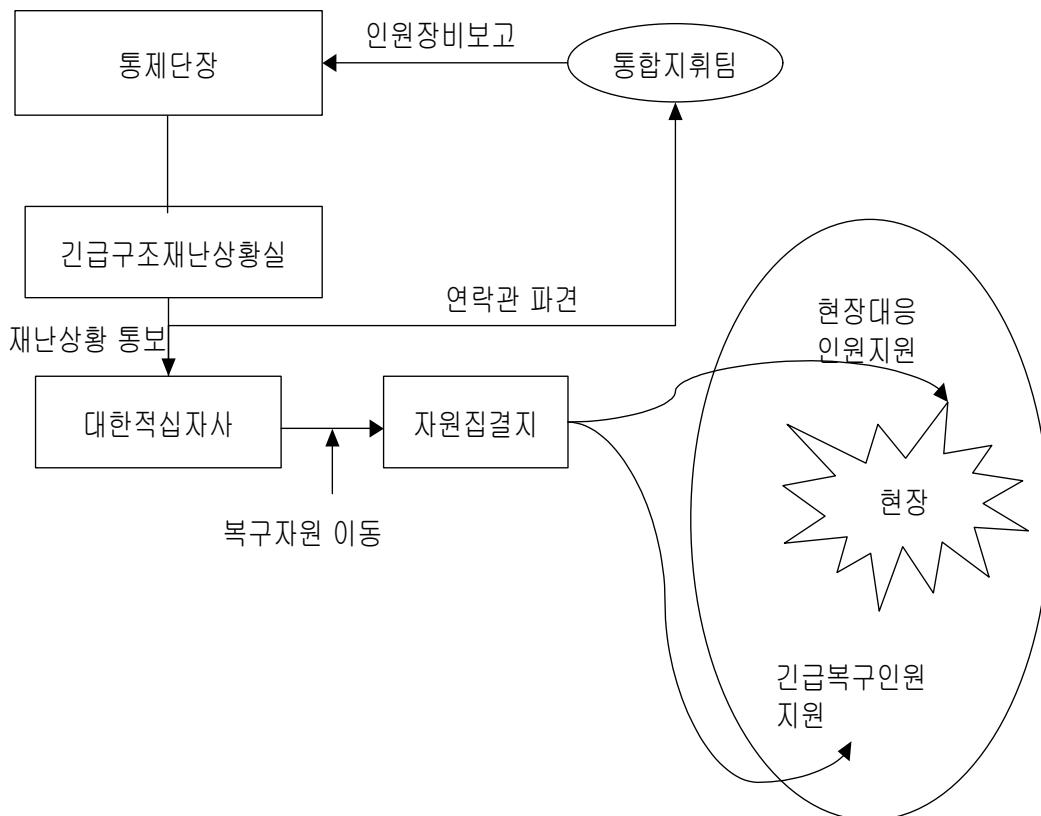
4.5 가스차단 및 안전진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등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진단인력)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상황관리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긴급복구자원을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재난발생 지역과 건물 등에 2차 재난발생 우려시 가스공급 차단
 - 사고현장 주변 일대에 대한 가스누출 우려시 안전진단 실시
 - 필요지역에 임시 가스공급 실시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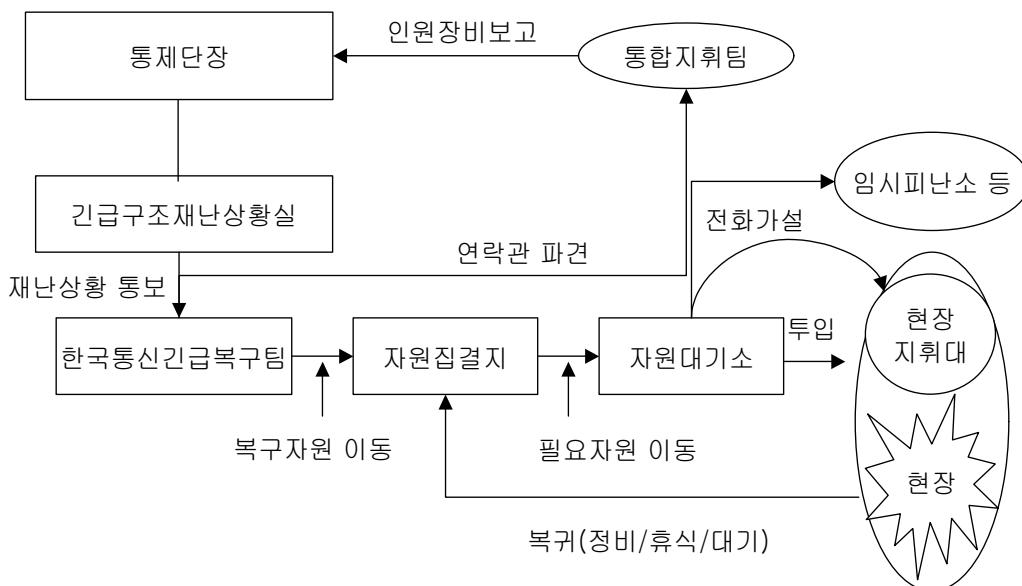
4.6 긴급재난구호봉사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상황관리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긴급구호품 구입요청, 보급 및 수송체계 확보
 - 긴급구호장비, 소모품 등 물자조달 및 관리
 - 구호요원의 지휘통제, 현장활동대원과 구호자에게 급식제공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4.8 통신 - KT (지역본부 또는 지사)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긴급복구자원을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현장지휘소에 긴급전화 설치와 임시피난소 등에 임시 공중전화 가설
 - 통신시설 긴급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통신두절 시설과 지역에 대해 통신회선 응급복구 및 예비통신망 대체운용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4.9 기타

- 군부대, 민간단체 등은 긴급복구에 필요한 기술제공 및 장비를 지원한다.

제10절 긴급구호 계획(#10)

- 기능별 계획 #10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서 규정된 긴급구호분야의 정책과 임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별 계획 중 하나이다.
- 재난유형별 긴급구호서비스에 대한 특별 사항은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에서 기술한다.
- 이 계획은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 재난발생시 긴급구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으로 적용된다.
- 이 계획은 대책본부 설치 가동시 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책본부 통제관으로 업무통제권이 이관된다.

1. 목적

재난시 긴급구조요원 및 재난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자체 통합지원본부 등 관련 주관부서와 협업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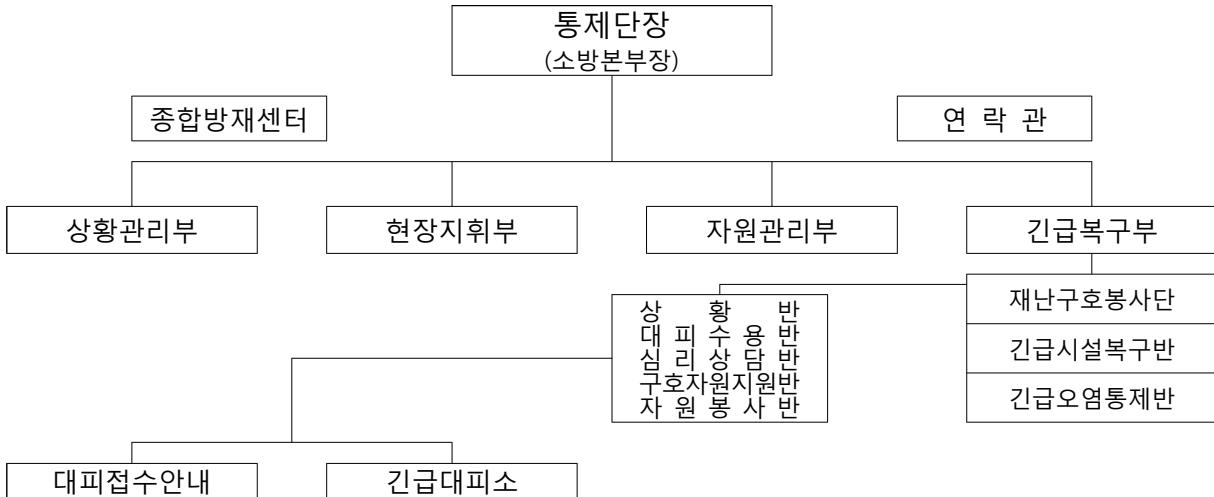
2. 조직 및 운영

- 긴급구호반장은 재난발생시 모든 긴급구호자원의 활동을 조정한다.
- 긴급구호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재난심리상담팀, 대피수용팀, 구호자원지원팀 등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재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가동된다.
- 긴급구호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24시간 운영하며, 운영요원들은 1시간의 근무 교대 시간을 포함하여 25시간 2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이 기능별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응원협정 체결기관단체

구분(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긴급구호지원반장	재난안전대책본부(담당팀장)	
심리상담팀		
구호자원지원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소방, 군, 지원기관
대피수용팀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초기 긴급구호 필요시 통제단 운영편람 편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편성한다.



- 긴급구호지원반장은 각 지원기관단체의 연락관과 상호 긴밀한 통신체계를 확립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각 지원기관은 필요에 따라 긴급구호지원반장과 협의하여 긴급 구조요원 및 재난지역 희생자들에게 긴급구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각 지원기관의 연락관은 긴급구호지원반장에게 각 기관별 자원동원현황과 기 수행된 긴급구호 활동현황 등과 앞으로 24시간동안 수행할 긴급구호 활동 등의 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긴급구호지원반장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긴급구호를 위한 필요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 응 단 계	활 동 개 요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교육훈련 및 기타 재난대비 임무 수행
대 응 1 단 계 (일상적 사고)	- 긴급구호기능은 가동되지 않는다.
대 응 2 단 계 (중형 재난)	- 긴급구호기능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 응 3 단 계 (대형 재난)	- 긴급구호기능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 구호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은 고지(통지)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 및 필요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호 서비스 기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다.

4.1 재난심리상담팀

- 재난심리상담팀은 재난으로 인한 충격과 참혹한 광경의 목격 등으로 정신과적 부상을 당한 긴급구조요원 및 재난피해자들의 정신적 부상을 치료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재난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1.1 재난 희생자

-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기관 및 단체는 다음 표와 같다.



- 긴급구호지원반장은 재난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재난피해자 및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심리상담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상담팀장과 비상연락을 한다.
- 상담팀장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팀원들에게 비상소집을 통보하고 집결장소를 알려준다.
- 상담팀은 필요에 따라 여러 개 팀으로 구성하고, 긴급대피소, 자원대기소 등에 파견 한다.
-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식별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리하여 수용한다.
- 대응3단계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호지원반장은 통제단 자원관리부(유관기관협조)를 통하여 인근자치단체 재난심리상담팀의 지원을 요청한다.

4.1.2 긴급구조요원

- 심리상담팀장은 긴급구조요원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긴급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치료할 별도의 훈련된 상담요원을 지정한다.
-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모든 기관단체의 현장지휘관은 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하여 심리상담팀장에 통보한다.
- 필요시 상담요원을 재난현장에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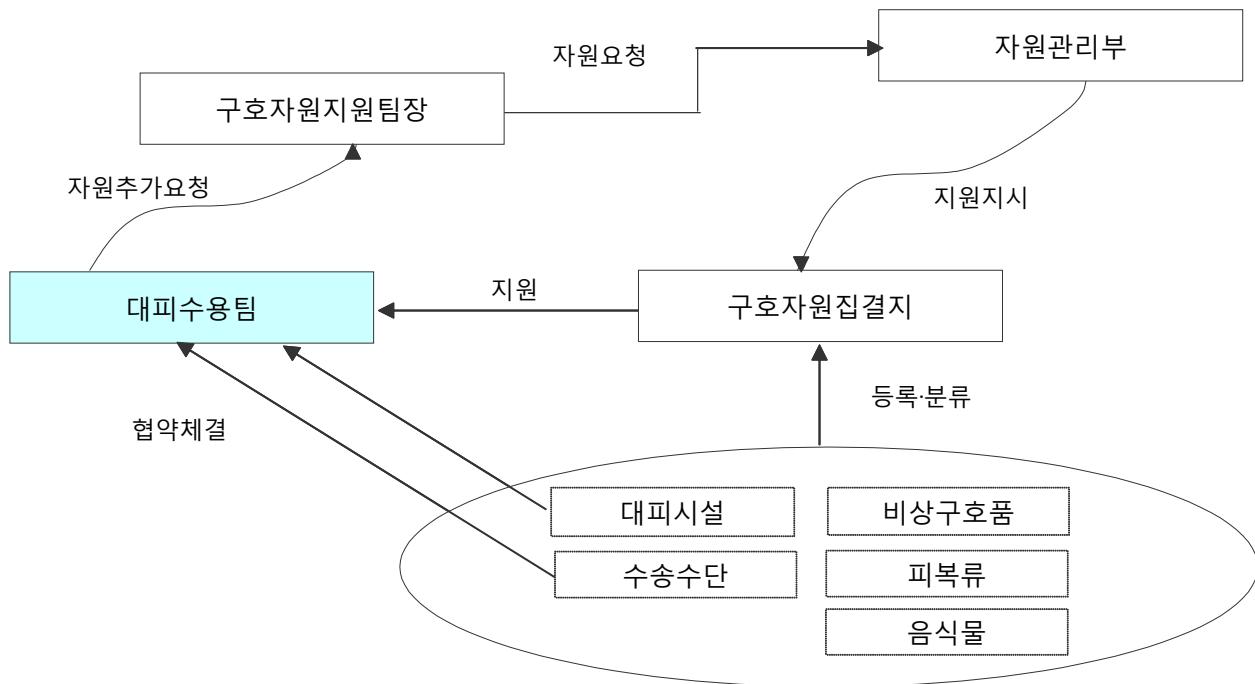
4.2 대피수용팀

4.2.1 긴급대피 접수센터 운영

- 대피명령이 내려지고 비상경고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피정보에는 긴급대피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 대피수용팀장은 대중정보센터로부터 긴급대피소 운영정보를 입수하고 대피소 입구에 대피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대피자들을 수용접수 한다.
- 대피접수센터 운영담당자는 재난 피해자 수, 피해자 중 친구나 친척집에 머무를 인원 수, 현재 접수되는 수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대피인원을 대피수용팀장에게 보고한다.
- 이 접수정보를 토대로 추가적인 긴급대피시설의 확보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접수센터를 통해 입수한 실종자정보는 대중정보센터에 통보한다.

4.2.2 긴급대피소 운영

- 긴급대피소는 화학누출사고에 대한 일시적 대피소와 이재민에 대한 임시거주지로서의 기능을 한다.
- 대피수용팀은 단기간의 긴급대피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장기간의 대피소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의 대피계획에 의해 운영된다.
- 긴급대피소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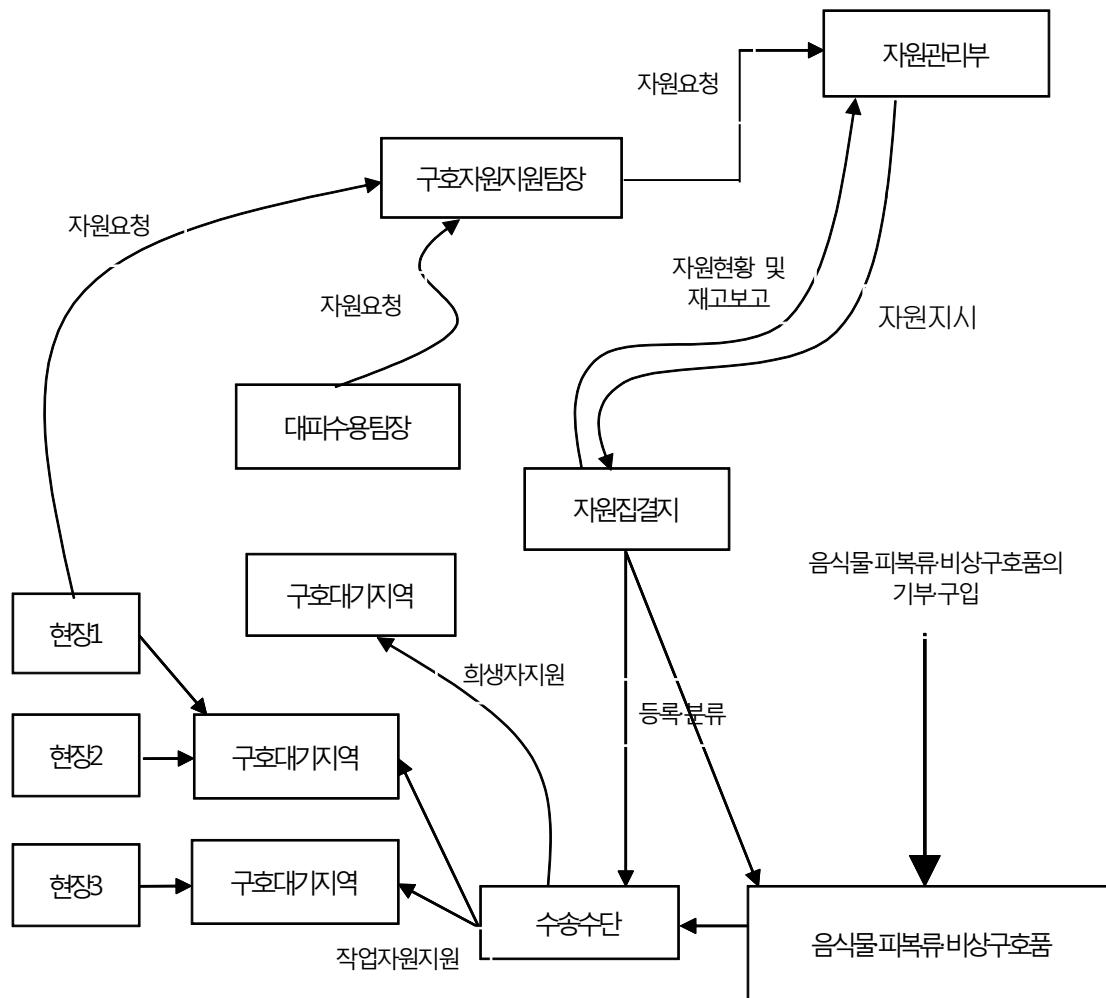


- 긴급대피소는 일반적으로 수용능력, 의식주 확보 용이성, 구호수송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가 지정된다.
- 긴급대피소 운영계획에는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된 교육청, 종교단체,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수송협회 등이 참가한다.(자원동원매뉴얼 긴급구호 참조)
- 대피수용팀에서 필요자원을 신청하면 구호자원지원팀은 긴급 의식주 수단을 제공한다.

4.3 구호자원지원팀

4.3.1 구호자원지원팀 운영

- 임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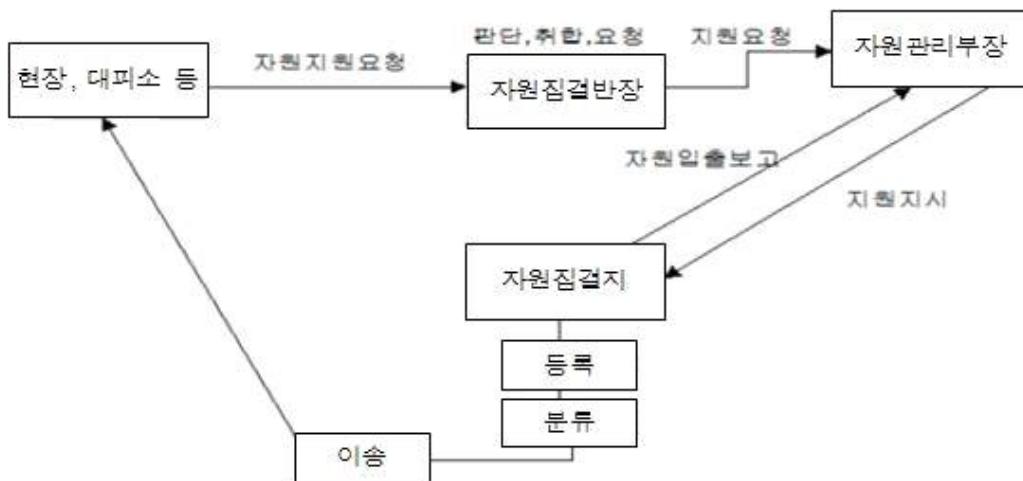


4.3.2 구호대기지역 운영

- 구호자원지원팀은 재난현장의 희생자 및 긴급구조요원의 식사 등 비상 구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 구호대기지역을 지정 운영한다.
- 구호대기지역은 구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구호자원 대기지역으로 전진 베이스 기지의 기능을 한다.
- 일반적으로 현장대응부의 자원대기소가 구호대기지역이 된다. 다른 지역에 구호대기지역을 지정 운영할 경우, 통제단 및 각 지원기관에 통보한다.

4.3.3 구호자원집결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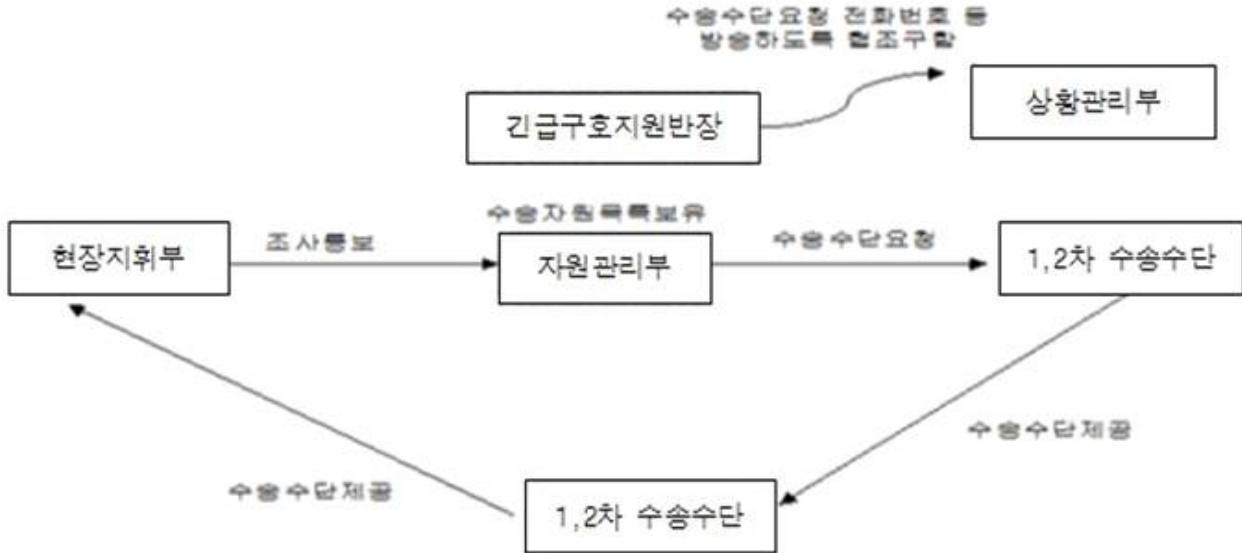
- 구조자원지원팀은 의식주 물품, 기타 구호품 수집과 구호인력의 총체적 조정통제를 위하여 구호자원집결지를 지정 운영한다.
- 구호자원집결지는 구호창고 및 긴급대피소가 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지정운영 된다.
- 추가 지정된 구호집결지는 언론대응반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공표된다.
- 긴급구호자원은 1차적으로 지정 · 공표된 구호자원집결지로 모이고, 집결된 구호자원은 현장의 구호지원요청에 따라 인근 구호대기지역으로 수송, 배급된다.
- 구조자원의 집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대도민 비상운송

- 충청남도교육청은 도민 운송수단의 공급에 협조적으로 노력한다.
- 긴급구호지원반장은 운송수단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가 연락할 수 있는 비상전화를 확보한다.
- 긴급구호지원반장은 언론대응반장에게 운송수단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화번호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요청한다.
- 긴급대피기간 동안 현장지휘부장은 각 주택과 건물 등에 대하여 대피여부를 확인하고 수송수단의 필요 여부를 조사한다.
- 필요한 수송수단의 수, 대기장소, 대기시간, 목적지 등에 대하여 조사된 정보를 수송지원팀장에게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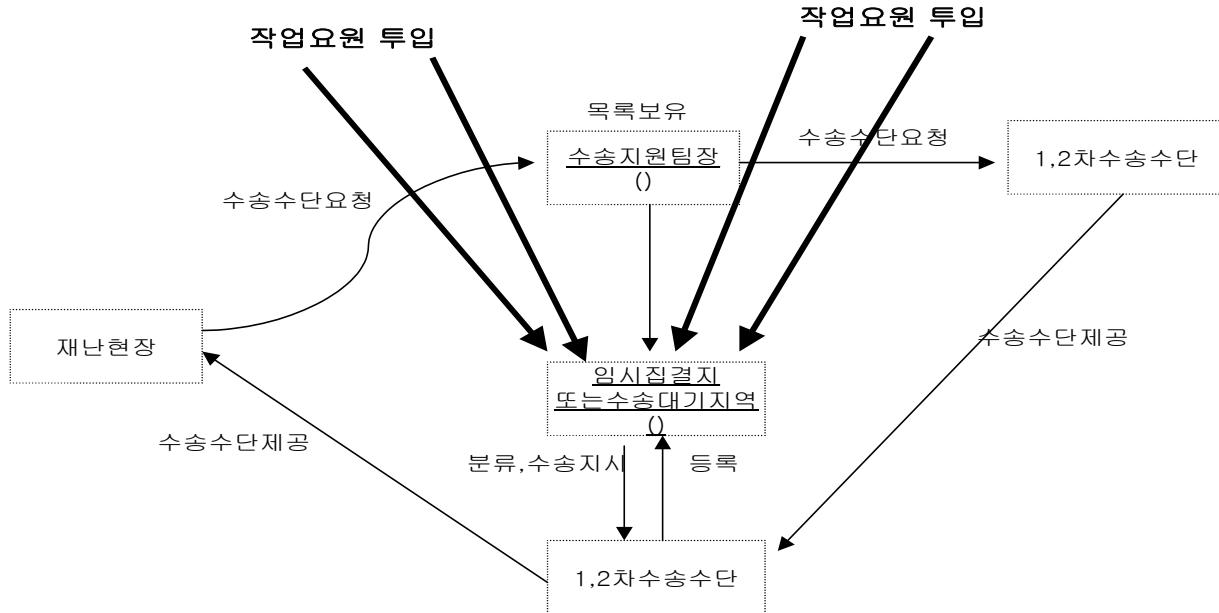
- 도민 비상 수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나. 긴급구조요원 운송수단

- 재난지역내의 긴급구조활동에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경우 다수의 긴급구조요원을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이송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제공된다.
- 자원관리부 현장통제반은 해당지역의 교통정책을 통제하고, 긴급구조요원들의 신속한 현장진입을 지원한다.
- 집결지 수송대기지역 및 임시집결지로 지정된 장소(학교 등)에 자가용 차량을 주차해 두고, 학교 버스 등 수송지원팀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재난지역으로 이동한다.
- 트럭 및 버스운송협회 등 수송지원기관단체는 긴급구조요원의 현장수송에 우선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 재난으로 인한 건물붕괴, 잔해물 등 교통진입 장애요인으로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교통로 확보는 긴급시설복구반의 책임이다. 자원관리부 서비스 지원반은 긴급시설복구반장에 진입로 임시복구를 요청한다.
- 병원, 발전소 등의 비상요원 수송과 대체 종합방재센터로의 물자수송을 위하여 특별한 긴급운송수단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 폭설, 홍수, 위험물재난 등 특수한 재난상황에 따라 특별한 수송수단이 필요한 경우 자원동원매뉴얼 수송분야를 참고한다.

- 긴급구조요원의 비상 수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병원간 비상 환자이송

- 각 병원, 산후조리원, 정신병원, 또는 거동불편자 수용시설은 대피계획을 포함한 내부 긴급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점검하여야 한다.
- 재난으로 시설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파괴된 경우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는 수용된 환자를 안전한 다른 시설로 긴급 이송하여야 한다.
- 대량환자 이송에 따른 구급차 확보는 응급의료소 의료자원지원팀(구급차대기소)과 협의 조정한다.
- 지역 내 구급차 현황은 자원동원매뉴얼 구급분야를 참고한다.

제11절 재난통신 계획(#11)

1. 목적

소방서·소방본부·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통제단간 통신계획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소방정보통신지원팀장은 모든 통신체계를 조정·통제하는 책임을 진다.
- 소방정보통신지원팀장은 종합방재센터,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부, 자치단체장, 각 긴급구조지원기관, 상급 긴급구조통제단간의 적절한 정보통신(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한다.
- 소방통신지원팀장은 종합방재센터 정보통신시스템을 가동하고 각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통신자원을 제공한다.
- 통신지원팀장은 이 계획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조직 및 운영요원을 편성하고 통제한다.
- 책임 및 지원기관단체

책임기관	지원기관
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충남·충북고객본부 - 이동통신사(SKT, KTF, LGT)의 충남지역 본부(지점) - 육군 제32사단 - 충남지방경찰청의 정보통신부서

- 운영요원 : 메시지 조정담당, 기록담당, 교환원 등 운영요원 지정·운영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활동개요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재난통신체계를 점검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 재난통신시스템은 가동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 재난통신시스템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 재난통신시스템이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 통신지원팀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비상소집 절차 이행
 - 통신요원이 숙련되기까지의 교육훈련
 -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절차 규정
 - 임무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

4.1 종합방재센터 통신시스템

- 긴급구조통제단과 상황실과의 통신은 가능한 유선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 무선통신수단을 보유한 기관(부서)들은 무선장비가 사용 가능한 경우 무선통신을 사용한다.
- 종합방재센터는 긴급구조지원기관(비상대책상황실)과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 통신조정센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를 운영한다.
- 유관기관 통신조정센터는 각 유관기관 통신연락관이 종합방재센터를 중심으로 기관간 협조를 위한 중앙통신조정센터이다..

4.2 재난통신 보조수단

- 소방정보통신지원팀장은 추가적인 회선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지역 전화회사와 통신 및 접촉을 시도한다.
- 회선 수는 수요량에 따라 설치된다.

4.3 대체 종합방재센터 통신

- 대체 종합방재센터의 통신수단은 유무선 통신장비와 주요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예비 무선통신시스템을 활용한다.
- 대체 상황실의 가동은 해당 자치단체장 및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에 따라 가동한다.

4.4 현장지휘소 통신

- 통제단이 설치되면, 현장요원과 상급 통제단, 다른 관할구역 긴급구조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현장요원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 통신 시스템을 통해, 현장 응답 요원에게 지령이 발송된다.

- 충청남도소방본부는 재난현장에 배치할 이동통신(SNG)차량을 가지고 있다.

구 분	내 용
용 도	- 재난현장과 본부간 위성망을 통한 실시간영상 전송, 화상회의, - 행정통신망 운영(행정망, 인터넷, 전화 등)
구 성	- SNG차량, 고정국, 차량이동국
차량번호 / 연식	- 77조9972, 현대 그랜드스타렉스(경유) / 2009. 8.

- 재난현장의 이동통신차량은 각 이동통신사(SKT, KTF, LGT)의 중계기 차량 또는 소방관서의 지휘차량 등이 된다.
 - 이들 차량에는 무선(이동)전화, 소방작전용 차량국이 설치되어 있음
- 소방정보통신지원팀장은 현장지휘대장(통제단장)의 요청에 따라 종합방재센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통신지원을 위해 이동통신차량을 배치운영 한다.
- 종합방재센터가 작동한다면, 소방정보통신지원팀장은 종합방재센터의 통신을 조정할 통신운영자를 지정한다.
- 보조 통신수단에는 VHF 혹은 UHF 무전기를 포함한다.

4.5 대중정보센터 통신

- 대중정보센터는 뉴스보도가 나가고 만들어지는 곳에 설치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 설치될 경우 대중정보센터는 현장에 설치한다.
- 언론대응반은 및 상황관리반은 대중정보센터와 종합방재센터간의 통신을 구축한다.
- 대중정보센터에는 전용 전화선(또는 휴대전화)을 설치한다.
- 통신지원팀장은 유무선 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조정통제 한다.

4.6 대피소와의 통신

- 대피시설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가 일차적인 통신수단이 된다.
- 전화선이 끊어지거나 사용 불가능할 경우, HAM이 대피장소에 급파되어 종합방재센터와의 통신연결을 구축한다.

4.7 통신 유지관리

- 24시간 운영시 통신 유지 관리는 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팀장에 의해 제공된다.
- 재난시 전화서비스제공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예)
 - 긴급구조
 - 긴급구호
 - 민간 통신서비스
 - 긴급복구
 - 기타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

4.8 종합방재센터 메시지 흐름

-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는 메시지 기록양식에 기록된다.
- 메시지 양식은 기록요원에게 배포된다.
- 통신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지원팀에 다음요원이 배치된다.
 - 메시지 조정담당 : 통신의 우선순위와 보안이 요구되는 통신을 최우선적으로 통신하도록 기록요원을 조정한다.
 - 기록요원 : 개별적 형태의 통신과 요약된 정보의 데이터통신 모두를 기록한다.
 - 메신저 : 긴급상황 수보자의 메시지를 통신지원팀장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기타 세부적인 메시지 흐름은 종합방재센터 표준운영절차(SOP)를 참고한다.

4.9 지원 및 후생업무

- 통신지원팀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보조요원을 필요한 곳에 배치시키고 그들의 식사 및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필요물품들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3장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1. 자연재난 대응계획

2. 사회재난 대응계획

제3장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1. 자연재난 기본계획

1.1. 홍수(집중호우)

1.1.1 홍수 발생 특성

특 성	형 태
복 합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증가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예보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으나 특정지역의 집중호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도시토지이용 극대화 및 산업화로 기존 물의 흐름이 왜곡되어 침수 및 수난사고 지역 예상대응 한계
광 역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지역은 수개의 시·군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인접 시·도의 소방자원 및 유관기관 자원의 적극적인 지원협력 필요
위 협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난구조중심의 자원 및 활동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곡·하천 등 관광야영지의 등산객, 낚시꾼, 행락객에 대한 현황파악 및 사전 대피유도활동 필요 · 고립된 지역에 대한 인명구조 및 침수지역 배수지원, 강풍지역 낙하물 제거, 기타 안전조치활동 전개 · 수난구조 시 물의 흐름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필요장비 활용 등 사전안전조치 절대 필요

1.1.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통제단 지휘부 (통제단장, 연락관, 각 부장, 관할 소방서장)

- 기상청의 집중호우예보를 통보받은 경우 대중비상경보를 전파한다.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한다.
 - 미리 통지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내의 거주민, 시·군 상황실로 통지
 - 미리 작성된 특수시설 호출 비상연락망에 따라 특수시설에 통지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게 통지

- 기상청 기상특보 접수 후 관할지역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한다.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 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를 설치·운영한다.
-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
- 수해 관련 정보분석 활동을 실시한다.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보고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긴급상황 관리(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 교통통제 및 각종 규제사항

나. 상황관리부

- 대응지역의 현황 및 변화된 상황을 파악한다.
 - 상황분석을 위해 수해 지역에 대한 안전지역 선정
 - 수해로 인하여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분석 요원들간의 통신을 위한 대체 수단을 강구
 - 각 지역별 침수 및 수난사고 가능성을 예측하여 배수지원팀 및 수난구조지원팀을 적절히 배치운영
 - 대응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인접 시·도 및 유관기관 지원을 활용한 대응계획 작성
 - 특별한 위험의 예측(침수, 붕괴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교통통제 등)

- 재난대응계획 마련
 - 재난대응계획서(대응지침서)
 - 통제단 조직도 및 자원할당표
 - 시간대별 대응활동일지
 - 실종자 신고접수대장
 - 대응활동 상황판 및 대응구역도
 - 사상자 조치상황

다. 현장지휘부

- 수해의 특성과 규모, 대응자원의 여건, 피해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한 후, 조직적인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실종자, 침수자 탐색/구조팀
 - 특수사고대응팀(댐 파괴, 위험물질 누출, 교량붕괴, 도로파손 등 대응)
- 현장구조활동을 위하여 물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복구부와 긴밀히 협조관계 유지하며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긴급복구반에서는 홍수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비상 제방 설치 및 펌프 작동준비
- 응급의료소의 설치는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
 - 현장과 병원간의 이송 도로 피해 시 우회도로 확보
 - 이송용 구급차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 차량의 운영방법을 모색
- 신속한 대피지시 등을 하고 현장통제활동을 확실히 실시한다.
 - 수해 발생 시기, 규모 등에 따라 대피의 권고·지시, 대피방법, 대피소의 개설·운용방법 등의 유연한 대응
 - 대형 홍수 발생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피난로 확보,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라. 자원관리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를 확립한다.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수난구조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지원
-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지원, 붕괴우려 개소에 대한 보강, 긴급복구 지원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시·군청, 경찰, 군 기타 민간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전화선, 중계기의 피해로 인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복구시간의 확인 및 대체 통신방법을 모색한다.
- 긴급수송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긴급수송로 및 수송수단을 확보한다.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풍수해 발생 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홍수 또는 침수지역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인원 및 자원을 확보해 둔다.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긴급대응자원 확보

장 비	물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트, 소방정 등 수난구조용 장비 - 굴착, 파괴 절단 장비 - 포크레인, 크레인 등 중장비 - 탐색/구조용 장비 - 구급 및 응급의료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 붕괴방지용 파이프, 지지목 - 침수방지용 모래주머니 등 - 구급 및 의료약품 / 소모품 등

마. 긴급복구부

-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해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신속히 실시한다.

- 구조 · 구급 · 구호활동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
 - 구조활동현장접근을 위한 진입로, 우회로
 - 구조활동현장의 잔해물 제거
 - 복구하지 않으면 2차위험이 있는 시설물
 - 파손된 소방용수, 대응현장의 전기, 통신
- 긴급오염통제반에서는 수인성 감염병 등에 대한 오염통제활동을 실시한다.
- 풍수해에 의한 재난지역 긴급오염통제 활동이 필요한 범위 설정
 - 긴급 오염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은 감염병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긴급오염통제 업무 실시
 - 식수, 식품의 오염여부 조사 및 통제
 - 대응지역의 주변의 역학조사 및 오염물질처리
 - 감염병의 조사 및 통제(예방접종 등)
 - 응급의료소장과 협의로 환자의 격리
 - 지역내 방역의 실시
 - 청결, 오염방지관련 교육
- 피해지역 및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한다.
- 홍수 피해지역의 물, 전기 등의 임시 공급
 - 재난심리상담, 재난피해자의 대피 및 임시수용, 구호지원의 지원, 병원 간 비상환자 수송 등의 활동을 실행

1.1.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대 응 단 계	활 동 내 용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기상감시 네트워크부터 계속적 정보자료 수집 분석 지시 · 수위 상승율, 강우(설)량 등 기상정보자료 도상표시 · 기상정보자료를 종합 분석 후에 잠재적 재난위험 영향지역을 도상에 표시 · 예측되는 재난위험 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원, 교도소, 학교, 병원, 공장)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의 주지 확인 ·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정보 배포 및 긴급피난, 안전조치 등 피해예방 및 완화 활동에 대비토록 권고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종합정보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 국지적 호우 또는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비상경고, 탐색, 수난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시·군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 주의보 단계의 모든 대응활동의 긴급조치 및 재확인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험)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구조 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기상감시 네트워크, 유관기관과의 긴급통신유지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 통제시스템 가동 · 피해상황분석 보고서 작성 및 통신보고(대책본부장, 총리, BH) · 소방본부 통제단(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 부분 가동되는 시·도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기상청의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풍수해 발생 또는 1개의 시·군에 풍수해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 긴급구조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 운영하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풍수해 피해 발생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 · 재난위험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피난했는지 여부 및 다른 예비대책들이 취해졌는지 확인조치 · 지속적인 상황감시 및 예측활동과 추가 재난위험지역 표시 · 재난위험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주민 구조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중앙통제단 전면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위험지역 내 주민 구조 · 긴급대피소 수용인원 확인 및 긴급구호 확인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1.2 태풍

1.2.1 태풍 발생 특성

특 성	형 태
복 합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예측 이상의 강력한 태풍피해 발생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하천 범람, 역류 및 내수배제 불량, 만곡부 제방유실, 산지하천으로부터의 유목과 토석류, 지방하천 제방의 유실 및 붕괴, 해일 피해 등 복합적 피해가 광역적으로 발생함 · 도시토지이용 극대화 및 산업화로 기존 물의 흐름이 왜곡되어 침수 및 수난사고 지역 예상대응 한계 · 산간계곡부의 산사태로 인한 유목 및 제방유실로 인한 침수피해 및 도로유실 피해 등 복합적 피해 발생
광 역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피해 발생은 수개의 시·군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 많아 대응 자원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지 않은 인접 사·도의 소방자원 및 유관기관 자원의 적극적인 지원협력 필요
위 혐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피해 : 농경지, 도시, 라이프라인 시설 · 해안시설 : 해일로 인한 선박의 파손·유실, 기름유출 등 오염사고 · 주요공공시설 : 도로의 유실, 교량파손, 하천범람, 제방붕괴, 항만시설 파손, 어항 파손, 상하수도시설 피해, 대규모 정전발생 · 도시하천 연안지역은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대규모 재산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2.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통제단 지휘부

- 기상청의 태풍주의보를 통보받은 경우 대중비상경보를 전파한다.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한다.
 - 미리 통지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내의 시·군 상황실로 통지
 - 미리 작성된 특수시설 호출 비상연락망에 따라 특수시설에 통지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게 통지
- 기상청 기상특보 접수 후 관할지역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한다.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를 설치·운영한다.
-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
- 풍수해 관련 정보분석 활동을 실시한다.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보고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태풍진로 예측 상황 전파 및 위험지역 선정 우선대처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긴급상황 관리(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나. 상황관리부

- 대응지역의 현황 및 변화된 상황을 파악한다.
 - 상황분석을 위해 풍수해 지역에 대한 안전지역 선정
 - 침수, 유실 등으로 인하여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분석 요원들간의 통신을 위한 대체 수단을 강구
 - 각 지역별 침수 및 수난사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배수지원팀 및 특수구조지원팀을 적절히 배치운영
 - 대응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인접 시·도 및 유관기관 지원을 활용한 대응계획 작성
 - 특별한 위험의 예측(침수, 제방붕괴, 산사태, 도로유실, 토석류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교통통제 등)
- 재난대응계획 마련
 - 재난대응계획서(대응지침서)

- 통제단 조직도 및 자원할당표
- 시간대별 대응활동일지
- 실종자 신고접수대장
- 대응활동 상황판 및 대응구역도
- 사상자 조치상황

다. 현장지휘부

- 풍수해의 특성과 규모, 대응지원의 여건, 피해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한 후, 조직적인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실종자, 침수자 탐색/구조팀
 - 특수사고대응팀(댐파괴, 위험물질 누출, 교량붕괴, 도로파손, 토석류 등 대응)
- 현장구조활동을 위하여 물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복구부와 긴밀히 협조관계 유지하며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응급의료소의 설치는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한다.
- 신속한 대피지시 등을 하고 현장통제활동을 확실히 실시한다.
 - 풍수해 발생 시기, 규모 등에 따라 대피의 권고·지시, 대피방법, 대피소의 개설·운용방법 등의 유연한 대응
 - 토석류 및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피난로 확보,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라. 자원관리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를 확립한다.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수난구조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지원
-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지원, 붕괴우려 개소에 대한 보강, 긴급복구 자원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구청, 경찰, 군 기타 민간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전화선 및 중계기의 피해로 인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복구시간의 확인 및 대체 통신방법을 모색한다.
- 긴급수송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긴급수송로 및 수송수단을 확보한다.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풍수해 발생 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재난피해지역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인원 및 자원을 확보해 둔다.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 · 도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긴급대응자원 확보

마. 긴급복구부

-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해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신속히 실시한다.
 - 토석류 및 유목, 쓰레기 등으로 인해 하천이 막히거나 범람할 우려가 있는 구역 우선 실시
 - 배수기능에 장애를 받는 지역 우선 실시
- 긴급오염통제반에서는 수인성 감염병 및 해일로 인한 연안지역 유출류 제거 작업 등 오염통제활동을 실시한다.
 - 풍수해에 의한 재난지역 긴급오염통제 활동이 필요한 범위 설정
 - 선박 파손 등에 의한 유출기름 방제조치 실시
- 피해지역 및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한다.

1.2.3 대응단계별 활동

대 응 단 계	활 동 내 용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기상감시 네트워크로부터 계속적 정보자료 수집 분석 지시 · 수위 상승율, 강우량, 풍속 등 기상정보자료 도상표시 · 기상정보자료를 종합 분석 후에 잠재적 재난위험 영향지역을 도상에 표시 · 예측되는 재난위험 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원, 교도소, 학교, 병원, 공장)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의 주지 확인 ·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정보 배포 및 긴급피난, 안전조치 등 피해예방 및 완화활동에 대비토록 권고
대 응 1 단 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종합정보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 국지적 호우 또는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 (비상경고, 탐색, 수난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시·군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주의보 단계의 모든 대응활동의 긴급조치 및 재확인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험)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산사태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기상감시 네트워크, 유관기관과의 긴급통신유지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통제 시스템 가동 · 피해상황분석 보고서 작성 및 통신보고(대책본부장, 총리, BH) · 소방본부 통제단(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 부분 가동되는 시·도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기상청의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풍수해 발생 또는 1개의 시·군에 풍수해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 운영하고 사도 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풍수해 피해 발생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지역 주민대피 실시 · 지속적인 상황감시 및 예측활동과 추가 재난위험지역 표시 · 도시하천연안지역 침수피해 주민대피 및 기간시설 피해축소활동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개 이상의 사도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중앙통제단 전면적 운영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 지원체계의 가동 · 지역재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준비(대책본부) · 재난위험지역 내 주민 구조 및 자원봉사자 활동 조정·분배 · 긴급대피소 수용인원 확인 및 긴급구호 확인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통제 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1.3 폭설

1.3.1 폭설 발생 특성

특 성	형 태
복 합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폭설에 의한 피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설빈도는 감소했으나 강설량 및 시간당 강설량의 증가로 지역적 고립, 교통장애 등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정도도 심각 · 비닐하우스 등 적설압력에 약한 구조물의 붕괴
곤 란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 긴급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지역 조난자에 대한 구조활동은 산악의 광범위한 지역의 수색, 폭설지역 요구조자 이송, 통신장애 등 많은 구조활동 곤란성 내재 · 고립지역에서의 응급환자발생 또는 사고발생시 현장접근 및 환자 이송로 미비로 긴급대응 곤란 · 고립 장기화에 대비한 긴급구호활동 필요
다 양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재난은 산악지역 조난, 교통두절에 의한 고립, 적설압력에 의한 건물·구조물의 붕괴로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지역 눈사태 또는 신체 한랭손상 등에 의한 등산객의 조난사고 · 도로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의한 차량정체, 지역적 고립, 빙판길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등

가. 통제단 지휘부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
 - 미리 통지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내의 자치단체 상황실로 통지
 - 미리 작성된 특수시설 호출 비상연락망에 따라 특수시설에 통지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게 통지
- 기상청 기상특보 접수 후 관할지역내 예상피해발생 구역분석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언론매체간 취재 경쟁으로 재난대응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대중정보센터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를 설치운영

-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
- 설해 관련 정보분석 활동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보고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 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 · 보고, 긴급상황 관리(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 · 전달 · 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 교통통제 및 각종 규제사항
- 폭설예보 발령시 주요 지역 사전 대피 또는 안전조치 비상경고활동
 - 조난예상 산악지역 등산객 입산통제 또는 하산귀가 조치
 - 교통장애 예상지역 차량진입 통제 및 우회도로 이용유도
- 고립지역 긴급구호활동을 위한 긴급복구부의 활동조정
 - 대한적십자사 등의 긴급구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폭설지역 긴급대응활동을 위한 자원 동원 및 배치
 - 산악지역 조난사고에 대한 군, 경찰 등 유관기관 대응인력 동원(산악지역 기상 조건에서 활동가능토록 관련 장비확충한 자원에 한함)
 - 고립지역 긴급구조, 구급이송 및 구호활동 접근을 위한 헬기, 긴급제설장비 등 필요장비 보유기관과의 동원사항 협의조정

나. 상황관리부

- 대응지역의 현황 및 변화된 상황 파악
 - 설해로 인하여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분석 요원들간의 통신을 위한 대체 수단을 강구
 - 대응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인접 시 · 도 및 유관기관 자원을 활용한 대응계획 작성
 - 특별한 위험의 예측(고립, 봉괴, 눈사태, 대규모 교통사고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교통통제 등)

- 폭설지역 기상정보 수집 및 대응활동계획 수립
 - 재난대응계획서(대응지침서)
 - 통제단 조직도 및 자원할당표
 - 시간대별 대응활동일지
 - 실종자 신고접수대장
 - 대응활동 상황판 및 대응구역도
 - 사상자 조치상황
 - 지금까지의 적설량, 앞으로의 적설예상량, 기온 및 바람의 변화사항 등 폭설 지역 기상정보 정기적 수집
 - 기상정보, 대원안전을 고려한 현장대응활동계획 수립

다. 현장지휘부

- 설해의 특성과 규모, 대응자원의 여건,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한 후, 대응유형별 하위단위 조직화
 - 실종자, 고립자 탐색/구조팀
 - 특수구조팀 중심 현장대응활동 전개
 - 소방, 경찰 인명구조견 조기 투입 공동대응

- 응급의료소의 설치는 설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
 - 현장과 병원간의 이송 도로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회도로를 확보
 - 이송용 구급차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 차량의 운영방법을 모색

- 효율적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활동
 - 대규모 설해 발생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피난로 확보,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 산악지역 조난자 구조활동
 - 군, 경찰, 지역국립공원(민간)구조대 등 대규모의 탐색구조팀 편성 운영
 - 조난지점, 조난상황 등 관련정보 최대한 활용
 - 현장활동대원의 동상방지조치 등 안전확보 최우선 고려

- 고립지역 구조구급 등 긴급대응활동
 - 교통장애지역, 고립지역에서 화재, 긴급환자 기타 긴급구조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현장접근
 - 헬기 등 대체교통수단 최대한 활용(강풍 등 기상악화사항 고려)
 - 소방차량 진입을 위한 긴급제설작업 실시(도로관리부서 긴급요청)

라. 자원관리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 확립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고립사고 구조 및 붕괴사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지원
- 폭설지역 긴급대응관련 장비 및 인원 지원활동
 - 한국도로공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이 보유한 제설장비[제설차, 덤프트럭,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삽날(덤프트럭 용), 염화칼슘용액살포기,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트럭 등]
 - 산악구조용 장비, 붕괴사고 구조용 장비, 헬기 등 고립지역 구조를 위한 장비 확보
 - 인접한 시·도, 경찰, 군 등이 보유한 헬기
 - 산악지역 긴급활동에 필요한 통신망 확충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 전화선 및 중계기의 피해로 인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복구시간의 확인 및 대체 통신방법 모색
- 외부자원의 대응활동 편의 제공
 -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외부자원을 위하여 숙박시설이나 야영지를 준비하고 음식과 식수 등을 공급
 - 지역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부자원에 대해서는 출영(出迎)과 안내를 담당할 요원을 지정

- 긴급수송활동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풍수해 발생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재난규모 확대시의 예비 인원자원의 확보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 · 도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마. 긴급복구부

-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구활동
 - 구조구급활동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
 - 구조활동현장접근을 위한 진입로, 우회로
 - 구조활동현장의 잔해물 제거
 - 복구하지 않으면 2차위험이 있는 시설물
 - 폭설에 의해 파괴된 비닐하우스 등 각종시설물 긴급복구활동 적극 지원
 - 의료기관, 관공서, 언론기관 진입로 복구
- 고립지역 긴급구호활동의 실시
 - 단수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에서 물, 전기, 연료 등의 임시 공급
 - 재난심리상담, 재난피해자의 대피 및 임시수용, 구호자원의 지원, 병원간 응급환자 수송 등의 활동을 실행
 - 산간지역 주민 또는 고속도로상 고립주민에 대한 식료품, 의료품, 연료 등 생활필수품 긴급지원활동
 - 긴급제설지원활동과 연계하여 헬기 최대한 활용

○ 긴급복구 대상시설

긴급복구 대상시설		피 해 내 용
라이프라인 공급장애	라이프라인시설	- 라이프라인 시설이 각 개소에서 피해를 입어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용 불가능
	수 도	- 동파로 인한 단수
	하 수 도	- 배수기능 및 처리기능에 지장이 발생함
	전 기 · 전 화	- 2차재난에 의한 교환기고장, 장기간 정전 등
도로 및 산사태 위험지역		- 도로결빙·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구역 발생 - 낙석, 눈사태 발생 - 조난사고, 고립지역 발생
농경시설 등		- 비닐하우스 등 붕괴 - 수산양식장 등 기온하강으로 인한 피해 - 경작지 피해

1.3.2 대응단계별 분류기준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 응 단 계	활 동 내 용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대설주의보 발령(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신(新)적설 : 어떤 정해진 시간에 내려 쌓인 눈의 높이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기상감시 네트워크로부터 계속적 정보자료 수집 분석 지시 · 기상정보자료를 종합 분석 후에 잠재적 재난위험 영향지역을 도상에 표시 · 예측되는 재난위험 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원, 교도소, 학교, 병원, 공장)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의 주지 확인 ·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정보 배포 및 긴급피난, 안전조치 등 피해예방 및 완화활동에 대비토록 권고 · 통제단 상황분석 및 보고반 가동 → 폭설정보의 수집 및 분석(적설량, 기온 등)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대 응 1 단 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대설경보 발령(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이고,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비상경고, 탐색, 고립자 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

	<p>방서 통제단(시·군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지휘소 설치(소방상황실) · 주의보 단계의 모든 대응활동의 긴급조치 및 재확인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험)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구조통 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기상감시 네트워크, 유관기관과의 긴급통신유지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 통제시스템 가동 · 폭설지역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소방서 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대응 2 단계 (중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폭설피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설해 피해 발생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지진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 · 고립위험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피난했는지 여부 및 다른 예비대책들이 취해졌는지 확인조치 · 지속적인 상황감시 및 예측활동과 추가 재난위험지역 표시 · 고립위험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주민 구조 ·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운영
대응 3 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개 이상의 사도에 걸쳐 폭설피해 발생 또는 대응2단계 수준의 폭설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시·도차원의 자원으로 대응이 불가능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 지역재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준비(대책본부) · 재난위험지역 내 주민 구조 · 긴급대피소 수용인원 확인 및 긴급구호 확인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1.4. 지진

1.4.1 지진발생 및 특성

특 성	형 태
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은 다양한 피해형태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붕괴, 매몰, 추락 · 화재, 폭발 · 해일, 침수 · 화학물질 누출, 원자력 사고 · 기타 전기가스 사고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을 위한 장기간의 대응활동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자원의 부족에 대비한 사전계획 필요 · 추가자원의 지원과 효율적 분배에 대한 상세한 검토 필요 ·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복구와 희생자의 구호대책 고려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대응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대응활동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 매몰에 따른 탐색/구조활동 · 화재진압 및 폭발에 따른 화재진압활동 · 해일, 침수피해에 따른 수난구조 · 화학물질누출, 방사능 누출에 화학물질처리활동 - 다양한 자원을 효율의 조직화로 적합한 전략과 전술 적용 필요
제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현장의 광역화로 대응자원 부족과 대응활동 제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의 파괴로 소방용수의 부족, 출동로의 제한, 통신장애 발생 · 의료시설, 대피시설의 파괴로 긴급구호활동 장애 - 재난상황 유동성에 따른 예상하지 않은 대응활동 장애사항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의 제한성을 예상하여 충분한 보완대책 수립 · 수립된 대응계획에만 의지하지 말고 재난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전계획을 수정하여 실행하는 등의 신축적인 태도 필요

1.4.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통제단 지휘부

- 지진피해예측 및 분석결과에 의한 대응활동 우선순위의 결정에 주안점을 둔다.
- 지진은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 지진재난 발생 후 유언비어 등이 유포되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지진 상황의 대중홍보활동에 노력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생한 지진, 진원에 관한 관측 정보
 - 여진(After-shock) 등 지진 발생에 관한 이후의 전망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 교통통제 및 각종 규제사항
 - 지진발생시 전기, 가스, 석유 및 관련제품 안전사용의 홍보
 - 화재,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한 대응
 - 여진대책에 관한 정보
- 대응활동요원의 안전계획을 수립하며 중점고려사항과 주요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다.

중점고려사항	주 요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인구밀도 - 지정학적 중요성 - 대응지역 및 시설물의 지정학적 중요성 - 기반시설의 보호 - 사회/경제적 손실 - 복구단계에서의 이용가치 - 자원지원에 따른 접근의 용이성 - 위험의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활동 - 대응활동효과(대응활동노력에 대한 작간접적 효과) - 2차재난의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요원의 안전성 - 시설물의 용도와 특징 - 주거밀집도와 점유형태 - 희생자의 수와 생존가능성 - 화재하중과 연소의 가능성 - 전기, 가스, 위험물질 누출 등의 위험요인 - 대응활동의 난이도 - 대응자원의 능력과 보유장비

나. 상황관리부

- 지진에 의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대응구역별 현황 및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해상황(인명 및 건축물, 시설물, 라이프 라인 등)
 - 특별한 위험의 예측(폭발·연소, 침수, 붕괴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교통통제 등)
- 재난대응계획과 관련하여는 기본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다. 현장지휘부

- 지진의 특성과 규모, 대응자원의 여건,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한 후, 대응유형별 하위단위를 조직화한다.
 - 붕괴건물 등의 매몰자 탐색/구조팀
 - 화재진압팀
 - 특수사고대응팀(열차전복, 탱파괴, 화학물질 누출 등 대응)
- 위험물시설의 긴급대응
 - 지진발생시 유류, 화약, 가스, 독극물, 방사선 등 위험물 저장·관리시설 등의 누수·유출, 폭발 등은 재난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대응활동을 어렵게 함
 - 관할구역의 위험물 저장·관리시설 등에 대한 긴급대응활동 실시
- 신속한 대피 및 철저한 현장통제활동
 - 지진발생시기, 규모 등에 따라 대피의 권고·지시, 대피방법, 대피소의 개설·운용방법 등의 유연한 대응
- 효율적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활동
 - 대규모 지진발생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라. 자원관리부

- 지진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으로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동원체계 확립에 노력한다.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인력집결지의 개설과 동시에 각 지원기관 및 적십자사의 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추가자원을 동원하고 자원을 분류 배치
- 지역 외부에서 지원을 온 외부자원이 대응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외부자원을 위하여 숙박시설이나 야영지를 준비하고 음식과 식수 등을 공급
 - 지역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부자원에 대해서는 안내를 담당할 요원을 지정

- 지진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수송활동에 주안점을 둔다.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지진 발생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긴급수송 선박의 확보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재난규모 확대시를 대비하여 예비 인력 및 자원을 확보한다.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건축사협회 및 기술사협회와 연계)
 - 타 시 · 도의 지원인력
 - 외국 구조대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지진대응 필수장비 및 물자의 확보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 비	물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 파괴 절단 장비 - 포크레인, 크레인 등 중장비 - 탐색/구조용 장비(소방드론 포함) - 전기, 가스 등 안전진단장비 - 구급 및 응급의료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 붕괴방지용 파이프, 지지목 - 특수소화약제(포, 분말소화약제) - 구급 및 의료약품/소모품 등

마. 긴급복구부

- 지진피해에 의한 위험요소 및 중장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구활동을 한다.
 - 구조구급활동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
 - 구조활동현장접근을 위한 진입로, 우회로
 - 구조활동현장의 잔해물 제거
 - 복구하지 않으면 2차위험이 있는 시설물
 - 파손된 소방용수, 대응현장의 전기, 통신
 - 가스설비차단 및 안전진단
 - 의료기관, 관공서, 언론기관의 복구

- 파괴되지 않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안전 진단팀을 운영한다.
 - 주민과 대응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응작전의 수립과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 전기, 가스, 화학, 건축, 원자력 등 유형별 전문가들을 통합지휘팀과 긴급복구부 구조안전 진단팀에 배치하여 재난지역과 건물 등에 대하여 임시 안전점검실시
- 대규모 피해로 인하여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감염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오염통제를 실시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수, 식품의 오염여부 조사 및 통제
 - 대응지역의 주변의 역학조사 및 오염물질처리
 - 감염병의 조사 및 통제(예방접종 등)
 - 대응구역내 방역 실시
 - 청결, 오염방지관련 교육
-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한다.
 - 재난심리상담, 재난피해자의 대피 및 임시수용, 구호자원의 지원, 병원 간 비상환자 수송 등의 활동을 실행

1.4.3 대응단계별 분류기준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 응 단 계	활 동 내 용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 4 이상의 지진 경보·예보가 있는 경우 · 통제단 상황분석 및 보고반 가동 → 지진정보의 수집 및 분석(진원, 진양, 규모 등)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비상경고, 화재진압, 탐색, 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p>통제단(시·군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지휘소 설치 · 지진 발생지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소방서 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각 대응구역별 지원기관 :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통합 현장지휘소) 통합지휘팀에 연락관 파견 · 각 지원기관 연락관 :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 현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 ·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대응 2 단계 (중형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 운영하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지진피해 발생 · 광역행정단위 긴급사태, 시도자원으로 대응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지진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 · 시·도 차원의 지원기관(부서) :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시·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지진구역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소방서 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대응 3 단계 (대형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전면 운영, 중앙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2. 사회재난 기본계획

2.1 붕괴사고

2.1.1 붕괴사고 유형 및 특성

유형	내용
캔틸레버형 (Cantile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충격에 의하여 한 쪽 벽판의 갑작스러운 탈락이 원인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벽판이나 지붕 조립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쪽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할 수 있는 빈 공간은 각 층마다 골조나 튼튼한 가구류 부근에 형성
경사형 (Lean-to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벽이 무너지거나 한쪽 바닥판의 분리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판, 바닥판 또는 지붕의 한쪽이 완전히 떨어져 내리고 반대쪽은 여전히 지탱되고 있는 상태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 가능한 곳은 붕괴 결과로 생긴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
팬케이크형 (Pancake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이나 부실공사 등이 원인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개의 바닥 슬래브가 완전히 떨어져 내려 겹겹이 쌓인 상태 · 내력벽이나 기둥이 모두 붕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형태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 가능한 빈 공간은 기둥부분, 대형시설물의 부근 등에 작게 형성
V형붕괴 (V-shaped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판이 중앙부의 지지력 결함 또는 과부하로 인해 중앙추가 붕괴되어 발생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 가능한 빈 공간은 V형태 잔해의 양쪽 아래 벽 부분

특성	내용
활동 곤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잔해물 장애로 인해 접근곤란 및 구조활동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벽체 등 붕괴잔해물을 제거하여만 접근가능 · 붕괴잔해물 제거시 생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점진적 작업실시 - 붕괴형태를 고려한 탐색구조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잔해물에 압좌된 요구조자는 2차적 생명위협요소 고려
구조진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현장 안전확보 및 탐색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대 및 자원관리부 조직 강화
주민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징후 발견 및 1차붕괴 접수 직후 붕괴위험 여부와 예상 위험지역 판단 - 각종 경보수단을 이용한 붕괴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 대한 통지 지시
대규모 자원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해물 처리를 위한 대규모 중장비 동원 - 대규모 인력동원

2.1.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통제단 지휘부 (통제단장, 연락관, 각 부장, 관할 소방서장)

- 총괄적 지휘를 위한 대응체계와 의사전달체계를 확립
 - 대응체계 : 복잡한 붕괴사고현장은 대응활동을 용이하게 조정, 계획,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가 필요
 - 의사전달체계 : 각 대응조직간 또는 조직내부의 의사전달 방법 · 체계 · 수단의 확립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활동의 기본
- 추가붕괴에 의한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임무 수행
 - 안전담당은 현장활동계획 중에서 현장안전계획을 준비 또한, 안전 위험 요소, 불안전한 상황, 대원의 안전을 평가 감시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팀, 유언비어통제팀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전화번호의 언론 홍보 확인
- 언론기관 간 취재 경쟁으로 재난대응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언론매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지시

나. 상황관리부

- 현장 정보수집 및 대응활동계획 작성
 - 사고발생시간 : 사고발생시간을 통해서 붕괴건물 내부에 있는 요구조사의 수와 위치에 대한 정보 수집가능
 - 소재지 : 사고현장으로의 접근성 분석
 - 높이와 면적(6면) : 건축물 6면 전체와 면적을 고려
 - 건축물의 형태 : 대응전략과 전술의 수립에 매우 중요
 - 붕괴면적과 구조물의 위험성 : 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안전한 방법 결정
 - 화재위험성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파악
 - 노출 : 구조대원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노출 정도는 추가적인 손상과 부상 방지를 위하여 고려
 - 가스, 전기, 수도 : 가스, 전기, 수도의 통제는 구조대원과 요구조사에게 안전을 위해 시행
 - 기상조건 : 바람이 불거나 우천시에는 건축물 내·외부의 구조 활동에 부수적인 문제 발생
 - 요구조사(확인·미확인/목격/정보의 수집) : 요구조사의 위치파악은 초기 구조 활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우선순위중의 하나, 요구조사의 위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확인
 - 교통상황 : 붕괴현장에 출동대의 신속한 도착과 즉각적인 대응활동은 매우 중요하므로 우회로의 확보와 교통통제 및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 이동대책 수립
 - 주변철도 : 기차나 지하철에 의한 진동은 약화된 구조물에 충격을 줄 가능성 있음
 - 2차 붕괴 : 지진에 의한 여진 또는 이미 손상된 구조물에 의한 2차붕괴의 위험성 고려

다. 현장지휘부

- 현장지휘대에 편성된 특수임무 담당자 분야별 상호 조정
 - 안전진단 전문가는 구조와 구출활동, 구조활동 책임자는 초기에 건축물 안전 진단을 요청하고, 활동 중에 주기적인 점검실시
 - 위험물 담당자는 구조 활동의 초기에 현장상황분석 지원, 건축물 내의 위험물질 확인과 주기적인 점검 수행

- 중장비/특수 장비 전문가는 크레인, 대규모 리프팅 조작, 중장비 이동 등을 활용 대책 제시
- 기술정보 전문가는 어떤 상황에서 구조팀장의 요청으로 구조 활동상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 구조팀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들의 지원활동을 진행 중인 구조활동에 통합

라. 자원관리부

- 붕괴현장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의 동원, 관리
 - 현장대응인력 : 붕괴사고 대응활동은 소방, 경찰, 군, 자치단체, 전기·가스사업, 건축·토목기술, 응급의료,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인력 요구
 - 응급의료(구급) : 응급의료활동은 현장의 대응인력 뿐만이 아니라 요구조자에게도 제공필요
 - 특수 장비 : 붕괴구조활동에는 음파탐색장비, 광섬유 카메라, 휴대용 절단기, 파괴기, 구멍뚫기용 장비 등 특수한 탐색구조장비 필요
 - 건설 중장비 : 대형 건설기계설비는 구조 활동에 장애가 되는 잔해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
 - 구조물 지지대 : 구조물의 추가붕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요구조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지지대가 확보

마. 긴급복구부

- 붕괴잔재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잔해물 처리
-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의 우선 복구
- 독극물 사용시설 및 방사능 시설에 대하여 누출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실시
- 긴급복구활동 제반여건 사전 확인
 - 현장으로 긴급복구자원이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긴급수송로 지정
 - 긴급복구에 동원된 물자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지역에 적정하게 배치하는지 여부 확인
 - 긴급복구활동에 필요한 중장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치

2.1.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 응 단 계	활 동 내 용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붕괴우려가 있는 대상물의 발견 또는 강풍, 침수 등의 대규모자연재난으로 인해 건축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 붕괴사고대응계획의 수립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인명피해가 없거나 일상적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본대응조직의 운영 · 선착대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장에 의한 현장지휘체제의 가동 · 긴급구조지휘대장은 현장상황의 파악, 평가, 보고 · 추가지원의 필요성 판단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인명피해 10명 이상 또는 중규모의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 비상경고계획 가동 · 관할 내 또는 인접대응구역의 추가지원동원 ·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 ⇒ 소방서 통제단(시·군 통제단)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통합 현장지휘소)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 파견 · 사고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소방서 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 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시·도 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중앙통제단은 부분 운영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다중이용시설의 붕괴 또는 붕괴규모가 커서 전 국가적 지원대응이 필요할 경우 · 소방서, 소방본부 통제단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이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소방서 통제단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 · 통합대응조직 구조와 통합지휘체계의 운영 · 시·도 통제단장은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 인접 시·도에 응원요청 · 시·도 차원의 지원기관(부서)은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시·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중앙통제단은 조정, 통제의 기능을 수행

2.2 가스폭발

2.2.1 가스폭발 발생 특성

특 성	내 용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누설과 가스 자체의 연소로 크게 구별된다 - 가스 누설은 체류 지역 및 유동 범위의 확정이 어렵고, 인화에 의한 폭발위험, 산소 부족, 중독위험성이 크다 - 특히 LP가스는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낮은 곳에 체류하는 폭발 혼합기를 형성하기 용이하다 - 갑작스런 2차 폭발로 인하여 대원 작업 위험 발생 우려 - 폭발 충격파에 의하여 진입하는 대원 작업위험 발생우려 - 분출화재 및 비산물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구조 및 대원 작업 시 위험 발생 우려 - 가스누출 장소에 관창부대를 배치할 때에는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무인방수 고려 - 경계구역내외의 통제를 확실하게 함
폭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충격으로 인하여 폭원(爆源)에 근접한 고체물(용기 혹은 건옥(建屋) 등)을 파괴하는 효과 - 폭발가스의 급팽창에 의거하여 상기에 의한 파편을 날려버리는 추진효과 - 동시에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어 충격파를 만들고, 이것이 원거리까지 영향을 주는 충격효과 - 폭탄형식의 폭발 : 폭탄과 같은 매우 강고한 용기 중에 폭발이 일어나면, 용기를 파괴하고, 그것을 파편으로써 주위에 날려 버리기 때문에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 하므로 폭풍의 효과는 원거리까지 미치지 않는다. - 핵폭발 형식의 폭발 : 2차적으로 파편효과가 수반한다. - 가스 및 분진 폭발 : 가스나 분진은 고압상태가 아닌 한 파편효과(최초의 파편효과)가 적고 충격파에 의한 거리효과의 파괴비중이 크다.
활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및 옥내 폭발로 구분하여 활동 방침을 결정 - 폭발로 인한 파괴효과에 의하여 화재 및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실내 폭발인 경우, 대원 안전사고에 요주의 - 2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재난의 확산방지에 주력 - 구조활동에 있어 시간적 제약 및 날씨의 제약이 큼

2.2.2 통제단조직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통제단 지휘부

- 사고현장을 통제하고 차량진입에 따른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긴급방제 작업에 불필요한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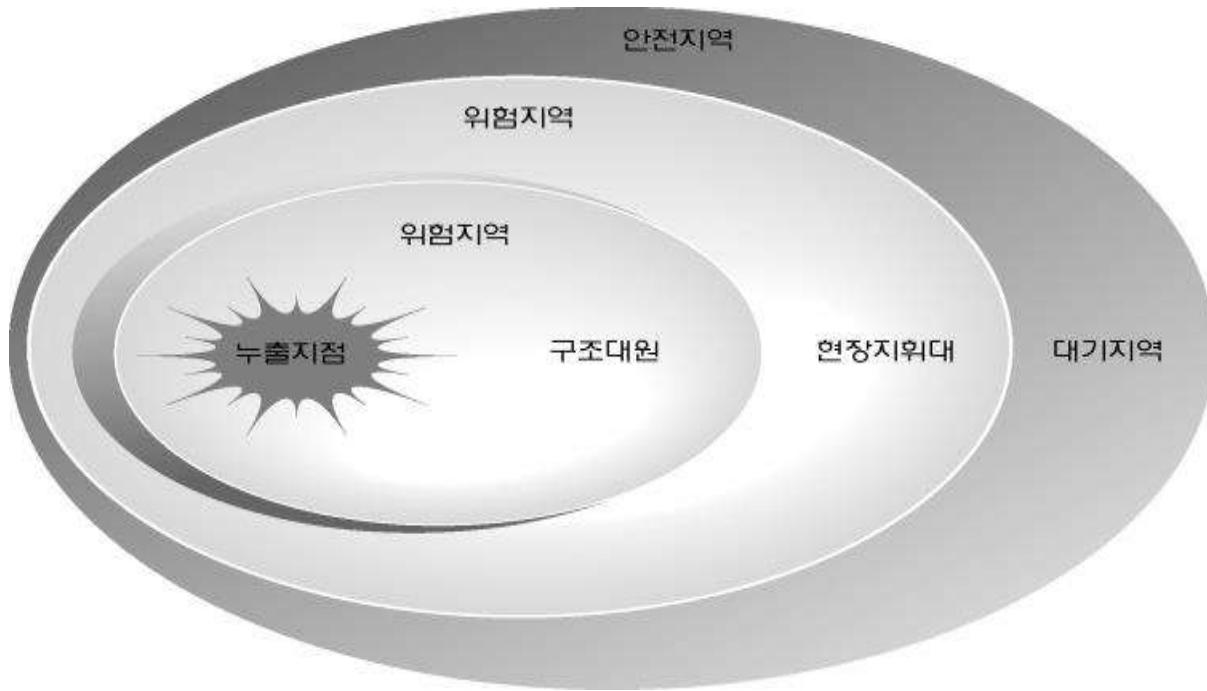
- 총괄적 지휘를 위한 대응체계와 의사전달체계를 확립
 - 대응체계 : 복잡한 폭발·붕괴사고현장은 대응활동을 용이하게 조정, 계획,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가 필요
 - 의사전달체계 : 각 대응조직간 또는 조직내부의 의사전달 방법·체계·수단의 확립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활동의 기본
- 추가폭발 및 붕괴에 의한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임무 수행
 - 안전담당은 현장활동계획 중에서 현장안전계획을 준비 또한, 안전 위협 요소, 불안전한 상황, 대원의 안전을 평가 감시
- 가스의 누출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위험지역 설정
 - 풍향 및 지표수, 지하수의 흐름방향을 파악하여 위험확산방향 분석
 -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하면 위험지역 주민에게는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예측된 위험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소, 교도소, 학교, 병원과 공장 등)의 존재여부 확인 및 위험상황 통지
-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기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대중정보센터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나. 상황관리부

- 사고유발경위, 가스의 종류 및 양, 가스의 비산 정도, 사고현장 주변 가스누출 등 사고 발생원인 조사 실시
- 화재, 폭발, 질식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검토
- 추가폭발 및 사고현장(폭발에 의한 붕괴)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확보 및 다수의 대응자원 확보

다. 현장지휘부

- 2차 폭발사고가 발생 않도록 지속적 검출활동 수행
- 사고지역 및 위험지역 통제조치 및 자원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교통규제조치
- 다수의 화상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소 신속 설치 및 임시영안소설치
-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을 구분하고 보호장비 착용후 임무수행



라. 자원관리부

- 현장대응인력 : 붕괴사고 대응활동은 소방, 경찰, 군, 자치단체, 전기 · 가스사업, 건축 · 토목기술, 응급의료,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인력 요구
- 특수 장비 : 붕괴구조활동에는 음파탐색장비, 광섬유 카메라, 휴대용 절단기, 파괴기, 구멍뚫기용 장비 등 특수한 탐색구조장비 필요
- 건설 중장비 : 대형 건설기계설비는 구조 활동에 장애가 되는 잔해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
- 구조물 지지대 : 구조물의 추가붕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요구조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지지대 필요

마. 긴급복구부

- 폭발 · 붕괴잔재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잔해물 처리
-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의 우선 복구
- 잔해물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비산되므로 광범위한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 추가폭발 우려가 없고 누출된 가스의 폭발 및 발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도 가스배관 등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후 차단한 전기 · 가스 공급활동 재개

2.2.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 응 단 계	활동내용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가스폭발 우려가 있는 대상물의 발견 또는 강풍, 침수 등의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해 폭발의 우려되는 경우 · 폭발사고대응계획의 수립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인명피해가 없거나 일상적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본대응조직의 운영 · 선착대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장에 의한 현장지휘체제의 가동 · 긴급구조지휘대장은 현장상황의 파악, 평가, 보고 · 추가지원의 필요성 판단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인명피해 10명 이상 또는 중규모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 비상경고계획 가동 · 관할 내 또는 인접대응구역의 추가자원동원 ·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 ⇒ 소방서 통제단(시·군 통제단)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통합 현장 지휘소)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 파견 · 사고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소방서 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시·도 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중앙통제단은 부분운영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의 폭발사고가 발생하거나 대규모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자원대응이 필요한 경우 · 소방서, 소방본부 통제단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이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소방서 통제단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 · 통합대응조직 구조와 통합지휘체계의 운영 · 시·도 통제단장은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 인접 시·도에 응원요청 · 시·도 차원의 지원기관(부서)은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시·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중앙통제단은 조정, 통제의 기능을 수행

2.3.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2.3.1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특성

항 목	내 용
대 상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백화점, 역, 터미널, 종합병원,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게임방 등)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여 무질서한 관계로 화재시 피난의 어려움이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내부상황 판단이 곤란하고, 출입구로부터 화연이나 농염이 분출하는 등 예기치 못하는 상황발생 - 공기의 공급이 제한되고,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연기발생 - 피난·대피의 곤란으로 대량 인명피해 및 오염의 우려 - 피난대피 및 유도, 인명검색 등에 많은 시간 소요 - 폐쇄공간에서의 소방활동으로 소방력 분산 및 무선통신 장애 발생 - 공간이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주수효과 미흡
소 방 활 동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내 각종의 용도, 업종, 형태, 상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난상황에 대해서는 각 층별 사업소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지정·활용 - 건물의 상세도면 및 각종별 용도, 입주현황에 대한 도면을 확보하고 내부 방화구획, 소방용설비 등의 설치위치 및 작동유무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화점, 연기로 인한 오염 범위 및 요구조자의 상황 등을 도면에 표시하여 지휘·통제에 활용 - 외부로부터의 주수는 건물의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내부 진입 후 주수 - 현장진입 대원 안전관리 철저 - 음식점의 주방, 실내 화재는 주방 닉트의 배기구를 신속하게 확인 하여, 배기구로부터 화염 또는 열기가 분출하고 있는 경우 닉트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의한 연소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확인하여 2차 재난 발생 방지
고 층 건 물 진 압 반 편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건물 재난진압활동 특성 고려하여 필요한 참모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기지 : 재난건물 바깥에 설치되어 현장도착 자원의 건물진입을 통제하고 건물외부상황에 대한 정보를 내부에 전달 · 로비통제 : 건물내의 로비에 위치하여 계단, 엘리베이터등 상부진입수단을 조정 · 계단운송 지원 : 엘리베이터사용불가능시 계단을 통한 진압장비의 운송을 지원 · 진입대기소 : 재난층 2층아래층에 위치하며 재난층으로의 진입대원을 통제하고 교대인원이 휴식, 장비교체, 점검의 공간제공
지 하 층 화 재 진 압 반 편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에서의 배연, 조명, 통신기능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편성 - 조직적인 현장지휘대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휘대장의 철저한 진압대원 통제기능 발휘 · 현장대원의 독자적 행동 억제로 대원의 안전확보 · 명확한 진입통제 및 무선통제수단 확보 - 인명검색, 구조활동, 피난유도 최우선 실시 - 상황실과 연계하여 건물구조에 대한 철저한 파악 선행

2.3.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통제단 지휘부

- 모든 경로를 통하여 화재에 대한 신고 접수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
 - 위험지역내의 자치단체의 상황실 및 특수시설에 통지
 - 연소확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통지
- 대규모의 연소확대 위험이 있는 경우 비상방송시스템을 작동하여 비상경고메시지를 방송하도록 요청
 - 대피소 위치, 대피시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등 메시지 방송실시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 설치운영
- 화재유형별 특성에 맞는 구조진압조직을 편성하고 필요자원의 원활한 동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출동한 유관기관에 지휘체계 확립방안 모색

나. 상황관리부

- 화재유형별 상황진행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및 활동계획 수립
 - 고층건물의 경우 층의 위치에 따른 엘리베이터 사용가능여부 파악하고, 화재층 이상의 인명구조계획, 주민대피계획, 엘리베이터 및 계단 통제계획 등을 수립
 - 지하층은 내부구조에 관한 정보파악 및 연기배연 및 통신가능상태 확인 후 배연활동과 연계하는 구조진압계획을 수립
 - 항공기가 공중에서 파악한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대응계획 수립

다. 현장지휘부

- 화재유형별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구조진압반 대응조직 편성운영
- 현장에 대한 원활한 주민 통제를 위한 현장통제반 활동 강화
 - 가족생사확인, 물품반출 등을 위한 비이성적 현장접근주민의 통제
- 화재진행상황의 분석 및 공중진화활동, 인명구조를 위한 항공대와의 연계활동 강화
- 타 시·도 지원 자원 및 유관기관 자원의 효과적 배치운영을 위한 지원대기소의 지정 운영

라. 자원관리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 확립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화재유형별 필요자원이 신속히 확보 배치되도록 관련 조치
 - 고층건물화재는 사다리차 및 헬기지원 확보
 - 지하층화재는 배연장비, 조명장비, 통신지원장비 확보
- 재난규모 확대시의 예비 인원자원의 확보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 · 도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마. 긴급복구부

- 현장보존 및 잔재물 처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시행
- 연소확대 우려지역 및 건물에 대하여 임시 안전대책 강구
 -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위험물 보관시설은 폭발 · 유출에 대비 시설의 긴급점검 실시
- 화재로 인하여 누출된 독극물 등에 대해서 긴급오염통제 실시
- 통신시설 등 대응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긴급복구 실시

2.3.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대 응 단 계	활 동 내 용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 · 통제단 상황분석 및 보고반 가동 → 화재정보의 수집 및 분석(가연물의 종류, 적재량,

	<p>연소특성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대 응 1 단 계 (일 상 적 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비상경고, 화재진압, 탐색, 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 현장지휘대는 소방서 통제단(시·군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 가동 ·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 각 대응구역별 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통합 현장지휘소)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지원 현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 ·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대 응 2 단 계 (중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되고, 중앙통제단이 부분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이 된다. · 시·도 통제단 각 부장 및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장들은 각 부 및 대응구역별 활동 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 화재현장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소방서 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 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재난대응의 전략과 전술의 수립과 결정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 지원체계의 가동 · 시·도 통제단장은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통제 단장에게 즉시 보고 · 대응자원의 총 동원 · 현장대응은 자치단체별 통합 현장지휘관이 지휘하고 중앙 통제단은 조정, 통제의 기능을 수행 · 각급 통제단장은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2.4. 유해화학물질(방사능포함)

2.4.1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 특성

특 성	형 태
-----	-----

재난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우연한 사고 또는 고의적 활동에 의해 유출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이송 중 교통사고, 보관탱크 관리 미숙으로 인한 폭발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해 발생 · 테러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고의적 활동에 의해 유출가능성 있으며 이 경우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병행하면서 대응활동 전개 - 방사능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물질 또는 방사성물질의 분실, 누출, 비정상취급(밀수, 도난), 운반사고, 방사능 누출을 포함하는 화재 등의 사건 · 원자력주진 인공위성의 대기 진입시의 추락사건, 외국 또는 미등록 방사선원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등의 방사선 사고 · 핵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
현장활동 곤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은 화재발생으로 연결되거나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법상 위험물이 누출된 경우 발생된 유증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체류된 지역에 점화원이 가해질 경우 폭발성 화재 발생 - 유독물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대규모의 인명피해 또는 대기환경의 피해유발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되어 기화된 유독물은 주변지역으로 급속 확산 가능성 있음 · 위험지역으로 예상되는 경우 긴급대피활동 필요 - 주변 하천에 유출 시 상수도 및 각종 용수의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환경보호를 위한 긴급오염통제팀의 적극적인 활동 필요 - 방사능물질 취급시설의 화재 또는 인사상사고의 처리시에는 반드시 방사능사고 대응활동 검토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대한 방사선피폭 여부 확인 및 통제선 설치 · 방사선보호복 및 관련 보호장비 착용 후 대응활동 · 피폭구역 내에서 허용된 대응활동 임무만 수행 - 방사선재난은 인명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폭된 사상자는 방사선환자 처리능력이 있는 병원에 수용 · 현장활동 중 사용된 보호장구 등 피폭된 물건을 수거 후 폐기하거나 안전조치 필요 · 주변 수질,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통제활동 필요
대규모 자원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특수장비의 동원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응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문팀의 지원필요 · 보호장비와 제독장비를 갖춘 전문처리대의 투입 필요 - 유출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에 대한 제독과 응급처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물질에 노출된 사람 중 부상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독실시하고 응급처치 후 병원이송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재난의 대응활동은 관련 기술전문 대응부서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방사선사고의 대응활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무책임. ·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활동은 테러사건대책본부(본부장 경찰청장)가 주무책임
생화학 사고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징후 판단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냄새, 자극취, 유색연기 등 · 희생자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 사상자 발생 · 경보제공 또는 방송 전파 - 2차 징후 판단방법 · 동물, 새 등의 사망 · 현장 이외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포장치 · 희생자 진술 · 이상한 액체
--	---	--

2.4.2 부서별 대응활동

가. 통제단 지휘부

- 각종신고 및 통보에 의해 누출정보를 접수한 경우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
 - 국정원 또는 환경부에 반드시 통보하여 단순 유출 또는 테러에 의한 살포행위에 따른 대응활동 전개가 가능하도록 조치
 - 출동하는 유관기관의 대원들은 관련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통보
- 사고현장을 통제하고 차량진입에 따른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긴급방제 작업에 불필요한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조치
- 유출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이 위험에 노출될 때,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 통지
 - 비상방송시스템을 작동하여 비상경고메시지를 방송하도록 요청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위험지역 설정
 - 풍향 및 지표수, 지하수의 흐름방향을 파악하여 위험확산방향 분석
 -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시 위험지역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예측된 위험영향지역 내 특별시설(요양소, 교도소, 학교, 병원과 공장 등)의 존재여부 확인 및 위험상황 통지
-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기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대중정보센터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나. 상황관리부

- 사고유발경위, 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 오염확산정도, 사고현장 시료채취분석 등 사고 발생원인 조사 실시
- 화재, 폭발, 질식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안전한 장소로 이동 검토
- 위험물질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의 자문으로 재난과 관련된 기술적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대응계획 수립

- 위험물질과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신체적 위험성 고려
 - 위험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다. 현장지휘부

- 현장지휘본부와 유기적 협조하에 현장진입 및 구조구급활동 진행
 - 현장 구조구급 및 안전조치활동은 방사선사고대책본부가 자문하는 처리절차에 의해 이행
 - 현장활동대원의 방사선 노출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 2차 확산사고가 발생 않도록 지속적 감시활동 수행
 -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을 구분하고 보호장비 착용후 임무수행
 - 오염물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및 물건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 의해 제독 및 병원이송 조치

라. 자원관리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 확립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외부자원의 대응활동 편의 제공
 -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외부자원을 위하여 숙박시설이나 야영지를 준비하고 음식과 식수 등을 공급
 - 지역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부자원에 대해서는 출영(出迎)과 안내를 담당할 요원을 지정
- 재난규모 확대시의 예비 인원자원의 확보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타 시 · 도의 지원인력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화학물질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유관기관(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자원동원 체제 유지
 - 유출물질 성상별 대응활동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 동원

- 유독물 유출시 중화, 회수 할 수 있는 자재 확보

마. 긴급복구부

- (시·도 / 시·군별 해당 업무 추진부서)와 연대활동
- 유출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제방을 설치작업 실시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모래, 흙 등으로 적절한 높이의 턱을 만들어, 누출된 액체가 배수관, 하수도 또는 강에 스며들거나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 위험물질 소량 유출시는 모래나 흙으로 유출된 제품 흡수조치

2.4.3 대응단계별 주요활동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 응 단 계	활 동 내 용
대 비 단 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유독성, 위험성이 없을 정도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일상적 출동대로 현장조치 종료 [운송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나 유해화학물질 누출이 발생하지 않음 · 수송차량 탱크 및 컨테이너의 구조상 안정성이 확인됨 · 수송차량 이동 조치 전에 내용물(유해화학물질)의 별도 이동조치가 불필요 · 수송로 변경이 불필요함 [저장시설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이 사고에 관계되나 누출 가능성 없음 · 소방관서 및 지방환경청 외 지원기관의 협조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지역 위험지도를 통한 방사능 오염지역 판단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긴급통신연락관계 유지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대 응 1 단 계	- 정의 : 국지적 누출피해 발생, 기초행정단위 긴급사태,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일상적 사고)	<p>[운송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며 유해화학물질 누출 우려 · 수송차량 탱크 및 컨테이너의 구조상 안정성 의심 · 수송차량 이동 조치전에 내용물(유해화학물질)의 별도 이동조치가 필요 · 수송로 변경이 반드시 필요 · 사고발생지역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p>[저장시설 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이 사고에 관계되며 누출가능성이 있음 · 소방관서 및 지방환경청 외 지원기관의 협조 필요 · 사고발생대상을 내부 직원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시·군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험)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 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 통제시스템 가동 · 피해상황분석 보고서 작성 및 통신보고(대책본부장, 총리, BH) · 소방본부 통제단(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 부분 가동되는 시·도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유해화학물질사고 발생 사실 통보 · 소방본부 및 소방청에 대한 초기보고서 준비 및 제출 · 최소 30분 간격으로 시설 소유자/운전자로부터 최신 상황정보 수집 ·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통합 공공정보센터의 가동 및 시설정보소유자(소유자, 관리직원, 안전담당직원)의 비상대기 고려
대응 2 단계 (중형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누출피해 발생 또는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광역적 비산가능성이 있는 경우, 광역행정단위 긴급사태 <p>[운송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진행 중 · 사고발생 지역 및 주변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p>[저장시설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내부 직원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 사고가 시설내부에 국한되지만 외부배출 및 확산 가능성 · 지원기관의 협조가 필요 <p>[지역재난사태 선포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경고체계(비상방송시스템) 가동 준비 · 당해지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경고방법 검토 및 임무분담 · 위험지역 내 주민에 대한 최신상황 및 방호조치정보 지속적 제공 ·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긴급대피에 필요한 대응인력 비상근무 전환 · 부분적 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소방서, 보건소 및 응급의료센터, 시설소유자/운전자, 관련 공무원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및 필요한 방호행동조치 검토 및 시행 · 현장대응요원 및 위험지역 출입허가자의 안전장구 수준 지정 및 출입허가증 발급 · 긴급피난 가능성 있는 경우 다음사항 결정 및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 주민 수, 긴급대피소 현황(개방된 대피소명, 수) - 긴급대피로, 위험지역 통제범위 및 출입통제소 · 긴급대피의 가능성 및 기타 방호조치 등 피해예방활동에 대비도록 위험지역 내 주민에 긴급홍보 · 비상대응조치에 필요한 예산지출자료 기록 유지
<p>대 응 3 단 계 (대 형 재 난)</p>	<p>- 정의 : 광역적 누출피해, 유해화학 물질의 비산 또는 폭발·화재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동원되고 중앙통제단이 전면 가동되어야 할 때.</p> <p>[운송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며 대량의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 진행 중이며, 당해 사고로 주변의 다수 주민 또는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위험반경 내 지역주민에 대해 긴급대피 필요 <p>[저장시설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 진행 중이며, 당해 사고로 주변의 다수 주민 또는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시설주변의 위험반경 내 직원 및 지역주민에 대해 긴급대피 필요 <p>[시·도 통제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p>[중앙 통제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p>[각급 통제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대책본부) · 모든 상황분석자료와 메시지가 도상에 표시되고 기록 확인 · 현장지휘대, 지원기관, 시설소유자/운전자, 기타 주요 관련 공무원과의 통신 확립 및 유지 · 모든 대응요원에 비상소집 및 임무 부여 · 지역지도, 항공정찰정보, 위성정보의 취합 및 분석 · 위험반경 내 주민에 대한 비상경고 · 지역 주민의 방호조치를 지도하기 위한 경고시스템(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및 기타 보조 경고수단 강구 ·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통합대중정보센터 가동 · 현장지휘소, 통제단, 통합대중정보센터에 대한 안전경계활동 · 방호조치가 필요한 정확한 위험범위 확인 · 다음의 방호조치 이행(내·외부 긴급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지면 긴급대피소 개방, 교통통제 확인 * 독자적으로 피난이 불가한 주민에게 특별교통수단 제공 * 특별시설(요양소, 학교, 병원 등) 수용인원의 피난 지원 * 위험지역 통제범위 및 출입통제소 설치 * 대피장소 및 지역에 안전 제공 · 통제단과 대중정보센터는 다음의 최신정보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경로, 긴급대피소 명 및 위치, 긴급대피 주민의 수 * 위험지역 출입 통제소 및 도로와 이용가능한 도로(통로) 변경사항 * 유언비어 내용 및 확산범위, 위험반경 및 지리적 범위 · 위험지역 통과 철도, 항공, 선박 통행금지 및 시설 폐쇄 · 현장응급의료소 및 응급의료센터 의료인력에 대한 재난상황 정보 제공 · 위험 경계지역 내 출입 통제소 설치
--	--

부 록

1. 현황

2. 서식

3. 참고

I . 현 향

긴급구조통제단 현황

<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

구 분	주소 / 위치	전화번호
종합방재센터	충남 홍성군 흥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상황부팀장 041-635-5662
119광역기동단		재난대책팀장 041-635-5721

< 인근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

인근 자치단체 소방관서	위 치	전화번호
대전광역시소방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19층	042) 270-6116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	(031) 230-6623
충청북도소방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043) 220-4815
전라북도소방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6층	(063) 280-3831
세종시소방본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044)300-3119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구 분	위 치	전화번호
119종합상황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311호	044-205-3119
119구조구급국		044-205-7621

< 주요 공무원 비상연락망(통제단 지휘그룹) >

통제단 직위	담당부서	직책	전화번호	비고
통제단장	소방본부	본부장	635-5500	
통제단장연락관	소방행정팀	팀장	635-5551	
종합방재센터장	종합방재센터	센터장	635-5540	
상황관리부장	119광역기동단	단장	635-5710	
상황관리반장	재난대책팀	팀장	635-5721	
언론대응반장	예방교육팀	팀장	635-5582	
감찰반장	소방감찰팀	팀장	635-5553	
재난지휘버스	재난대책팀	팀장	635-5721	
현장지휘부장	화재대책과	과장	635-5520	
화재관리반장	화재대책팀	팀장	635-5581	
구조관리반장	구조팀	팀장	635-5723	
구급관리반장	구급팀	팀장	635-5722	
자원대기반장	의용소방팀	팀장	635-5584	
자원관리부장	소방행정과	과장	635-5510	
자원집결반장	복합시설팀	팀장	635-5556	
현장통제반장	소방특사경팀	팀장	635-5585	
안전관리반장	안전보건팀	팀장	635-5555	
급식지원반장	회계장비팀	팀장	635-5554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관서별]

1. 소방본부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8개소						
1	충 남 지 방 경 찰 청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336-2561	336-2561	112종합상황실		
2	충 남 교 육 청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640-7912	640-7912	안전총괄과		
3	중 부 지 방 산 림 청	공주시 봉정동 돌고개길 20	850-4023	850-4023	산림자원전과		
4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327-6	042-825-3002	042-825-3002	탐방시설과		
5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청당동) 백석문화센터 802호	561-0019	561-0019	검사2부		
6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홍성군 홍북면 대로 118	640-4842	640-4800	구호복지팀		
7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550-6045	550-6045	총무팀		
8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회동 286	043-230-4234	043-230-4234	시설관리부		
9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서구 청사로 128	042-865-0762	042-865-0762	화학안전관리단		
10	대전지방기상청	대전 유성구 대학로 383	070-7850-4141	070-7850-4141	예보과		
11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대전 동구 계족로 447	042-670-3563	042-670-3563	도로공사과		
12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대전 중구 유동천동로 788	042-229-3587	042-229-3587	안전환경팀		
13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대전 서구 대덕대로 209번길 27	042-480-0254	042-480-0254	수자원관리부		
14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855	042-630-7263	042-630-7263	도로팀		
15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	대전 동구 인창로 54	042-280-3415	042-280-3415	고객지원부		
16	한국전력공사 대전지역본부	대전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042-620-2339	042-620-2303	경영지원부		
17	KT충남·충북고객본부	대전 서구 둔산북로 51	042-478-7212	042-478-7212	CS품질개선팀		
18	육군 제32보병사단	세종시 금남면 채나무길 71	042-829-6402	042-829-6402	군수참모처		

시·군별 소방서 현황

[2020.01.01. 기준]

관서	관할 시·군				일반현황		소방력			특정 소방 대상물 (개소)	
	센터	구조대	지역대	정대	인구 (명)	면적 (㎢)	인원 (명)	차량 (대)	예산 (백만원)		
계	8시·7군				2,116,770	8,227.45	3,349	668	291,263	373/10,457	102,215
본부							176	28	89,849		
학교							37	8	4,831		
천안남	5	1	2		255,878	438.42	229	40	13,757	22/610	10,237
천안북	9	1			375,653	197.65	294	42	16,935	15/510	12,720
공주	5	1	4		108,432	864.15	223	44	13,916	22/630	8,104
보령	5	1	1		103,198	573.9	200	50	13,029	35/900	7,018
아산	7	1	1		311,453	542.62	268	44	16,513	29/820	13,971
서산	6	1	1		171,678	741.3	228	44	13,701	22/630	6,257
논산	5	1	2		122,240	555.18	213	45	14,533	24/750	6,874
계룡	2	1			43,967	60.72	97	15	6,440	4/140	766
당진	6	1	4	1	167,439	704.43	246	47	15,199	26/760	6,590
금산	3	1	2		53,894	577.22	148	34	9,536	24/620	4,679
부여	5	1			69,086	624.53	171	41	11,088	35/900	3,341
서천	6	1			55,175	365.71	171	41	10,773	27/750	3,739
청양	2	1	2		32,837	479.12	119	31	8,126	21/560	2,070
홍성	5	1	1		101,570	443.99	196	41	12,251	23/650	6,980
예산	4	1	1		80,338	542.66	163	35	10,606	28/747	4,454
태안	4	1	3		63,932	515.85	170	38	10,180	16/480	4,415

소방관서 통신망 현황

[2020.01.01. 기준]

관서명	연락망			주소
	일반 041)	행정	FAX	
소 방 본 부	635-5662	5662	635-5549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천 안 동 남 소 방 서	570-0251	570-251	570-0259	구성동 55-1외 4필지
천 안 서 북 소 방 서	360-0305	360-305	360-0309	직산읍 4산단 2길32
공 주 소 방 서	851-0302	640-302	851-0309	무령로 55
보 령 소 방 서	930-0303	650-323	930-0309	대천로 122
아 산 소 방 서	538-0251	660-251	538-0259	문화로 293
서 산 소 방 서	689-0252	689-252	689-0259	호수공원14로 26-4
논 산 소 방 서	730-0301	730-301	730-0309	대학로 17
계 룡 소 방 서	042-540-5302	770-302	042-540-5309	두마면 사계로 170
당 진 소 방 서	350-5302	780-302	350-5319	역천로 838
금 산 소 방 서	750-1301	750-1301	750-1309	금산읍 삼풍로 2
부 여 소 방 서	830-0302	710-302	830-0309	규암면 계백로 17
서 천 소 방 서	955-0301	720-301	955-0309	장항읍 화천리 333-56
청 양 소 방 서	940-7300	760-300	940-0309	청양읍 송방리 347-3
홍 성 소 방 서	630-0251	730-251	630-0259	홍성읍 충절로 741
예 산 소 방 서	330-4252	740-252	330-4259	오가면 오가중앙로 111
태 안 소 방 서	671-0304	671-304	671-0259	태안읍 동백로100

소방차량 보유 현황

○ 주력(428대) 및 지원차량(238대), (소방헬기 1대, 소방정 1대 제외)

[2020.01.01. 기준]

구 분	계	펌프 차	물탱크 차	화학 차	화생 방	고 가 차	굴 절 차	구 조 차	조 연 차	지 휘 차	화 재 조 사	구 급 차	통 제 단 차	트 레 일 러	화 물 차	이 동 체 험	순 찰 차	행 정 차	기 타 차
합 계	666	226	56	16	12	9	8	51	7	33	10	118	15	37	17	3	16	20	12
주력차량	428	226	56	16	12	9	8	51	7	33	10	-	-	-	-	-	-	-	-
지원차량	238	-	-	-	-	-	-	-	-	-	-	118	15	37	17	3	16	20	12

○ 차량별 : 666대(소방헬기 1, 소방정 1 제외)

차량 관서	총계	펌프 차	물탱크	화학 차	화생 방 대 응	고 가 차	구 조 차	사륜· 삼륜 차	구 조 버스	조· 배연 차	구 급 차	지 휘 차	통 제 단 차	트 레 일 러	화 물 차	이 동 체 험	순 찰 차	화 재 조 사	행 정 차	기 타 차
총 계	666	226	56	16	12	17	17	16	18	7	118	33	15	37	17	3	16	10	20	12
본 부	27				2		1	2	2			3	1	4			2	1	9	
학 교	8	2									2				1			2	1	
동 남	40	12	2	2	1	1	1	1	1	1	8	2	1	1	1	1	1	1	2	1
서 북	42	13	5	1	1	1	1	1	1	1	10	2	1	1	1	1	1	1	1	
공 주	44	16	2	1	1	1	1	1	1	1	10	2	1	2	1	1	1	1	1	
보 령	50	20	5	1		1	1	1	1	1	7	2	1	6	1		1		1	
아 산	44	15	6	1	1	1	1	1	1	1	10	2	1		1		1		1	
서 산	44	15	5	2	1	1	1	1	1	1	8	2	1	1	1	1	1	1	1	
논 산	45	16	4	1	1	1	1	1	1	1	8	2	1	2	1	1	1	1	1	
계 룡	15	3	1			1	1		1		2	1		1	1		1	1	1	
당 진	46	18	4	1	1	1	1	1	1		10	2	1	1	1		1	1	1	
금 산	34	12	2	1	1	1	1	1	1		5	2	1	3	1		1		1	
부 여	41	17	5			1	1	1	1		6	2	1	3	1		1		1	
서 천	41	14	3	1	1	1	1	1	1		7	2	1	4	1		1	1	1	
청 양	31	13	2	1	1	1	1	1	1		4	2	1		1		1		1	
홍 성	41	15	3	1		2	1	1	1	1	7	2	1	1	1	1	1	1	1	
예 산	35	14	3	1		1	1	1	1		6	2		2	1		1		1	
태 안	38	11	4	1		1	1		1		8	1	1	5	1		1	1	1	

※ 기타차 : 진단차(보건, 통신, 동남)3, 위성중계차1, 이동취사차1, 굴삭기1, 이동정비차1, 항공급유차1, 단속반차1, 사법경찰차1, 대형버스(학교)1, 통제단 이송버스(기동단)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총괄)

[2020.01.01. 기준]

연 번	소 방 관 서	개 소	비 고
계			222
1	소 방 본 부	18	
2	천 안 동 남 소 방 서	17	
3	천 안 서 북 소 방 서	17	
4	공 주 소 방 서	12	
5	보 령 소 방 서	15	
6	아 산 소 방 서	11	
7	서 산 소 방 서	11	
8	논 산 소 방 서	13	
9	계 룽 소 방 서	11	
10	당 진 소 방 서	12	
11	금 산 소 방 서	14	
12	부 여 소 방 서	11	
13	서 천 소 방 서	8	
14	청 양 소 방 서	11	
15	홍 성 소 방 서	12	
16	예 산 소 방 서	13	
17	태 안 소 방 서	16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관서별]

1. 소방본부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8개소						
1	지 방 경 찰 청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336-2261	336-2261	경비교통과		
2	중 해 부 양 경 지 방 철 청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032-728-8724	032-728-8581	구조안전과		
3	교 육 청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640-7912	640-7912	안전총괄과		
4	육군 제32보병사단	세종시 금남면 채나무길 71	042-829-6402	042-829-6402	군수참모처		
5	금 강 유 역 환 경 청	대전 서구 청사로 128	042-865-0762	042-865-0762	회학안전관리단		
6	대 전 지 방 기 상 청	대전 유성구 대학로 383	070-7850-4141	070-7850-4141	예보과		
7	중 부 지 방 산 림 청	공주시 봉정동 돌고개길 20	850-4023	850-4023	산림자원안전과		
8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대전 동구 계족로 447	042-670-3563	042-670-3563	도로공사과		
9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327-6	042-825-3002	042-825-3002	탐방시설과		
10	한 국 가 스 공 사 총 청 지 역 본 부	대전 중구 유동천동로 788	042-229-3587	042-229-3587	안전환경팀		
11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청당동) 백석문화센터 802호	561-0019	561-0019	검사2부		
12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대전 서구 대덕대로 209번길 27	042-480-0254	042-480-0254	수자원관리부		
13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855	042-630-7263	042-630-7263	도로팀		
14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286	043-230-4234	043-230-4234	충청관리처		
15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	대전 동구 인창로 54	042-280-3415	042-280-3415	고객지원부		
16	한국전력공사 대전지역본부	대전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042-620-2339	042-620-2303	경영지원부		
17	대한적십자사 사지	홍성군 홍북면 대로 118	640-4842	640-4800	구호복지팀		
18	KT충남·충북고객본부	대전 서구 둔산북로 51	042-478-7212	042-478-7212	CS품질개선팀		

2. 천안동남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7개소				
1	천 안 시 청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601	521-2001	521-2001	안전총괄과
2	천 안 동 남 경 찰 서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	590-2330	590-2330	112종합상황실
3	육 군 3 5 8 5 부 대 1 대 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안대로 54	521-3244	521-3244	지휘통제실
4	대 한 적 십 자 사 천 안 지 구 협 의 회	천안시 서북구 개목4길 48	576-2266	010-6401-1588	실장
5	천 안 의 료 원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570-7050	570-7050	중앙통제실
6	단 국 대 학 교 병 원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550-7119	550-7119	응급의료센터
7	순 천 향 대 학 교 병 원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순천향 6길 31	570-2746	570-2746	응급수납
8	천 안 총 무 병 원	천안시 서북구 다가밀3길 8(쌍용동)	570-7619	570-7619	원무부
9	천 안 동 남 구 보 건 소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	521-2650	521-2650	동남구보건소
10	한 국 철 도 공 사 천 안 역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57-1	629-2211	629-2211	역무실
11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지 역 본부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청당동) 백석문화센터 802호	561-0019	561-0019	검사2부
12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천 안 아 산 지 사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504	912-3100	912-3100	고객지원팀
13	한 국 전 력 공 사 천 안 지 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77	560-2200	560-2200	당직실
14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천 안 지 사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556-8064	556-8064	안전상황실
15	K - w a t e r 천 안 권 관 리 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로 301-96	629-4200	629-4200	중앙제어실
16	한 국 도 로 공 사 천 안 지 사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4	413-6241	413-6200	도로안전팀
17	K T 천 안 지 사	천안시 성황동 2-31	564-0060	564-0060	천안지사 C M 팀

3. 천안서북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7개소				
1	천 안 시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601	521-5572	521-2417	안전총괄과
2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536-1261	536-1330	경비작전과
3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529-0661	529-0523	재무과
4	천안서북구보건소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521-5918	521-2553	보건과
5	공군제8352부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산82	070-7790-2760	070-7790-1710	기지중대
6	삼성디스플레이(주)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5, 467	560-3119	599-1119	환경방재과
7	K T 천안지사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6-3	562-0060	522-5899	C M 팀
8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77	560-2270	560-2260	설비관리팀
9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8	413-6200	413-6200	교통안전과
10	J B (주)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530-1900	530-1900	안전기획팀
11	한국가스안전공사 북부지사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청당동) 백석문화센터 802호	561-0019	561-0019	검사2부
12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550-7119	550-7119	응급의료센터
13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570-2012	570-2119	비상계획관
14	천안충무병원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570-7678	570-7619	기획과
15	화인메트로병원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3길 37	622-1300	622-1300	총무과
16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천안시 서북구 개목4길 48	576-2266	010-6401-1588	실장
17	해병대천안전우회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3길 22	556-2119	556-2119	기동대

4. 공주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2개소				
1	공 주 시 청	공주시 봉황로 1	840-8643	840-2222	시 민 안전과
2	공 주 경 찰 서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	854-1112	854-1112	경 비 작 전 계
3	공 주 교 육 지 원 청	공주시 왕릉로 115	850-2347	850-2347	행정과 경리팀
4	공 주 의 료 원	공주시 무령로 77	962-1204	962-1204	총 무 과
5	공 주 시 보 건 소	공주시 의당로 23	840-8775	840-8775	보 건 과
6	육 군 제 3 5 8 5 부 대 3 대	공주시 금흥동 산 21	852-8113	852-8113	작 전 과
7	한 국 전 력 공 사 공 주 지 사	공주시 우금티로 772	850-2271	850-2271	전 력 공 급 부
8	K T 공 주 지 점	공주시 신금1길 91	855-2115	855-2115	관 리 팀
9	J B 주 식 회 사 중 부 출 장 소	공주시 한적2길 47	856-4706	856-4706	공 주 출 장 소
10	한 국 농 어 촌 공 사 공 주 지 사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850-6480	850-6480	수자원관리부
11	한 국 도 로 공 사 공 주 지 사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266-77	042-722-6641	042-722-6641	도로 안전 팀
12	대 한 적 십 자 사 공 주 지 구 협 의 회	공주시 봉황로 125	854-1210	854-1210	공주지구협의회

5. 보령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5개소				
1	보 령 시 청	보령시 성주산로 77	930-3251	930-3119	안전총괄과
2	보령경찰서	보령시 대천로 33	939-0256	932-1121	경비교통과
3	보령교육지원청	보령시 보령북로 169	930-6433	930-6460	행정과
4	보령시보건소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	930-5931	930-4199	보건행정과
5	육군 제8361부대 2 대 대	보령시 내항동 3-32	934-1113	934-1113	작전과
6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보령시 응천읍 수자원공사길98	939-1211	939-1240	관리부
7	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	보령시 옥마로 60	930-7210	930-7267	전력공급부
8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보령시 죽성로 94-19	930-7850	930-7800	지역개발부
9	KT보령지점	보령시 중앙로 132	932-0060	932-0060	C M 팀장
10	한국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	보령시 대해로 218	912-3350	912-3500	총괄부
11	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89-37	070-7511-2041	070-7511-2203	안전품질실 재난소방과
12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	보령시 응천읍 무창포로 197	063-714-6741	063-714-6700	도로안전팀
13	보령아산병원	보령시 죽성로 136	930-5517	930-5333	총무과
14	대한적십자사 보령지구협의회	보령시 보령북로 59	936-1452	936-1452	보령지구협의회
15	중부도시가스(주) 서부지사	보령시 터미널길 29	932-1810	530-1970	중부도시가스

6. 아산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1개소				
1	아 산 시 청	아산시 시민로 456	540-2753	540-2494	안전총괄담당관
2	아 산 경 찰 서	아산시 남부로 370-15	538-9257	549-5112	경비교통과
3	아 산 시 보 건 소	아산시 번영로224번길 20	537-3425	537-3450	보건행정과
4	한국전력공사 아 산 지 사	아산시 충무로72번길 13	539-3272	539-3260	전력공급팀
5	한국수자원공사 아 산 권 관 리 단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로 590	539-4221	539-4236	아산권관리단
6	K T 아 산 지 사	아산시 충무로 93	543-0060	543-0600	아산 CM팀
7	한국농어촌공사 아 산 지 사	아산시 삼동로8번길17	539-7141	539-7000	수자원관리부
8	중부도시가스(주)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530-1831	530-1900	안전기획팀
9	의영서울의료재단 아 산 중 무 병 원	아산시 문화로 381	536-6641	536-6562	관리과
10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 산 지 구 협 의 회	아산시 염치읍 석정길 33-12	547-1030	547-1030	협의회
11	육군 3585부대 2 대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365길 50	549-4387	549-4387	군수과

7. 서산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1개소				
1	서 산 시	서산시 관아문길 1	660-2102	660-2497	안전총괄과
2	서 산 경 찰 서	서산시 안견로 327	665-0112	665-0112	경비교통과
3	서 산 시 보 건 소	서산시 호수공원6로 6(예천동)	661-6500	661-6532	건강증진과
4	충 청 남 도 서 산 의 료 원	서산시 중앙로 149	689-7411	689-7401	총무과
5	한 국 석 유 공 사 서 산 지 사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19	660-4132	660-4183	안전팀
6	한 국 전 력 공 사 서 산 지 사	서산시 한마음16로 63	660-8273	660-8266	전력공급부
7	K T 서 산 지 점	서산시 효행3길 19	664-0060	664-0060	C M 팀
8	미 래 엔 서 해 에 너 지	당진시 시곡로 348	350-7785	350-7780	안전관리팀
9	서 산 중 앙 병 원	서산시 수석동 1-1	661-1173	661-1000	관리팀
10	육 군 1 7 8 9 부 대	서산시 인지면 차동길 290-33	667-0113	667-0113	군수과
11	대 한 적 십 자 봉 사 회	서산시 서령로 136	668-2228	668-2228	봉사회

8. 논산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3개소				
1	논 산 시 청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9	746-6422	746-6400	안전총괄과
2	논 산 시 보 건 소	논산시 논산대로 382	746-8022	746-8032	보건사업과
3	논 산 경 찰 서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746-3361	112 745-2112	경비교통과
4	논 산 백 제 병 원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730-8835	730-8888	총무과
5	육군 제 3585부대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53-16	741-5652	741-5652	군수과
6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197	435-6574	740-9208	도로파트
7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746-2277	746-2213	전력공급부
8	KT 논산지사 (계룡시통합)	논산시 계백로 906	734-0060	732-0060	CM팀(시설)
9	논산 국토관리사무소	논산시 대학로 121	730-5863	730-5804~5	구조물과
10	육군 제 7813부대	논산시 광석면 사월길 335-48	731-6722	730-6722	군수과
11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논산시 관촉로 152번길	730-2114	730-2114	수자원관리부
12	대한적십자사 논산지구협의회	논산시 취암동 447-1	732-9599	732-9599	협의회
13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	논산시 체육로 63	731-8220	731-8240	관망관리과

9. 계룡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1개소				
1	계 룹 시	계룡시 장안로 46	042-840-2233	042-840-2222	안전총괄과
2	계 룹 시 보 건 소	계룡시 장안로 54	042-840-3507	042-840-3507	의약팀
3	논 산 경 찰 서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746-3330	746-3330	경비교통과
4	한 국 전 력 공 사 서 대 전 지 사	대전시 서구 변동중로 39	042-608-2268	042-608-2268	전력공급부
5	C N C T 에 너 지	대전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042-336-5555	042-336-5555	써플라이 쓸루션팀
6	대 한 적 십 자 사 계 룹 지 구	계룡시 두마면 팔거리2길 14	070-4189-8205		
7	계 룹 대 근 무 지 원 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042-550-4993	042-550-4993	군수처
8	육 군 제 3 5 8 5 부 대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53-16	741-5652	741-5652	군수과
9	K T 논 산 지 사	논산시 계백로 906	732-0060	732-0060	CM팀(시설)
10	한 국 도 로 공 사 논 산 지 사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190	741-7172	741-7172	도로파트
11	대 한 적 십 자 계 룹 지 구 협 의 회	계룡시 두마면 팔거리2길 14	070-4189-8205	070-4189-8205	

10. 당진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2 개소				
1	당 진 시 청	당진시 시청1로 1	350-3310	350-4980	재 난 관 리 팀
2	당 진 경 찰 서	당진시 무수동7길 144	360-4257	360-4330	경 비 작 전 계
3	육 군 1 7 8 9 부 대 제 2 대 대	당진시 채운동 역천로 877	354-1113	354-1113	군 수 과
4	당 진 시 보 건 소	당진시 서부로 56	360-6003	360-6109	보 건 행 정 과
5	공 군 8 9 2 1 부 대 5 2 2 포 대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431-78	945-1210	945-1210	운 영 계
6	대 한 적 십 자 사 당 진 지 구 협 의 회	당진시 당진시 장동길 69	356-9504	356-9504	재 난 분 과
7	(주) 미 래 엔 서 해 에 너 지	당진시 사곡로 348	350-7784	350-7780	안 전 관 리 팀
8	당 진 종 합 병 원	당진시 반촌로 5-15	070-7332-8005	070-7332-8235	원 무 과
9	한 국 도 로 공 사 당 진 지 사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236	413-6640	413-6600	도로 안 전 팀
10	한 국 농 어 촌 공 사 당 진 지 사	당진시 밤절로 2-22	351-9171	351-9116	수자원관리부
11	K T 흥 성 지 사 당 진 지 점	당진시 당진중앙2로 153	352-0060	352-0060	C M 팀
12	한 국 전 력 공 사 당 진 지 사	당진시 천변2길 123	350-2274	350-2372	배전운영파트

11. 금산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4 개소				
1	금 산 군 청	금산읍 군청길13	750-2865	750-2865	안 전 총괄과
2	금 산 보 건 소	금산군 급산읍 금산로1559	750-4313	750-4313	보 건 행정팀
3	금 산 경 찰 서	금산군 급산읍 인삼로 201	750-4256	750-4256	경 비 작전 계
4	제 1 9 7 0 부 대 대 제 6 대 대	금산군 금성면 진산로	754-0113	754-0113	작 전 과
5	한 국 전 지 력 사 금 산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5	750-3236	750-3236	배 전 운 영 실
6	한 국 가 스 공 사 총 청 지 역 본부	대전 중촌동 203-13	042-229-3387	042-229-3387	안 전 환경 팀
7	K T 대 전 지 사 대 전 지 점	대전 중구 보문로238	042-255-0060	042-255-0060	C M 팀
8	한 국 타 이 어 금 산 공 장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1	750-5130	750-5130	환경 안전 팀
9	새 금 산 병 원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183	754-8272	754-8272	원 무 행정 부
10	대 한 적 십 자 사 금 산 지 구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410	070-7766-9304	070-7766-9304	대한적십자사
11	금 산 인 삼 렉 카	금산군 금산읍 사직로150	754-6667	754-6667	금산인삼렉카
12	해 병 대 금 산 전 우 회	금산군 금산읍	754-0928	754-0928	해 병 대 금 산 전 우 회
13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금 산 권 관 리 단	금산군 금산읍 북사직로34	750-7231	750-7231	관 망 관리 과
14	중 부 도 시 가 스 금 산 출 장 소	금산군 급산읍 인삼로70	751-4705	751-4705	금 산 출 장 소

12. 부여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1 개소				
1	부 여 군 청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830-2342	830-2840	안전총괄과
2	부 여 군 보 건 소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830-2498	830-2498	보건행정팀
3	부 여 경 찰 서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	830-9258	835-9112	경비교통과
4	제8361부대 3대대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246-3	836-8366	836-8366	통제실
5	한국전력공사 부여지사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96	830-1217	830-1268	배전운영팀
6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	부여군 규암면 라복로 257-27	042-722-6700	042-722-6700	도로안전팀
7	대한적십자사 부여지구 협의회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41번길 22-1	835-7006	010-5589-6488	실장
8	K T 부 여 지 점	부여군 부여읍 석탑로 33	834-2500	834-0007	C M 팀
9	건 양 대 학 교 부 여 병 원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	837-1200	837-1200	원무과
10	농 어 촌 공 사 부 여 지 사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837-9533	837-9530	수자원관리부
11	수 자 원 공 사 중 부 권 관 리 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830-4223	830-4242	관리부시설과

13. 서천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8개소				
1	서 천 군 청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950-4419	950-4419	안전총괄과
2	서 천 경 찰 서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15	955-5252	112	경비교통과
3	육 군 제 8 3 6 1 부 대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사서함1호	952-0113	952-0113	군 수 과
4	공 군 제 8 3 1 1 부 대	서천군 서면 서인로 898	070-8896-2600	070-8896-2600	운 영 계
5	서 천 군 보 건 소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950-6715	950-6715	의 약 팀
6	한 국 전 력 공 사 서 천 지 사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71번길 54	955-2230	955-2230	배전운영팀
7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서 천 지 사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950-7721	950-7721	수자원관리부
8	대 한 적 십 자 사 서 천 지 구 협 의 회	서천군 화양면 활산로 33번길 11-1	952-5659		서천지구회

14. 청양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1 개소				
1	청 양 군 청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940-2001	940-2419 940-2222	안전재난과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2	청 양 경 찰 서	청양군 청양읍 총절로 1317	940-0210	955-5330	정보보안과
3	청 양 군 보 건 의 료 원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7길 54	940-4970	940-4970	의약관리팀
4	청 양 교 육 지 원 청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	940-4402	940-4402	행정과
5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청양군 남양면 돌보길 228	940-5101	940-5121	안전항공팀
6	대한적십자사충남지사 청 양 군 지 구 협 의 회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516	943-3679	943-3679	대한적십자사
7	청 양 훈 요 양 병 원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57	943-8120	940-8120	행정실
8	청 양 중 앙 병 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1	944-1077	944-1077	원무과
9	한국농어촌공사 청 양 지 사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1	940-1700	940-1785	지역개발부
10	한국전력공사 청 양 지 사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1길 5	940-1200	940-1230	전력공급팀
11	K T 청 양 지 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3길 8	943-9697	943-9697	C M 팀

15. 홍성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2 개소				
1	홍 성 군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630-1549	630-1222	안전총괄과
2	홍 성 경 찰 서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	632-8258	632-0114	경비작전계
3	1789부대 4대대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176번길 73	633-6981	633-6981	군수과
4	홍 성 군 보 건 소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	630-9021	632-2588	의약팀
5	홍 성 의 료 원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630-6117		관리과
6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630-5744 630-5700	630-5744 630-5700	지역개발부
7	한국전력공사 홍성지사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417-6	630-2213	630-2267	요금관리팀
8	K T 홍성지사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14	633-0060	631-5899	C M 팀
9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	홍성군 내포로146번길12-16	631-3525		협의회
10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천안시 서북구 청수14로 96 (청당동) 백석문화센터 802호	418-9492	561-0019	검사2부
11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지사	예산군 예산읍 윤봉길로 1889	912-3230	912-3200	점검부
12	미래엔서해에너지	당진시 사곡동 348	350-7785	350-7781	안전관리팀

16. 예산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3 개소				
1	예 산 군 청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35-7753	339-7759	안 전 관 리 과
2	예 산 경 찰 서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	330-9257	330-9330	경 비 교 통 과
3	육 군 1 7 8 9 부 대 제 4 대 대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176번길 73	832-2430	633-8113	군 수 과
4	예 산 군 보 건 소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39-6053	339-8993	보 건 행 정 과
5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지 역 본 부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청당동) 백석문화센터 802호	561-0019	561-0019	검 사 2 부
6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중 부 지 사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9	912-3230	912-3200	검 사 기 술 부
7	한 국 전 력 공 사 예 산 지 사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330-3281	330-3276	전 력 공 급 부
8	K T 예 산 지 점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22	333-1166	334-1231	C M 팀
9	예 산 명 지 병 원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6	335-2255	335-2255	원 무 과
10	예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330-6653	330-6600	구 조 물 과
11	예 산 역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83	335-7788	335-7788	역 무 실
12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예 산 지 사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330-3518	330-3500	수자원관리부
13	대 한 적 십 자 사 예 산 지 회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	334-2831		협 의 회

17. 태안소방서

연 번	기 관 명	위 치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주 간	야 간	
계	16 개소				
1	태 안 군	태안읍 군청로 1	670-2721	670-2222	안전총괄과
2	태 안 보 건 의 료 원	태안읍 서해로 1952-16	671-5213	671-5319	보건사업과
3	태 안 해 양 경 찰 서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950-2441	950-2442	경비구조계
4	태 안 경 찰 서	태안군 동백로112	671-9210	671-0330	경비교통과
5	태 안 교 육 지 원 청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28	670-8282	670-8180	행정과
6	육군 제1789부대 3 대대	태안읍 중앙로 265	674-1113	674-1113	군수과
7	한국전력공사 태안지사	태안읍 후곡로 53	671-1275	671-1267	배전운영팀
8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산태안지사	서산시 읍내3로 28	912-3332	664-8454	총괄부
9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서산시 무석3로 7	669-4781	669-4781~3	수자원관리부
10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국립공원사무소	태안읍 귀실길 9	672-9738	672-9738	탐방시설과
11	(주)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457	070-5007-3072	070-5007-3119	산업안전팀
12	K T 서 산 지 점	서산시 효행3길 19	664-0060	672-5899	C M 팀
13	현대요양병원	태안읍 환동로 31	672-2900	672-2900	관리과
14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남면 곰섬로 236-49	671-6122	671.6119	행정실
15	미래엔서해에너지 (서해도시가스)	당진시 시곡동 94-1	350-7780	350-7781	안전관리팀
16	대한적십자사 태안인명구조대	태안읍 중앙로 144 공인중개사무소	010-9953-8293	010-9953-8293	

응급의료기관 현황

○ 시군별 현황: 16개소

구 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16	4	1	1	1	2	1	0	1	0	1	1	1	1	0	1
권역응급의료센터	1	1														
지역응급의료센터	6	1			1	1	1		1					1		
지역응급의료기관	9	2	1	1		1					1	1	1			1

○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연번	구분	기관명	지정일	지정 권자	응급실 병상수	총 병상	비고(지정기준 등)
계		16개기관			275	5,253	
1	권역 센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1.07.15	장관	35	8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상 30개, 수술실 2개 ◦ 응급의학 전문의 4-6명 ◦ 소아과 전문의 1명 ◦ 간호사 15명 ◦ 식도위내시경, 혈액검사장비 등
2	센터	순천향대병원	'91.07.01	도지사	24	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상 20개 ◦ 방사선실(별도 시설)
3	"	천안충무병원	'12.03.09	"	27	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실전담 전문의 2명 포함 ◦ 전담의사 4명
4	"	아산충무병원	'16.05.01	"	20	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10명
5	"	충청남도서산의료원	13.02.01	"	21	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 X-선촬영기, ◦ 초음파검사기, CT촬영기 등
6	"	논산백제병원	'04.03.29	"	22	617	
7	"	당진종합병원	'16.05.09	"	20	288	
8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05.10.05	"	20	492	
9	기관	충청남도천안의료원	'91.07.01	사군	14	220	
10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91.07.01	"	10	263	
11	"	보령아산병원	91.09.10	"	10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상 5-10개 ◦ 의사당직실, 보호자 대기실
12	"	서산중앙병원	'06.03.15	"	15	2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실 전담의사 1-2명
13	"	건양대학교부여병원	'07.09.26	"	10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5명
14	"	서해병원(서천)	'17.08.31	"	7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
15	"	청양군보건의료원	'11.12.29	"	10	88	
16	"	태안군보건의료원	'11.12.19	"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구급차

○ 응급의료기관 현황: 22개소

연번	기관구분	지역	의료기관명	대표전화	주소
1	권역응급 의료센터	천안시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041-550-6840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2	지역응급 의료센터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041-570-2119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3			천안종합병원	041-570-7519	천안시 서북구 다가밀3길 8
4		아산시	아산종합병원	041-539-7582	아산시 문화로 381
5		서산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041-689-7119	서산시 중앙로 149
6		논산시	백제종합병원	041-733-0007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7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041-357-0100	당진시 반촌로 5-15
8		홍성군	충청남도홍성의료원	041-630-6119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9	지역응급 의료기관	천안시	충청남도천안의료원	041-570-7247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10			화인메트로병원 (응급실 07:00 ~ 24:00 운영)	041-567-5119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3길 37
11		공주시	충청남도공주의료원	041-962-1111	공주시 무령로 77
12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041-930-5333	보령시 죽성로 136
13		서산시	서산중앙병원	041-661-1195	서산시 수석산업로 5
14		부여군	건양대학교부여병원	041-837-1200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
15		서천군	의료법인서해병원	041-951-8282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84
16		청양군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210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17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041-671-5220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18	기타 응급의료 시설	아산시	미래한국병원	041-545-6114	아산시 번영로230번길 13
19		아산시	현대병원	041-546-3636	아산시 시민로 388
20		예산군	예산종합병원	041-330-4119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
21		예산군	예산명지병원	041-335-5166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6
22		금산군	새금산병원	041-754-8272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183,

방사능 사고 유관기관 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과	02-397-7287	F. 02-397-7292
	방재환경과	02-397-7352	F. 02-397-7362
한국원자력 안 전 기술원 (KINS)	상황실 (24시간)	080-004-4949	F. 042-868-0406
	방사선보안대책실장	042-868-0146	휴대폰 자동연결
	방사선원보안대책실	042-868-0027	F. 042-868-0356
	당직실 (야간)	042-868-0402	F. 042-861-1700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상황실장 (24시간)	080-002-0049	
	테러및방호상황실(주간)	042-868-9782	010-5313-5543
	당직실 (야간)	042-860-9800	휴대폰 자동연결 F. 042-860-9849
한국원자력 의학원	사고접수 (24시간)	02-970-2300	
	비상진료센터 (주간)	02-970-1401~3	
	당직실 (야간)	02-970-2121	F. 02-970-2404
방사선 보건연구원	비상의료팀	02-3499-6633	F. 02-3499-6699
	24시간응급	02-998-9875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111(신고센터) 02-572-3023	F. 02-572-5671
국군화생방 방호상령부	지휘통제실	02-3412-8071 02-2008-6340	F. 02-3412-8064
경찰청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112 02-3150-2461	02-3150-1234 (치안상황실)

중점관리대상 현황

구 분	계	동	남	서	북	공	주	보	령	아	산	서	산	논	산	계	통	당	진	금	산	부	여	서	천	청	양	홍	성	예	산	태	안
계	491	40	128	26	37	63	47	18		7	43	11	13	8	7	18	17	8															
1	공동주택	2				1								1																			
2	근린생활	9		2			1					1	1	3	1																		
3	문화집회	5				1					1	1								2													
4	종교시설	0																															
5	판매시설	38	3	10	1	2	4	5	2	1	2			2						2			2	1	3								
6	운수시설	0																															
7	의료시설	43	7	5	4		5	3	1			3	2	3	1	1	1	1	1	1	1	1	1	4	3	1							
8	교육연구	5	1	1																			3										
9	노유자	28	4	7	3	1	1	2	3			1	1	1	1	1	1	1	1	1	1	1	1	2									
10	수련시설	0																															
11	운동시설	1																													1		
12	업무시설	3		1				1	1																								
13	숙박시설	72		33	8	4	8	6			1	5			2								4	1									
14	위락시설	8		4	1			1	2																								
15	공장	146	9	41	2	6	26	11	7	1	21	1	3	3	3	3	9																
16	창고시설	12	3	5	2		1			1																							
17	위험물관련	14	3	1					9			1																					
18	항공기등	0																															
19	동식물관련	0																															
20	분뇨처리시설	0																															
21	교정및군사	0																															
22	방송통신	0																															
23	발전시설	5					2							2																1			
24	묘지관련	0																															
25	관광휴게	0																															
26	장례식장	0																															
27	지하가	1	1																														
28	지하구	0																															
29	문화재	0																															
30	복합건축물	99	9	18	3	20	16	8	3	2	4	6								2	7			1									

○ 대형화재취약대상 세부 현황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1	천안동남	순천향병원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16-8	28,858.1	의료	1급
2	천안동남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산 16-5	327,538.7	의료	1급
3	천안동남	한사랑요양병원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80	11,988.1	의료	2급
4	천안동남	가야요양병원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170-2	4,049.5	의료	2급
5	천안동남	천안요양병원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289-1	6,346.0	의료	2급
6	천안동남	천안세인트요양병원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76-2	2,771.2	의료	2급
7	천안동남	기독성심원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207-1	2,273.0	노유자	2급
8	천안동남	마음편한집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292-2	3,204.9	노유자	2급
9	천안동남	대한주니어스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40-4외 2필지	1,164.0	노유자	2급
10	천안동남	지하상가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30-7	8,074.4	지하가	2급
11	천안동남	홈플러스천안점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0외 8필지	20,676.7	판매	1급
12	천안동남	홈플러스신방점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4-9	49,002.8	판매	1급
13	천안동남	(주)홈플러스목천물류센터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153-4	52,061.1	창고	1급
14	천안동남	이만드천안합판물류센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995	193,210.2	창고	1급
15	천안동남	이만드천안합판유통물류센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976	167,612.8	창고	1급
16	천안동남	제이에스전선(주)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569	29,276.5	공장	1급
17	천안동남	새론오토모티브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306-1	23,729.0	공장	1급
18	천안동남	신화인터텍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298-1	23,422.4	공장	1급
19	천안동남	삼진정공(주)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리 20	23,418.4	공장	1급
20	천안동남	(주)해태음료	천안시 동남구 구릉동 374-2	21,809.8	공장	1급
21	천안동남	L S 산전(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181	18,826.4	공장	1급
22	천안동남	(주)대동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324-1	16,506.5	공장	1급
23	천안동남	한솔재(주)천안영장교통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40-1	15,557.5	공장	1급
24	천안동남	(주)아라리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137,138.7	복합건축물	1급
25	천안동남	포스빌더샵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66	61,004.6	복합건축물	1급
26	천안동남	상록리조트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669-1	51,833.5	복합건축물	1급
27	천안동남	테心底밀리리조트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672	42,775.5	복합건축물	1급
28	천안동남	천안유통단지관리(주)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4-1	36,161.2	복합건축물	1급
29	천안동남	천안랜드마크타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1-2	32,275.3	복합건축물	1급
30	천안동남	오렌지씨네스타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02-10	27,402.6	복합건축물	1급
31	천안동남	교보생명인재개발원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 50	31,694.6	교육연구시설	1급
32	천안동남	P P G 코리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286-2	19,357.3	위험물	1급
33	천안동남	삼영순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355	8,119.1	위험물	2급
34	천안동남	레이크머티리얼즈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476	2,599.0	위험물	2급
35	천안동남	천안중앙시장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53	14,545.3	판매	2급
36	천안동남	한국엔에스케이(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50	23,605.3	공장	1급
37	천안동남	천안의료원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41-13	28,751.3	의료시설	1급
38	천안동남	대전충남양돈농협축산물유통센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318	51,743.0	복합건축물	1급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39	천안동남	천안시 종합복지관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32-1	3,226.0	노 유 자	2급
40	천안동남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32-1	13,082.5	복합건축물	2급
41	천안서북	(유)ITW 특수필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12	20,673.84	공 장	1급
42	천안서북	(재)충청나라문화재인밸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33,706.46	공 장	1급
43	천안서북	(주) K T & G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70	39,467.4	공 장	1급
44	천안서북	(주) 태 양	천안시 서북구 업성1길 27	47,058.13	공 장	2급
45	천안서북	K 2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55	2,681.6	숙박,위락	2급
46	천안서북	LG하우시스 경부종합빌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387	36,557.97	창 고	1급
47	천안서북	SKC하이테크&마케팅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12	134,728.85	공 장	1급
48	천안서북	sts반도체통신(주)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16	50,555.25	공 장	1급
49	천안서북	V O L E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4길 26	2,188.16	숙박,위락	2급
50	천안서북	경 신 전 선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567	30,358	공 장	1급
51	천안서북	공주교체육체육회관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16,391.51	고층건축물	1급
52	천안서북	다 나 할 요 양 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석양길 4	13,445.75	노 유 자	2급
53	천안서북	대 동 산 업(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2길 150	41,997.03	공 장	1급
54	천안서북	대전대부속천안병원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4	13,649.55	의 료	2급
55	천안서북	대한승유관공사(충청지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16	2,656.96	위 험 물	2급
56	천안서북	대 한 칼 소 닉(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당곡1길 41-21	19,341.81	공 장	1급
57	천안서북	동 아 S T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200-23	33,051.15	공 장	1급
58	천안서북	로 데 오 호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22	1,984.63	숙박,위락	2급
59	천안서북	롯데마트(천안성정점)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	39,243.15	판 매	1급
60	천안서북	롯데마트(쌍용점)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95	26,557.29	판 매	1급
61	천안서북	맨 투 맨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4길 28	1,785.44	숙박,단란	2급
62	천안서북	미 라 보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3길 8	2,266.56	숙박,단란	2급
63	천안서북	백 석 요 양 병 원	천안시 서북구 백석5길 4	7,133.01	의 료	2급
64	천안서북	베 네 치 안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19	2,205.41	숙박,위락	2급
65	천안서북	비즈나스(온시티)호텔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 105	8,043.8	숙 박	1급
66	천안서북	비 틀 즈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5로 53	1,741.84	숙박,위락	2급
67	천안서북	삼광글라스(주)천안유리공장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112-84	19,485.68	공 장	1급
68	천안서북	한일캔(주)천안캔공장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112-84	25,365.855	공 장	1급
69	천안서북	삼 성 S D I (주)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7	414,352.29	공 장	특급
70	천안서북	삼성디스플레이(주)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5	392,642	공 장	1급
71	천안서북	세 메 스 (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 77	77,553.85	공 장	1급
72	천안서북	센트하임(메가박스포함)	천안시 서북구 1공단1길 52	22,792.14	기타(다중이용)	1급
73	천안서북	스 카 이 빌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차돌들길 11-4	2,148.44	숙박,위락	2급
74	천안서북	스 타 둠 나 이 트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21	6,333.69	위 락	2급
75	천안서북	스 테 코	천안시 서북구 3공단1로 20	25,407.54	공 장	1급
76	천안서북	신 라 스 테 이 호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2길 21	19,833.39	숙 박	1급
77	천안서북	쌍용자동차천안물류센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1길	20,736.42	창 고	2급
78	천안서북	아 도 니 스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양지9길 14	3,953.03	숙박,위락	2급
79	천안서북	아드밴티스트코리아(주)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140	32,424.13	공 장	1급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80	천안서북	아 이 솔 유 치 원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306-8	1,217.96	노 유 자	1급
81	천안서북	에드워드코리아(주)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80	40,077.44	공 장	1급
82	천안서북	엠이엠씨코리아(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854	73479.31	공 장	1급
83	천안서북	왕 과 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4-16	6,581.51	위 락	2급
84	천안서북	천 안 소 공 물 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2길 20	35,843.15	창 고	1급
85	천안서북	전 방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3길 21	31,805	공 장	1급
86	천안서북	(주) 동 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363	17,511.2	공 장	1급
87	천안서북	(주)메가마트 천안점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8	20,689.37	판 매	1급
88	천안서북	(주)이마트 천안서북점	천안시 서북구 삼성대로 20	54,709.88	판 매	1급
89	천안서북	(주) 일 미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성2리 33	42,185.88	공 장	1급
90	천안서북	(주) 종 근 당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797-48	66,340.87	공 장	1급
91	천안서북	(주)호스파카페마사지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77	5,199.5	기타(디중이용)	2급
92	천안서북	천안마치에비뉴(1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71	10,774.6	판 매	2급
93	천안서북	천안불당중흥클래스 프라디움레이크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20	263,346.29	고층건축물	특급
94	천안서북	천안삼성어린이집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330-1	2,558.96	노 유 자	2급
95	천안서북	천 안 이 마 트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87	32,137.79	판 매	1급
96	천안서북	천안중앙병원(전포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9-7	6,505.32	의 료	2급
97	천안서북	충 무 병 원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7,918.5	의 료	2급
98	천안서북	충 무 사 랑 병 원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9-4	9,977	의 료	2급
99	천안서북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	32,558.24	복합건축물	1급
100	천안서북	케 이 씨 글라스(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30	16,673.27	공 장	1급
101	천안서북	코리아나나이트클럽	천안시 서북구 차돌들길 7	4,998.47	위 락	2급
102	천안서북	코 스 트 코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77	30,170.33	판 매	1급
103	천안서북	태정프라자(캐슬)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2길 14	6,163.59	위 락	2급
104	천안서북	티 룰 리 아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4길 11	2,756.77	숙박,위락	2급
105	천안서북	티센트럴프리미엄호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235	34,895.49	공 장	1급
106	천안서북	펜타포트(CGV포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5	388,705	복합건축물	특급
107	천안서북	포 에 버 (위 너 스)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50	3,982.49	숙박,위락	2급
108	천안서북	피 아 노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3길 27	2,105.5	숙박,위락	2급
109	천안서북	피 카 소 여 관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4길 13	1,999.67	숙박,위락	2급
110	천안서북	한국P&G산업(유)	천안시 서북구 천흥 8길 73	60,968	창 고	1급
111	천안서북	한화갤러리아천안불당점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227(불당동)	110,530.73	판 매	1급
112	천안서북	해태제과식품(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26	40,778.59	공 장	1급
113	천안서북	현대스틸산업(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07-24	39,163	공 장	1급
114	천안서북	롯데푸드(주) 천안공장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54-3	79,415.19	공 장	1급
115	천안서북	라 마 다 호 텔	천안시 서북구 차돌들길 12	26,638.6	복 합	1급
116	천안서북	호반씨앗플레이스 3차	천안시 서북구 불당25로8	260,590.7782	복 합	특급
117	천안서북	천 안 베 들 유 치 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00	3,915.27	노 유 자	2급
118	천안서북	마래마을호텔마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9	72,150.18	복 합	1급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119	천안서북	(주) 온 셀 텍	천안시 서북구 3공단 6로 86-9	32,572.94	공 장	1급
120	천안서북	(주) A B B 코 리 아	천안시 서북구 3공단4로 49	32,970.18	공 장	1급
121	천안서북	(주)한국야구로 천안공장	천안시 서북구 2공단 5로 35	15,218.59	공 장	1급
122	천안서북	(주) 승 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1길 10	24,575.81	공 장	1급
123	천안서북	이 틀 호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54	2,456.16	숙 박	2급
124	천안서북	샹 그 릴 라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32	2,829.08	숙 박	2급
125	천안서북	월 호 텔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52	2,986.02	숙 박	2급
126	천안서북	뉴 가 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51	6,353.09	위 락	2급
127	천안서북	대 원 하 이 텍 (주)	천안시 서북구 2공단10길 11	19,739.92	공 장	1급
128	천안서북	소설스 미스호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64	4,283.11	숙 박	2급
129	천안서북	호 텔 하 르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4길 22	2,346.25	숙 박	2급
130	천안서북	도 로 시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3길 9	1,818.54	숙박,위락	2급
131	천안서북	제 우 스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3길 21	4,998.90	숙 박	2급
132	천안서북	지피에스코리아(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224	22,049.42	공 장	1급
133	천안서북	한국비즈주체부동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1길 139-11	22,882.16	창 고	1급
134	천안서북	씨 티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차돌들길 11-4	1,987.99	숙 박	2급
135	천안서북	S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차돌들길 11-9	1,916.90	숙 박	2급
136	천안서북	(주) 상 원 스 틸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홍천길 46-34	17,463.60	공 장	1급
137	천안서북	애 플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양지10길 34	4,283.47	숙 박	2급
138	천안서북	백 석 대 학 빌 딩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15,515.43	고층건축물	1급
139	천안서북	(주) 캐 이 원 전 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 49	19,596.84	공 장	1급
140	천안서북	천 안 시 청 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41,483.13	고층건축물	1급
141	천안서북	스카이타워(천안희망병원)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1길 26	19,100.18	복 합	1급
142	천안서북	오 아 시 스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차돌들길 12-5	2,264.28	숙 박	2급
143	천안서북	노블레스텔 모텔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7길 28	3,624.81	숙 박	2급
144	천안서북	시 크 릿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7길 28	2,584.94	숙 박	2급
145	천안서북	디 알 비 파 텍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3로 70	20,473.86	공 장	1급
146	천안서북	시티프라다움 3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0번지	40,557	복합건축물	특급
147	천안서북	테 마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양지10길 38	2,375.14	숙 박	2급
148	천안서북	천 안 E 호 텔	천안시 서북구 양지21길 42	2,324.25	숙 박	2급
149	천안서북	펠 리 스 호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7길 29	2,616.42	숙 박	2급
150	천안서북	자 우 리 모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4길 29	1,637.33	숙 박	2급
151	천안서북	퀸즈메디컬빌딩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9-13	8,748.9	고층건축물	1급
152	천안서북	아이유쉘트윈팰리스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 106	60,383.67	고층건축물	1급
153	천안서북	광산리오빌오피스텔	천안시 서북구 쌍용19로 29-4	3,931.62	고층건축물	1급
154	천안서북	(주)에땅건물(B동)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도하길 215-20	17,895.61	창 고	1급
155	천안서북	(주) 한 창 엔 프 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로 249	24,069.75	공 장	1급
156	천안서북	S H O W 호 텔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2길 21	3,137.3	숙 박	2급
157	천안서북	케이비부동산신탁건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91	35,216.15	복합건축물	1급
158	천안서북	천안시 종합지원센터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545	1,250.14	노 유 자	2급
159	천안서북	성 정 시 장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36-5	4,040.67	시 장	2급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160	천안서북	(주) 인 바 디 건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272-1	16,375.30	공 장	1급
161	천안서북	씨케이코퍼레이션(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1길 292-53	30,142.19	공 장	2급
162	천안서북	천안미치에비뉴(2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96	11,674.90	판 매	2급
163	천안서북	스포타임프라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318외 7필지	11,992.71	근 생	1급
164	천안서북	한국마이산소재유3종합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429	100,542.01	공 장	1급
165	천안서북	비 즈 타 워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58-8	18,097.95	고층건축물	1급
166	천안서북	푸른하늘 어린이집	천안시 서북구 업성6길 5	1,207.90	노 유 자	2급
167	천안서북	천안성성유치원	천안시 서북구 성성10길 10-4	3,605.09	노 유 자	2급
168	천안서북	클 럽 액 스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55	533.3	위 락	2급
169	공 주	C J 제 일 제 당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599	24,321.80	공 장	1급
170	공 주	솔브레이인(주)SLD공장동	공주시 공단길 34-19	35,098.70	공 장	1급
171	공 주	코리아나노래클럽	공주시 산성시장5길 78-37	2,803.56	기타(다중이용)	2급
172	공 주	공주밸델정신요양원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20	2,710.70	기타(장애인수용)	2급
173	공 주	산 성 시 장	공주시 용당길 20(산성동)	39,013.00	판 매	1급
174	공 주	궁 전 모 텔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 49-4	4,336.67	숙박	2급
175	공 주	메가박스 공주점	공주시 흑수골길 12	2,690.61	영화상영관	2급
176	공 주	공 주 건 강 랜 드	공주시 흑수골길 44-5	4,165.15	기타(다중이용)	2급
177	공 주	칸 모 텔	공주시 전막2길 16-7	1,629.10	숙박	2급
178	공 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40,404.00	의료	2급
179	공 주	명주원(동곡요양원)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55-7	6,820.48	기타(장애인수용)	2급
180	공 주	클 리 오 모 텔	공주시 전막2길 16-12	1,242.42	숙박	2급
181	공 주	현 대 병 원	공주시 번영2로 18-10	6,060.20	의료	2급
182	공 주	삼 우 타 운	공주시 신금1길 48	9,878.54	기타(다중이용)	2급
183	공 주	공주의료원(본관동)	공주시 무령로 77	31,538.61	의료	1급
184	공 주	금 강 호 텔	공주시 전막2길 16-11	3,025.13	숙박	2급
185	공 주	위 니 텔 모 텔	공주시 전막3길 14	1,961.06	숙박	2급
186	공 주	호 텔 공 주	공주시 전막2길 10-6	3,475.00	숙박	2급
187	공 주	GS리테일 중부물류센터	공주시 월미농공단지길 55	15,663.95	창고	1급
188	공 주	공주마을사거리전통마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28,824.0	고층건축물	1급
189	공 주	공 주 원 로 원	공주시 연수원길 47-30	10,587.67	기타(노유자)	2급
190	공 주	성 문 고 시 텔	공주시 신관로 69-11	3,695.66	기타(다중이용)	2급
191	공 주	웅진코웨이 물류센터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24-65	28,320.00	창고	1급
192	공 주	국립공주병원(본관동)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14,643.80	의료	1급
193	공 주	호텔홀리데이 계룡산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 61	7,470.13	숙박	2급
194	공 주	마 류	공주시 전막2길 16-1	3,274.19	숙박	2급
195	보 령	홈플러스 보령점	보령시 명암1길 17	25,153.0	판매	1급
196	보 령	이 마 트 보 령 점	보령시 해안로 25	20,341.2	판매	1급
197	보 령	원 저 호 텔 건 물	보령시 매방아1길 12-6	2,910.1	복합건축물	2급
198	보 령	크라운호텔건물	보령시 원동1길 98	1,818.2	복합건축물	2급
199	보 령	피카소모텔건물	보령시 천변북길 95	1,468.1	복합건축물	2급
200	보 령	모 텔 휴 건 물	보령시 천변북길 97	13,335.8	복합건축물	2급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201	보령	리버사이드호텔	보령시 천변북길 87	2,828.0	복합건축물	2급
202	보령	캐빈모텔건물	보령시 목장2길 17	1,808.2	복합건축물	2급
203	보령	사이버모텔건물	보령시 목장2길 27	1,497.7	복합건축물	2급
204	보령	모텔찬리건물	보령시 목장3길 32	1,874.2	복합건축물	2급
205	보령	아리아모텔건물	보령시 한내로 78-13	2,073.6	복합건축물	2급
206	보령	C G V 보령점	보령시 대흥로 51	12,654.1	복합건축물	2급
207	보령	(주)대천웨스토피아	보령시 옥마벗길10	23,080.4	복합건축물	1급
208	보령	JFK대천워터파크호텔	보령시 대해로 876	11,538.2	복합건축물	2급
209	보령	오션뷰리조텔	보령시 대천항1길 17	2,560.5	숙박	2급
210	보령	파인모텔	보령시 해수욕장2길 9	1,902.2	숙박	2급
211	보령	한화호텔&리조트	보령시 해수욕장3길 11-10	42,353.4	복합건축물	1급
212	보령	환상의바다리조트	보령시 대천항1길 67-7	12,585.7	숙박	2급
213	보령	비체펠리스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 78	41,259.3	복합건축물	1급
214	보령	한국지엠보령공장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256	78,481.3	공장	1급
215	보령	코리아힐(주) 보령공장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165	35,420.9	공장	1급
216	보령	두원전선(주) 보령공장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197	24,416.4	공장	1급
217	보령	한국중부발전 보령본부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89-37	1,514,453.6	발전	1급
218	보령	시티타워건물	보령시 원동1길 69	35,423.0	복합건축물	1급
219	보령	대천스파밸리건물	보령시 중앙로 46	10,678.3	복합건축물	2급
220	보령	24시신세계찜질방	보령시 보령남로 9	10,338.4	복합건축물	2급
221	보령	충남정심원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04	10,043.4	노유자시설	2급
222	보령	호텔머드린	보령시 머드로 111(신흑동)	13,010.1	복합건축물	2급
223	보령	(주)영흥철강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5	21,736.9	공장	1급
224	보령	에스엔에스아이엔씨(주)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241	23,334.3	공장	1급
225	보령	한국중부발전 분사사옥	보령시 보령북로 160	24,869.0	업무	1급
226	보령	파래브콘도	보령시 해수욕장8길 70	7,996.0	복합건축물	2급
227	보령	한국중부발전(주)보령본부	보령시 주교면 송도길 201	161,872.7	발전	1급
228	보령	우연플로라	보령시 보령시 해수욕장8길 48	2,375.6	복합건축물	2급
229	보령	대일전선(주) 보령공장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3번지	18,168.5	공장	1급
230	보령	제우스모텔	보령시 터미널길 23-11	2,690.0	숙박시설	2급
231	보령	황제안마시술소	보령시 목장2길 31	684.8	근린생활	3급
232	아산	썬노래클럽(재아빌딩)	아산시 온천동 493	1,543.6	복합건축물	2급
233	아산	(주)슈펙스빌리지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7-3	37,152.8	판매	1급
234	아산	아마존(주)아산점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0	44,267.4	판매	1급
235	아산	신세계이마트 아산점	아산시 풍기동 192-2	14,132.2	판매	2급
236	아산	도고글로리콘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7-10	23,008.4	숙박	1급
237	아산	(주)토비스알엔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61-15	12,926.5	숙박	2급
238	아산	BS투어엔리조트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305-4	19,719.6	숙박	1급
239	아산	온양제일호텔	아산시 온천동 228-1	14,114.0	숙박	2급
240	아산	헤링턴관광호텔	아산시 온천동 230-6	3,777.6	복합건축물	2급
241	아산	(주)온양관광호텔	아산시 온천동 242-10	26,314.1	숙박	1급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242	아 산	(주)온양그랜드호텔	아산시 온천동 300-28	19,541.0	숙 박	1급
243	아 산	W 호 텔	아산시 온천동 82-12	6,519.9	복합건축물	2급
244	아 산	아 산 총 무 병 원	아산시 모종동 432-2	15,298.5	의 료	1급
245	아 산	한 국 병 원	아산시 모종동 568-8	4,724.4	의 료	2급
246	아 산	아 산 병 원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48-5	6,986.9	의 료	2급
247	아 산	늘 푸른요양 병 원	아산시 온천동 131-110	6,529.8	의 료	2급
248	아 산	열 린 성 애 병 원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119	5,201.4	의 료	2급
249	아 산	디 와 이 오 토 (주)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819	26,645.5	공 장	1급
250	아 산	(주) 이 녹 스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352 , 1353	27,530.8	공 장	1급
251	아 산	(주)도쿄마아산공장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508	59,236.6	공 장	1급
252	아 산	(주)에스에프에이	아산시 둔포면 신향리 859	51,411.1	공 장	1급
253	아 산	동원시스템즈(주)아산공장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08	36,123.7	공 장	1급
254	아 산	일 진 디 앤 코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254-1	23,145.0	공 장	1급
255	아 산	(주)신도리코 아산공장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883	94,850.6	공 장	1급
256	아 산	삼성전자(주) 운양사업장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723	271,944.2	공 장	특급
257	아 산	(주)동국실업 아산공장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230-9	28,115.6	공 장	1급
258	아 산	(주)아산성우하이텍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615-19	38,719.0	공 장	1급
259	아 산	케 이 씨 씨 (주)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71	52,225.3	공 장	1급
260	아 산	(주)동원홈 푸 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289-7	23,638.7	공 장	1급
261	아 산	(주)삼양사 아산공장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7	29,203.6	공 장	1급
262	아 산	글 로 비 스 (주)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034	37,029.2	공 장	1급
263	아 산	(주) 광 진 기 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047	22,118.1	공 장	1급
264	아 산	(주)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123	376,960.5	공 장	특급
265	아 산	동 화 기 업 (주)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86-4	28,177.4	공 장	1급
266	아 산	(주)농심 아산공장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77-1	59,880.4	공 장	1급
267	아 산	(주)귀뚜라미 보일러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2-9	97,679.0	공 장	1급
268	아 산	아이에스동서(주)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45-9	42,351.6	공 장	1급
269	아 산	(주) 대 유 위 니 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1	69,944.90	공 장	1급
270	아 산	갑 을 오 토 텍 (주)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1-2	56,382.96	공 장	1급
271	아 산	삼성디스플레이(주)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00	5,567,641.95	공 장	특급
272	아 산	코 닉 정 밀 소 재(주)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220	1,124,593.20	공 장	특급
273	아 산	현대마쓰(주)아산클리너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840-2	126,414.86	창 고	1급
274	아 산	아산마쓰터미널복합시설	아산시 모종동 555-5	52,728.01	복합건축물	1급
275	아 산	Y - m all (와이 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7	69,123.81	복합건축물	1급
276	아 산	천 안 아 산 역 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05	41,719.09	복합건축물	1급
277	아 산	도 고 오 피 스 텔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74-22	9,270.46	업 무	2급
278	아 산	옛 지 오 피 스 텔	아산시 모종동 561-11	5,853.44	복합건축물	2급
279	아 산	펜타폴리스오피스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58	22,031.00	복합건축물	1급
280	아 산	제 일 타 워	아산시 온천동 194-5	18,116.56	복합건축물	1급
281	아 산	풀마사지스테이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9	2,994.18	복합건축물	2급
282	아 산	파 랑 새 등 지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2-1	2,619.36	노 유 자	2급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283	아 산	온 양 상 설 시 장	아산시 온천동 41-2	2,906.70	판 매	2급
284	아 산	올 리 브 힐 스	아산시 온천동 307-41	14,062.63	복합건축물	2급
285	아 산	K D 아 람 채	아산시 법곡동 333	18,837.00	복합건축물	1급
286	아 산	케 이 알 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8	28,736.68	복합건축물	1급
287	아 산	동 광 판 지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010	31,012.03	공 장	1급
288	아 산	가원레저토비스콘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61-17	7,511.46	숙박	2급
289	아 산	(주)아산온천호텔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290-5	11,822.89	숙박	2급
290	아 산	대 륙 제 관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235	37,903.67	공 장	1급
291	아 산	한 국 관	아산시 온천동 73-4	1,289.66	위 락	2급
292	아 산	시 그 마 빌 S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59	20,426.62	복합건축물	1급
293	아 산	파 모 스 라 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31	26,344.84	복합건축물	1급
294	아 산	미소지움오피스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29	49,416.56	복합건축물	1급
295	서 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104,993.0	위험물	1급
296	서 산	(주)LG화학 대산공장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205,870.0	위험물	1급
297	서 산	(주) 씨 텍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35,703.4	위험물	2급
298	서 산	한 화 토 탈 (주)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225,632.0	위험물	1급
299	서 산	현대오일뱅크(주)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152,347.3	위험물	1급
300	서 산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19	9,243.0	위험물	2급
301	서 산	K C C (주)	서산시 대죽2로 35	56,128.0	위험물	1급
302	서 산	C G N 대 산 전 력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18,114.0	공 장	2급
303	서 산	s k 이 노 베 이 션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59-122	158,517.2	공 장	1급
304	서 산	현 대 트 랜 시 스	서산시 총의로 958	277,501.8	공 장	1급
305	서 산	파 텍 스 (주)	서산시 무장길 29	85,796.9	공 장	1급
306	서 산	코 넥 (주)	서산시 고북면 고수관로62	21,401.1	공 장	1급
307	서 산	현 대 트 랜 시 스	서산시 성연면 신당1로 105	164,757.3	공 장	1급
308	서 산	동 희 오 토 (주)	서산시 성연면 신당1로 105-1	100,228.7	공 장	1급
309	서 산	(주) 크 레 아	서산시 음암면 석동로 115	26,953.0	공 장	1급
310	서 산	동 부 시 장	서산시 시장1로 10	8,230.3	판 매	2급
311	서 산	롯데마트 서산점	서산시 총의로 27	15,980.2	판 매	1급
312	서 산	이 마트 서산점	서산시 서해로 3685	19,456.3	판 매	1급
313	서 산	서 부 종 합 상 가	서산시 읍내1로 35	13,489.4	판 매	2급
314	서 산	그 린 필 백 화 점	서산시 시장2로 20	16,218.2	판 매	1급
315	서 산	서 산 의 药 원	서산시 중앙로 149	22,977.1	의 药	2급
316	서 산	서 산 중 앙 병 원	서산시 수석산업로 5	28,618.8	의 药	1급
317	서 산	롯데시네마 서산점	서산시 율지18로 38	3,803.0	문화집회	2급
318	서 산	서림복지원(서림요양원)	서산시 음암면 석동로 169	5,345.0	노 유 자	2급
319	서 산	사 론 의 집 노인요양원	서산시 고북면 고수관로 596-6	2,341.0	노 유 자	2급
320	서 산	M 모 텔	서산시 읍내1로 21	2,383.1	숙박	2급
321	서 산	제이모텔(올리브)	서산시 총의로 1977	1,811.0	숙박	2급
322	서 산	프 로 포 즈 모 텔	서산시 읍내1로 27	4,639.9	숙박	2급
323	서 산	C J) C G V	서산시 안견로 242	17,682.0	복합건축물	1급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324	서 산	백 악 관 모 텔	서산시 동현로 99	3,165.5	숙 박	2급
325	서 산	네 오 텔	서산시 읍내1로 17	2,195.9	숙 박	2급
326	서 산	카 네 기	서산시 읍내3로 12	2,295.0	숙 박	2급
327	서 산	로마관광나이트	서산시 읍내3로 2	1,765.1	위 락	2급
328	서 산	송 죽 매(아리랑)	서산시 효행1로 14	1,626.9	위 락	2급
329	서 산	르셀웨딩컨벤션	서산시 서해로 3573	9,488.0	복합건축물	2급
330	서 산	서 산 프 라 자	서산시 안견로 284	8,897.0	복합건축물	2급
331	서 산	서 산 사 우 나	서산시 덕지천로 124	4,706.3	복합건축물	2급
332	서 산	우 리 요 양 병 원	서산시 동현로 15	3,793.8	의 료	2급
333	서 산	현 대 위 아 (주)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29-71	96,796.2	공 장	1급
334	서 산	위 스 코 (주)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133-14	24,531.7	공 장	1급
335	서 산	현 대 케 미 칼 (주)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1	58,654.5	위 험 물	1급
336	서 산	현대오씨아이(주)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27,826.6	위 험 물	1급
337	서 산	베 니 키 아 호 텔	서산시 안견로 465	29,566.4	복합건축물	1급
338	서 산	동문 코아루 시티	서산시 동문동 1000-4	10,024.0	복합건축물	2급
339	서 산	레 이 크 뷰	서산시 읍내동 102-125	47,337.7	복합건축물	1급
340	서 산	이 안 큐 브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645	75,021.0	복합건축물	1급
341	서 산	(주) 엔 엘 티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07`	15,116.4	공 장	1급
342	논 산	조 선 호 텔	논산시 관촉로285번길 9	1,999	복합건축물	2급
343	논 산	(주) 우 성 사 료	논산시 은진면 안심로 259-3	27,585	공 장	1급
344	논 산	홈플러스 논산점	논산시 시민로 187	16,005	판 매	1급
345	논 산	논산25사불기마사우나	논산시 논산대로351번길 7	3,813	근 생	2급
346	논 산	백 제 종 합 병 원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18,768	의 료	1급
347	논 산	한 미 식 품	논산시 강경읍 농공단지로 8	15,009	공 장	1급
348	논 산	(주) 삼 광 글 라 스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5길 70	81,584	공 장	1급
349	논 산	에버그린관광호텔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369	4,100	복합건축물	2급
350	논 산	(주)진주햄 논산공장	논산시 가야곡면 매죽현로638번길 24	16,382	공 장	1급
351	논 산	CJ제일제당(주) 논산공장	논산시 연무읍 죽본2길 16	38,357	공 장	1급
352	논 산	(주) S G 충 남 방 적	논산시 연무읍 양지길 45-18	25,438	공 장	1급
353	논 산	논 산 시 네 마	논산시 해월로167번길 8	3,514	문 화	2급
354	논 산	화 지 중 앙 시 장	논산시 중앙로500번길 14-2	17,205	판 매	기타
355	논 산	큐엔타워(공사중단)	논산시 중앙로 464	33,121	복합건축물	2급
356	논 산	(주) 한 국 신 약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39-83	18,145	공 장	1급
357	논 산	논산정신요양원	논산시 상월면 월오1길 54	3,793	노 유 자	2급
358	논 산	한 울 빌 리 지	논산시 양촌면 계백한전길 161	5,139	노 유 자	2급
359	논 산	성 지 드 림 빌	논산시 연산면 한전2길 45-14	3,513	노 유 자	2급
360	계 룡	계 룡 웰 빙 클 럽	계룡시 엄사면 번영11길 18-16	3,852.5	근 생	2급
361	계 룡	홈플러스 계룡점	계룡시 계룡대로 304(금암동)	23,210.6	판 매	2급
362	계 룡	호 텔 계 룡	계룡시 계룡대로 334(금암동)	3,586.7	숙 박	2급
363	계 룡	(주)아워홈 계룡영업소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26-21	25,270.9	공 장	1급
364	계 룡	한국타이어몰류창고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7-23	9,242.6	창 고	2급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365	계 룹	호 텔 리 어	계룡시 엄사면 번영1길 6-5	1,905.1	복합건축물	2급
366	계 룹	계 룹 프 라 자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94	8,168.3	복합건축물	2급
367	당 진	대 한 전 선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 1110	134,390.0	공 장	1급
368	당 진	솔 담 요 양 병 원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355-15외 4	2,654.9	의 료	2급
369	당 진	인 피 니 티 호 텔	당진시 수청동 989	2,289.0	숙 박	2급
370	당 진	미즈맘산후조리원	당진시 수청동 992	3,770.9	근 린 생 활	2급
371	당 진	부경오피스텔(G1파크빌)	당진시 수청동 999	37,281.0	복합건축물	1급
372	당 진	씨 티 호 텔	당진시 수청동 1034	5,415.9	숙 박	2급
373	당 진	당 진 종 합 병 원	당진시 시곡동 57-1	15,493.5	의 료	1급
374	당 진	당 진 C G V	당진시 우두1로 88	5,468.0	복합건축물	2급
375	당 진	맘앤캐슬산후조리원	당진시 읍내동 1059	1,429.5	근 린 생 활	2급
376	당 진	진 원 스 타 타 워	당진시 읍내동 224-4	16,119.4	근 린 생 활	1급
377	당 진	산 노 래 클 럽	당진시 읍내동 531-12	3,648.4	복합건축물	2급
378	당 진	츄 리 모 텔	당진시 읍내동 558-91	1,783.8	숙 박	2급
379	당 진	K모텔(G룸클럽포함)	당진시 읍내동 634-8	2,866.8	숙 박	2급
380	당 진	롯 데 마 트	당진시 정안로 20(원당동)	25,088.0	판 매	1급
381	당 진	석문화복기요양병원	당진시 채운동 1130	9,044.6	의 료	2급
382	당 진	당 진 화 력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74	423,133.8	발 전	특급
383	당 진	서조동이원한국제본장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221-31	33,642.0	공 장	1급
384	당 진	(주) 서 진 캠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228	20,416.4	공 장	1급
385	당 진	환 영 철 강 (주)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650-7	51,269.0	공 장	1급
386	당 진	한 국 내 화 (주)	당진시 송산면 무수들길 370	46,067.0	공 장	1급
387	당 진	현 대 제 철 (주)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67-32	2,873,000.0	공 장	특급
388	당 진	당 진 관 광 호 텔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02-3	4,056.1	숙 박	2급
389	당 진	자산포구자산도로교연장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218	2,806.0	복합건축물	2급
390	당 진	실 버 프 리	당진시 송악읍 본당리 330-3	2,820.9	노 유 자	2급
391	당 진	생고뱅이소바코리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1길 70	36,482.0	공 장	1급
392	당 진	인지에이엠티(주)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56	24,129.0	공 장	1급
393	당 진	하 이 스 틸 (주)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252	18,689.0	공 장	1급
394	당 진	휴 스 틸 (주)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31	103,314.0	공 장	1급
395	당 진	(주)동서기공3공장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55	18,580.0	공 장	1급
396	당 진	G S E P S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	20,626.0	발 전	1급
397	당 진	동 부 제 철 (주)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323,000.0	공 장	특급
398	당 진	동 국 제 강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399	199,058.0	공 장	1급
399	당 진	한국유자재자재제작장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09	42,950.0	공 장	1급
400	당 진	jw중외생명과학(주)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진1길 28	50,265.0	공 장	1급
401	당 진	j w 중 외 제 약 (주)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진1길 56	42,031.3	공 장	1급
402	당 진	경 수 제 철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456	30,514.0	공 장	1급
403	당 진	모다아울렛(행담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516-4	22,808.0	판 매	1급
404	당 진	서평택탱크터미널(주)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0	1,362.80	위험물관련	2급
405	당 진	선 진 정 공 (주)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109-44	50,999.00	공 장	1급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406	당진	산성대학교 제3기숙사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220	9,890.00	공동주택	2급
407	당진	(주) 비츠로셀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669-1	18,788.21	공장	1급
408	당진	대주중공업	당진시 합덕읍 도곡리 378-3	28,217.24	공장	1급
409	당진	성원제강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240	18,478.37	공장	1급
410	금산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1	386,858.0	공장	1급
411	금산	웨딩캐슬(금산수심시장)	금산군 인삼약초로 48-8	7,871.2	복합건축물	2급
412	금산	새금산요양병원새금산병원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183	4,340.0	의료	2급
413	금산	인삼호텔금산인삼호텔센터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47	14,561.2	복합건축물	2급
414	금산	인삼월드병원스파병원월드병원	금산군 금산읍 인삼약초로 29-3	15,498.7	복합건축물	1급
415	금산	금산효사랑요양병원	금산군 남일면 무금로 2145	4,334.4	의료	2급
416	금산	편안요양병원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71	2,777.9	복합건축물	2급
417	금산	제우드민주점금산병원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147	1,988.9	복합건축물	2급
418	금산	홍익원(D&S프라자)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73	7,277.3	복합건축물	2급
419	금산	향림원	금산군 추부면 문화마을로 24-7	3,024.8	노유자	2급
420	금산	하늘물빛정원	금산군 추부면 검한1길 156	4,155.4	근린생활	2급
421	부여	고려인삼창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46	88,221.4	공장	1급
422	부여	대림C&S	부여군 장암면 충절로 1713번길 60	37,943.0	공장	1급
423	부여	부여제지본부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17외4	41,300.7	공장	1급
424	부여	오석산요양원	부여군 부여읍 청마로 61	2,153.0	노유자	2급
425	부여	백제문화단지역관사업부설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19,935.5	문화 및 접회	2급
426	부여	국립부여박물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번지	13,972.7	문화 및 접회	2급
427	부여	롯데부여리조트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00	57,497.8	숙박	2급
428	부여	백제관광호텔	부여읍 북포로 108	3,990.7	숙박	2급
429	부여	다사랑병원	부여군 장암면 충절로 1713번길 16	2,161.5	의료	2급
430	부여	부여노인전문병원	부여군 규암면 반산로 39	6,655.6	의료	2급
431	부여	부여청담병원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648번길 41	2,889.9	의료	2급
432	부여	롯데아울렛부여점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87	34,964.0	판매	2급
433	부여	부여중앙시장	부여군 부여읍 중앙로 15	5,851.2	판매	3급
434	서천	한솔제지(주)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49	150,829.4	공장	1급
435	서천	퍼시픽글라스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29	32,642.4	공장	1급
436	서천	국립생태원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59,189.3	교육 연구	1급
437	서천	서천한국요양병원	서천군 마서면 어리길 250-7	6,598.7	의료	2급
438	서천	서천군노인요양시설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302번길 88-16	4,237.1	노유자	2급
439	서천	서울시서천연수원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18,925.4	교육 연구	1급
440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32,843.9	교육 연구	1급
441	서천	LS메탈장항공장	서천군 장항읍 화송길 123	48,997.0	공장	1급
442	청양	애경화학(주)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1547-64	24,719.0	공장	2급
443	청양	애경산업(주)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1547-9	36,821.0	공장	1급
444	청양	레전드모텔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8길 8	1,784.6	복합건축물	2급
445	청양	호텔살레	청양군 대치면 한티고개 57	3,254.2	복합건축물	2급
446	청양	에이케이컴텍(주)공장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1547-95	7,183.0	공장	2급

연번	관할	대상명	주 소	면적	특정대상 분류	비고
447	청 양	청양실버요양원	청양군 남양면 만수로 1202-22	1,272.1	노 유 자	2급
448	청 양	청양요양병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51	1,787.0	의 료	2급
449	홍 성	홍주요양병원	홍성군 홍성읍 백월로 130	4,376.13	의 료	2급
450	홍 성	홍성온천관광호텔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42	3,162.80	복합건축물	2급
451	홍 성	램파트호텔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85번길 172	2,269.50	복합건축물	2급
452	홍 성	홍성의료원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28,853.00	의 료	1급
453	홍 성	세립산업(주)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111	20,075.93	공 장	1급
454	홍 성	홍주쇼핑타운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43번길 18	18,794.00	판 매	1급
455	홍 성	목화유치원	홍성군 홍성읍 대교길 33	1,075.80	노 유 자	2급
456	홍 성	홍성정신요양원	홍성군 홍성읍 대내길 97	597.94	노 유 자	2급
457	홍 성	서울파크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319번길 11	1,898.21	복합건축물	2급
458	홍 성	홍성요양병원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43번길 11	5,990.89	의 료	2급
459	홍 성	이에이치이(주)	홍성군 은하면 구성남로 386	25,893.17	공 장	1급
460	홍 성	리산인플렉스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247번길 9	35,758.10	복합건축물	1급
461	홍 성	서울스포렉스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52번길 15-3	3,131.63	복합건축물	2급
462	홍 성	두리포모자신동환병원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214	4,977.95	복합건축물	2급
463	홍 성	일진전기(주)	홍성군 갈산면 갈산서길 383	31,671.47	공 장	1급
464	홍 성	홍성전통시장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43번길	9,512.00	판 매	2급
465	홍 성	한국병원	홍성군 홍성읍 대내길 97	5,633.00	의 료	2급
466	홍 성	(주)홍성매기한솔힐링7층	홍성군 홍북읍 충서로 174번길 2	15,688.5	복합건축물	1급
467	예 산	예산명지병원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6	7,828.0	의 료	2급
468	예 산	덕산온천관광호텔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2로 23	8,332.0	숙박	2급
469	예 산	덕산타워텔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69	2,386.0	숙박	2급
470	예 산	(주)대양금속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23,057.0	공 장	1급
471	예 산	스플라스리솜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 3로45-7	77,238.0	숙박	1급
472	예 산	퍼스트모텔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 1로20-16	1,672.0	숙박	2급
473	예 산	(주)인지디스플레이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88번길 7	19,846.0	공 장	1급
474	예 산	예산요양병원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49-11	2,878.0	의 료	2급
475	예 산	예산종합병원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	8,602.0	의 료	2급
476	예 산	(주)새화신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468	16,626.0	공 장	1급
477	예 산	(주)네오오토	예산군 삽교읍 두루머리길 8	27,744.0	공 장	1급
478	예 산	(주)이화산업	예산군 신암면 신종두곡길 11	17,305.0	공 장	1급
479	예 산	예산상설시장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67	5,365.0	판 매	2급
480	예 산	현대제철(주)제1공장	예산군 삽교읍 산단1길 131	45,435.0	공 장	1급
481	예 산	신한금속(주)	예산군 삽교읍 산단1길 69	38,166.0	공 장	1급
482	예 산	현대제철(주)제2공장	예산군 삽교읍 산단3길 107	52,059.0	공 장	1급
483	예 산	보령제약(주)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534외 1	28,245.8	공 장	1급
484	태 안	호반호텔앤리조트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204	30533.73	숙박	1급
485	태 안	한국서부빌딩(주)본점부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	481,745.0	발 전	1급
486	태 안	태안서부시장	태안군 태안읍 시장1길 34	3,640.9	판 매	기타
487	태 안	태안특산물전통시장	태안군 태안읍 시장4길 36	5,712.3	판 매	3급
488	태 안	안면도수산시장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04	4,306.6	판 매	2급
489	태 안	태안프라자	태안군 태안읍 활동로 82	5,526.0	복합건축물	2급
490	태 안	현대요양병원	태안군 태안읍 활동로 31	6,168.0	의 료	2급
491	태 안	골든베아골프리조트	태안군 근흥면 정산포로 217	20,837.0	운 동	2급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황

○ 입주업체 및 비상연락망

대상별 내 용	업 체 (20개)	주 소	주생산품	전 화
한화토탈 지 구 (5)	한 화 토 탈 (주)	대산읍 독곶2로 103	L D P E	660-6342
	한 화 종 합 화 학 (주)	대산읍 독곶2로 103	P T A	660-8418
	K P X 그린케미칼 (주)	대산읍 독곶2로 103	에탄올아민	661-5040
	(주) 린데코리아	대산읍 독곶2로 96-22	산소, 질소	660-6792
	한 농 화 성 (주)	대산읍 독곶2로 96-75	계면활성제	681-9151
LG·호남 석유화학 지 구 (7)	(주) LG 화학 대산공장	대산읍 독곶1로 54	폴리에틸렌	661-2040
	롯 게 캐 미 컬 (주)	대산읍 독곶1로 82	폴리에틸렌	689-5317
	롯데엠알시 (주)	대산읍 독곶1로 82	폴리에틸렌	689-5351
	M P C 대산전력	대산읍 독곶1로 822	발전소	661-5540
	베올리워터코리아	대산읍 독곶1로 54	수처리	689-8815
	(주) 씨텍	대산읍 독곶1로 54	발전소	689-8302
	(주) 린데코리아	대산읍 평신2로 117	질소, 수소산소	667-7325
KCC지구 (6)	(주) KCC 대죽공장	대산읍 대죽2로 35	폴리실리콘	660-8906
	피티에스인더스트리(유)	대산읍 대죽2로 251	폴리실리콘	666-2715
	(주) 케이씨아이	대산읍 대죽1로 221	계면활성제	660-79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산읍 대죽1로 100	석유정제	661-5783
	대산S&P (주)	대산읍 대죽1로 173	도장	667-5450
	두양산업 (주)	대산읍 대죽2로 180	석유화학첨가제	663-0358
현대 오일뱅크(주)	현대오일뱅크 (주)	대산읍 평신2로 182	휘발유	660-5416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한국석유공사	대산읍 평신2로 119	경질유 등	660-4183

○ 소방관서와의 거리

구분	한화토탈지구	LG-롯데케미칼 대산유화지구	현대 오일뱅크(주)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소방본부	72km(1시간30분)	72km(1시간30분)	73km(1시간30분)	74km(1시간35분)
서산소방서	36km(40분)	36km(39분)	39km(43분)	39km(43분)
대산119안전센터	13km(15분)	12km(14분)	15km(18분)	15km(18분)
인근 소방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소방서(1시간) · 보령소방서(1시간 50분) · 경기 평택소방서(1시간 30분) · 흥성소방서(1시간 30분) · 아산소방서(1시간 40분) · 충북 청주소방서 (2시간 10분) 			

○ 자체소방대현황

- 한화토탈 (660-6342)

연번	종류	제원(mm)	방사능력	소화약제보유량			비고
				물(l)	폼액(l)	분말(kg)	
1호	경화학 화학차	전장 : 9,585 전폭 : 2,495 전고 : 3,520	3,750l/min	7,000	1,500		
2호	고성능 화학차	전장 : 11,065 전폭 : 2,495 전고 : 3,795	5,670l/min	8,000	3,000	300	
3호	화학 소방차	전장 : 9,600 전폭 : 2,490 전고 : 3,200	3,000l/min		3,300	900	
4호	화학 소방차	전장 : 11,900 전폭 : 2,490 전고 : 3,700	3,785l/min		2,200		사다리차

- (주)LG화학 대산공장 (661-2052)

연번	종류	제원(mm)	방사능력	소화약제보유량			비고
				물(l)	폼액(l)	분말(kg)	
1	중화학차	전장 : 10,140 전폭 : 2,495 전고 : 3,300	5,600l/min	4,000	3,000	300	신규 (대폐)
2	중화학차	전장 : 9,120 전폭 : 2,480 전고 : 3,090	3,000l/min		3,200	900	
3	중화학차	전장 : 11,000 전폭 : 2,500 전고 : 3,800	5,500l/min	5,000	4,000	900	신규

- 롯데캐미컬 (689-5310)

연번	종류	제원(mm)	방사능력	소화약제보유량			비고
				물(l)	폼액(l)	분말(kg)	
1	중화학차	전장 : 10,520 전폭 : 2,480 전고 : 3,500	3,000l/min	1,800	2,300	300	화론
2	다목적 사다리차	전장 : 9,515 전폭 : 2,480 전고 : 3,790	3,000l/min	2,000	4,000		13.5 사다리
3	혼재 화학 차	전장 : 7,580 전폭 : 2,245 전고 : 2,780	2,800l/min	1,500	1,000	140	

- 한화종합화학 (660-8417)

연번	종류	제원(mm)	방사능력	소화약제보유량			비고
				물(l)	폼액(l)	분말(kg)	
1호	경화학 화학 차	전장 : 7,330 전폭 : 2,240 전고 : 2,780	2,000l/min	3,000	2,000	-	화론

- 현대오일뱅크 (660-5412)

연번	종류	제원(mm)	방사능력	소화약제보유량			비고
				물(l)	폼액(l)	분말(kg)	
1	고성능 화학 차	전장 : 9,700 전폭 : 2,495 전고 : 3,240	5,600l/min	5,000	3,000	140	
2	화학 소방차	전장 : 7,899.4 전폭 : 2,438 전고 : 2,997	3,785l/min		3,785		
3	화학 소방차	전장 : 11,087.1 전폭 : 2,438 전고 : 4,064	3,785l/min		3,785		사다리차
4	폼탱크차	전장 : 7,560 전폭 : 2,850 전고 : 2,850	600l/min		5,000		
5	화학 소방차	전장 : 7,700 전폭 : 2,230 전고 : 2,650	2650l/min	3,000	600		

대량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 시군별 현황 : 116개소(연간 취급량 5천톤 이상)

구분	계	동남	서북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대상	116	11	11	13	2	23	22	0	0	17	4	0	0	8	0	3	2

○ 시군별 세부현황

연번	관서	대상명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1	동남	(주) 와이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성남로 59	041-557-5700	풀알데하이드,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주산화칼륨, 아염소산나트륨, 염화수소, 황산, 농물화암모늄, 불산, 황산니켈6수화물, 염화제일주석, 황산하이드록실아민, 산화코발트리튬망크스, 니켈, 오산화인
2		(주)엔캠풍세지점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5로 17	041-337-7411	1,3-프로판설톤
3		(주) 애니원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6로 45	041-410-3500	톨루엔,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4		대창화학공업(주)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무길 49-7	041-567-8851	황산
5		삼영순화(주)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5산단1로 22	041-520-8000	과산화수소
6		(주) 이엔에프 테크놀로지 천안공장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5산단3로 14	041-539-5800	[제조-제품] 불산 [제조-중간체] 암모니아수, 플루오르화암모늄 [사용] 불산, 암모니아, 수산화칼륨, 황산
7		씨제이산업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송정안2길 11	041-522-0274	불산, 수산화나트륨, 아질산나트륨, 과산화수소, 질산, 암모늄수산화물, 심클로센, 메탄올, 염산, 이산화염소, 하이드라진수화물, 황산, 히드라진
8		(주) 늘푸른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송정안2길 11	041-522-0275	불산, 수산화나트륨, 심클로센, 과산화수소, 질산, 암모늄수산화물, 메탄올, 아질산나트륨, 염산, 이산화염소, 하이드라진수화물, 황산, 히드라진
9		(주) 앤씨이에치스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15 경남아너스빌 102-1402호	041-522-0274	불산, 수산화나트륨, 아질산나트륨, 과산화수소, 질산, 암모늄수산화물, 심클로센, 메탄올, 염산, 이산화염소, 하이드라진수화물, 황산, 히드라진
10		(주) 드림플러스	천안시 동남구 고재20길 7	041-555-6363	수산화나트륨, 염화수소, 질산, 황산,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수산화칼륨, 메탄올, 톨루엔, 염소, 크실렌
11		수경화학(주)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4로 62-16	041-558-9780	불산, 풀루오로봉산, 크리올라이트, 이톨루오르화암모늄, 풀루오르화암모늄, 풀루오르화칼륨, 풀루오르화나트륨, 4,4-디이소시아산디페닐메탄,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12	서북	삼성SDI(주)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7	041-560-3279	메틸에틸케톤, 수산화나트륨, 황산, 1,2옥사이티울란, N-메틸피롤리돈,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13		삼성디스플레이 (주) 천안사업장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5	041-599-5245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염화수소, 풀루오르화수소, 황산, 풀루오르화암모늄, (8-퀴놀리노라토-kN1,KO8)리튬, 하이드라진수화물, 메틸에틸케톤, N-메틸피롤리돈

연번	관서	대상명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14	공주	한국유미코아신소재(유)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58-9	041-901-6216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 황산, 황산니켈
15		에스케이씨하이테크앤마케팅(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12	041-550-9999	메틸알콜, 메틸에틸케톤, 툴루엔, 아세트산에틸, 1,1,1-트리플루오르-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리튬염, 셀레늄화합물
16		삼성전자업(주)장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5	041-599-0856	1-메틸-2-피롤리디논, 과산화수소, 불산, 불산+이플루오르화암모늄 혼합물, 암모니아수,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황산, 암모니아, Hexamethydisiloxane, 개미산, 실란, 메탄술폰산, 염산, 풀알데하이드, 황산니켈, 이플루오르화암모늄, 시안화제일금가리
17		(주) 이그잭스	천안시 서북구 2공단7길 50	041-410-7730	수산화나트륨, 질산, 수산화칼륨
18		한국유미코아(유)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71	041-620-0200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19		(주) 모두화학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검바위길 45	041-582-9500	4,4-디이소시안산디페닐메탄
20		(주) 범우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27-35	041-561-2766	수산화나트륨
21		캡코리아	천안시 서북구 업성2길 101	041-554-3568	메틸알콜, 메틸에틸케톤, 수산화나트륨, 염화수소, 클로로포름, 툴루엔, 황산
22		(주) 풍성산업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97-14	070-7747-5581	염산, 염소산나트륨, 황산,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23		슬브레인(주)장	공주시 공단길 34-12	041-852-1636	염산, 불산, 수산화칼륨, 질산, 염산+불산 혼합물질, 염산+불산+질산 혼합물질
24		슬브레인(주)공	공주시 공단길 44	041-852-1636	삼염화인, 리튬플루오라이드, 불산, 수산화나트륨, 염산
25		(주) 흥창케미컬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28	041-853-7338	수산화나트륨
26		미원화학(주)장	공주시 탄천면 탄천산업단지길 80-25	041-858-8003	황산, 크실렌, 툴루엔, 수산화나트륨
27		슬브레인라사(주)	공주시 공단길 14-48	041-840-0081	황인, 과산화수소(34%), 황화비소, 황화수소
28		(주) 에스엠테크	공주시 월미동공단지길 12-20	042-369-8566	메틸알콜
29		엔로에이치씨씨(주)	공주시 계룡면 차령로 867	041-854-2424	질산, 염화수소, 불산, 과산화수소, 이플루오르화암모늄, 황산, 황산니켈6수화물, 1,6-비스(2,3-에폭시프로포시)나프탈렌 혼합, 리튬 외
30		(주) 공주화물사	공주시 이인면 쌩기길 8	041-856-8804	질산, 염화수소, 불산, 과산화수소, 황산, 황산니켈6수화물, 1,6-비스(2,3-에폭시프로포시)나프탈렌, 암모늄 플루오라이드 외
31		슬브레인(주)장	공주시 공단길 34-19	041-852-1636	질산및질산혼합물질, 과산화수소혼합물질, 불산+암모늄플루오라이드혼합물질, 불산+질산혼합물질, 불산+황산혼합물질, 하이드리진수화물+1-메틸-2-피롤리디논 혼합물 외
32		슬브레인(주)장	공주시 공단길 34-32	041-852-1636	툴루엔, 질산, 질산혼합물
33		훼트(주)	공주시 공단길 34-11	041-853-4500	불산, 플루오르화암모늄
34		(주) 제이비케미컬	공주시 월미동공단지길 65	041-854-2409	수산화나트륨

연번	관서	대상명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35		솔제9공인(주)정	공주시 공단길 14-102	041-840-0215	아세트산에틸, 메틸알콜, 메틸트리클로로실란, 부탄디니트릴, 시클로헥실아민, 히드라진수화물, 1-메틸-2-피롤리디논, 질산+불산 혼합물질
36	보령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98-37	070-7511-2239	염산,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
37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발전본부	보령시 주교면 송도길 201	070-7511-8527	염산,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
38	아산	(주) 세명테크	아산시 둔포면 장영실로 922-5	041-523-3707 ~8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황산
39		(주) 실크로드티 시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68	041-533-8877	아크릴산, 수산화나트륨, 아크릴아미드, 에틸렌디아민, 아질산칼슘
40		삼성디스플레이(주) 아산1사업장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	041-535-3139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염화수소, 히드라진수화물, 황산,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5-클로로-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암모늄수산화물, 메틸에틸케톤 외
41		삼성디스플레이(주) 아산2사업장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380-2	041-535-3139	수산화나트륨, 염화수소, 질산, 불산, 과산화수소, 암모늄플루오라이드, 메틸에틸케톤,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5-클로로-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외
42		삼성디스플레이(주) 그린센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527-10	041-535-3139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황산,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5-클로로-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43		삼성디스플레이(주) [그린센터7-1단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	041-535-3139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황산
44		에스와이페널(주) 인주2지점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76-9	041-549-1134	4,4-디이소시안디페닐메탄
45		(주) 린데에스지코리아 인주공장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23-22	041-538-5700	수산화칼륨, 질산암모늄, 수산화나트륨, 과망간산칼륨, 염화수소, 질산
46		(주) 금성인슈렉 아산공장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75-80	041-547-8806	디이소시안디페닐메탄
47		에스와이(주) 인주3지점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75-78	041-588-1133	디이소시안디페닐메탄
48		에스피로지스(주)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23-22	041-532-5311	질산, 불산, 염산, 황산, 과산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암모늄,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N-메틸피롤리돈, 암모니아수, 암모늄플로라이드
49		엘제이(주)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 17	041-543-9534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틀루엔, 2-에톡시에탄올, 2-메톡시에탄올, 크실렌, 4,4'-디이소시안디페닐메탄
50		(주) 이엔에프 테크놀로지 아산공장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123-38	041-538-3746	과산화수소, 수산화칼륨, 시클로헥실아민, 황산, 불산, 수산화나트륨, 플루오로붕소, N-메틸피롤리돈
51		유한케미칼	아산시 읍봉면 산동로 43	041-545-8863	수산화나트륨, 염화수소, 황산, 질산, 과산화수소, 수산화칼륨, 메틸알콜, 틀루엔, 메틸에틸케톤, 염소
52		(주) 아산화학	아산시 번영로 143번길 43	010-5583-5033	메틸알콜,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벤젠, 틀루엔, 암모니아수, 염화수소, 황산, 질산, 히드라진수화물, N,N-디메틸포름아미드,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사이렌
53		진싸이언스툴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220-6	031-655-0920	틀루엔 등 1,895종
54		(주) 범우	아산시 문화로 287	041-547-4748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수, 염산
55		사단법인 아산디 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일 주기협제협의회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11-8 A동 2층	041-425-1432	수산화나트륨
56		서원산업(주)	아산시 읍봉면 산동로 323	041-425-1050	디이소시안디페닐메탄
57		미주엔비켐(주) 아산	아산시 읍치읍 송곡길 68번길 3, 상가동 103호	070-4672-5615	수산화나트륨

연번	관서	대상명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58	서산	인 주 케 미 칼(주)	아산시 번영로143번길 43	070-8807-5099	하이드라진, N,N-디메틸포름아미드,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자일렌, 메틸알콜,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벤젠, 툴루엔, 암모니아, 염산, 황산, 질산
59		에스엠케미칼(주)	아산시 외암로 1623, 302호	041-547-6897	메틸알코올, 수산화나트륨
60		(주) 캠 앤 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77-10, 709호	041-555-1704	염산, 수산화나트륨, 황산, 과산화수소, 질산, 메탄올, 하이드라진, 수산화칼륨, 암모니아수, 아염소산나트륨, 하이드라진 수화물, 아질산나트륨, 과망간산칼륨, 불산, 트라이크로로아 이소시아누르산, 질산나트륨
61		롯 데 엠 시 시(주)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041-689-5355	비소화합물질, 산화니켈, 하이드로퀴논, 1,4-벤조퀴논, 아질산나트륨, 메틸알콜, 툴루엔, 수산화나트륨, 황산
62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041-689-5332	수산화나트륨, 1,2-이염화에탄, 염화에틸, 요오드화트리부틸메틸포스포늄, 툴루엔, 푸르푸랄, 황산, 아질산염류, 메탄올, 염화아연, 벤젠, 수산화칼륨 외
63		베올리아워터 코리아대산(주)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041-689-8815	수산화나트륨, 황산, 염화아연, 암모니아, 하이드라진수화물
64		(주) 엘지화학 대산공장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041-661-2061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1,2-이염화에탄, 툴루엔, 푸르푸랄, 황산, 과산화수소, 벤젠, 수산화칼륨, 아크릴로니트릴, 디메칠디자이오카밤산나트륨, 불산, 아질산칼륨 외
65		그린케미칼(주)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041-661-5000	산화프로필렌, 수산화칼륨,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툴루엔, 페놀, 알릴알콜, 아크릴산, 하이드로퀴논, 메타설판산 외
66		한화토탈(주)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041-660-6351	크실렌, 벤젠, 툴루엔, 수산화나트륨, 황산, 메틸알콜, 아질산염류, 푸르푸랄, 테트라클로로로에틸렌, 산화니켈 외
67		한화종합화학(주)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041-660-8148	수산화나트륨, 황산, 크실렌
68		(주) K C C 대죽2공장	서산시 대산읍 대죽2로 35	041-660-8744	수산화나트륨, 황산, 메탄올, 염화수소, 무기아연염류, 수산화칼륨, 트리부틸아민, 툴루엔, 과산화수소
69		현대오일뱅크(주)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041-660-5405	황산,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수, 테트라클로로로에틸렌, 툴루엔, 염화벤질디메틸도데실암모늄 외
70		(주) 한농화성 대산공장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96-75	041-681-9151	알릴알콜, 페놀, 노닐페놀, 유틸페놀,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암모늄, 염산, 메탄올, 산화프로필렌
71		(주) 뉴로지스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1706	010-5125-7903	툴루엔, 자일렌
72		코스모(주)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041-660-5405	툴루엔, 벤젠, 크실렌
73		현대케미칼(주)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041-660-5114	툴루엔, 벤젠, 크실렌
74		SK이노베이션(주) 서산공장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59-122	041-950-8119	1-메틸-2-피롤리디논, 산화코발트리튬 망간니켈
75		(주) 이엠테크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36-21	041-667-5800	1-메틸-2-피롤리디논
76		(주)씨에스글로벌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595-8	041-665-6961	수산화나트륨, 메탄올, 암모늄수산화물, 염화수소, 푸르푸랄, 황산, 하이드라진 수화물,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이염화에틸렌
77		(주) 피브이에프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595-4	041-668-6961	수산화나트륨, 메틸알콜, 황산, 염산, 아질산나트륨, 과산화수소, 이산화염소, 암모니아, 툴루엔, 글루타알데하이드
78		(주) 캠스	서산시 읍내동 407-8, 1층	041-667-2016	툴루엔, 자일렌, 메탄올

연번	관서	대상명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79	당진	(주) 엔 피 아 이 오	서산시 대산읍 명지2로 213	041-663-5184	수산화나트륨
80		세 이 크	서산시 고북면 매령길 151-59	041-668-7004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81		(주) 무 룽	서산시 성연면 명찬산업로 78	041-668-0263	수산화나트륨, 황산, 질산, 염산
82		(주) 티 앤 비	서산시 대산읍 구진천로 12	041-665-9950	수산화칼륨
83	당진	서 탱 평 택 크 터 미 널(주)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1	031-683-5101	N,N-다이메틸풀아마이드,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톨루엔
84		영 진 티 앤 엠(주)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28	031-682-7557	수산화나트륨
85		한국동서발전(주) 당 진 화 력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	070-5000-273 7	수산화나트륨, 염산, 황산
86		동 부 제 철(주) 당 진 공 장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041-351-8114 041-351-8232	황산, 수산화나트륨, 염화수소, 수산화 칼륨, 무수크롬심, 중크롬산나트륨, 암 모니아, 플루오르화암모늄, 메탄슬포판
87		(주)삼우산세공장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37	041-351-4575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88		현 대 제 철(주)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041-680-1277	수산화나트륨, 황산, 메탄올, 아염소산 나트륨, 산화니켈, 염산, 심클로젠, 크 롬산, 무기아연염류
89		미 주 엔 비 캠(주)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53	041-355-0479	염산, 수산화나트륨, 황산, 아크릴산, 아크릴아미드
90		다 슌 코(주) 당 진 2 공 장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1136	041-430-7240	4,4'-디이소시안산디페닐메탄
91		인 바 이 오 텍(주) 당 진 지 점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210	041-356-7960	수산화나트륨
92		(주) 기 산 화 학	당진시 석문면 산단2로 95	041-752-2011	수산화나트륨
93		현대그린파워(주)	당진시 송산면 북부산업로 1526	041-680-7668	무수암모니아,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수, 일산화탄소
94		(주) 동 특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3길 32	041-357-5280	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메탄올, 과산화 수소, 메틸피롤리디논, 불산, 암모니아
95		(주) 광 진 화 학	당진시 석문면 산단3로 8길 29-13	041-356-0216	황산
96		(주)씨 앤 씨 케미칼	당진시 송산면 동북로 65-80	041-430-7870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97		화 수 목 케 미 칼	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로 486-45	041-354-1220	수산화나트륨, 메탄올, 황산
98		미 주 에 니 캠(주) 당 진 석 문	당진시 석문면 산단3로10길 39	041-355-3558 010-9421-0310	황산
99		넥 스 테 크(주) 당 진 공 장	당진시 석문면 산단3로8길 45-24	041-354-6644 010-9043-2203	황산, 염산, 질산, 가성소다
100	금산	램 테크놀러지(주)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1056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1240호8필지	041-754-6470	히드록실아민, 암모니아수, 불화암모늄, 불산, 염화수소, 질산, 불산암모늄, 규율화 암모늄, 자일렌, 1-메틸-2-피롤리디논
101		(유)반석케미칼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184-1	041-753-9106	톨루엔, 메틸알콜
102		(주) 크 린 캠	금산군 금성면 어필각로 472	041-754-4069	수산화나트륨, 황산, 염산, 과산화수소, 암모늄수산화물, 메틸알콜, 이산화염소
103		극 동 케 미 칼	금산군 축부면 마전리 547-6번지	011-9811-7567	톨루엔
104	청양	에 이 케 이 캠 텍(주) 청 양 공 장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1547-95	041-940-6112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산, 과산화수소, 황산디메틸, 메틸알콜, 아 크릴아미드, 이염화에틸렌, 수산화칼륨

연번	관서	대상명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105	청양군	에이케이켐텍(주) 청양 2 공장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1547-72	041-940-6112	수산화나트륨, 질산, 황산, 염산
106		애경화학(주)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1547-67	041-940-6300	풀알데하이드, 메틸알콜, 암모니아, 알킬아릴, 아세트산에틸, 클로로아세트산, 수산화나트륨, 페놀, 트리페닐포스핀, 황산, 툴루엔, 메틸에틸케톤, 크실렌 외
107		(주) 이레물류	청양군 정산면 덕성길 38	031-273-9090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108		(주)라인로지스틱	청양군 정산면 덕성길 38	031-273-9090	툴루엔, 크실렌, 메틸알콜, 메틸에틸케톤, 아세트산에틸, 2-메톡시에탄올, 벤젠
109		(주)정암로지스틱	청양군 정산면 덕성길 38	031-273-9090	크실렌, 툴루엔, 메틸알콜, 메틸에틸케톤, 아세트산에틸, 황산, 아크릴아미드, 수산화나트륨, 트라이글리시탈아이소사이아노레이트, N-메틸파롤리돈, 벤젠, 메탄솔忿산 외
110		(주)에스제이로지스	청양군 장평면 까치내로 457	041-943-4698	수산화나트륨, 황산, 발연황산, 과산화수소, 암모니아수, 질산, 불화암모늄, 불산, N-메틸파롤리돈, 수산화칼륨
111		태성화학	청양군 목면 상하신대길 150	010-8790-8350	황산
112	예산	영진코어켐(주)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1055	041-338-7317	수산화나트륨, 질산, 수산화칼륨, 과산화수소, 황산
113		삼지금속공업(주)	예산군 고덕면 오주리 825	041-337-3933	수산화나트륨, 비소, 셀레늄, 질산나트륨
114		바이켐(주)	예산군 삽교읍 산단2길 53	041-404-1800	디메틸포름아미드(재생 DMF)
115	태안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	070-5007-4312	염산, 수산화나트륨, 무수크롬산, 일산화탄소
116		(주) 실크로드티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341	041-672-8877	수산화나트륨, 불산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현황

○ 중앙 기자단 (22)

언론사	직위	성명	사무실	휴대폰	E-mail
경향신문	기자	권순재	042)253-9023	010-9856-0248	sjkwon@khan.kr
	기자	이종섭	042)253-9023	010-5858-9699	nomad@khan.kr
국민일보	기자	전희진	042)626-0445	010-6690-2936	heejin@kmib.co.kr
동아일보	본부장	이기진	042)254-0833	010-5232-0521	doyoce@donga.com
	부장	지명훈	042)254-0833	010-8952-4205	mhjee@donga.com
문화일보	차장	김창희	042)254-1993	010-3720-7263	chkim@munhwa.com
서울신문	부국장	이천열	042)251-2346	010-2480-8048	sky@seoul.co.kr
	차장	박승기	042)251-2346	010-4412-9809	skpark@seoul.co.kr
세계일보	부국장	임정재	042)255-1071	010-3276-1071	jjim61@segye.com
	부국장	김정모	041)576-1592	010-6420-1400	race1212@segye.com
조선일보	기자	우정식	042)633-1771	010-9484-0838	jswoo@chosun.com
	기자	김석모	042)633-1772	010-3311-4334	ksm11@chosun.com
중앙일보	총국장	김방현	042)432-5777	010-5214-3607	kbhkk@joongang.co.kr
	차장	신진호	042)432-5777	010-4573-7133	zino14@joongang.co.kr
한겨례	팀장	송인걸	042)535-5049	010-7170-9770	igsong@hani.co.kr
	기자	최예린	042)535-5049	010-2538-6077	floye@hani.co.kr
한국일보	본부장	최정복	042)257-1033	010-4400-9256	cjb@hankookilbo.co.kr
	부장	허택회	042)257-1033	010-3212-2851	thheo@hankookilbo.com
	차장	이준호	042)257-1033	010-5401-6887	junhol@hankookilbo.com
내일신문	차장	윤여운	042)472-4430	010-3390-4141	yuyoon@naeil.com
SBS	부장	이용식	042)488-1792	010-5391-4117	yslee@sbs.co.kr
	영상기자	강윤구	042)488-1792	010-9037-4796	ygkang@sbs.co.kr

○ 지방 기자단 (107)

언론사	직위	성명	사무실	휴대폰	E-mail
대전일보	본부장	송원섭	041)634-3540	010-3406-6270	sws3942@hanmail.net
	기자	김정원	041)634-3542	010-2798-8727	jwkim8702@naver.com
	기자	전희진	041)634-3542	010-6690-2936	jaraheejin@hanmail.net
중도일보	본부장	최재현	041)631-9867	010-6417-2903	jaeheonc@hanmail.net
	부장	맹창호	041)631-9867	010-5401-9099	mch7775@hanmail.net
	기자	유희성	041)631-9867	010-6421-5688	yhs5688@naver.com
충청데일이	본부장	이종원	041-633-9511	010-6410-1463	jwon@cctoday.co.kr
	부장	이권영	041)633-8228	010-5420-0733	gyl@cctoday.co.kr
	부장	이선우	041)633-9511	010-8815-8616	swlyk@cctoday.co.kr
	기자	조선교	041)633-9511	010-4775-5450	mission@cctoday.co.kr
KBS	부장	임홍열	041-631-0695	010-9120-0389	himan@kbs.co.kr
KBS	기자	황정환	041-631-0695	010-4619-4846	baram@kbs.co.kr
MBC	차장	이교선	042)330-3400	011-604-1154	ksun@tjmbc.co.kr
TJB	본부장	조상완	042)281-1281	010-2954-2272	swcho@tjb.co.kr
TJB	부장	김세범	042)281-1281	010-6778-1991	sbkim@tjb.co.kr
YTN	기자	이문석	042)226-8351	010-3004-8687	mslee2@ytn.co.kr
CBS	부장	정세영	042)259-8821	010-8710-5866	lottrash@naver.com
연합뉴스	기자	박주영	042)521-9700	010-3791-5792	jyoung@yna.co.kr
뉴스y	차장	정윤덕		010-8862-9767	
금강일보	본부장	김장식	070)7325-8205	011-9816-0913	kjs0505@ggilbo.com
	국장	이석호	070)7844-7722	010-5421-2838	ilbolee@ggilbo.com
	기자	문승현	070)7844-7722	010-7499-3516	bear@ggilbo.com
뉴시스	부장	유효상	042)323-7400	010-2071-8452	yreporter@newsis.com
오마이뉴스	부장	심규상	042)331-2273	010-3410-7049	kusangsim@hanmail.net
디트뉴스24	기자	이정석	042)471-8114	010-9086-9051	ljs27@daum.net
	기자	이미선	042)471-8114	010-9483-1633	soju1633@naver.com
뉴스위드	본부장	김창건	042)867-0012	011-434-6244	askcg@naver.com
신아일보	부국장	김기룡	042)254-0037	010-4413-7000	dragon48@naver.com
	부장	민형관	041)633-8855	011-432-8888	mhk8888@hanmail.net
대통데일이	본부장	김정한	041)664-8300	010-5432-9836	kh6819836@hanmail.net
충청데일이	본부장	이지웅	041)334-4774	010-2049-4141	apple2585@nate.com
충남일보	부국장	한내국	042)537-6053	010-2890-7002	cnn7002@nate.com
	부국장	우명균		010-8806-5366	woomk22@daum.net
국제뉴스	본부장	박창규		010-4717-0006	press0001@hanmail.net
동양일보	부장	정래수	042)822-4377	010-7392-5535	raesu1971@hanmail.net
증부매일	부장	최현구	042)251-2474	010-3236-6605	chg5630@naver.com

언론사	직위	성명	사무실	휴대폰	E-mail
충청타임즈	부국장	조한필	041)521-2441	010-5215-5889	chohp11@naver.com
	부장	오세민	041)335-2019	010-8401-4007	saeinn@hanmail.net
중앙매일	국장	박제화	042)224-2900	010-4482-3033	
	부장	오천수	041)631-4568	010-6425-9850	dhhfk4568@hanmail.net
충청일보	부장	고영호	041)634-9520	010-2425-9527	kyh680112@naver.com
충청신문	기자	이성엽	042)252-0100	010-4433-9006	leesy8904@naver.com
	기자	지정임	042)252-0100	010-8807-2516	jji2516@hanmail.net
충청뉴스	대표	김거수	042)471-0061	011-407-5027	ccnnews7@naver.com
충청매일	차장	정신수	041)339-7890	010-7116-5858	jss26@hanmail.net
	본부장	차순우		010-3757-1892	cwoonge@naver.com
아시아투데이	기자	배승빈	02)769-5050	010-6435-2222	road3870@hanmail.net
	본부장	김관태	041)333-2112	010-8837-9569	sam5115@naver.com
콜리러스	대표	장영래		010-4408-4478	adjang7@naver.com
	편집국장	김란	042)822-6230	010-3413-6527	ran6527@hanmail.net
	편집국장	강경화		010-7180-1423	johnkang2004@naver.com
	편집국장	강미란		010-6430-6446	ngmi77@hanmail.net
대전타임즈	대표	김상수	042-226-6114	010-4374-1737	ad1737@hanmail.net
대전뉴스	대표	김기석	042)489-1672	010-2922-1672	msay27@hanmail.net
천지일보	기자	김지현	1644-7533	010-4232-7002	cho-kjh7@daum.net
	차장	박진환	1644-7533	010-4735-1221	yello0247@daum.net
뉴스클릭	부장	이한	070)4222-5202	010-9236-8292	newscl@daum.net
시사터치	대표	이용민		010-3440-2139	yongmin3@daum.net
KNS 뉴스통신	부장	조영민	042)489-3500	010-4438-2900	dtn@hanmail.net
대전시티저널	기자	이명우	041)592-8900	010-7226-8001	mwoo0902@naver.com
	기자	박현수	041)592-8900	010-9420-2754	phs4493@hanmail.net
브레이크뉴스	부장	김경훈	042)485-0084	010-5407-4267	khoon3654@naver.com
시민일보	본부장	장인진	02)3676-2114	010-5789-9933	joong-ang12@hanmail.net
내외일보	내포취재본부장	백춘성	02)6274-1234	010-5121-3774	chsbaek@nate.com
충청시대	부장	한장완	042)257-6614	010-7543-6200	ccsd7@daum.com
뉴스앤풍	본부장	정문교	042)489-5360	010-4425-5279	moongyo64@hanmail.net
굿모닝충	국장	최재근	042)389-0086	010-2790-9226	acgeun@hanmail.net
	본부장	장찬우	041)562-1162	010-9453-5291	jncocom15@gmail.com
	팀장	김갑수	041)562-1162	010-3382-1023	kksjpe@daum.net
	기자	정종윤	041)562-1162	010-8365-7711	jy2645@hanmail.net
	기자	채원상	041)562-1162	010-5248-8158	wschae1022@hanmail.net
충남도민일보	편집인	정연호	041)572-6114	010-8308-8070	skys7477@naver.com

언론사	직위	성명	사무실	휴대폰	E-mail
한국다문화 복지신문	부장	강석철	041)572-6114	010-6412-1112	sgt041@naver.com
뉴스충청인	편집장	김수환	042)484-6659	010-9840-2100	ship0119@daum.net
세종방송	국장	이병기	044)865-7004	010-4311-1360	lbkblue@hanmail.net
세종TV	국장	황대혁	042-224-5005	010-8622-2308	sjc@tvsjc.com
세종NTV	본부장	성태규	044)862-6817	010-4997-2030	ds3fpd@hanmail.net
환경일보	본부장	김현창	042)6247-300	010-5407-9024	hckim1158@hanmail.net
다문화뉴스 충청종	편집부장	김홍찬	042)535-2515	010-9540-9693	damunhwa@dmcnews.kr
충청(피플)TV	대표	김영록	070)4068-8600	010-9919-8600	vhffh0440@hanmail.net
CMB	파트장	이상수	041-858-0108	010-4015-1567	cmbtv@hanmail.net
티브로드 증부방송	부장 p d	김선욱 권구형	070)8188-2113 041)858-0108	010-2465-2145 010-2479-2775	sukim@tbroad.com ghkwon@tbroad.com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기자 p d	박건상 신민섭	070)8130-2838	010-7450-1371 010-7444-4888	camerabag@cj.net tjqtjql44@cj.net
한국농어민신문	본부장 기자	윤광진 정영옥	041)333-2155 041)668-1193	010-3461-6838 010-3044-2368	yoonkj@agrinet.co.kr lovejyy123@hanmail.net
농축유통신문	지사장	김기홍	042)484-2008	010-2967-0851	thelazer@naver.com
농수축산신문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김창동	041)642-1170	010-5432-2347	kcd22@naver.com
농민신문	부장	이승인	02)229-6197	010-4250-1289	silee@nongmin.com
(주)축산신문	상무	한경우	02)431-1891	018-415-7350	hw5344@hanmail.net
축산신문	본부장	황인성	042-621-3226	010-4403-4237	ish4237@hanmail.net
파이낸셜	차장	김원준	042)472-4277	010-4414-9824	kwj5797@fnnews.com
매일경제	기자	조한필		010-6420-4858	jhpdream@hanmail.net
MBN	기자	이상곤	042)863-3501	010-7455-0800	lsk9017@naver.com
서울경제	차장	박희윤	042)472-4810	010-5455-7959	hypark@sedaily.com
한국경제	부장 기자	백창현 임호범	042)255-3882 042)255-3882	010-4693-0407 010-9649-6785	chbaik@hankyung.com lhb@hankyung.com
헤럴드경제	부장	이권형	042)481-6086	010-7907-5511	gwunh66@hanmail.net
머니투데이	기자	허재구	02)721-7400	010-9996-1969	hery124@hanmail.net
아시아경제	본부장 기자	왕성상 정일웅		011-238-4044 010-4466-3061	wss4044@hanmail.net jiw3061@asiae.co.kr
충경제일보	부장	백춘성	041)633-9181	010-5121-3774	chsbaek@nate.com
		이상화			
아주경제	본부장	허희만	02)767-1577	011-254-8119	hmher@ajunews.com
충남지역 언론연합회	부장	심규상	042)331-2273	010-3410-7049	kusangsim@hanmail.net
충남지역 신문협회	본부장	정운대	1588-7108	010-9330-3120	tjrace3120@hanmail.net

언론사	직위	성명	사무실	휴대폰	E-mail
	국 장	박 승 철	044)867-6676	010-3424-1234	baksc@naver.com
전국문자협회	회장	서영태	041)668-1113	010-2877-3140	ssytt00@naver.com
전국매일	본부장	한상규	041)668-3722	010-2411-3808	na3808@naver.com
	부장	최성교		011-9410-0867	sseey88@hanmail.net
대전교통신	팀장	주윤하	042)600-1232	010-3608-4868	ju4868@hanmail.net
천문화신문	편집장	박성민	041)555-6369	010-8610-8388	suang77@naver.com
현대경제	보도국장	이훈재	041)564-2000	010-3899-1229	joah2000@hanmail.net
굿뉴스365	부장	송경화	041)631-8114	010-3545-6744	irini1236@hanmail.net
충청뉴스라인	국장	방관식	041)943-8113	010-8415-4635	afgm502@hanmail.net
충청탑뉴스	기자	백승일	041)631-8114	010-2113-7007	mitra1004@naver.com
시대일보	부국장	연영선	041)332-0311	010-2681-5467	yysun005@hanmail.net
뉴스파고	발행인	한광수		010-4112-4176	hks4176@naver.com
천안일보	편집국장	황인석	041)564-2000	010-7373-1155	hins1155@naver.com
S K - T V 표준방송	편집국장	오세광	041)856-7710	010-5114-7710	skoh1219@aver.com
	차장	이기석	041)856-7710	010-6396-5115	wherry@naver.com
충남지역 인터넷협의회	기자	이번영	041)633-3220	010-7425-0808	b4nyung@hanmail.net
금강뉴스	발행인	신용희	041)853-3777	010-7319-2965	s-yh50@hanmail.net
	취재부장	임미성	041)853-3777	010-5420-7593	3777@kknews.co.kr
홍성신문	대표	윤두영	041)634-3001	017-435-3006	duryoung@hsnews.co.kr
	부장	정명진	041)634-3001	010-7587-5674	jmj@hsnews.co.kr
	부장	전상진	041)634-3001~3	010-9266-5721	jsj@hsnews.co.kr
	기자	서동훈	041)634-3001	010-2555-5161	pentiumseo@hsnews.co.kr
홍주신문	기자	최선경	041)631-8888	010-6279-4542	choisk5959@hanmail.net
MBS신문	부장	이준희	042)226-5111	010-8033-8291	mbstv@hanmail.net
뉴스1	부국장	연제민	042)487-0420	010-3034-0004	yjm9814@naver.com
	차장	심영석	042)487-0420	010-9586-8607	yssim1969@naver.com
충장애인신문 남문	대표	탁정원	041)622-3308	010-5558-3308	
	편집국장	황기연	041)622-3308	017-418-2379	hky2379@hanmail.net
	기자	탁성진		010-5558-3308	news3308@hanmail.net
서울일보	부국장	임진서	041)331-2217	010-3401-2207	dlawlstj1@hanmail.net
한정책방송	기자	이충현	02)3450-3111	010-3386-3271	ktvwin@naver.com
교통신문	기자	이성진	02)595-2982	010-4245-2225	nom1109@gmail.com
무한정보 신문	부장	김동근	041)334-5100	010-9169-1802	dk1hero@yesm.kr
	편집국장	장선애	041)334-5100	010-2434-3890	jsa7@yesm.kr
충청매거진	편집국장	김구회	042)533-3363	010-5430-4488	ccm3363@hanmail.net
청풍	편집국장	한영섭	042-253-7300	010-8802-4451	cp7300@naver.com

언론사	직위	성명	사무실	휴대폰	E-mail
보령 뉴스	대 표	김 윤 환	041)931-9112	010-4046-8969	webmaster@boryeongnews.com
동양뉴스통신	부 장	류 지 일	042)486-6113	010-3732-3809	ryu3809@hanmail.net
뉴스 코어	발 행 인	곽 금 미	1577-2310	010-5402-0180	anewsacore@gmail.com
C 뉴스 041	편집 국장	이 정 준	041)534-0411	010-5456-9727	munhak21@hanafos.com
	취재 팀장	조 성 연	041)534-0411	010-3864-9223	newsasan@naver.com
특급 뉴스	국 장	김 광 섭	041)853-7979	010-4455-7799	stopksk@naver.com
뉴스스토리	편성 부장	정 진 영	041)953-8945	010-2930-7119	pdnews@news-story.co.kr
	편집 인	이 찰 우	041)953-8945	010-7309-0804	pdnews@hanmail.net
불교공뉴스	주 지	혜 철	(043)732-5560	010-9522-8453	ksson108@hanmail.net
	부 장	이 미 경	(043)732-5560	010-6471-1125	ksson108@hanmail.net
충청포커스	대 표	오 현 주	042)528-1114	017-424-0208	ohhyju@hanmail.net
충남내포지역신문협회	연합 기자	차 진 영	041)357-1354	010-3917-4118	naepo4118@hanmail.net
공감투데이	대 표	박 노 필	041)856-4862	010-2784-7403	fldesign@hanmail.net
	국 장	임 장 묵	041)856-4862	010-9465-7641	
	부 장	윤 은 하	041)856-4862	010-4849-1637	
로컬투데이	부 장	주 영 육	041-909-2114	010-5595-0122	joolee0122@naver.com
대타임 뉴스	본 부 장	홍 대 인	042)636-5513	010-8260-0507	htcpone@naver.com
대전타임즈	본 부 장	김 상 수	042-226-6114	010-4374-1737	ad1737@hanmail.net
톱데일리	편집 장	구 장 회		010-8702-4650	
아시아 뉴스통신	총괄 국장	선 치 영	042-824-9575	010-3465-1277	sunab-46@hanmail.net
	국 장	하 동 길	042-824-9575	010-4951-0669	
	기 자	최 솔	042-824-9575	010-6624-4365	asia9210@naver.com
충청뉴스큐	국 장	양 승 선	041)334-6880	010-2380-3417	ccnewsq@naver.com
백제 뉴스	대 표	이 원 구	041)881-2580	010-7496-5496	ceo@ebaekje.co.kr
우리들뉴스	대 표	박 상 진	070)7633-3758	010-2420-3758	837@hanmail.net
SNS타임즈	편집 국장	정 대 호	042)862-7624	010-9984-8650	ceo@sntimes.kr
아산 뉴스	발 행 인	서 영 민	041)534-3480	010-3598-3480	spen123@naver.com
이데일리	기 자	박 진 환		010-8438-4000	pow17@edaily.co.kr
한국 네트워크 뉴스	취재부장	김 동 관	041)549-1991	010-8838-0770	spen123@naver.com

응원협정 현황

○ 중장비 보유업체 (55)

연번	관서	대상명	주 소	전화번호	보유장비	비고
1	동남	대 성 종 합 중 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95	010-5401-9505	굴삭기12, 덤프차8, 지게차1	
2	서북	대 성 종 합 중 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95	010-5401-9505	굴삭기12, 덤프차8, 지게차1	
3	공주	대 일 중 기	공주시 장승배기길 3	041)854-0874 010-5425-1373	굴삭기1	
4	공주	우 성 중 기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39-8	010-8811-4014	굴삭기2	
5	공주	공 주 크 레 인	공주시 용소마을길 3	041)852-6200 010-5425-1239	고소작업차3, 크레인차3	
6	보령	대 천 크 레 인	보령시 대해로 238	041)935-8667 010-5409-8028	크레인차13	
7	보령	대 천 지 계 차	보령시 대청로 172	041)935-2720, 010-8733-2720	크레인차2, 지게차8	
8	보령	제 일 지 계 차	보령시 대해로 46	041)936-3030 017-405-0955	지게차1	
9	보령	중앙화물자동차	보령시 보령남로 60	041)935-3374 010-5423-2617	크레인차3	
10	보령	황 소 크 레 인	보령시 보령북로 218-50	041)931-2422 010-5434-1119	크레인차2	
11	보령	백 제 중 기	보령시 보령북로 250	041)936-6626 010-5432-2422	굴삭기21	
12	보령	대 지 중 기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1254-5	041)933-5698 010-5431-9552	굴삭기2	
13	보령	창 인 중 기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164	041)934-8229 010-5455-0404	굴삭기1	
14	보령	오 복 중 기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71-3	041)933-3255 011-401-8432	굴삭기4, 범프차5	
15	아산	전 국 건 설 기 계 아 산 연 합 회	아산시 온천대로 1626-11	041)542-3376 010-3419-3739	굴삭기10, 덤프차 30	
16	서산	하 나 중 기	서산시 쌍연북2로 25	041)665-1655	굴삭기10	
17	서산	서 산 크 레 인	서산시 여전중앙길 17-2	041-667-7600	크레인차5	
18	논산	연무자동차공업사	논산 연무 안심 533-8	041)741-4088 010-4466-4088	견인차15	
19	논산	가 나 크 레 인	논산 광석면 왕전리 462-1	041)732-7043	크레인차4	
20	당진	충 남 종 합 중 기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76	041)362-0055	02W, 06W, 08W	
21	당진	8 8 현 대 중 기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331	041)363-9400	06W	
22	당진	동 창 중 기	당진시 시곡동 718-6	041)355-1046	06W	
23	당진	거 성 건 설 중 기	당진시 수청동 741-1	041)355-8257	02W, 06W	
24	당진	합 덕 중 기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95-4	041)362-2278	02W, 06W	
25	당진	세 종 산 업 중 기	당진시 동부로 266	010-6424-3644	06W	

연번	관서	대상명	주 소	전화번호	보유장비	비고
26	당진	동 우 건 기	당진시 신평면 안동포1기 175	010-4631-3441	02W, 06W	
27	당진	대 림 건 기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399-2	010-5426-1799	03W, 06W	
28	당진	진 성 중 기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소재	010-7171-6422	02W, 03W, 06W	
29	당진	동 우 건 기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소재	010-6420-8558	02W, 03W, 06W	
30	당진	호 서 건 설 중 기	당진시 면천면 성하로 296	041)356-2344	06W	
31	당진	호 서 중 기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889-2	041)356-2350	02W, 03W, 06W	
32	당진	당 진 건 설 기 계	당진시 백암2길 5	041)355-8575	02W, 03W, 06W	
33	당진	신 화 건 설 중 기	당진시 채운동 100	041)362-8292	02W, 03W, 06W	
34	부여	강 토 중 기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3	041)836-0133	굴삭기11	
35	부여	강 산 크 레 인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무자개@108-1504	041)837-1110 010-8807-1110	크레인차1	
36	부여	홍 산 크 레 인	부여군 홍산면 좌홍리 162	041)835-3737 010-9118-6936	크레인차1	
37	서천	일 아 개 발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501-1	041)953-0890	굴삭기2	
38	서천	가 나 중 기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58-4	041)953-1003	굴삭기2	
39	청양	공 영 건 설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7길 30	041)943-6189 011-421-2055	굴삭기2, 덤프차1	
40	청양	현 우 건 설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 1944-12	041)942-0130 017-422-0130	굴삭기2, 덤프차3	
41	청양	성 신 중 기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6	041)943-7134 010-4403-0286	굴삭기3, 덤프차5	
42	홍성	서 부 카 크 레 인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266-8	017-421-5886	크레인차2	
43	홍성	고 려 중 기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288-15	011-457-1583	굴삭기10, 지게차3	
44	홍성	홍 주 건 설 중 기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266-49	010-5431-3969	굴삭기7, 덤프차1	
45	홍성	왕 용 크 레 인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132-4	011-404-0222	크레인차1	
46	홍성	대 우 지 게 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48-3	010-8527-9206	지게차2	
47	홍성	충 남 중 기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588	010-9423-4412	굴삭기7	
48	홍성	대 호 건 설	홍성군 충서로 1455-31	010-5343-2851	굴삭기1, 덤프차1	추가
49	예산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041)330-6600	굴삭기2, 덤프차7, 휠로더1, 제설차 1	
50	예산	동 부 자 동 차 정 비 공 업 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로 8-7	041)335-9911	셀프카1	
51	예산	대 형 중 기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346-1	041)338-6777 010-5433-1789	굴삭기5	
52	예산	무 한 건 설 중 기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985-17	041)335-0003	굴삭기4	
53	예산	금 성 중 기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15	041)335-5050 010-5421-4119	굴삭기8	
54	예산	이 티 스 틸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100	041-334-0222	집게차 3대, 1t트럭 5대	
55	태안	서해안종합중기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3004	041)674-0424	굴삭기14	

○ 사다리차 보유업체 (20)

연번	관서	대상명	주소	전화번호	보유장비	비고
1	동남	코팩익스프레스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760번지	010-5403-2424	2	
2	동남	스카이 북부 크레이지 회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594-17	010-7316-2361	스카이 43 크레이 50 카고크레이 19	
3	서북	코팩익스프레스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760	010-5403-2424	2	
4	공주	자칼익스프레스	공주시 금성동 미나리3길 12-3	041)856-2433 011-422-5872	1	
5	공주	웅진익스프레스	공주시 의당면 문화마을길 27	041)853-2442 010-3772-7013	1	
6	보령	대 천 동 대 익 스 프 레 스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	041)932-5877 010-5431-5877	2	
7	서산	제일익스프레스	서산시 양열로 120	041)662-0009	2	
8	서산	삼성익스프레스	서산시 중앙로 405-5	041)681-8881	1	
9	당진	가나익스프레스	당진시 당진중앙2로 290	041)358-2424	1	
10	당진	대 신 이 사 물	당진시 행정동 417	041)356-2404	9층 1, 15층 1 21층 1	
11	당진	대한익스프레스	당진시 감골길 10-19	041)357-0008	9층 2, 17층 1 21층 1	
12	당진	충남익스프레스	당진시 송악읍 기지사리 3-1	041)356-5524	9층 1, 24층 1	
13	당진	삼호익스프레스	당진시 당진천1길 55	041)356-4766	6층 1, 15층 1	
14	당진	개미익스프레스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516	041)356-2484	11층 1, 21층 1 25층 1	
15	당진	나비익스프레스	당진시 서해로 5826	041)354-1002	15층 1	
16	금산	우리스카이건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로 1400	042)541-7585	10	
17	서천	전진익스프레스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17번길 15	041)956-2424	1	
18	서천	서 천 사 다 리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51-2	041)951-4441	1	
19	청양	제 일 카 크 레 인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80-1 세아아파트 101동 802	010-5456-3835	1	
20	홍성	한솔익스프레스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277-1	041)631-2454	1	

○ 견인차량 보유업체 (36)

연번	관서	대상명	주소	전화번호	보유장비	비고
1	동남	(주) 남양렉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79-1	041)556-3003 010-5421-0040	2	
2	서북	성환렉카연합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93-3	041)582-8114	10	
3	서북	천안렉카연합 (주)연합특수운송	천안시 서북구 성성1길 113	010-6478-0033	25	
4	공주	공주렉카	공주시 무령로 424	041)856-3119 010-2400-4949	5	
5	보령	대왕공업사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472	041)934-9201, 010-2280-9200	1	
6	보령	매직카서비스	보령시 남서1길 2	041)935-2995, 010-8819-3427	3	
7	보령	대천렉카	보령시 대청로 299	041)935-2341, 011-431-2341	1	
8	보령	보령렉카	보령시 대해로 234-6	041)931-4917, 011-432-4018	5	
9	보령	한울자동차공업사	보령시 원뚝길 133	041)933-6622, 010-4220-0058	1	
10	보령	주교자동차공업사	보령시 주교면 충서로 3200	041)932-0496, 011-409-8167	1	
11	서산	여동렉카	서산시 석남4로 6-8	041)664-3701	2	
12	논산	논산안전렉카	논산시 부창 199-11	041)735-0114	3	
13	논산	형제렉카	논산시 강경 채산5리 553-13	041)745-4938~9	2	
14	계룡	두마렉카	계룡시 두마면 팔거리로 19	042)841-0012	4	
15	계룡	계룡렉카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91	042)544-4982	3	
16	당진	안전렉카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893	041)362-6900 010-9988-4972	1t 2, 2.5t 1, 5t 1 20t 1	
17	당진	당진4949렉카	당진시 채운동 12-4	041)354-4949	1t 1, 2.5t 1, 2t 1	

연번	관서	대상명	주소	전화번호	보유장비	비고
18	당진	대 림 렉 카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41-5	041)363-1900	1t 2, 5t 3, 8t 1	
19	당진	동 부 특수 렉 카	당진시 송산면 월윤길 128	010-6229-8585	1t 4, 3.5t 1 15t 1, 25t 1	
20	당진	당 진 렉 카	당진시 먹거리길 42-45	041)353-7851	1t 3, 15t 1, 20t 1	
21	당진	비 룽 렉 카	당진시 채운동 106	041)358-4942	1t 4	
22	당진	대 영 렉 카	당진시 백암로 18	041)356-1119	1t 2, 15t 1	
23	당진	삼 봉 렉 카	당진시 남부로 62	041)352-9129	1t 1, 2.5t 1, 5t 1	
24	금산	금 산 인 삼 렉 카	금산군 금산읍 사직로 150	041)754-6667	3	
25	부여	사 비 렉 카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주공@ 9-202	041)837-8585	2	
26	부여	강 산 렉 카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강산@ 102-703	041)835-5858 010-5112-6088	1	
27	서천	동 진 렉 카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346-17	041)956-1867	2	
28	서천	서 천 특 수 렉 카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387-2	041)952-1774	1	
29	청양	칠 갑 렉 카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 343	041)942-5700 010-5432-4416	6	
30	청양	금 호 렉 카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55-18	041)942-0406 010-6438-6438	8	
31	홍성	홍 성 렉 카	홍성읍 옥암리 145-1	010-4633-4949	9	
32	홍성	광 천 렉 카	광천읍 옹암리 331-3	010-4719-8500	4	
33	예산	예 산 크 레 인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 281	041)334-0560	6	
34	예산	예 산 번 개 렉 카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812	010-6654-7584	3	
35	태안	제 일 렉 카	태안군 태안읍 환동로 14	041)675-1516	8	
36	태안	안 면 렉 카	태안군 안면읍 뱃개길 1	041)673-3000	6	

자원집결지 지정 현황

○ 총괄 (89)

연번	관서	계	학 교	종합운동장	공 원	주차장	기 타
	계	89	63	10	4	7	5
1	천안동남	9	5	1	2		1
2	천안서북	7	4	1			2
3	공주	14	12		1		1
4	보령	5	4	1			
5	아산	7	5		1	1	
6	서산	6	4			2	
7	논산	5	3	1			1
8	계룡	1	1				
9	당진	6	5	1			
10	금산	3	2	1			
11	부여	6	3	1		2	
12	서천	5	4			1	
13	청양	2	1	1			
14	홍성	5	4	1			
15	예산	4	2	1		1	
16	태안	4	4				

○ 세부현황

연번	관서	구분	대상명	상세주소	면적 (m ²)	관계자	
						성명	전화번호
1	동남	구성119안전센터	오룡경기장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121	33,378	강신철	529-5161 010-3454-7017
2	동남	구성119안전센터	태조산공원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1	358,785	지우주	010-9868-6531
3	동남	독립119안전센터	목천중고등학교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45	11,363	이형래	559-1655
4	동남	독립119안전센터	천남중학교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403	8,000	김은아	553-0843
5	동남	병천119안전센터	상록리조트	천안시 수신면 수신로 576	8,700	남주원	560-9141
6	동남	병천119안전센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600	4,300	장주성	560-2540
7	동남	청당119안전센터	천안시상률체육공원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976	105,310	도영규	568-6061
8	동남	풍세119안전센터	광덕초등학교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36	91,992	박명숙	568-5956
9	동남	풍세119안전센터	광풍중학교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풍로 1021-11	94,440	행정실장	566-7007
10	서북	차암119안전센터	천안신당고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2길 36	5,792	행정실장	523-4823~4
11	서북	성거119안전센터	MEMC KOREA주차장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명봉로 854	3,820	유재용	550-4114
12	서북	서부119안전센터	천안종합운동장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453,569	정철면	529-5004, 5110
13	서북	두정119안전센터	KT & G 천안공장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70	7,600	유학기	559-3495
14	서북	성환119안전센터	남서울대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19-1	14,356	최종묵	580-2296
15	서북	쌍용119안전센터	나사렛대학교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2,427	김현철	570-7736
16	서북	입장119안전센터	양대초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558	1,866	행정실장	584-5044
17	공주	웅진119안전센터	백제체육관	공주시 고마나루길 17	21,200	사업소장	1899-0088
18	공주	웅진119안전센터	봉황초등학교	공주시 오거리길 5	6,940	행정실장	854-2203
19	공주	웅진119안전센터	태봉초등학교	공주시 원태봉길 57	13,951	행정실장	852-8006
20	공주	웅진119안전센터	효포초등학교	공주시 전진배길 313	11,604	행정실장	854-5370
21	공주	유구119안전센터	공주미스터고등학교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27-12	12,018	행정실장	840-1402
22	공주	유구119안전센터	신풍초등학교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50-11	3,050	행정실장	841-0892
23	공주	유구119안전센터	호계초등학교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49-12	2,942	행정실장	841-7435
24	공주	신관119안전센터	금강둔치공원	공주시 신관동 553	698,820	공주시 안전과	840-8662
25	공주	신관119안전센터	수촌초등학교	공주시 의당면 윗태실길 1-8	10,283	행정실장	852-0069
26	공주	신관119안전센터	정안중학교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89-6	8,006	행정실장	961-6022
27	공주	동학사119안전센터	학봉초등학교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로 141-10	2,115	행정실장	042)825-4643
28	공주	계룡119안전센터	계룡초등학교	공주시 계룡면 영구대사로 459	10,632	행정실장	857-5020
29	공주	계룡119안전센터	이인중학교	공주시 이인면 금광로 12-5	18,033	행정실장	857-3100

연번	관서	구분	대상명	상세주소	면적 (m ²)	관계자	
						성명	전화번호
30	공주	계룡119안전센터	탄천초·중학교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18,197	행정실장	853-5171
31	보령	명천119안전센터	보령종합경기장	남포면 보령남로 343	13,592	왕은찬	930-0962
32	보령	신흑119안전센터	충남해양고등학교	신흑동 대천항로 212	10,919	조성진	931-3471
33	보령	웅천119안전센터	관당초등학교	웅천읍 무창포로 309	4,300	서미화	936-3813
34	보령	오천119안전센터	오천초등학교	오천면 충청수영로 822	1,900	서형숙	932-4044
35	보령	주포119안전센터	보령중학교	주포면 보령읍성길 87-37	3,064	양지영	932-7007
36	아산	모종119안전센터	신리초등학교	아산시 모종로 73-13	2,888	황용권	542-2091
37	아산	둔포119안전센터	염작초등학교	아산시 둔포면 아산별마리중앙로 33	15,894	임희수	531-5479
38	아산	신창119안전센터	신창초등학교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40번길 26	4,950	최수정	542-1178
39	아산	인주119안전센터	영인산자연휴양림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12,825	정원석	538-1956
40	아산	장재119안전센터	지산공원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3	3,000	김기박	540-2712
41	아산	탕정119안전센터	탕정초등학교	아산시 향정면 향정면로 105	8,000	이한숙	543-7262
42	아산	탕정119안전센터	선문대학교	아산시 향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8,090	황선조	530-2173
43	서산	예천119안전센터	국민체육센터	서산시 안견로 661	4,335	고영선	660-3973
44	서산	대산119안전센터	대산중학교	서산시 대산읍 총의로 1856	3,100	도재구	669-1791
45	서산	동부119안전센터	서령고등학교	서산시 서령로 117-1	14,238	이문희	664-8155
46	서산	해미119안전센터	해미읍성주차장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43	9,504	이경식	661-8004
47	서산	부석119안전센터	부석초등학교	서산시 부석면 취평2길	28,303	임혜숙	664-8600
48	서산	성연119안전센터	서일고등학교	서산시 지곡면 화천3길 56	10,517	조한구	669-1080
49	논산	내동119안전센터	논산공설운동장주차장	논산시 체육로 110	4,000	윤병열	746-8411
50	논산	연무119안전센터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173-6	1,500	지사장	435-6541
51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강경고등학교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8	6,876	정택수	745-1903
52	논산	반월119안전센터	반월초등학교	논산시 해월로 148	10,510	김지연	735-2435
53	논산	연산119안전센터	연산중학교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110	7,800	김성태	733-6755
54	계룡	계룡119안전센터	두마초등학교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로 160	4,958	박희복	042)841-8014
55	당진	당진119안전센터	당진정보고등학교	당진시 운학길 5	10,110.	박종현	351-9003
56	당진	합덕119안전센터	합덕초등학교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6,397	최정인	362-2691
57	당진	송악119안전센터	상록초등학교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024	6,156	전현만	356-8078
58	당진	석문119안전센터	당진종합운동장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33	43,715	구정모	360-6553
59	당진	신평119안전센터	서정초등학교	당진시 신평면 가산3거리길 28-1	7,336	이성희	362-6057

연번	관서	구분	대상명	상세주소	면적 (m ²)	관계자	
						성명	전화번호
60	당진	기지사119안전센터	기 지 초 등 학 교	당진시 반촌로 84-3	2,800	한민수	355-6090
61	금산	금산119안전센터	금산종합체육관	금산읍 사직로 20	6,244	송선미	750-2403
62	금산	추부119안전센터	추 부 초 등 학 교	추부면 하마전로 23	4,607	구선경	753-7910
63	금산	복진119안전센터	진 산 초 등 학 교	진산면 읍내로 41	8,803	김옥수	752-2806
64	부여	백제119안전센터	부여종합운동장	부여군 규암면 호수로 82	12,000	강배영	835-2941
65	부여	사비119안전센터	서동공원 서문주차장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72-1	9,900	김윤미	830-2637
66	부여	사비119안전센터	석 성 중 학 교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 7	6,200	신윤순	836-6085
67	부여	임천119안전센터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충화면 기화리 316	4,000	김영훈	835-5502
68	부여	홍산119안전센터	한국식품마이스터고 등 학 교	홍산면 홍산로 112-23	7,620	문인주	836-1055
69	부여	외산119안전센터	내 산 초 등 학 교	내산면 성충로 906	3,456	김성일	832-1174
70	서천	서천119안전센터	장항중앙초등학교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21번길 7	7,487	김민주	956-0044
71	서천	서천119안전센터	서 천 초 등 학 교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98번길 34	19,174	황규일	953-6903
72	서천	한산119안전센터	한 산 소 곡 주 사업단 주차장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8-5	5,000	노희랑	950-6881
73	서천	비인119안전센터	비 인 중 학 교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42	3,033	홍혜화	952-8082
74	서천	서면119안전센터	서 면 중 학 교	서천군 서면 서인로 777번길 3	4,700	이은석	951-7536
75	청양	청양119안전센터	청양군공설운동장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 293	101,310	박상수	940-4862
76	청양	정산119안전센터	정 산 중 학 교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27	4,180	이철희	942-0006
77	홍성	구룡119안전센터	금 마 초 등 학 교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 484	2,429	김기선	633-7059
78	홍성	옥암119안전센터	홍주종합경기장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38,924	정진우	630-9563
79	홍성	광천119안전센터	광 흥 중 · 광 천 고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73번길 14	11,037	박홍수	641-6434
80	홍성	갈산119안전센터	갈 산 초 등 학 교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35	15,080	나영광	633-7575
81	홍성	내포119안전센터	홍 성 고 등 학 교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9	21,552	이승우	632-2611
82	예산	오가119안전센터	오 가 초 등 학 교	예산군 오가면 역말로 89	7,000	행정실장	332-7321
83	예산	금오119안전센터	예산군공설운동장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54	57,477	예산군수	339-8262
84	예산	삼교119안전센터	삼 교 초 등 학 교	예산군 삼교읍 삼교로 4길 26	6,104	문 선	010-4433-8256
85	예산	덕산119안전센터	충의사 주차장	예산군덕산온천로 183-5	6,550	이성용	339-8233
86	태안	태안119안전센터	태 안 고 등 학 교	태안군 태안읍 백화리 251	8,050	이낙규	010-9480-2327
87	태안	안면119안전센터	안 면 중 학 교	태안군 안면읍 조운마터길 43	6,524	이원평	673-3093
88	태안	원북119안전센터	원 북 초 등 학 교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9-3	16,139	전 병길	672-7009
89	태안	근흥119안전센터	근 흥 중 학 교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690	6,495	강대구	673-0062

II. 서식

【서식 1】

지 휘 권 이 양 협 의 서		
재난사고 개 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원인	
	피해내용	<input type="radio"/>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사망·실종·부상자 인적사항 <input type="radio"/> 재산피해 :
주 요 조치사항	응급조치사항	
	인력 및 장비 동원사항	
향후전망 및 조치사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에 관한 업무이양을 협의합니다.		
년 월 일		
<input type="radio"/> ○ 긴급구조통제단장(서명 또는 인)		
<input type="radio"/> ○ 대책본부장 귀하		

【서식 2】 긴급구조대응지침서

재난명	
작성일시	
대응기간	
일반대응목표	
대응지침	<p>1. 현 상황(해결해야 할 문제 위주 개조식 기술)</p> <p>2. 임무(해결해야 할 하위 대응목표)</p> <p>3.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 조치사항 - 12시간 예측에 따른 조치사항 <p>4. 대응지침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응지침 - 문제점 - 개선 <p>5. 필요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단체 현장대응자원 협조사항 - 긴급대피소 협조사항 - 시설, 기타 물품 협조사항 <p>6. 통신(음성전달, 데이터통신, 항공통신, 무선)</p> <p>7. 일기예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기상상태 - 24시간 후

【서식 3】 상황예측 매뉴얼

《 상황예측 매뉴얼 》

계획부는 변화하는 재난상황을 예측하여 현장지휘대장, 자원관리부장, 긴급복구부장, 총괄지휘부장에게 제출한다. 계획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예측 지침을 이용한다.

1. 상황은 어떻게 변하는가?

- 호전되는가?
- 악화되는가?
-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는가?

2. 수색 및 구조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3. 피해 도로 긴급복구 소요 시간은?

- 교량이 파손되었나?
- 긴급구조 및 대피장소에 가기 위한 대체 도로는?
- 주요 자원의 현장동원을 위한 대체 도로는?

4. 전기, 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긴급복구활동과 소요 시간은?

5. 긴급복구로 인한 잔해물 적치장소는? 잔해물 중 위험물질은 없는가?

6. 긴급대피소 및 대응자원의 숙소가 필요한가? 장기적으로 필요한가?

【서식 4】 상황 요약 절차

《 상황 요약 절차 》

1. 계획부 각 반별 운영요원을 임무별로 조직한다.
 - 상황분석반 :
 - 상황보고반 :
 - 작전계획반 :
 - 메시지센터 :
2. 지역 지도에 재난발생 지점을 모두 표시한다.
3. 현장지휘대장과 만난다.
4. 현장지휘대장에게 대응지침서를 전달한다.
5. 언론대응반에게 초기(1차) 브리핑 자료를 제공한다.
6. 언론대응반은 통제단장에게 브리핑 계획을 보고하고 초기 브리핑을 실시 한다 .
7. 현장지휘대장, 자원관리부장, 긴급복구부장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다.
8. 브리핑을 한다. 주요 요점은,
 - 재난(사고) 위치
 - 재난의 성격(화재, 위험물질 등)
 - 인명구조 및 구급(응급의료) 상황
 - 12 시간 이후에 대한 상황평가(예측)
 - 자원배치 현황
 - 유관기관 상호협조
 - 건의 및 중점지원사항
10. 현장 대응 계획을 준비한다.
11. 12시간 예측을 준비한다.

【서식 5】 상황 요약 양식

《 상황 요약 양식 》

1. 현 재난 상황/위험 분석

2. 조치상황

3. 상황예측(12시간)

4. 필요 자원

5. 장기적 대응목표

【서식 6】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기록양식)

【서식 7】 피해상황분석 편람

□ 사망(부상)자 피해 상황

순번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사망위치	사망(부상)원인	부상부위

□ 부동산 피해 상황

피해 물건명	피해의 종별 (소손, 수손, 기타)	수량 또는 면적	경과년수

□ 동산 피해 상황

품명	수량	피해액	피해의 종별 (소손, 수손, 기타)	피해장소	비고

【서식 8】 최초보고서

수 신 : 충청남도지사

재 난 명 :

1. 사고개요

- 일 시 : (접수 : , 출동 :)
- 장 소 :
- 원 인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 (사망 , 부상 , 실종)
 - 재산피해 : 원 (건물 , 기타)

2. 동원인원 및 장비

- 인 원 : 명 (소방 , 경찰 , 군 , 의료기관 , 공무원 , 자원봉사자 , 기타)
- 장 비 : 대 (헬기 , 구조차 , 소방차, 구급차 , 중장비 , 특수차 , 기타)

3. 지원 및 조치사항

-
-
-
-

【서식 9】 대중정보보고서

수신 : 소방청장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신 : (인)

제목 :

1. 일시 :

2. 장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

4.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원(동산 , 부동산)
- 기타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원 : 명(소방 , 경찰 , 군 , 공무원 , 기타)
 - 장비 : 대(헬기 , 구조차 , 소방차 , 특수차 , 기타)

6. 지원 및 협조사항 :

7. 향후 전망 및 대책 :

【서식 10】 피해상황 최종보고서

수 신 : 충청남도지사 시행일시 : 제 목 :	접수일시 : 발 신 : (인)
<p>1. 사고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radio"/> 일 시 :<input type="radio"/> 장 소 :<input type="radio"/> 원 인 :<input type="radio"/> 내 용 : <p>2. 피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radio"/> 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 부상)<input type="radio"/> 재산피해 : 원(동산 , 부동산) <p>3. 동원인원 및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radio"/> 인 원 : 명(소방 , 경찰 , 군 , 공무원 , 기타)<input type="radio"/> 장 비 : 대(구조차 , 헬기 , 소방차 , 특수차 , 기타) <p>4. 개선사항 및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radio"/><input type="radio"/> <p>5. 환자이송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radio"/> 사망자 : 명(남자 , 여자 , 미상)<input type="radio"/> 부상자 : 명(중상 , 경상) <p>* 병원 명, 의료원 명, 대학병원 명, 의원 명</p>	

【서식 11】 현장조사반 표준작전절차

- 재난발생 우려 시 사전위험성 분석활동 및 재난 초기조사
- 피해상황 정보의 조사·수집·전파
 - 대책본부장, 통제단장, 상급 통제단 등
- 상황 및 분석보고, 정보의 표시, 기록유지 등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확보한 재난상황 정보의 수집 및 종합분석
- 효율적 상황분석을 위한 표준상황분석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통신체계 유지
- 정보수집 및 상황분석을 위한 연습
- 언론대응반이 대중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 긴급구조대응 활동과 관련된 사항 기록정리하고 최종보고서 작성

*개선사항에 대한 제한 포함.

- 추후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작업일지, 동영상, 사진 등을 보관
- 소방청 및 대책본부 합동조사단이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여 각종 피해관련 자료정리

【서식 12】 사상자 조치상황

- 사망자 : 총 명 (남 , 여)

- 안치사항

안치장소	사체수	성 별		비고
		남	여	
계				

-사망자 명단

성명	연령	성별	안치장소	비고(주소,직업)

- 부상자 : 총 명 (남 , 여)

- 입원조치사항

병원별	부상자 수	성 별		비고
		남	여	
계				

- 부상자 명단

성명	연령	성별	입원병원	비고(주소,직업)

【서식 13】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 응급의료소 운영상황 보고 》

- * 사망자 수
 - * 병원시설 피해 상황
 - * 응급의료소 운영현황
 - * 특수재해 시 현장활동 요원들의 보호장구 착용수준 및 유의사항
 - *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비 의료자원 현황
 - * 사망자 명단

【서식 14】 자원동원 매뉴얼

- 통제단장에게 자원동원부서 상황을 보고하고 초기 지침서를 입수 후 자원관리부 요원의 능력을 평가하고 책임을 할당한다.
- 활동일지 기록을 시작한다.
- 전반적 자원동원 연대 조직을 확립한다.
- 통제단 가동초기 1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지휘부장, 상황관리부장과 만난다.
- 통제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문제점을 검토한다.
- 현장지휘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원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 계획된, 예상된 작전에 필요한 자원동원, 업무지원 사항을 확인한다.
- 요청된 자원동원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여 처리한다.
- 재난구역별 담당자와 통신연락을 확립한다.
- 필요한 모든 일지를 기록하고 작성한다.
- 상황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잠재적 자원수요나 문제점을 예측 조치한다.

【서식 15】 자원요청서

수 신 :

제 목 :

1.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사고내용 :

2. 지원요청사항

- 인 원 :
- 장 비 :
- 물 자 등 :

3. 협조사항

- 지원시기 :
- 지원지역 :
- 지원사유 :
- 행동요령 :

4. 행정사항 : ○○기관 인원 및 장비 등을 ○○년○○월

○○일○○시까지○○장소로 집결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

충청남도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16】 자원집결지 설치절차

1. 목적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특정장소에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배치하기 위하여 설치

2. 방침

- 가. 현장지휘관이 자원집결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원관리부장의 통제 하에 자원집결지를 설치
- 나. 재난사고가 소규모이거나 현장대응활동이 단순한 경우 자원집결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설치절차

- 가. 자원집결지는 긴급구조 책임기관·지원기관들의 자원이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장소로 재난의 대응단계에 따라 통제단장은 긴급구조책임기관·지원기관의 자원동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제
- 나. 자원집결지에 도착한 긴급구조책임기관·지원기관의 자원(인력, 장비, 물자 등)은 자원관리부장의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
- 다. 각 지역별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응구역별 자원집결지는 관할 소방서가 되고 충청남도 차원의 재난발생시 집결지는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또는 재난의 상황에 따라 통제단장이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 라. 자원관리부장은 사전 지정된 장소 이외에 긴급복구자원의 진·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 필요 자원을 조정·통제한다.

【서식 17】 자원대기소 설치절차

1. 목적

재난현장에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를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 운영

2. 방침

- 가. 현장지휘관이 자원대기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난현장 인근에 자원대기소를 설치
- 나. 붕괴사고·대형화재 등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자원집결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3. 내용

가. 위치선정

- 1)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근접 위치
- 2) 재난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장소
- 3) 현장으로 진입경로와 임무수행 후 대기소로 귀소하는 이동경로 분리
- 4) 출동자원 수용 가능, 재난상황에 따라 확장 가능
- 5) 외부인의 출입 통제

나. 설치절차

- 1) 자원대기소는 자원동원이 현장상황에 따라 즉시 필요한 인원과 물자가 대기하는 장소로 자원대기소장은 재난의 대응단계에 따라 자원대기소 설치여부를 현장지휘관의 지휘 하에 결정
- 2) 현장지휘관은 재난의 상황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자원대기소를 설치
- 3) 자원대기소 설치 및 운영은 현장지휘관이 현장상황과 자원관리부장과 협의하여 현장투입 자원여부를 결정자원집결지 설치절차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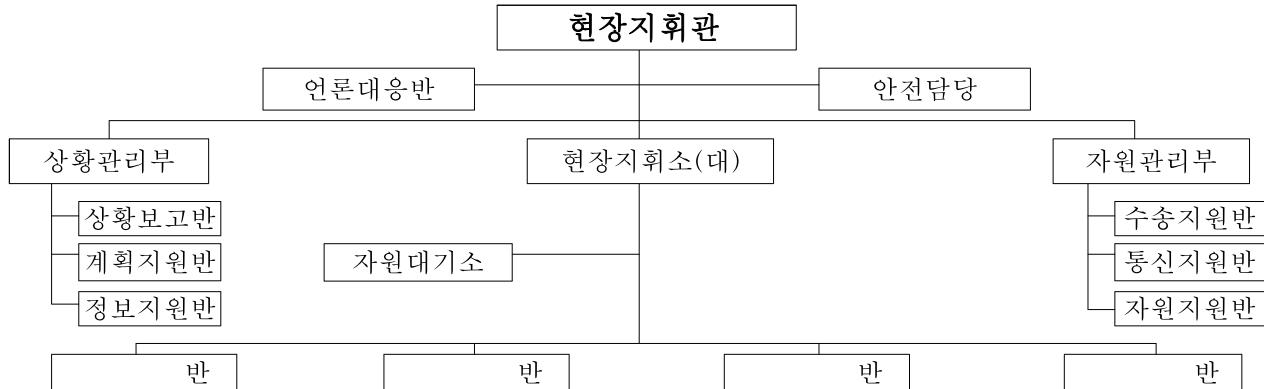
III. 참 고

【참고 1】 표준현장지휘체계

3.4.1 기본지휘구조

- 표준현장지휘체계는 재난시 긴급구조기관 및 각 지원기관의 일상적 행정조직을 대체하여 긴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운영조직이 된다.
- 재난상황에서는 아래의 표준현장지휘체계(예시)가 이용된다.

〈표준현장지휘체계(예시)〉



※ 소방서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3.4.2 적용상황

- 표준현장지휘체계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된다.
 - 소방, 경찰, 응급의료소에 의한 재난현장 공동 대응
 - 각 지원기관 현장지휘소에서
 -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을 통하여 충청남도 전체의 대응조직 운영할 때
 - 각 재난대응구역 내의 소방서 통제단에서

3.4.3 표준현장지휘체계 운영원칙

- 표준현장지휘체계는 모든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며, 관할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단일 또는 다수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상황에 표준현장지휘모델로 적용한다.
- 표준현장지휘체계의 표준화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상황관리부 : 재난상황과 지원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현장대응계획을 문서화한다. 현장대응계획을 현장지휘대, 자원관리부, 긴급복구부에 전달하고, 상황예측에 따른 필요자원을 예측한다. 현장지휘대 및 통합지휘팀과 함께 대응지침서와 현장 대응계획서를 개발한다.
 - 현장지휘대 : 대응계획에 따른 현장 대응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통제한다.
 - 자원관리부 : 현장대응 및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장비, 인력지원을 제공하고 긴급히 소요되는 재정지원임무를 수행한다.

【참고 2】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긴급구조대응 매뉴얼

	소방청(중앙긴급구조통제단)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사전 대비 (-D7 ~3일전)	<p>정보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이력(예상이동경로, 크기, 강도, 최대풍속, 이동속도 등) • 호우 등 기상청 예비특보 등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급경사지 및 대형공사장 등 재난취약지역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하천 주변, 봉괴 및 침수우려지역, 고립예상 지역 등 • 전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초기대응 준비 철저 지시 • 풍수해 대응활동에 필요한 자원 정비·점검 지시 •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 등 대응전술 숙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철저 지시 	<p>정보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이력(예상이동경로, 크기, 강도, 최대풍속, 이동속도 등) • 호우 등 기상청 예비특보 등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별 재난취약지역 등 파악·취합하여 중통단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하천 주변, 봉괴 및 침수우려지역, 고립예상 지역 등 • 내근 및 외근근무자 비상연락망 점검 및 현행화 • 기상특보에 따른 인명구조대책 수립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취약지역 예방순찰 강화 및 수방장비 점검 철저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직원 교육 지시(현장안전점검관 지정) 	<p>기본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동차량 정비 등 출동태세 확립 및 개인안전 장비 점검 •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 등 대응전술 숙지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강·하천 주변 등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초기대응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통단 운영을 위한 단계별·조별 비상소집 명단 정비 -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자체 등의 동원자원 파악 • 소방차량 및 풍수해 대응자원 정비·점검 • 기타 상급부서 지시사항 이행 등 								
내습 전 (-D2 ~1일전)	<p>상황판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통단 운영준비 및 비상대응체제 가동 - 일선 소방관서장 상황종료시까지 지휘선상 근무 지시 <p>중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통단 조별 근무자 명단작성 및 비상연락망 확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특보에 따른 대기 예령 발령 • 중대본 구조구급반 인력 파견(정보교류 및 지원사항 요청 등)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서(119구조과) 정위치 근무 • 긴급조치사항 시·도 소방본부 및 119종구본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p>상황판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개최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지휘부 구성 운영 및 상황실요원 보강 등 - 119신고 폭주 대비 상황실 접수대 증설방안 강구 <p>지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및 소방서 조별 근무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특보에 따른 예비단계 비상 예령 • 지역재난대책본부와의 협업체계 유지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철저 지시 • 소방력 재배치로 동시다발 긴급구조 출동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예상 집중지역 ⇒ 필요시 즉시 중통단으로 요청 • 태풍경로, 현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등 적극 홍보 	<p>지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실시로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위험요소, 소방력 동원 등 판단·이행 - 총괄지휘부 등 상황요원보강 계획 등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비상근무 실시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필요시 봉괴 및 침수우려지역 집중 순찰실시 및 대처요령 통보 •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 재배치로 대응태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상습 침수지역 및 예상지역 센터에 집중 배치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운영에 따른 근무자 명단 작성·정비 								
내습 중	<p>중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및 시·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즉보체계 확립 지시 • 피해사항 및 지원사항 등 상황보고체계 확립 <p>긴급지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소방본부 및 중앙119구조본부 강조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습지역 : 대응단계별 긴통단 운영준비 철저 - 기타 :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비·대응태세 유지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활동 자획·조정·통제 강화 • 인근 시도 지원 및 중앙단위 출동체계 확립 • 기타 긴급구조 사항 추가지시 등 	<p>지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상황조정 운영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1단계</th> <th>2단계</th> <th>3단계</th> </tr> <tr> <td>비상소집</td> <td>필요시 필수요원 동원</td> <td>현원 30%</td> <td>현원 50%</td> </tr> </table> <p>※ 기상특보, 지역실정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통단과의 핫라인 등 상황 즉시보고 체계 유지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 대응 시 직원 안전사고 절대방지 재강조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주변 동요에 휘말리지 않도록 현장지휘 강화 • 상습 침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강화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가, 유원지 및 봉괴우려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적극 대응 • 피해발생 큰 지역에 대한 소방력 우선 배치 등 탄력적 운영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소집	필요시 필수요원 동원	현원 30%	현원 50%	<p>지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범위,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 탄력 운영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대응시 직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안전점검관 센터별 지정운영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난구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현장활동 준수 • 필요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및 출입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차 및 펌프차 등을 활용 사이렌 취명 및 안내방송 실시 • 시·군·구 통합지원본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공유 및 필요한 물자·자원 등 지원요청 • 필요시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등 예방활동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소집	필요시 필수요원 동원	현원 30%	현원 50%								
내습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황, 긴급구조 실적 및 미담사례 등 보고준비 • 복구 및 민생활동에 활용 소방력 최대 지원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황 및 긴급구조 실적·미담사례 등 파악 •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와의 지원관련 물자 등 관련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및 민생활동에 활용 장비 및 소방력 최대 지원 								

【참고 3】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절차(예시)

1. 비상경고메시지의 초안을 작성한다.(첨부 참조)
2. 충청남도 긴급구조 통제단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코드암호를 얻는다.
3. 아래에 열거된 순서대로 방송국에 연락한다.
 - KCB 전화 765-4074, 팩스: 765-4080로 연락
 - KCB가 방송이 되지 않을 경우,.....
4. 전화가 두절된 경우, 비상용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연락한다.
5.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고, 비상방송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KCB 비상방송 담당자가 특정 암호 숫자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면, 암호 숫자 우측 옆에 나타난 암호로 대답한다.
6. KCB 비상방송 담당자가 녹음기 작동개시라고 말하며, 5, 4, 3, 2, 1, 0를 읽고, 메시지 양식에 있는 메시지를 읽는다. 주의하여 메시지를 원문 그대로 읽는다. 그리고 메시지 양식의 맨 끝부분에 “방송완료”라고 말한다. 메시지가 완료되었을 때, KCB 비상방송 담당자가 녹음완료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끊는다.

【참고 4】 비상경고메시지(예시)

□ 메시지 1---재난발생 후 최초 메시지

1. _____ 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공지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 사고가 (장소명)에서 발생했습니다. _____로 인하여 _____화학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명)의 (반경 Km)내의 모든 사람들은 본 방송을 계속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지역은 북쪽으로 (이름)도로, 동쪽으로 (이름)도로, 남쪽으로 (이름)도로, 서쪽으로 (이름)도로입니다.
2. 지금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마십시오 대피가 필요하게 되면 대피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대피지시를 듣게 되면 즉시 보호장소를 찾아서 대피하십시오. 119대원(소방관)들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메시지 2 --- 위험지역 내 보호 메시지

1. (장소명) 주변의 (어떤 지역의 반경 00Km 및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몇 00Km 내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2.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남쪽으로 주소(숫자)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주소(이름)까지의 (거리명)의 북쪽 (이름)거리의 양쪽 편 거주민
 - b) (이름)도로의 서쪽 주소(숫자)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름)천까지의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c) 남쪽으로 (사업장명)부터 북쪽으로 (이름)도로 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d) (이름)도로의 동쪽에 있는 (사업장명)부터 기차길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e) (이름)도로에서부터 (이름)도로의 _km 북쪽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f) (이름)천 동쪽 편과 (이름)도로 남쪽 거주민들은 보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3. 위험지역내 거주민들은 즉시 가장 가까이 있는 빌딩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서 외부공기의 유입을 줄이고 냉난방장치를 껐서 공기 소모량을 줄이십시오. 위험지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창문과 통풍구를 닫고 차량의 냉난방기를 끄십시오. 모든 거주자들은 이후의 상황과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에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4.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방재센터 대중정보센터 내 유언비어통제팀으로 전화 하십시오. 전화번호는 ○○○-○○○○ ~ ○번입니다.

□ 대피 메시지

1. (장소명) 주변의 (어떤 지역의 반경 00Km 및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몇 00Km 내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2.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남쪽으로 주소(숫자)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주소(이름)까지의 (거리명)의 북쪽 (이름) 거리의 양쪽 편 거주민
 - b) (이름)도로의 서쪽 주소(숫자)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름)천까지의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c) 남쪽으로 (사업장명)부터 북쪽으로 (이름)도로 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d) (이름)도로의 동쪽에 있는 (사업장명)부터 기차길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e) (이름)도로에서부터 (이름)도로의 _km 북쪽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f) (이름)천 동쪽 편과 (이름)도로 남쪽 거주민들은 보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3. 위험지역내 거주민들은 즉시 가장 가까이 있는 빌딩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서 외부공기의 유입을 줄이고 냉난방장치를 꺼서 공기 소모량을 줄이십시오. 위험지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창문과 통풍구를 닫고 차량의 냉난방기를 끄십시오. 모든 거주자들은 이후의 상황과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에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4.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방재센터 대중정보센터 내 유언비어통제팀으로 전화 하십시오. 전화번호는 ○○○-○○○○ ~ ○번입니다.

【참고 5】 재난유형별 비상경고메시지 샘플

언론대응반은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언론대응반은 외국어로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번역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재난유형별로 언론에 제공되는 메시지 및 비상경고메시지의 샘플이다.

1. 지진(알려진 정보 없음)
2. 지진(최신 정보)
3. 지진(언론 매체에 발표할 내용)
4. 지진예보(지진예보나 보고의 해제)
5. 지진(긴급하지 않은 경우)
6. 위험물질(교통혼잡지역에서 발생한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유출)
7. 위험물질(위험도가 낮은 물질의 유출 : 대피할 필요 없음)
8. 위험물질(위험도가 높은 물질의 유출 : 긴급한 대피가 필요)
9. 위험물질(언론매체에 제공할 요약된 내용)
10. 도로폐쇄
11. 폭풍에 따른 피해나 다른 피해안내
12. 비상방송메시지(대피에 대한 지시)
13. 비상방송메시지(작은 물탱크의 균열)
14. 비상방송메시지(탱크의 균열 : 대피 필요)
15. 비상방송메시지(지진해일에 대한 경고)
16. 지진해일에 대한 뉴스전달
17. 지진해일에 대한 설명

1. 지진(알려진 정보 없음)

이 곳은 _____의 _____입니다. 큰 규모의 지진이 _____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로는 피해나 부상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그 곳에서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한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진동이 멈추면 출입구를 열어 탈출로를 확보하십시오. 다시 진동이 시작되면 재빨리 견고한 가구 밑이나 지탱할 수 있는 문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전원차단기를 내리십시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지진(최신 정보 제공)

이곳은 _____의 _____입니다. 오늘 ____시에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_____로 기록된 지진이 _____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진원지는 _____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과학적 설명)

긴급구조통제단에 _____명의 사망자 _____명의 부상자 _____채의 집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상황 요약을 계속한다)

여전이 사고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출입구를 열어 탈출로를 확보하십시오. 진동이 느껴지면 즉시 견고한 가구 밑이나 문간으로 대피하십시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3. 지진(언론 매체에 발표할 내용)

메시지 1

오늘 ____시에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____로 기록된 지진이 ____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진원지는 ____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활동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부상, 사망, 재산피해액, 화재 기타 내용을 알린다.)

강도 ____의 여진이 이어졌지만 추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피해사례를 열거한다.)

____시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적십자는 이재민들을 위해 ____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____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____일 ____시에 시장은 (시간) (날짜)에 (지역)에서 지역재난이 일어났음을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피해액은 ____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시지 2. 단기예보용 메시지

(기상청의 지진예보경고를 참고한다.)

기상청은 ____동 주변지역에 ____시간이내 지진이 발생할 것을 (시간) (장소) 발표하였습니다. 지진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진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개인과 기업 등은 즉시 지진을 대비하라는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_____ 지역에는 더 큰 진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도를 참고한다)

(다음의 지진 대비활동을 제공한다.)

- *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을 외부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은 철근이 없는 오래된 석조건축물이다.(보통 벽돌건물임)
- * 온수기, 불안정한 가구(예를 들어 높은 파일 캐비넷인 서랍장), 실험실 선반 위의 화학약품, 고정되지 않은 높은 물건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십시오.

4. 지진예보(지진예보나 보고의 해제)

기상청에서 발표된 지진예보는 _____시 부로 해제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_____의 모든 지역은 언제라도 지진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_____의 건물 설계기준은 지진의 강도를 버틸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언급한다.)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풍예보, 홍수예보 등과 마찬가지로 지진예보는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진예보가 상황실에 접수될 때마다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보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차후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_____은 대중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

5. 지진(긴급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명된 경우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내용은 (기관명)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유언비어통제와 대중정보 제공 외에는 이 예보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도민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지시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명확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예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내용은 (기관명)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예보된 지진은 아주 미미하거나 진앙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피해가 _____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언비어통제와 대중 정보 제공 외에는 이 예보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도민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지시되지 않았습니다.

6. 위험물질(교통혼잡지역에서 발생한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유출)

이 곳은 ____의 ____입니다. (특정지역명)에서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출/방출)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회 도로는 _____입니다.

위험지역 내에 있는 도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특수훈련을 받은 대원들이 그 물질의 성분을 조사한 후 결과를 가능한 빨리 전달할 것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7. 위험물질(위험도가 낮은 물질의 유출 : 대피할 필요 없음)

이 곳은 ____의 ____입니다. 위험물질인 (물질명)의 소량이 ____에 유출/방출되었습니다. 도로가 폐쇄되었고 교통통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물질은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약하지만/강하고, 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____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회도로는 ____입니다. 위험지역과 가까운 곳에 계신 경우에는 출동한 소방관(또는 비상 대응요원)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반복해줄 것을 요청)

8. 위험물질(위험도가 높은 물질의 유출 : 긴급한 대피가 필요)

이 곳은 _____의 _____입니다. 위험도가 매우 높은 물질인 (물질명)의 (다량/소량)이 _____에서 유출/방출되었습니다. 당국은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_____km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험지역 내에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지금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지역 밖에 있는 친구나 친척의 집 또는 (장소)에 설치된 대피소로 즉시 대피하십시오. 차량에 여유가 있다면 주변의 이웃을 태우고 가십시오. 차량이 필요하다면 _____로 전화하십시오.

(학교목록)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장소)의 대피소로 대피할 것입니다. 학생을 태우기 위해 학교로 가지 마십시오. 학교당국이 대피소로 학생을 대피시킬 것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경청하십시오.

그 물질은 인체에 독성이 높고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을 설명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위험지역 밖의 병원이나 (장소)에 있는 대피소에 구조를 요청하십시오. 반복하겠습니다. _____ 지역에 있는 사람은 즉시 안전을 위해 대피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9. 위험물질(언론매체에 제공할 요약된 내용)

오늘 (오전/오후) 약 ____시경에 위험물질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의 (유출/방출) 사고를 (신고자)가 상황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소방/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그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출/방출)된 물질은 피부에 접촉하면 ____증상을 나타내는 (위험한/무해한) (화학약품/물질/가스)인 (물질명)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유출이 발생한 ____지역에서 (기관명)이 약 ____명의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기관명)의 위험물질요원들이 현장으로 파견되어 상황을 수습한 후 주민들을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는)

(소방/경찰)관을 포함하여 ____명이 ____을 위해 인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는)

(모든/숫자)명이 치료 후 귀가하였습니다.

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____입니다.

10. 도로폐쇄

여기는 _____의 _____입니다. 최근의 폭풍우로 인하여 시의 (몇 개의/많은) 지역에 (심각한/심하지는 않은)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명)도로의 통행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도로에 접근하지 마시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십시오. 모든 해안도로에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쇄된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의 도로폐쇄정보를 청취하기 위해 이 방송을 계속 경청하여 주십시오.

11. 폭풍에 따른 피해나 다른 피해안내

여기는 _____의 _____입니다. 이번 폭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지역 내에서 구경을 하려고 해선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 만약 폭풍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장소를 이용하십시오. 다음의 장소는 볼 수 있도록 허용된 곳입니다.

(장소 설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폭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비상방송메시지(대피에 대한 지시)

이 곳은 _____입니다. _____시의 _____지역에는 홍수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안전을 위해 즉시 빨리 _____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지역의 경계, 대피경로를 쓴다.)

생필품인 구급약, 비상식량, 개인적인 물건, 아기용품, 옷, 돈, 그리고 귀중한 서류 등을 확실하게챙겨야 하지만, 차에 너무 많은 물건은 실지 마십시오.

대피하기 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피지역 밖의 친구나 친척집에 머물 수 없다면 _____에 있는 적십자 대피소(중 한군데)로 대피하십시오.

적십자 대피소에 애완동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피지역 밖에 애완동물을 맡길 곳이 없다면, (지시 사항을 말해준다). 애완동물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십시오. 덩치가 큰 애완동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지시 사항을 말해 준다)

차량이 없거나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_____로 전화하십시오.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화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반복하겠습니다. _____지역(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대피를 해야 합니다.

추가정보와 지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 방송국에 계속 주파수를 맞추어 주십시오.

(전체 메시지를 반복)

13. 비상방송메시지(작은 위험물 탱크의 균열)

이곳은 ____의 ____입니다. 우리는 ____물탱크에 작은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장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에 관한 최신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추가정보와 지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 방송국에 계속 주파수를 맞추어 주십시오.

14. 비상방송메시지(위험물 탱크의 균열 : 대피 필요)

이곳은 _____입니다. _____탱크의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_____은 수주/수시간/수일 이내에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고 _____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_____ 지역을 떠나십시오.

(대피지역 경계와 대피경로를 말해준다)

적십자는 _____에 대피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대피지역 밖의 친구나 친척의 집에서 머물 수 없다면 다음의 대피소 중 한군데로 대피하십시오.

약품, 비상식량, 개인적인 물건, 아기용품, 옷, 돈, 그리고 귀중한 서류 등 생필품과 주요한 물건만 챙기십시오. 차에 너무 많은 물건을싣지 않도록 하십시오. 집을 떠나기 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창문과 문을 잠그고, 수도와 가스를 잠그고,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의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차량이 없다면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음의 승차장소 중 한곳으로 가십시오. 차량이 없는 사람은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만 챙기십시오. 버스가 당신을 적십자 대피소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승차장소에 갈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_____로 전화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승차장소 안내)

애완동물은 적십자 대피소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피지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애완동물을 맡길 수 없다면, (지시 사항을 말해준다). 애완동물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덩치가 큰 동물에 대한 조처를 취할 수 없다면 (지시사항을 말해준다).

재난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계속 제공될 것입니다. 이 방송국에 주파수를 고정시켜 주십시오.

흥분하지 말고 침착을 유지해 주십시오. 당신이 협조하신다면 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15. 비상방송메시지(지진해일에 대한 경고)

(기관명)_____으로부터 지진의 발생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발생에 관한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메시지 표본

1. (발신기관명)로부터
2. (수신기관명)으로
3. (해일 도착시간) 00월 00일 00시 00분 00초
4. (발생지역) 00시 남서쪽 00km 지점
5. (진도) 8.4
6. (성명), (관측소)

1. 2번 설명 생략.

3번--지진에 의한 파도가 육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지칭한다.

4번--지진이 발생한 위치나 지역을 나타낸다. 때때로 막연한 방향이나 대략적 거리가 주어진다.

5번--리히터 지진계에 나타난 지진의 규모

6번--보고를 보낸 직원의 이름

16. 지진해일에 대한 뉴스전달

기상청은 _____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해일이 _____해안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일은 약 _____에 _____해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해일로 인하여 홍수의 위협이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지역 안내)

위험지역내의 모든 사람들은 _____로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상황은 여섯 시간 정도 지속될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위험지역의 출입을 통제할 것입니다.

(유사 재난의 사례 설명)

지진해일은 _____해안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964년에 있었던 가장 최초의 지진해일도 _____에서 12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제때에 대피를 하지 않았거나 대피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 지진해일은 _____지역에도 피해를 입혔다. 1960년에 발생한 지진해일은 경고가 발표된 지 6시간이 지난 후 _____에서 61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_____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_____에서 _____명의 사람들이 지진해일로 생명을 잃었고, _____원이라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해일은 하나의 파도가 아니라 연속해서 발생하는 파도입니다.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를 받을 때까지 위험지역 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파도는 이 지역해안에서 한 시간 거리정도 떨어져 있고 높이 _____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지역에서 지진해일의 크기나 진폭을 미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지진해일이더라도 한 해변에서는 크고, 수마일 거리 내에 있을 수도 있다. 지진해일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해선 안 됩니다.

지진해일을 보려 해변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파도는 당신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_____해안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지역 유선TV 방송국이나 뉴스라디오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상사태 동안, 지역 경찰, 소방 그리고 비상활동 임원들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대한 협조하십시오.

17. 지진해일에 대한 설명

대부분의 지진해일은 바다 속에서, 특히 태평양 가장자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원인이다. 잠재적 위험지역은 해안지역, 항구와 낮은 고도의 만이다. 즉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경우, 해발 15m 이하의 지역, 지역부근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경우, 해발 30m이하의 지역이 위험지역이다.

지진해일은 하나의 파도가 아니라 연속적인 파도이다. 그러므로 모든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위험지역(항구, 만, 바다어귀와 해안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지진해일의 크기는 예측할 수가 없다. 지역에 따라 파도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즉 한 지역에서는 작은 파도로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큰 파도로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지진 해일은 위험하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 경고에도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1960년에 첫 번째 파도가 도착하기 10시간 전에 경고가 발표되었지만, 하와이 힐로에서 61명이 사망했고, 수 백명이 부상당했다.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진해일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였다며 즉시 해안선으로부터 멀리 이동한다. 1983년 5월에 해안 근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고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주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혼슈 서북쪽 해안이 지진해일에 의해 강타되었고 일본에 있는 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지진해일의 접근은 해안선을 따라 해발의 높이가 눈에 뛰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예고할 수 있다. 이 신호는 항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절대 지진해일을 보기 위해 해변으로 가선 안 된다. 파도가 밀어닥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참고 6】 현장브리핑 문안 예시(초기)

◇ ○○ 소방서장(또는 00소방서 언론대응반) ○○○입니다.

- 오늘 오후 ○○시 ○○분경에 ○○구에 위치한 ○○문화체육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붕괴)사고의 현황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고개요’ 입니다.

- ○월 ○일 ○○시 ○○분에 ○○시 ○○구 ○○동 ○○문화체육센터의 보일러실에서 최초 발화하여 1층으로 연소 확대가 되었으며, 건물 내 운동을 하고 있던 동호회원과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 사고 당시 체육센터에는 동호회원 ○○명, 센터운영직원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고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현황’ 입니다.

- 인명피해는 ○○명으로 추정(잠정)되고, 정확한 사상자 현황은 잠시 후 현장 응급의료소장인 00보건소장이 발표하겠습니다.
- 재산피해는 체육센터 1동 화재로 전소 및 붕괴 되었습니다. 정확한 피해현황은 조사 중으로 향후 합동 조사예정입니다.

◇ 다음은 ‘동원현황’ 입니다.

- 현재 동원 된 소방력은 헬기 0대, 고성능화학차량 등 차량 00대, 00특수구조대 등 인원 000명입니다.
(00소방본부를 비롯한 00개 타·시도 본부에서 동원되었습니다.)
- 유관기관 동원현황입니다. 경찰, 지자체, 가스, 한전 등 굴삭기 등 장비 00대, 인원 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보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치사항’ 입니다.

- 00시00분 최초 신고 접수하여 00시00분 (현장으로부터 00km에 위치한 00안전센터)가 도착 하였으며, 피해 확대 가능성에 따라 00시00분 대응1단계를 발령하여 전직원 비상소집 및 00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 00시00분 00소방서장이 현장도착 후 현장지휘에 임하고, 소방 및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인명 구조 등 긴급구조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인명피해 현황’ 은 현장응급의료소장이 발표하겠습니다.

- 응급의료소장 발표
예시) 현재 사상자 00명 중 사망자 0명, 긴급 0명, 응급 0명, 비응급 0명입니다. 긴급, 응급환자 00명은 00병원 0명, 00병원 0명 등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중에 있으며, 사망자 0명은 임시 영안소에 안치 중입니다. 세부적인 사상자 현황은 나눠드린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브리핑을 마치며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저희 소방당국은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사항은 다음 브리핑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다음 브리핑은 ○○시 ○○분(구체적인 시간)에 지금 이 장소(구체적인 장소)에서 실시 하겠습니다.

< 비 매 품 >

2020년도 충청남도 긴급구조대응 계획

발 행 일 : 2020. 2.

발 행 처 : 충청남도소방본부 119광역기동단

전화 (041) 635 - 5732

팩스 (041) 635 - 7956

주소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소방본부
119광역기동단(재난대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